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

A Study on Policies to Promote Nonprofit Jobs
in Gyeonggi-do

2025.10.



함께하는 공익활동, 변화를 만드는 경기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INPOM
Institute of NonProfit Organizations Management
비영리경영연구소

제 출 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연구』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25년 10월

- 수행기관 : 비영리(NPO)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 : 이명신(비영리경영연구소 소장)
공동연구원 : 이은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구현주(함께하는사회연구 대표)
보조연구원 : 김승영(비영리경영연구소 팀장)
- 과업기간 : 2025.06.24. ~ 2025.10.24.(4개월)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 요약

I. 연구 개요

구분	내용
연구목적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질문	- 우리 사회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기반한 비영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비영리 일자리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사회적 인정 부족 등)는 무엇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국내외 공익활동 및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의 주요 사례는 무엇이며, 이를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연구내용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비영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비영리의 경기도 GRDP기여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규명 - 경기도 및 국내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분석 및 진단 -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사례 비교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의 한계와 대안 마련 방향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충 정책 제안
연구기간	2025년 6~10월
연구범위	5년 이내 / 경기도 내 일원
연구방법	문헌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 이차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대화 등

II.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구분	정의
포괄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실체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직업 활동

□ 비영리 일자리 구성요건

구성요건	설명
목적	개인이나 조직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돌봄, 시민참여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둠
특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율성
범위 (조직형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등 포함 *정부 기관(GO)이 아닌 조직(NGO)이면서 수익추구 조직(PO)이 아닌 조직(NPO) *수익 활동을 하지만,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조직 포함 *잉여금의 분배 제한과 지역사회 귀속(공익사업 사용 및 지역사회 기여)을 규정하는 사회적경제 포함
노동관계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급 고용 형태이며, 계약직·정규직·시간제 등을 포함하되, 자원봉사·인턴십 등 무급 활동은 제외
고용조건	지속가능성과 생애 경력 설계를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사회적 위치	시장(영리)과 국가(공공)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공익적 의제 설정, 주창(advocacy)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III.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요약

구분	내용
추진경과 및 한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 제2기 시민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를 전략 과제화하여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 2025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지원체계로 재편 → 도정의 일자리 정책과 결합하지 못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단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됨.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안정성 문제, 그로 인한 정책적 효과성에 있어 취약함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전반이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 →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됨 -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고용연계형 사업인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구조로 청년의 지속 고용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 불가 → 고용연계가 가능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지원 구조 필요
시사점	(비영리 일자리 정체성 재정립) 고용연계형 일자리 정책은 비영리단체 운영 현실에 부적합함. ‘일체형’ 또는 ‘사회적 가치 기반 보상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과 같은 공익형 직접일자리 유형이 비영리 영역과 높은 정책적 친화성을 가질 수 있음 (참여 대상의 다양화와 확대 필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율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임. 시민사회 활동이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함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제로 접근해야 함. 이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음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의 도입 필요) 공익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으로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특정 활동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도 필요함 (제도적 진입장벽 해소와 법령 개정 필요) 많은 일자리 정책에서 명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함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비영리스타트업은 공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잠재력이 크지만, 대부분 인건비와 공간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이 부족함. 운영비 사용을 허용하는 민간 임팩트 투자 사례를 고려하여 공적 재원도 유연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 있음 (소결)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IV.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요약

범주	주제어	핵심 내용	시사점
실태	비영리 일자리 현황	자립적 구조 부족, 지원정책 부재, 일자리 생성 기회 부족	장기 지원 구조 및 지속성 기반 정책 설계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수직적 권위 문화, 리더 의존형, 중간관리자 육성 부재	조직문화 개선, 중간관리자 교육 체계 강화
	활동가의 삶과 동기	사명감 높으나 소진·생계 곤란, 이탈률 높음	생애주기별 설계와 생활 안정 시스템 구축
인식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중요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재 인식과 제도적 보상체계 마련
	비영리 일자리 인식	자원봉사와 혼동, 임시직 인식	진로 교육·사회적 홍보 강화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법적 정의·분류 체계 미비	법적 지위 확립, 제도 기반 강화
조건	괜찮은 일자리의 의미	의미·안정성·성장성 부족	평가 체계 마련, 조직문화 개선
	비영리 일자리 안정성과 조건	계약직/단기 일자리 중심, 재정 구조 불안	지속가능한 구조적 고용 흡수 시스템 설계
변화	정책 및 제도 변화	수익금 규제, 보조금 중심, 지속성 부족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공공(정부/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권한 제한, 협력체계 미흡	정책 집행력 강화, 거버넌스 제도화
	세대별 접근	진입 장벽, 경력 전환 제약	경력 주기별 정책 도입, 보장 논의
	시민사회 변화 전략	디지털 전환, 신뢰 회복 필요	자정 노력 및 조직모델 실험

V.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구분		내용
비영리 부문 규모	사업체	• (2022년) 156,333곳(전체의 약 5.01%) • (2023년) 163,482곳(전체의 약 5.01%)
	사업체 종사자	• (2022년) 624,161명(전체의 약 12.45%) • (2023년) 670,938명(전체의 약 13.14%)
경제적 기여 (’22)	사업체 매출	•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
	생산유발	• (생산유발효과) 약 192조 2,425억 원 • (생산유발계수) 1.633
	고용유발	• (고용유발효과) 778,589명 • (고용유발계수) 6.614
	부가가치유발	• (부가가치유발액) 약 84조 2,914억 원 •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GRDP	• 경기도 GRDP의 14.35%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 원 중 비영리부문은 84조 2,914억 원)
시사점	지원의 우선순위 고려	• 비영리부문 중 업종코드‘S.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많지만, 종사자 수는 0.4명으로 열악. 성장 방해요인을 파악하고 지원의 우선순위에 반영
	지역 편차 고려	• 전체 사업체 중 경부권(수원,용인,성남,안양,안성,군포,의왕,과천) 약 31%, 동북권(남양주,양평,구리,가평) 약 9%로 지역 편차가 큼. 지역 편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한 고른 발전 도모
	연구 과제	• 비영리부문 내 영향 비교연구, 추이연구 등으로 확장
	정책 과제	• (데이터 보완) 통계청을 중심으로 외부 조사자료를 기업통계등록부에 결합.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부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결하는 방안 고려 • (연구 지속성 확보) 경기통계 내 비영리부문 섹션 구성 및 통계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및 연구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검토

VI.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

□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와 시사점 요약

접근 방식	사례와 시사점
재정지원 정책	• 미국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일본의 주민세 1% 지원제도와 폴란드의 백분율 제도 등 → 시민 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간접 지원 • 한국도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세제 연계제도와 안정적인 간접비 보전 장치마련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생계 안정과 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사회적 인정 제도	• 상호호혜적 시스템인 타임뱅크,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인정NPO법인 제도(일본) 등 →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공식화 •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지위를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한국 상황을 고려, 비영리단체를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 있음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 미국 Idealist, The Council on Foundations, 영국 CharityJob 등 → 전문화와 맞춤형 매칭, 부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요인 • 국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적용할 경우, 단순한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맞춤형 매칭,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 커뮤니티 구축 등 실질적 운영 전략과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재정지원의 다변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화, 그리고 비영리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 있음	

Ⅶ.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근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비전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슬로건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목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3대 추진전략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9개 추진과제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16개 세부사업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기존사업 확대)청년/스타트업 지원, 역량강화 • (신규사업 개발)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심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Ⅷ. 결론

구분	주요 내용	정책적·학술적 의의 / 한계
연구 의의	- 비영리부문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 - 국내 최초로 비영리부문의 GRDP 기여도 및 산업연관분석 실시 -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 개발 및 지속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 구축	- 비영리 일자리의 공공적 가치 제고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모델의 확산 가능성 확보 - 비영리를 지역경제의 구성요소로 재조명 - 실증 근거 기반의 정책 연구 모델 제시
연구 한계	비영리 범위 설정 :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포괄한 확장된 정의 사용	현장 인식과 괴리 가능, 해석상의 논란 존재
	통계 자료 제약 : 국가공식 비영리통계 부재로 기업통계등록부 기반 추정	누락·분류 오류 가능성, 신뢰도 한계
	정책 실효성 한계 : 중앙정부 차원의 독립적 비영리 일자리 정책 부재	지방정부 중심의 제안 실효성 제약
	적용 범용성 제한 : 경기도 사회·경제적 맥락 반영 모델	타 지역·국가 일반화 적용의 한계

구분	주요 내용	세부 실행방안/정책 시사점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와 외부 등록정보 연계 협의체 구축 - UN 비영리 위성계정(UN Handbook) 기준 재도입 및 국제코드 매핑 추진, 비영리 식별코드 부여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체계화	- 돌봄·교육·문화예술·환경 등 세부영역별 분석 - 공공·민간 부문과 비교 연구 확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보조금사업 인건비 인정 제도 개선 : 상근자 인건비·운영비를 정당한 사업비로 명시 - 행안부 집행지침 개정 필요(상위법과의 불일치 해소)
	협력적 거버넌스 및 사회적 대화	- 중앙·지방정부 협력, 민간·학계 공동연구 확대 - 시민사회·기업·정부 간 다자 대화체 마련
	청년 공익활동가 정책 강화	청년활동가를 시민사회 기반의 핵심 주체로 육성
	AI와 비영리 일자리 대응	- AI 활용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완화 정책 필요 - 인간적 돌봄·공감 등 비대체 영역 중심의 역할 재정립
	기본사회 및 기본소득 연계	기본소득(경제 안정) + 비영리활동(사회참여)의 결합 모델 추진
	일의 패러다임 전환	일의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적 의미 강조

목 차

I. 연구 개요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2
3. 연구 범위	3
4. 연구 방법	4
5. 연구 추진체계	6
II.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8
1. 비영리 일자리 개념	8
2.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19
III.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23
1. 국내 시민사회 동향	23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현황	25
3.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44
4.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62
5. 요약 및 시사점	91
IV.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94
1. 대화 설계	94
2. 범주별 내용(실태, 인식, 조건, 변화)	98
3. 요약 및 시사점	114
V.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117
1.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선행연구 검토	117
2.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추계 기준 수립	120
3.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정	125
4.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효과	143

5. 요약 및 시사점	151
VI.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	154
1. 재정지원 정책	154
2. 사회적 인정 제도	160
3.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165
4. 요약 및 시사점	175
VII.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언	177
1.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	177
2.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182
3. 추진계획	205
VIII. 결론	212
1. 연구 의의 및 한계	212
2.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	213
참고문헌	217

＜ 표 목 차 ＞

<표 1-1> 자료수집 기법(Data Collection Methods)	5
<표 1-2> 분석방법	5
<표 2-1> 비영리 개념 관련 법률	12
<표 2-2> 근거법에 따른 시민사회조직의 유형	15
<표 2-3> 사회적 일자리와 비영리 일자리 차이	17
<표 2-4> 비영리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인가?	18
<표 2-5> 비영리 일자리 구성요건	20
<표 2-6>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21
<표 3-1>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29
<표 3-2>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 관련 추진과제 주요 집행 현황	30
<표 3-3> 문재인 정부의 시민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 성과	31
<표 3-4> 21대 대선 시민사회 공동 정책 제안	35
<표 3-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후 기본계획 포함 사항 비교	36
<표 3-6>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내용	38
<표 3-7> 경기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5.06.30.기준)	39
<표 3-8>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별 비영리단체 지원 여부	47
<표 3-9>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49
<표 3-10> 정부의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영리 일자리 관련 과제	51
<표 3-11> 기초연구와 기본계획에 담긴 비영리 일자리 추진 과제	53
<표 3-12>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 현황(2025.07.기준)	54
<표 3-13> '21년과 '25년 사업 구조 변화	55
<표 3-14> '21년과 '25년 사업 지원 내용 비교	55
<표 3-15> 지원단체들의 직원 수(4대보험가입자 수 기준임)	56
<표 3-16> 비영리스타트업(지역문제해결분야 포함) 참여 단체 수	58
<표 3-17> 비영리스타트업(사회문제해결분야 포함) 단체/모임 활동분야	61
<표 3-18> 경기도 인구 현황	62

<표 3-19>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현황	64
<표 3-20> 본 연구 관련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71
<표 3-21> 경기도 일자리사업 유형	73
<표 3-22> 소상공인 지원 사업	80
<표 3-23>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82
<표 3-24>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84
<표 4-1> 자문위원회 구성	94
<표 4-2> 자문회의 운영	95
<표 4-3> 인터뷰 진행 개요	95
<표 4-4> 인터뷰 주제	96
<표 4-5> 주제별 범주화	97
<표 4-6> 세대 간 인식 차이 비교	113
<표 4-7>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요약	116
<표 5-1> 국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선행연구	117
<표 5-2>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추출 방법	119
<표 5-3>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추출 건수	123
<표 5-4> 연구에 포함된 산업분류 코드 및 항목	124
<표 5-5> 조직구분별 사업체	125
<표 5-6> 조직형태별 사업체	126
<표 5-7> 공공기관유형별 사업체	126
<표 5-8> 사업자구분코드별 사업체	127
<표 5-9> 법인분류번호별 사업체	128
<표 5-10> 행정구역 시·군·구별 사업체	129
<표 5-11>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사업체	131
<표 5-12> 산업분류 S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와 전체 사업체의 사업자구분코드 비교	132
<표 5-13> 사업체 대표자 성별	133
<표 5-14>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대	133
<표 5-15> 대표자 출생연대별 사업자구분코드 교차표	134
<표 5-16> 대표자 출생연대별 법인분류번호 교차표	134

<표 5-17> 고용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136
<표 5-18> 사업체 활동상태	136
<표 5-19> 조직구분별 종사자	137
<표 5-20> 조직형태별 종사자	137
<표 5-21> 사업자구분코드별 종사자	138
<표 5-22> 법인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비교	139
<표 5-23> 법인분류번호별 종사자	139
<표 5-24> 행정구역별 종사자	140
<표 5-25>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종사자	141
<표 5-26> 대표자 출생연대별 종사자	142
<표 5-27> 국내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효과 선행연구	144
<표 5-28>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 및 종사자 수(2022년)	147
<표 5-29> 생산유발효과	148
<표 5-30> 고용유발효과	149
<표 5-31> 부가가치유발효과	150
<표 6-1> 계약과 보조금 비교	155
<표 6-2> NPO법인과 인정NPO법인	164
<표 6-3> 해외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166
<표 6-4> 플랫폼을 통해서 본 해외 비영리 일자리 트렌드	173
<표 7-1>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181
<표 7-2> 국내 지역재단 설립현황	203
<표 7-3> 국내 주요 지역재단 설립현황(2023년도 9월 기준)	204
<표 7-4> 국내 주요 지역재단 재정현황(2022년도 기준)	204

[그림 목차]

[그림 1-1] 리서치 프레임워크	5
[그림 2-1] 한국 비영리부문 지형도	9
[그림 2-2] 법적 형태에 따른 비영리부문 구조도	13
[그림 2-3] 법률 기반 비영리부문 구조도	14
[그림 3-1]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22~'24) 비전 체계도	28
[그림 3-2] 새 정부 정책과제 우선순위	34
[그림 3-3] 경기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5.06.30.)	40
[그림 3-4] 단체 회원수 분포 현황(단위: 개)	41
[그림 3-5] 단체 상근·반상근자 분포 현황(단위: 개)	41
[그림 3-6] 단체 연간예산 총액 현황(단위: 개)	42
[그림 3-7] 단체 예산수입의 주된 원천(단위: 개)	43
[그림 3-8] 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단위: 개)	43
[그림 3-9] '21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단체 수	56
[그림 3-10]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지도	66
[그림 3-11] '23~'24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추이	67
[그림 3-12] 경기도 시·군별 GRDP 및 사회적경제조직 분포	68
[그림 3-13] 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전략체계도	74
[그림 5-1] 조직구분별 사업체	126
[그림 5-2] 조직형태별 사업체	126
[그림 5-3] 사업자구분코드별 사업체	127
[그림 5-4] 법인분류번호별 사업체	129
[그림 5-5] 행정구역 시·군·구별 사업체	130
[그림 5-6]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사업체	131
[그림 5-7] 사업체 대표자 성별	133
[그림 5-8]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대	133
[그림 5-9] 고용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136

[그림 5-10] 조직구분별 종사자	137
[그림 5-11] 조직형태별 종사자	137
[그림 5-12] 사업자구분코드별 종사자	138
[그림 5-13] 법인분류번호별 종사자	140
[그림 5-14] 행정구역별 종사자	140
[그림 5-15]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종사자	141
[그림 5-16] 대표자 출생연대별 종사자	142
[그림 6-1] 타임뱅크 순환시스템	160
[그림 6-2]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시스템 모델	162
[그림 7-1] 경기도 조직도(경제부지사 산하)	211

I.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공익활동은 단순한 자발적 봉사를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공동체 회복, 환경보호, 평등과 연대의 가치 확산 등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활동이다.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처럼 복합적인 사회 변동이 가속화되면서 비영리부문은 정부·시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공백을 메우며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공익활동이 전문성과 지속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고용 기반 위에 활동가가 존재해야 하며, 그 활동이 ‘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 비영리 일자리는 이러한 공익활동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사회 기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자, 공익활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과 역량 축적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다시 말해,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끄는 구조적 토대 (Social Infrastructure)라 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정상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제도적 보호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민사회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에 상응하는 고용 안정성과 제도적 인정을 확보하는 것은 단지 노동시장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민주주의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 더욱이 비영리부문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GDP·고용·세수·산업연관 효과 측면에서도 주요 산업군 못지않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진 거대한 ‘경제 엔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존스 홉킨스대학연구소의 보고서(2013)에 따르면,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비영리부문은 GDP의 평균 4.5%를 차지하며, 일부 국가는 7%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운송 등 전통 산업보다 높은 수준이며, 고용 측면에서도 평균 노동력의 약 7~8%를 흡수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비영리조직이 2024년 4분기에만 국가 명목 GDP의 8.4%를 차지하며 28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¹⁾ 인디펜던트섹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180만 개 비영리조직이 2023년 한 해에 1.4조 달러(GDP의 5.6%)를 창출하고, 민간 노동력의 10% 이상(약 1,250 만 명)을 고용했다. 임금 총액만 6,700억 달러, 연방 급여세 납부액이 650억 달러에 달한다.²⁾ 이러한 경제활동은 정부의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고, 고용·소득세·간접세 등을 통해 순(純) 재정 수익까지 창출한다.

1) Statistics Canada. (2025, March 28). *Non-profit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 Economic contribution, first quarter to fourth quarter 2024*.

2) Independent Sector. (2023). *Impact of America's Nonprofit Sector*.

-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 『노동의 종말』에서 ‘제3섹터 일자리 증가’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영리부문이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서 점차 핵심 산업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고령화·기후위기·돌봄노동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향후 10년간 고용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UN 등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조세 혜택, 재정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정치·경제적 환경은 이러한 흐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 간 시민사회 인프라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비영리단체와 활동가의 지속가능성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 현재 중앙정부는 비영리부문을 위한 별도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영리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성장 정책을 쓰면서 공익적인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고 활동하는 비영리에는 오히려 지원하기를 꺼린다. 쏟아지는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으로 혜택이 심하게 쏠려 있으며, 비영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거의 없다.³⁾ 이에 따라 공익활동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인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단체로서,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2021) 제정을 통해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이 일부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와 일자리 전략은 부족하며, 경기도 내 비영리 단체 및 공익활동가들은 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경력 인정 부재, 사회안전망 미비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현재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정책평가, 데이터 구축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며,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1)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로 인한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체적으로는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분석하고, 비영리 일자리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

3)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더나은미래, 2018.09.18.)

여,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책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 정립과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익활동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러한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과제 이행,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확장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적 인식 제고,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근거 마련,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및 확산 연구 모델 마련 등의 의의가 있다.

2) 연구 질문

- 우리 사회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와 정책적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이에 기반한 비영리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 비영리 일자리는 어떻게 정의되고, 그 규모는 어떤 방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고용 불안정, 낮은 처우, 사회적 인정 부족 등)는 무엇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안은 무엇인가?
- 국내외 공익활동 및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의 주요 사례는 무엇이며, 이를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분담되어야 하며, 지역 단위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

3.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최근 5년 이내

2) 공간적 범위

: 경기도 내 일원

3) 내용적 범위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측면에서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범위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 일자리 규모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 비영리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비영리의 경기도 GRDP기여도,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규명
- 경기도 및 국내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분석 및 진단
-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사례 비교
- 경기도 및 한국 비영리 일자리 여건 및 정책의 한계와 대안 마련 방향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충 정책 제안

4.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현황조사, 사례연구, 이차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대화(자문, 인터뷰, 토론) 등의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 문헌 연구

: 시민사회, 공익활동,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이론적 근거 검토

2) 현황조사

: 비영리 일자리 실태 파악, 관련 정책 및 법령 현황 검토

3) 사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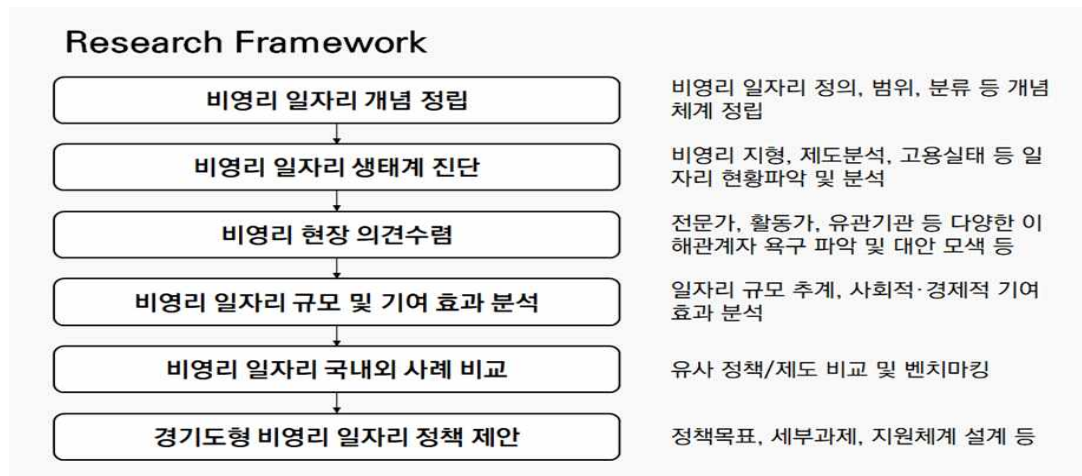
: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지원정책 사례연구를 통해 시사점 도출

4) 이차자료 분석

: 기업통계등록부, 산업연관표 등 공신력 있는 국가통계 데이터 분석

5) 이해관계자 대화

- 비영리 일자리 통계, 시민사회·공익활동 분야 전문가들과 자문 및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 통계 및 정책과제 고도화
- 현장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요 이슈와 문제점 도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



[그림 1-1] 리서치 프레임워크

<표 1-1> 자료수집 기법(Data Collection Methods)

유형	기법	세부 내용
정량자료 수집	① 이차자료 분석 (Secondary Data)	- 기업통계등록부 활용 -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코드, 법인분류번호 기준, 업종코드 기준으로 비영리조직 식별 및 추계
	② 문헌조사	- 정부 정책자료, 학술논문, 관련 통계보고서 등 - 국내외 비영리 고용정책 사례 수집
	③ 통계청 및 공공데이터 수집	- GRDP 관련 지역 경제지표 - 산업연관표, 고용지표 등
정성자료 수집	④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	- 비영리 분야, 일자리, 통계 분야 전문가 - 고용 실태, 일자리 정책, 통계 고도화 논의
	⑤ FGI(Focus Group Interview)	- 실무자·현장 전문가 그룹 대상 공동토론 - 비영리 일자리 질·안정성, 정책 체감도 등 도출

<표 1-2> 분석방법

분석유형	방법	활용 목적
기초통계분석	기술통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조직형태, 사업자구분코드, 법인 분류, 업종코드 분류 등
규모 추계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기반 추계	비영리식별→분류→데이터합산
경제기여효과분석	산업연관분석 간접추정법 (GRDP 비율 적용)	- GRDP 기여 추정(경기도GRDP × 비영리비중) - 생산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정책환경 분석	거시/미시 환경 분석	비영리 일자리 정책 환경 진단
정성분석	인터뷰·FGI 내용분석 (주제 코딩, 맥락 분석)	정책 수요, 제약 요인, 조직별 특성 등 도출
정책 시나리오 분석	시나리오별 효과 예측	일자리 정책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 검토

5. 연구 추진체계

1) 연구 수행 전략

구분	주요 내용	세부 활동	방법론
1단계	사전 준비 및 기획	• 착수 회의 및 연구 방향성 합의 • 연구 자문단 구성 • 자문회의 개최	• 회의 • 토론
2단계	문헌 및 정책 동향 정리 통계 기반 구축 및 규모 추계	• 선행연구 및 관련 정책 검토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파악 • 비영리조직 식별, 고용 규모 추정, 통계 기반 확보	• 문헌조사 • 통계분석(기업통계등록부, 산업연관표)
3단계	정책환경 및 수요조사	•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유관기관, 중앙단체 등 개별 인터뷰/FGI • 국내외 유사 정책 벤치마킹	• 인터뷰 • 사례조사 • 비교 분석
4단계	정책환경 분석 및 문제 진단	• 비영리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제도·재정적 제약 분석 • 법·제도 개선 필요성 도출 • 정책 간 연계성 검토	• 행정자료 내용분석, 정책자료 검토
5단계	정책대안 도출	• 단기/중장기 정책 대안 제시 • 로드맵 및 세부과제 제시	• 정책모형개발, 전략기획
6단계	정책 설계 및 실행전략 제안	•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 구성 • 조직별 역할 및 협력 구조 제안	• 정책 시나리오, 실현 가능성 검토
7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최종보고서 및 정책 요약본 작성 • 최종보고 및 연구보고서 제출	• 통합정리 및 문안 작성

2) 연구 일정

구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주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약체결	★																	
착수보고 및 실무논의	●																	
자문회의 1차			●															
문헌연구 및 현황분석		●	●	●	●	●												
일자리 연구 및 통계분석		●	●	●	●	●	●	●	●	●	●	●	●	●				
인터뷰 (개별면접, FGI)			●	●	●	●												
중간보고 준비							●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2차									★									
정책사례 분석										●	●	●	●	●				
정책설계 및 실행전략 도출										●	●	●	●	●				
최종보고 준비															●	●		
최종보고 및 자문회의 3차																	★	
최종보고서 제출																		●

II.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1. 비영리 일자리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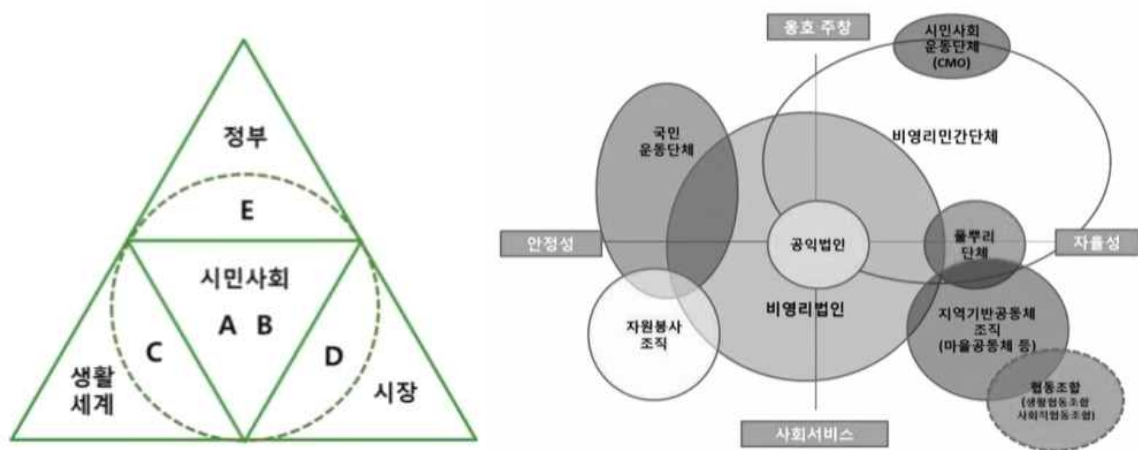
1) 비영리 일자리 개념에 대한 학술적 논의

- ‘비영리 일자리(Nonprofit Job)’에 대해서는 아직 학술적·법적·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둘러싼 활발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기존 논의 역시 국가 및 시장과의 관계, 또는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와 재생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더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정의를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오늘날 한국 사회’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은 이러한 개념을 가시화하는데 제약으로 작용한다.
- 나아가, ‘비영리’와 ‘일자리’라는 조합 개념으로서의 ‘비영리 일자리’는 그 구성 요소인 ‘비영리’ 자체에 대해서조차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역사적 배경, 사회적 조건, 제도적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형성된 개념들이 혼재되어 유입·해석·굴절되면서, 비영리부문(Nonprofit Sector)의 정의 역시 제3섹터(Third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민간부문(Private Sector), 자선부문(Charitable Sector),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등 다양한 용어와 시각으로 분절되어 있다.
-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를 개념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영리부문’의 범위와 특성에 대한 선행적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논의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비영리 일자리의 성격, 역할,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비영리부문의 범위

- 비영리 일자리 범위는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제3섹터와 관련하여 비영리영역 혹은 자원영역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영리영역과 자원영역의 결합은 제3섹터와 동일하게 인식되며, 이에 따라 비영리(Non-profit)와 비영리추구(Not-for-profit)조직을 구분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비영리조직과 비영리추구조직 모두 이윤창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지만, 전자의 경우 이윤 창출은 불법이며 잉여금은 조직의 합법적 활동에 자동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이윤 중 일부는 유럽의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참여자나 이해당사자들에게 분배될 수 있다. ‘비영리성’을 강조하여 참여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사회적기업, 공제조합, 협동조합 등을 비영리조직에 포함하지 않는다(이명신·김운호, 2019).

- 유럽 국가들은 비영리부문이 곧 제3섹터라는 개념으로 통용되지만, 미국과 달리 연대와 상호부조를 실천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해 개념이 명확해진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잉여금의 분배 제한과 지역사회 귀속 등의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영리조직과 구분되는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섹터를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와 동일한 영역으로 간주하며, 이익을 조합원 간 분배할 수 있는 협동조합(Cooperatives), 공제조합(Mutuals), 자발적 결사체(Associations) 등을 포괄한다.
- Pestoff(2012)의 시민사회 영역 모델을 한국사회에 적용한 아래 [그림 2-1]을 살펴보면, 시민사회 내 A.비영리민간단체(법인, 임의단체 등)와 B.비영리스타트업 및 기후행동과 같은 네트워크 등의 유연한 조직, 그리고 비공식적인 생활세계에 C.비조직적 활동(개인적 실천, 주민모임이나 봉사단, 커뮤니티 참여 등), 시장의 영리에 치우친 D.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정부의 공공성에 가까운 E.협치 영역(중간지원조직, 청년정책참여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개념적 틀이며, 오늘날 시민사회는 영역 간 중첩이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Pestoff, 1992; 조철민 외, 2023에서 재인용).
- 공석가·유지연(2017)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등 서로 다른 유형의 DB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한국적 맥락을 고려하여 비영리조직의 규모, 유형, 활동 영역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다. 정부와의 관계(안정성-자율성)와 사회적 역할(옹호주창-사회서비스)을 기준으로 다양한 비영리조직들을 구조적으로 배치하였는데,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조직, 풀뿌리단체, 협동조합 등 비영리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비영리섹터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한 이 연구는 현재 분절된 비영리 관련 DB들을 통합 또는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출처: (왼쪽부터)조철민 외(2023), 공석가·유지연(2017)

[그림 2-1] 한국 비영리부문 지형도

(2) 비영리부문의 특성

- Salamon(2000)은 비영리부문의 특성을 ①비정부조직(NGO)일 것, ②공식적인 조직일 것, ③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조직일 것, ④자치적인 조직일 것, ⑤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일 것, ⑥자발적인 참가자발적인 기부를 포함하는 활동일 것 등으로 정의한다.
- Enjolras et al.(2018)은 비영리부문 개념의 5가지 기준으로 조직, 비영리 활동(Nonprofit-distributing), 자치(Self-governing), 민간영역(Private), 자발성(Non-compulsory)을 제시한 바 있다.
- Salamon & Sokolowski(2018)는 제3섹터 개념(TSE: Third and Social Economy Sector)의 3가지 공통 기준으로 민간영역(Privateness), 공공의 목적(Public Purpose), 자유선택(Free Choice)을 제시하였다.
- Pestoff(2012) 모델은 정부 시장, 생활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시민사회 영역을 구획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와 나머지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①공공(Public)-민간(Private), 시장과 나머지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②영리(Profit)-비영리(Non-profit), 생활세계와 나머지 영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③공식적(Formal)-비공식적(Informal)을 적용하였다([그림 2-1]참고, Pestoff, 1992; 조철민 외, 2023에서 재인용).
- 정진경 외(2023)는 UN이 제시한 특성이 모든 비영리부문의 공통적 속성이라고 보았는데, ①정부에 통제되지 않는 민간이고, ②(투자 자본에 대한 수익 극대화나 분배라기보다) 사회적 또는 공공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③(강요 없이 자유의지에 의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이처럼 비영리부문은 고유한 사회, 문화, 정치·경제적 배경에서 발생하였으므로 국가 및 연구자에 따라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으나, 그 공통으로 제시되는 특성은 비영리성, 공익성, 자율성(자치성) 등으로 함축할 수 있다.

(3) 비영리부문 범위 설정의 주요 논쟁 지점

- 김소연 외(2023)는 ‘비영리성’, ‘공익성’, ‘자율성’의 기준에 따라, 비영리부문 포함 여부에 쟁점이 있음을 제시하였는데, 논란이 되는 조직유형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성 : 사회적경제 조직, 의료법인
 - 공익성 : 직능단체, 노동조합
 - 자율성 : 관변단체, 위탁조직, 학교법인
- **(비영리성)** 비영리성은 비영리의 가장 고유한 특성이다. 최근 영역 간 경계가 흐려지고, 사회적가치를 추구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비영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을 비영리부문으로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범위 설정의 가장

큰 논점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비영리부문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영역을 세분하여 어디까지 비영리부문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비영리(Non-profit)의 가치를 우선하는 견해에서, 사회적경제는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면서 문제해결을 지향하지만, 비영리부문은 순수 사회적 가치창출을 추구하면서 주창(Advocacy)기능까지를 포함하므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박준 외, 2020).
-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익분배제한 및 이익사회환원 등의 운영 기준이 일반 영리기업과 다르므로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을 시민사회조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연대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사회적 특징으로 인식하는 유럽의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사회적경제를 비영리부문으로 포함하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사회적경제는 ‘이익을 분배’하므로 비영리부문에 포함하지 않지만, 네덜란드는 사회적경제 내 비영리 부분(사회서비스 단체, 옹호 단체, 소셜벤처 등)과 연계성을 가진 부문을 포함한다.
- 절충안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일정 기준에 따라 비영리부문으로 포함하기도 한다. Salamon & Sokolowski(2018)는 제3섹터를 정의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및 무보수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며 그에 대한 기준을 두었는데, 일반 영리기업과 달리 이윤의 배분을 완전히 금지하거나 일정 정도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 또 다른 쟁점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의 포함 여부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병원, 학교, 복지기관 등 공식성이 강한 법인을 비영리에 포함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비영리’라고 할 때 민법(제32조)과 공익법인법(제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포함하지만,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개별법에 적용받는 법인과 종교법인은 제외하는 경향이 있다.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되나, 대형병원, 대학병원 등의 지나친 영리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 **(공익성)** 비영리부문의 공익성은 단일한 절대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의된다. Salamon(1999)이 지적했듯이 비영리조직은 공공재 공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조직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직능단체나 노동조합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잉여를 배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영리적 성격을 가진다(Hansmann, 1980).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2015)의 해석처럼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면 공익성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은 제도적으로 다양한 비영리조직을 포괄하기 위한 현실적 기준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의 공익성은 적극적 의미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차원과, 소극적 의미에서 공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차원을 모두 포함하는 다층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자율성)** ‘자율성’은 외부의 과도한 통제나 강제 없이 스스로 목표와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운영되는 자율적 조직인가를 기준으로 할 때, 관변단체, 위탁운영 조직(공공시설 포함), 중간지원조직, 학교법인 등을 비영리부문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는 이들 조직이 법적으로 비영리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구조나 의사결정 구조에서 정부·기업 의존도가 높아 ‘제3섹터’의 본질적 자율성을 결여한다고 본다. 반면, 조직의 설립 목적과 활동 내용이 공익성을 지니고 있다면 운영 주체와 관계없이 비영리부문에 포함할 수 있다는

포괄적 시각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을 받더라도 조직의 핵심 가치와 활동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 여기서 자율성(Autonomy)은 자치성(Self-governance)과 독립성(Independence)을 포괄하고 있다. 조직이 외부의 통제나 강제 없이 스스로 목표와 활동을 결정하려면 자치성(내부 의사결정구조)과 독립성(재정적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율성은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스스로 설정하고, 활동방식, 사업내용, 전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조직 운영과 관리가 내부 구성원들의 의사결정구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더불어 외부의 특정 이해관계에 종속되지 않으며, 본래의 사명에 따라 활동을 지속해 가는 것이다.
- 한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제3섹터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견해도 있다(박태규 외, 2016). 특히 최근 한국 사회의 제3섹터 담론에서는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 ‘사회혁신’ 등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사회공헌팀·ESG·CSR 부서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이러한 흐름의 주도권을 쥐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제3섹터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전통적인 시민사회 조직과 시장 친화적 조직 간의 관계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비영리 일자리 개념에 대한 법적 논의

(1) ‘비영리’ 개념에 대한 법적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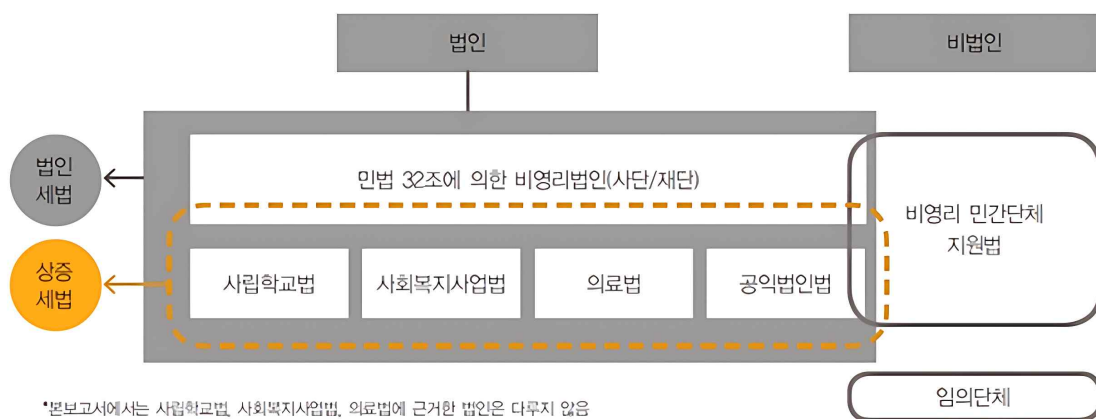
- 비영리부문의 정의를 직접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시민사회단체’를 ①비영리민간단체, ②비영리법인, ③공익법인, ④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분한다. 각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비영리성’, ‘공익성’ 등의 특성이 확인된다.

<표 2-1> 비영리 개념 관련 법률

법률	구분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5항)	시민사회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 비영리법인(민법) •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그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비영리민간단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설립·운

		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u>영리 아닌</u>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공익법인	•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u>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u>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부문의 설립근거 및 관련법률을 검토한 장운주 외(2018)의 연구는 법인설립 여부와 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비영리부문 구조를 다음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 중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 ‘공익법인’은 그 기관이 상속 및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대상이므로 가장 적극적인 공익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고, 연구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설립·운영되는 법인(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에 근거한 법인)은 비영리부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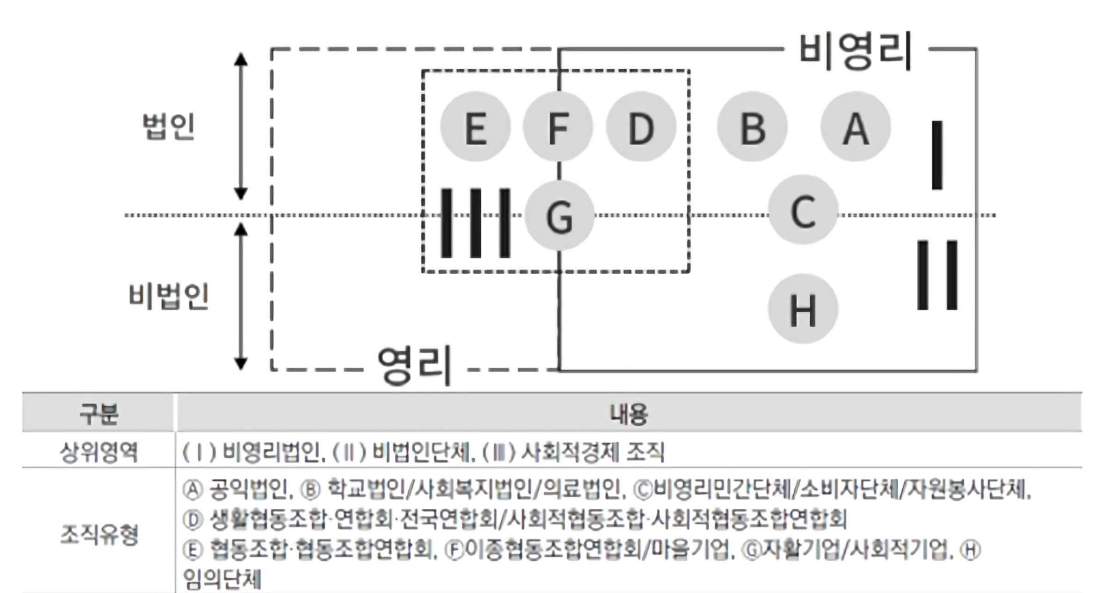
출처: 장운주 외(2018)

[그림 2-2] 법적 형태에 따른 비영리부문 구조도

- 김소연 외(2023)는 장운주 외(2018)의 연구보다 비영리부문의 범위를 확장하여 검토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법률 등을 포함시키는데 이는 진선미의원 등이 제안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24.5.29)된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발전 기본법안(진선미, 2021)」을 근거로 한다. 법안은 ‘시민사회’를 시민과 시민사회조직이 시민공익활동을 하는 영역으로 정의한다. 그 특성에 대해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조직’을 시민공익활동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며 다음의 조직이 포함되는 것으로 상술하였다.

- 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자.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차.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자원봉사단체
 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파. 그밖에 3명 이상의 구성원을 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위 법안은 비영리부문의 추상적 해석을 넘어, 그 범주를 법률에 근거하여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데에 기존 법률과 차이가 있다. 또한 장윤주 외(2018)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사회적경제조직’을 포함하여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또는 공공적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면 비영리부문으로 볼 수 있다는 포괄적 정의를 만족시킨다.
-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범위제시는 연구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김소연 외(2023)는 시민사회조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골조로 위 법안을 택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출처: 김소연 외(2023)

[그림 2-3] 법률 기반 비영리부문 구조도

- 근거법에 따른 시민사회조직을 기준으로 하면서, 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는 설립근거법이 아니므로 대표적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을 중심으로 다루고,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조직을 비영리/영리, 법인/비법인을 기준으로 유형별 위치를 제시하였는데, <표2-2>의 2.사회적경제조직 중 ㉠생활협동조합, 생협연합회, 전국연합)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에,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영리법인에, ㉣이중협동조합연합회와 ㉤마을기업은 영리 또는 비영리법인에,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영리/비영리, 법인/비법인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표 2-2> 근거법에 따른 시민사회조직의 유형

구분	정의	근거 법률
1. 비영리법인 / 비법인 단체	㉠공익법인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공익법인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인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의료법
	㉤비영리민간단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이익배분 불가 등 6가지 요건을 갖춘 단체	비영리단체법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법
	㉧소비자단체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조직한 단체	소비자기본법
	㉨임의단체 3인 이상의 구성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대통령령
2. 사회적경제조직	㉠생활협동조합, 생협연합회, 전국연합회 (비영리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생협법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영리법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이중협동조합연합회 (영리/비영리 법인) 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
	㉤마을기업 (영리/비영리 법인)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도시재생법

① 자활기업 (영리/비영리 법인/ 비법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	기초생활보장법
② 사회적기업 (영리/비영리 법인/ 비법인)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법

출처: 김소연 외(2023). 표<4-6> 재구성

(2) ‘일자리’ 개념에 대한 법적 논의

- ‘일자리’라는 개념은 일상적·정책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직접적으로 일자리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 조항은 없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고용”, “근로”, “취업”, “직업” 등의 개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차원의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고용증진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보장에 대한 국가의 의무로 해석된다.
 - 기본법 차원의 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조(정의)에서는 “고용”이란 근로자가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취업”은 근로자가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조항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개념의 법적 토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되어 있으며, 임금과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자리가 곧 일자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일자리 관련 정책 수립과 취업준비자의 일자리 선택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작성하는 「일자리행정통계」에서는 일자리를 ‘연중 생산활동에 종사하면서 사회보험료·소득세·부가가치세 중 한 개 이상 신고한 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말한다. 즉,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가 점유한 일자리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가족종사자, 농림어업 생산활동 경영인이 점유한 일자리는 제외된다.
- 법률상 유일하게 일자리를 정의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재정지원 일자리’로 한정한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나 인턴십 등의 무급 활동은 일자리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제2조 1항(정의)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3) 개념 정립을 위한 추가 논의

-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보편적 개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선 비영리부문이 지닌 고유한 특성, 예를 들어 공익적 사명, 비분배 제약, 자발적 참여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유성은 비영리부문의 존재 이유이자 사회적 신뢰의 근거가 된다(Salamon & Anheier, 1992; Hansmann, 1980).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자리가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통용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적절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경력 개발 가능성 등 일반적인 일자리 정의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비영리 고용성과 노동시장의 보편 기준이 조화를 이룰 때, 비영리 일자리는 특수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전반에서 인정받는 고용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일자리 개념 정립에 있어 사회적 일자리와 비영리 일자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창출되기 어려운,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고용이며, 공공·민간·사회적 경제 주체가 협력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참여와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일자리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교차점에 위치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일자리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창출하는 일자리로,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 일자리와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의 주체, 고용 대상, 자원 구조, 일자리 특성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체가 되는 경우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수익 창출이라는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단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비영리 일자리와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적 일자리와 비영리 일자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없고, 일부 중첩된 부분의 특성으로 완전히 독립된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⁴⁾

<표 2-3> 사회적 일자리와 비영리 일자리 차이

구분	사회적 일자리	비영리 일자리
주요 목적	취약계층 고용 확대 및 사회통합,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공익 실현 및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 사명 수행
주체	정부, 자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단체 등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고용 대상	취약계층(실업자, 노인, 장애인 등) 우선 채용	전문 활동가, 자원봉사자, 공익 목적 활동 종사자 등
자원 구조	정부 재정지원이 큰 비중, 사회적경제 수익도 활용	기부금, 정부·민간 보조금, 자체 수익사업, 자원봉사 등
일자리 특성	공공성과 사회적 목적 강조, 상대적으로 단기·임시 일자리 많음	장기적·전문적 활동, 사명감과 자발성 기반

4)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적 일자리 조례」를 시행한 바 있다. 조례는 경기도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발굴, 홍보 및 재정지원, 그리고 연대강화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자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 근거로 활용된다.

근로조건	법적 근로 기준 준수, 공공 일자리 특성상 다양한. 일부 자원봉사·저임금 직종 포함, 일정한 근로조건 보장	전문직은 고용 안정성 갖추
정책적 지원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 취약계층 고용 확대 정책	비영리조직 지원 정책, 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사회적 기능	고용 통한 사회통합, 지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 공급	공익 실현, 시민사회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 및 감시

- 나아가 비영리 일자리 개념을 정의하는 데 있어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야 한다. 공익활동가의 일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문제해결 역량이 필요한 전문직으로 임금과 고용의 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비영리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박준 외, 2020). 괜찮은 일자리는 국제노동기구(ILO)총회에서 1999년 주창된 개념으로, ‘일할 보람이 있는 인간다운 일’을 뜻한다. 일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평가되나, 다원적 괜찮은 일자리는 ‘보수’, ‘고용 안정성’, ‘적정 근로 시간’, ‘직업의 사회적 평판’ 등을 만족하는 일자리이다(김범식, 2014). 비영리 일자리가 온전한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 안정성, 적정 임금, 노동권 보장,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사회적 보호, 차별 금지 및 평등한 기회 보장, 노동자 참여 등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성 추구,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유연한 근무시간 등 일부 특성은 그 자체로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으나, 고용 불안정성과 낮은 임금 등은 비영리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되는 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이명산·김운호, 2018; 오연순·김소연, 2021).

<표 2-4> 비영리 일자리는 괜찮은 일자리인가?

조건	설명	부합 여부	설명
고용 안정성	지속 가능한 고용관계, 실직 위험 최소화	부분 부합	조직 규모·재정 상황에 따라 안정성 차이 큼
적정 임금	생활 가능한 공정한 보수 지급	부분 부합	일부 전문직은 적정 임금, 저임금·자원봉사자도 다수 존재
노동권 보장	노동3권 및 근로기준 준수	대체로 부합	법적 기준은 충족하나, 비정규직·자원봉사자 차별 문제 존재
안전한 작업환경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 유지가능한 환경	부분 부합	일부 열악한 환경 존재, 개선 요구 많음
사회적 보호	실업급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제공	대체로 부합	정규직은 제공, 비정규직·자원봉사자는 미흡한 경우 많음
차별 금지 및 평등	차별 없는 평등한 기회 보장	부분 부합	조직별 편차, 성별·연령 등 차별 경험 보고 사례 존재
노동자 참여	노동조건 및 경영 참여 보장	대체로 부합	조직 특성상 참여 가능하지만, 조직문화 따라 다름

(4) 근본적 논의

- 마지막으로, 일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상적·정책적으로 많이 언급하지만, 정작 “일”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거의 없다.
- 일은 인간 삶의 근본적 활동으로서 다양한 학문적 맥락에서 규정되어 왔다. 아렌트(Arendt, 1958)는 『인간의 조건』에서 인간의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하며, 노동은 생존을 위한 반복적 활동, 작업은 문명과 문화를 형성하는 창조적 활동, 행위는 사회적·정치적 실천으로 타인과 관계 맺는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일은 생산요소 중 하나로서 임금과 교환되는 활동이며, 가계에는 소득 획득 수단, 기업에는 생산 활동의 핵심 투입요소로 작동한다(Varian, 2014). 반면 사회학적 접근은 일을 단순한 경제적 활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 정체성, 사회적 관계 형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본다(Grint, 2005). 현대적 논의에서는 가사노동, 돌봄, 자원봉사와 같은 탈임금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시장노동을 넘어 삶과 공동체 전반에서 ‘일’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Folbre, 2001).
- 따라서 일은 단순히 경제적 생계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에게는 자기성장과 자아실현의 장이자 사회적 인정과 존중을 매개하는 기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명신·김운호(2018)는 일을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는 터전으로 정의하면서, 일의 의미를 생존에서 존엄과 공공성으로 확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일에 대한 철학적, 경제학적, 사회학적 논의를 아우르며, 나아가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적 기여, 공익적 가치 창출이라는 현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다. 결국 일은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에너지를 투입해 결과를 창출하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다차원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1) 비영리 일자리 구성요건

- 비영리의 세 가지 핵심 특성은 비영리 일자리 정의를 결정짓는다. ‘비영리성’은 개인이나 조직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 활동을 하더라도 조직의 주된 목적이 ‘수익’이 아닌 공익 실현과 조직의 지속적 운영에 있다. ‘공익성’은 공공의 이익 증진,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돌봄, 시민참여 확대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는 특성을 말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과도한 통제나 강제 없이 스스로 목표와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후원을 받더라도 조직의 핵심 가치와 활동 원칙을 지켜야 한다.

- 비영리 일자리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다양한 조직 형태에서 창출되며, 조직 유형과 무관하게 ‘비영리성’과 ‘공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사회적경제조직은 이윤 추구, 이윤 재분배 등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잉여 재원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비영리성’과 ‘공익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협동조합 잉여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배당이 금지되며, 청산 시 잔여재산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없고 지역사회에 귀속된다. 일반협동조합은 출자금 또는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하지만,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조합 정관에 따라 잉여금의 일정 부분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자원봉사나 인턴십과 같은 무급 활동이 아닌, 계약직·정규직·시간제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유급 고용 형태여야 하며, 단순히 사업 중심의 단기고용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성과 종사자의 생애 경력 설계를 고려한 일자리를 지향한다. 나아가 고용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
- 비영리 일자리는 시장(영리)과 국가(공공)의 제도적·기능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서비스 공급뿐 아니라 공익적 의제 설정과 주창(Advocacy) 활동, 복합적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확산에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표 2-5> 비영리 일자리 구성요건

구성요건	설명
목적	개인이나 조직의 이윤 추구가 아닌, 공공의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돌봄, 시민참여 증진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둠
특성	비영리성, 공익성, 자율성
범위 (조직형태)	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 특수법인 등), 비영리민간단체, 임의단체,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등 포함 *정부 기관(GO)이 아닌 조직(NGO)이면서 수익추구 조직(PO)이 아닌 조직(NPO) *수익 활동을 하지만,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조직 포함 *잉여금의 분배 제한과 지역사회 귀속(공익사업 사용 및 지역사회 기여)을 규정하는 사회적경제 포함
노동관계	일정한 보수를 받는 유급 고용 형태이며, 계약직·정규직·시간제 등을 포함하되, 자원봉사·인턴십 등 무급 활동은 제외
고용조건	지속가능성과 생애 경력 설계를 고려한 안정적인 일자리와 고용 측면에서 ‘괜찮은 일자리’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사회적 위치	시장(영리)과 국가(공공)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섹터로서 기능할 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 공익적 의제 설정, 주창(advocacy) 활동,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

2)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 앞선 논의를 정리하면, 비영리 일자리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 이를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체적으로 정의하면,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할 수 있는 직업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2-6> 비영리 일자리 조작적 정의

구분	정의
포괄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실체적 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 노동을 의미.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직업 활동

국제기준 비교

- ILO(국제노동기구)는 비영리 일자리를 ‘영리 목적이 아닌 기관에서 수행되는 유급 노동’으로 정의하며, 통계상 ‘Third Sector Employment’로 구분한다.
- 유엔 통계국은 국가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⁵⁾ 내에서 비영리조직을 정의하며, 이들은 공공기관이나 시장 부문에 속하지 않는 조직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규정한다. 위성계정(UN Satellite Account)에서는 비영리조직에서 발생하는 활동 중 고용과 경제 기여를 별도로 추산하여 GDP 구성 요소로 반영한다.
- Johns Hopkins Comparative Nonprofit Sector는 비영리 일자리를 ‘조직화되고, 비영리적이며, 자율적이고, 자원봉사를 포함하는 유급 활동’으로 규정한다.

- 본 연구는 비영리 일자리 개념 규명을 위해 포괄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를 병행하여 적용한다. 국제비교 연구 및 이론적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포괄적 정의가 필수적이다.

5) 국가계정체계는 국가 전체의 경제활동을 포괄적으로 측정·분석하기 위한 국제 표준 체계이다. 국민경제의 생산, 분배, 소비, 자산 변동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거시경제 분석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목적을 가진다. 반면, 위성계정은 국가계정체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특정 주제나 부문에 대해 보다 상세하고 특화된 분석을 위해 별도로 구축하는 보조 계정이다. 국가계정체계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회, 환경, 문화, 비영리부문 등 특정 분야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측정한다.

반면, 정책 설계 및 실행과 같은 실천적 차원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엄밀한 실체적 정의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해 우선 포괄적 정의를 제시한 후, 각 장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실천적 관점에서의 실체적 정의로 점진적으로 개념을 구체화하며, 그 범위와 대상,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하였다.

III.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1. 국내 시민사회 동향

- 한국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부터 양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비영리단체 수는 1980년대 약 538개에서 1990년대 1,662개, 2000년대 5,902개로 급증하였다(임현진·공석기, 2016). 이후 2012년에는 12,657개, 2018년에는 14,275개, 2022년에는 15,577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0년대에 급격한 성장을 나타냈다(지표누리 e-나라지표, 2025.7.28. 기준). 2023년에는 등록 단체 수가 1,685개 급감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그 원인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등록이 말소된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 관련 선행 연구들(조경훈 외, 2023; 김소연 외, 2024)은 2022년 10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와 윤석열 정부의 보조금 감사 등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 정책이 시민단체 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단체 수의 증가는 시민사회 참여 기회와 활동 영역의 확장을 의미하며, 다양한 사회 이슈가 다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 지난 30년간 시민사회는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크게 겪었다. 특히 참여방식이 다양화되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조직·단체 중심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SNS의 확산으로 시민사회 활동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였다. 오늘날 시민들은 실시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유연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집단행동을 조직한다. 이러한 변화는 2002년 촛불집회,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미투 운동, 그리고 인터넷 기반 행동주의 등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시민사회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가상공간에서도 실시간 토론과 조직화가 가능한 디지털 참여 구조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다. 활동 의제 역시 민주화와 정치개혁 중심의 단일 이슈에서 벗어나 환경, 젠더,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 참여방식의 다양화는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 활동 주체의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화 이후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정치·사회적 환경과 디지털 혁명은 개인의 자기 표출과 다원화를 촉진하였다. 이로 인해 ‘촛불시민’으로 상징되는 ‘스스로를 조직하는 시민’(또는 성찰적 시민)이 시민사회에서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새로운 시민 주체는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집합적 대의나 명분보다 개인적 의미와 동기를 중시한다. 이들은 자기 삶의 세계에서 사회적 실천을 행하며, 관심과 지향이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이슈에 집중된다. 활동 방식도 집단이라는 경계를 지양하고, 유연하게 만났다 헤어지는 흐름을 지닌다. 조직보다 프로젝트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으며(박영선 외, 2019), 1인 독립활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한다.
- 참여 주체의 세대적 전환도 최근 시민사회의 주요 변화 중 하나이다. 사단법인 시민이 2023년 실시한

‘한국 청년층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황 조사’(조철민 외, 2023)에 따르면, 청년층은 기존 세대와는 다른 동기와 방식으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조직·단체 중심 구조보다 소규모 프로젝트나 캠페인 형태를 선호하며, 환경 문제, 젠더 평등, 노동권, 사회 정의 등 가치 지향적 의제에 높은 관심을 보인다. 공익활동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으로는 응답자의 40.7%가 ‘사업비 보조 또는 사회적 일자리 등 재정지원 확대’를 1순위로 꼽았으며,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이는 세대와 시대를 초월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적 문제 해결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 생활 밀착형 풀뿌리 운동과 지역 기반 조직의 증가는 시민사회의 또 다른 변화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90년대까지는 국가권력 감시 중심의 주창 활동 NGO와 도시 빈민 지역의 주민운동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지역 차원의 주민참여 활동이 확산되었고, 시민들이 육아, 환경,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 문제를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자조적으로 해결하는 지역 기반 시민사회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시민사회의 토대가 더욱 넓어졌다.
- 최근 시민사회는 공공 의제 형성과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기후위기, 고령화, 인구감소 등 복잡한 사회문제가 증가하면서 정부와 시장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졌고, 시민사회의 문제해결력이 주목받고 있다. 학술적으로도 정부·시장 실패 이론, 거버넌스 이론, 혁신 이론 등은 시민사회를 국가 운영의 동반자이자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주체로 재평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계기로 시민사회의 역할론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UN,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시민사회 기반 구축과 협력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김소연 외, 2024).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관련 법·제도·정책의 혁신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이호 외, 2022).
- 시민사회는 분화하며 전체적으로 성장했지만, 현실적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2019년 서울시 NPO지원센터와 사회적협동조합동행이 전국 공익활동가 2,660명을 대상으로 건강, 소득, 주거, 복리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40대 경력 10년 차 공익활동가의 월평균 소득은 231.9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57.2만 원)보다 약 25.3만 원 낮았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건강 수준도 일반 노동자보다 낮았고, 주거비 부담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은 20.6으로 주거 빈곤층 기준인 30보다는 낮지만,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및 수도권 평균보다 높아 주거비 부담이 큰 수준이었다. 복리후생 측면에서는 휴가나 병가 등 시간적 복지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학비보조, 주택마련 지원 용자 등 금전적 복지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익활동가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는 ‘기본소득 도입’과 ‘정부보조금사업의 인건비 개선’이 약 65%로 나타나, 활동가 개인의 생활 안정과 단체의 재정 안정이 공익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 시민사회의 확장과 성장은 동시에 영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했다. 거버넌스 영역과 사회적경제 부문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시민사회 영역인 에드보커시(시민권리 옹호) 분야의 조직들은 재정적 취약성, 활동가 부족, 의제 위축 등의 문제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어렵게 만드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시민권리 옹호 분야 역시 정부의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으며, 고용 기여도 또한 서비스 분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njolras et al.(2018)의 유럽 29 개국 비영리부문 고용 기여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고용의 7.8%가 비영리부문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이 중 서비스 분야(교육, 사회서비스, 보건, 주거, 지역사회 개발 등)가 55%, 시민권리 옹호 분야(문화, 여가, 회원조직, 환경, 종교 등)도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시민권리 옹호 분야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의 경우 비영리(제3섹터) 일자리 정책은 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NGO, 공익법인, 자원봉사단체 등 전통적인 비영리단체들은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이들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정리하면, 한국 시민사회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급속히 성장하며 참여방식과 활동 주체가 다양화되었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참여와 지역 기반의 생활 밀착형 운동이 확산되었다. 청년층과 1인 활동가 등 새로운 시민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의제도 환경, 젠더, 노동권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익활동가의 낮은 소득과 복지, 시민권리 옹호 분야의 재정 취약성, 사회적경제 중심의 편중된 정책은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혁신이 절실하다.

2.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현황

1)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추진 배경 및 흐름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시민사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시민사회조직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을 비롯한 공익활동과 사회적 가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박영선, 2025).
- 1990년대 절차적 민주화를 이루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를 억압하던 제도와 정책이 대부분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 국가들처럼 시민사회를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하고, 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수준까지 관련 제도와 정책이 발전하지는 못했다.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더욱 확대된 역할 요구와 열악한 재정·인력 여건이라는 딜레마 속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전환 필요성에 의해 출발하였다. 다시 말해, 전 세계적인 정치·경제적 불안정과 민주주의 위기로 시민사회의 근본 토대가 약화 되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 조직들은 더 높은 공적 책임을 요구받으며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시민사회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김소연 외, 2024), 이는 시민사회와 국가 간 관계 설정 및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가 시민사회 의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정 기조에 ‘자율적 시민사회로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시민사회’라는 가치를 처음으로 담았으며(권오성 외, 2012), ‘민간운동의 체계적 추진과 지원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시민사회 정책을 개별 사업 지원 차원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체제로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해당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 공익사업, 조세 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공익법인법에 비해 지원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시민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점(제1조 및 제3조)은 공익법인법보다 진취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법안 자체의 위상과 지원 범위의 한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박영선, 2015; 김소연 외, 2019). 이어 노무현 정부는 ‘시민참여 민주주의’를 국정 기조로 내세우며, 2003년 대통령 직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시민사회와 협치 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협치 기반 확대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하였다(박영선, 2023).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시민사회에 대해 무시와 억압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박근혜 정부 역시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회적경제 정책은 확대되었으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박상필, 2015).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더욱 강화된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은 비영리민간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동기를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취약한 전통적인 시민운동 영역이 위축되는 등 시민사회 지형에 변화가 나타났다(박영선·정병순, 2019; 박상필, 2015).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모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자율적인 지원 정책은 거의 부재하였으며,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시민사회조직들은 시민사회 활동의 양상과 지형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들이 재구조화되지 않은 채 개별법 제정과 일부 개정으로만 대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들이 활동을 촉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연대조직인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이하 시활넷)’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활넷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6대 법안⁶⁾을 21대 국회에 제안하였다.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의제들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 특히 시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포괄적 성격의 입법인 시민사회기본법이 진전을 보지 못하자, 정부는 2020년 5월 26일 대통령령 제30718호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라는 점에서 조직과 기금의 설치 등에서 한계가 있

6) 21대 국회에 제출된 6대 법안은 「시민사회활성화 기본법」 제정,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 「공익법인법」 전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공익활동가공제회법」 제정이다. 21대 국회 폐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고, 22대 국회에서는 6대 법안 중 4개의 제개정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며, 대통령이 관할하는 중앙정부 행정기관에만 구속력을 가지며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한다(김소연 외,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시민사회기본법의 입법 공백을 일정 부분 메우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방정부 정책 확산의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김소연 외, 2024; 박영선, 2024).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시민사회의 위상과 시민사회조직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설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촛불혁명을 배경으로 출범한 정부의 특성이 더해져,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시민사회 정책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으며(박영선, 2023),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류홍번, 2021).

시기별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의 특징

- 제1기(1950년대) : 통제와 동원을 위한 관제형 시민사회 육성
- 제2기(1960~80년대) : 통제 기조에서 선택적 지원 정책 도입
- 제3기(1990~2000년대 중반) : 민주화 이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 한계
- 제4기(2000년대 중·후반~2010년대) : 전반적 퇴행, 그러나 일부 개별 영역(사회적기업, 국제개발협력)의 발전, 지방정부에서 민관협력 확대
- 제5기(2020년대~)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일부 성과, 정권 교체 후 정책 후퇴

출처: 박영선(2025). *새 정부의 시민사회 법제 과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2025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발표문(2025.06.30.)

2)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은 2020년 5월 26일 제정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수립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구체적인 실행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기본계획에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과제, 민관협력 체계 및 협업 연결망 강화 방안,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 교육 및 홍보 전략, 자원 조달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시민사회 소통·협력 및 공익활동 지원 방안, 그리고 국제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시민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8월, 시민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시민사회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 등 총 19차례의 논의를 1년 4개월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21년 11월 시민사회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2022~2024)」이 확정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1). 해당 기본

계획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3대 전략목표와 7대 분야, 총 33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림 3-1]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22~'24) 비전 체계도

-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훈령)으로 제정되어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이 훈령을 통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광역시·도에서도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정책적 성과로 평가된다. 비록 강제성은 없지만, 시민사회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정받았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공식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박영선, 2024). 또한, 기존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자문기구 수준의 위상을 지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은 현행 법률에 근거한 시행령이 아닌 훈령 성격의 행정 명령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강제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조례를 마련하고 전국 순회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흐름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전체 30개 기초자치단체 중 17개 지역에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광역자치단체 11곳(전체의 64.7%)과

기초자치단체 30곳(전체의 13.3%)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례 제·개정의 흐름은 둔화하였으며, 2024년에는 충청남도에서 조례가 폐지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후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조례 제정이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경기도로, 광역 1개와 기초 14개 지역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3-1> 전국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제정 지역 수	전체 대비 비율
광역자치단체	11개	64.7%
기초자치단체	30개	13.3%
경기도(광역+기초)	15개	-

-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로 세 가지가 제시되었다.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둘째,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셋째, 시민사회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개선 과제 발굴이다. 이 중 시민사회기본법은 국회에서의 입법 난항으로 대통령령 형태로 제정되어 일정 수준의 정책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권 교체 후 행정 명령으로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법률이 아닌 훈령의 형태로 제정된 규정이 정권에 따라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준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입법 과제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 「기부금품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시민사회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되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입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표 3-2> 문재인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적 기반 관련 추진과제 주요 집행 현황

추진과제	집행 현황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추진	- 취임 직후 ‘시민사회발전TF’ 및 ‘TF실무작업반’구성, 시민사회를 비롯한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견수렴 통해 법안 마련(2017.06)했으나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 - 입법 전략 변경,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시민사회의회제TF’ 구성,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안(2019), 대통령령 제정(2020.05.) - 규정의 일부 개정(2021.05.04.) : 명칭변경(‘발전’→‘활성화’):시민사회는 정부가 발전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성화해야한다는 점 강조⁷⁾/ 시민사회위원회 위상 강화 및 역할 확대(자문기구→심의기구, 위원 수 확대 등)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추진	법무부, ‘공익법인 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TF’ 운영(2018.~2019.)하여 개정안⁸⁾ 마련 후 입법예고(2020.10.), 21대에서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
시민사회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 국무총리 소속 ‘시민사회위원회’ 산하 제도개선분과 설치·운영. 주요 법제도 제·개정안 마련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규정 개선,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수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비영리법인 온라인총회 의사록 인증제도 개선 성과

출처: 박영선(2023).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 시민사회위원회 제도개선분과위원회 회의 내용 종합·재구성. p.64 재인용

-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입법에 대해 제·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최종적으로 입법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집행지침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공익활동을 위촉시키는 기존 제도와 관행을 일정 부분 개선하였으며, 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박영선, 2023; 김소연 외, 2024).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입법을 통한 구조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행정적 조치를 통해 시민사회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주요 개선 성과는 다음과 같다.

7)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으로,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시민사회위원회로 변경하였다.

8)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민공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이었으며,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는 정부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시민공익위원회의 독립적 위상과 역할을 주장하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외로도 공익법인 활성화 지원 방안(기부금 관련 특례조항 확대 및 강화, 공의의무 간소화, 정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둘러싼 이견도 심각했다(박영선, 2023, p.63.).

<표 3-3> 문재인 정부의 시민공익활동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 성과

관련 제도	개선 성과
기부금제도 ⁹⁾	• 관계부처합동으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 마련(2018.10.) • '기부자의 알 권리 실천협약' 체결(2018.12.) •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2020.07.31.) • 기부통합 관리시스템인 1365기부포털 개통(2021.02.)
협치형 민간위탁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 중간지원조직형 수탁기관을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정의 • 비영리기관의 위탁수수료 책정 허용 • 위탁비용 산정 시 지방계약 법령 기준의 탄력적 적용 • 평가지표 개선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21.01.)	•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단, 시행령에서 보조금의 인건비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적용에 차이 발생)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상시 허용(2020.1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시적 허용에서 상시 허용으로 전환 • 정관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온라인 총회를 가능하도록 하되 의결권자의 신원확인을 필수 조건으로 규정

출처: 김소연 외(2024). p.16 내용 재구성

- 특히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 및 모집자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민의 기부 행태와 환경 변화에 비해 과도한 규제 조항이 여전히 존재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박영선, 2023).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월 「기부금품법」을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기부금품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규제 중심의 접근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나은미래는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¹⁰⁾
- 정리하면, 문재인 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2021년 제1차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민관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실행 과제를 제시하였다. 시민사회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지원함으로써 전국적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었으며, 시행령 개정과 행정지침 개선을 통해 기부금품법, 민간위탁 운영, 지방보조금 관리,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등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였다. 비록 주요 입법 과제는 국회 통과에 실패하였으나,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의 제도화를 촉진한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9) 국무조정실(2021), p.52.

10)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더나은미래, 2024.12.16.)

3)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시민사회에 대한 적대적이고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으며, 2022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 규정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규정 폐지로 인해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추진 동력을 잃어 사실상 무효가 되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퇴행적 기조는 2022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지자체의 정치적·정책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소연 외 (2024)에 따르면, 2020년 대통령령 제정과 ‘표준조례안’ 권고를 계기로 지자체의 관련 조례 제·개정이 급증했으나, 2022년 규정 폐지 이후에는 그 수가 급감하였다. 특히 기초 시·군·구 단위에서 이러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으로 교체된 지역에서는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후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는 관련 조례 폐지, 중간지원조직의 폐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중단, 예산 축소 등의 조치가 이어지며 시민사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크게 약화되었다.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폐지 과정은 시민사회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체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 위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긴급하게 처리되었으며, 이후 시민사회위원회의 운영 역시 중단되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2022년 9월 14일에는 시민사회활성화전국 네트워크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시민사회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출범하여 시민사회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위원회에 소속된 정부위원이 배치되고 심의 안전이 증가하는 등 위상과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등 보수 정권에서도 유지되어 온 이 민관협력 기구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직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시민사회는 대통령령 폐지 입법예고의 철회와 원점에서 재검토를 요구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시민사회와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조적으로 퇴보한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시민단체의 부정이익 환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감사원과 국정기획수석실이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감사하였고, 2023년 6월 감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국민의힘이 다수 집권한 지방정부로 확산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폐지, 중간지원조직 축소 등의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과거 보수 정권의 시민사회 견제 정책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지만, 이전 정부들이 강조했던 민관협력, 국민 참여, 국민 소통 등의 표현조차 찾아보기 어렵고, 사회적기업이나 자원봉사 관련 정책도 거의 부재한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사회의 존재 자체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부정하는 것

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배제와 통제의 기조로 회귀한 강경한 정책으로 평가된다(김소연, 2024).

4) 이재명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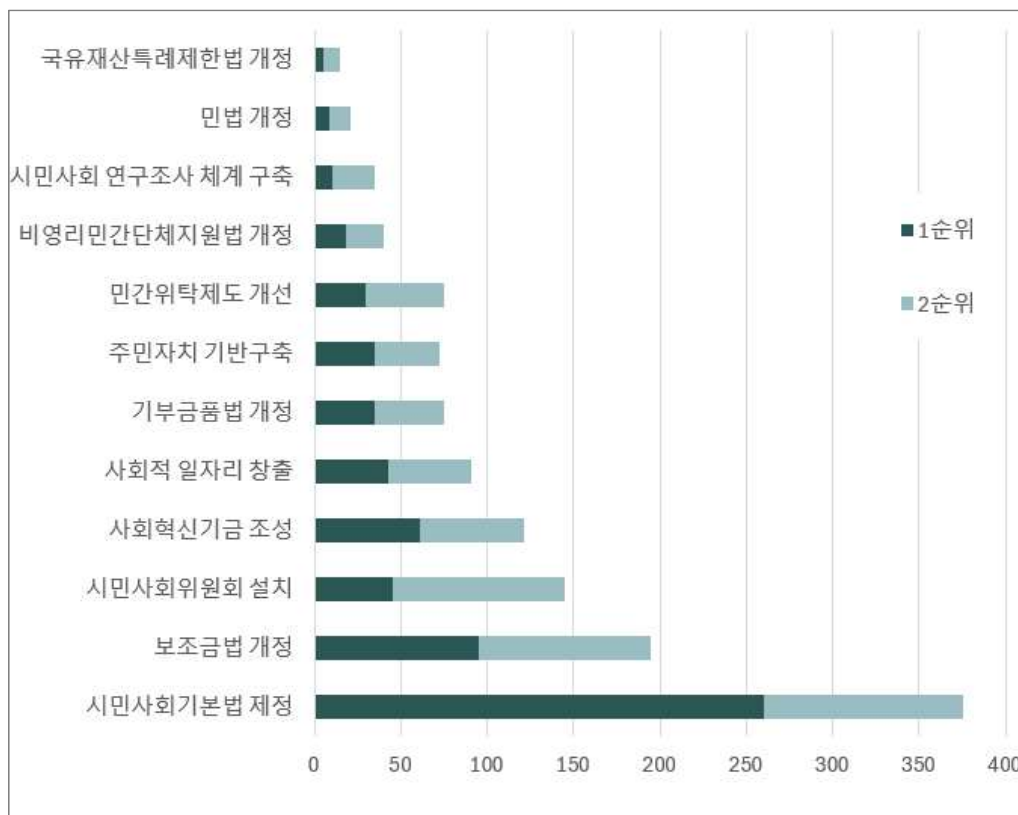
-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빛의혁명 시민본부’를 출범(2025.05.14.)하고, 시민사회·노동계와의 유기적 연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협약은 △국민공회 운영, △시민사회기본법 제정과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되살리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다. ‘빛의혁명 시민본부’는 본부 산하에 △시민사회혁신본부, △시민노동본부, △시민연대본부, △시민플랫폼본부, △광장교육본부 등 5개 본부를 설치하고, 총 13개 위원회를 구성해 전국 단위의 시민 조직화를 추진한바 있다.¹¹⁾
- 국민주권정부 출범(2025.06.04.)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가 구성되고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국정과제에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 내용을 반영토록 요구해 왔다. 사단법인 시민에서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에 대해 전국 활동가 6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새 정부 정책과제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을 압도적 1위로 꼽았다. 이어서 보조금법 개정,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사회혁신기금조성, 민간위탁제도 개선,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이 높게 나타났다. 활동가들은 시민사회기본법이 제정되어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고, 보조금법이 개정되어 인건비 지원이 가능해야 시민사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인식했다. 빛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로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시민사회의 요구와 더불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공약과 협약 등의 내용이 종합 검토되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것으로 본다(류홍번, 2025).
- 2025년 8월 초 국정기획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시민사회위원회를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정부와 시민사회 간 사회적 대화 기구 기능뿐 아니라 국민의 국정 참여 통로 역할까지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독립기구 수준은 아니지만 위원회 기능을 확대하여 정부와 시민사회 간 대화 채널 등의 기능뿐 아니라 △주요 사회적 현안 공론화, △시민교육을 포함한 시민사회 활성화 등의 역할도 담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민주권 정부답게 시민사회를 넘어 시민 전반이 국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시민사회위원회가 자문위원회에 불과했던 한계를 고려해 예산과 집행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했다.¹²⁾
-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한 123개 국정과제 어디에서도 시민사회와의 정책협약에 대한 약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민사회기본법 제정이나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 측은 “세부 실천과제 564개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하지만, 해당 과제들은 비공

11) 빛의 혁명 시민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 체결(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5.05.16.)

12) 尹 정부가 없었던 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 다시 만든다(한국일보, 2025.08.03.)

개 상태라 실제 반영 여부나 구체적 수준을 확인할 길이 없다. 현장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은 정책협약이 반영되지 않은 점뿐 아니라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 자체가 부재한 현실을 더욱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론의 장에 참여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김소연, 2025).

-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17일 「시민사회 협약(Civil Society Covenant 2025)」¹³⁾을 발표하며 “타인과 공동체에 시간과 헌신을 바친 시민사회를 존중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시민사회를 단순한 관리나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동반자로 대우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다. 새로운 협약은 정부와 시민사회 간 신뢰 회복을 제도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현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 문재인 정부 시기는 시민사회에 우호적인 입법 환경이었고 시민사회가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기본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주요 법안 입법화에 실패했다.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최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민사회 내부의 입법 전략 마련, 다양한 주체와의 사회적 대화와 토론 등 시민사회 활성화 입법을 위한 정책적 관심 및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3-2] 새 정부 정책과제 우선순위

13) UK Government. (n.d.). *Civil Society Covenant*. GOV.UK.

<표 3-4> 21대 대선 시민사회 공동 정책 제안

정책과제 분야	세부 과제
시민사회 영역 총괄 제도 마련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전담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시민사회위원회 설치
시민사회 규제 혁신 : 6대 규제법 개선	① 기부금품법 전면 개정 ② 보조금법(보조금·지방보조금법) 개정 ③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④ 민법 ‘비영리법인 설립제도’ 개정 ⑤ 민간위탁제도 개선 ⑥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 4대 정책과제	① 주민자치 참여제도 기반 구축 ② 사회혁신기금 및 시민자산 조성 ③ 문제해결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④ 시민사회 연구조사 및 데이터 구축

출처: (사)시민(2025.05.27.). *활성화전국네트워크,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과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시민 사회 활성화 정책제안(4대 과제 12개 세부과제).*

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1)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에 앞서 2019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이후 2021년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 제정에 대응하여 같은 해 7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정책 흐름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2024년 12월 기준 14개 지역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경기도는 2021년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며 시민사회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총 7가지로 요약된다(이호 외, 2021:39). 첫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고, 둘째, 조례의 목적을 확대하여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시민, 시민사회, 공익활동 등 6개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보강하였다. 넷째, 도지사의 책무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하였다. 다섯째,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방향, 자원 조달, 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하였다. 여섯째, 기존 ‘공익활동촉진위원회’를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과 운영 방식을 확대·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경기 남부와 북부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

- 경기도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개정 조례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마다’로 명시하고,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가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기존 1기 기본계획이 공익활동지원센터 중심으로 추진되던 한계를 개선하였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경기도의 행정 체계상 기본계획의 주무부서는 소통협치국이며, 해당 계획은 소통협치국에 국한되지 않고 타 부서, 산하 공공기관, 시·군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범도적 사업으로 인식된다. 아울러 개정 조례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기존 7개에서 13개로 확대하였으며, 특히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제6조 제9항).

〈표 3-5〉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후 기본계획 포함 사항 비교

기존 조례	개정 조례
•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 그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설립·운영 지원 방안 • 공익활동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 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공익활동 관련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 그밖에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새롭게 추가된 항목> •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정책의 추진방향 및 추진 목표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자원 규모 및 조달 방안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시민사회 소통 협력 및 공익활동 자원체계 구축 방안 • 시민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 경기도 내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기준 전체 31개 시·군 중 14곳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21개 시·군 중 11곳,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 3곳에서 조례가 마련되었으며, 구리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2020~2021년 사이에 조례를 제정하여 중앙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에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군의 조례 제정 확산은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가 시·군 공익활동 촉진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조례 제정을 위한 지역 토론회 및 간담회 등 공론화의 영향도 컸다. 2021년 조례가 제정된 총 6개 지역 중 3곳이 지역 중 촉진장려사업을 통해 조례를 마련하였다.¹⁴⁾

- 시·군별 조례 내용을 분석하면, 위원회 설치는 모든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나 기본계획 관련 조항은 안성 시에서, 중간지원조직 관련 조항은 부천시에서 각각 누락되어 있다. ‘비영리 일자리’ 관련 항목을 명시한 곳은 용인시가 유일하며¹⁵⁾, 평택시는 관련 과제로 ‘공익활동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인정 방안’을 포함¹⁶⁾하고 있다. 광명시는 공익활동의 정의를 사회적 지지와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 개념으로 확장하고, 시장의 책무로 시민사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와 관행의 제거 및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명시¹⁷⁾하였다. 이러한 조례들은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각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와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경기도 시·군별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4)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 중

15) 제2조(정의) 6호. 비영리 일자리 정의/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8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제공에 관한 사항

16) 제6조(공익활동 활성화 지원) 1항 2호. 공익활동에 대한 인식제고와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17) 제2조(정의). 4호. “공익활동증진”이란 사회 전반에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지지가 폭넓게 확보된 상태를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와 지원) 2항_시장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촉시키는 제도와 관행을 제거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 3-6> 경기도 시·군의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조례 내용

		제정일	규정 내용			
			기본계획	위원회	자원조직	비영리 일자리
경기 남부 (11곳)	용인시	2022.04.13.	○	○	○	○
	의왕시	2021.09.28.	○	○	○	×
	성남시	2021.09.13.	○	● '22년 구성	'22년 설치 '24년 폐지	×
	김포시	2021.07.02.	○	○	○	×
	광명시	2021.12.23.	○	● '22년 구성	● '23년 설치	△ 사회적지지
	안성시	2020.12.24.	×	●	● '22년 설치	×
	광주시	2021.01.04.	○	● '21년 구성	○	×
	군포시	2020.03.16.	○	● '20년 구성	● '21년 설치 현재 폐지논란	×
	평택시	2020.12.18.	○ 24년 기본계획 연구 진행	● '22년 구성	● '22년 설치	△ 사회적안전체계
	부천시	2020.10.12.	○	○	×	×
	안양시	2022.10.22.	○	● '23년 구성	● '25년 설치	×
경기 북부 (3곳)	포천시	2021.05.06.	○	○	○	×
	구리시	2017.12.27.	○	● '21년 구성	● '21년 설치	×
	남양주시	2024.04.04.	○	○	○	×

* 2024년 위원회 개최 실적 포착된 곳 : 평택시('24.07.), 광명시('24.05.), 안양시('24.08.). 경기도('24.07.)

* '○'는 조례 규정만 있는 경우, '●'는 이행된 경우, '△'는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표시

출처: 이호 외(2022). p.137-138 표를 참조하여 추가·재구성함

(2)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2,404개로 집계되었다. 이 중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는 2,304개(2025년 6월 30일 기준)이며, 중앙부처에 등록된 단체는 100개(2025년 5월 31일 기준)이다. 경기도 등록 단체 수는 '경기데이터드림'의 2025년 1월 7일자 시·군 등록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중앙부처 등록 단체 수는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의 2025년 3월 31일자 자료를 참고하였다. 전국적으로는 총 13,964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중앙부처 등록은 1,48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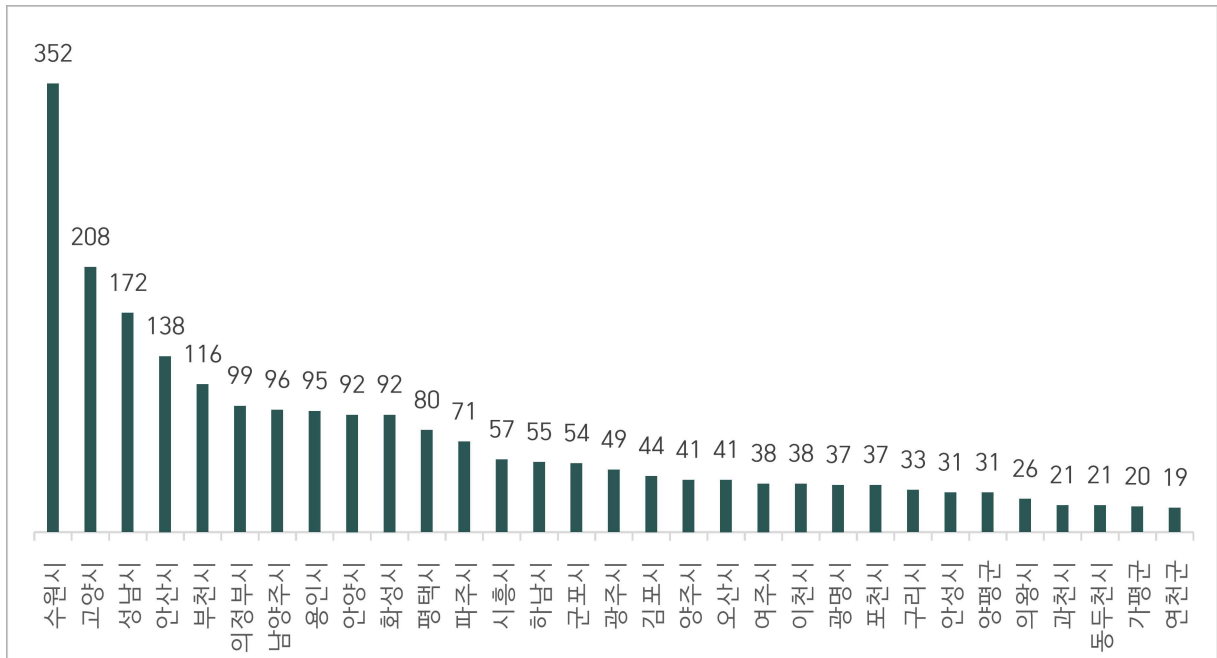
지자체 등록은 12,482개이다. 경기도는 전국 등록 단체 수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시민사회 활동을 보이는 지역 중 하나임을 보여준다. 참고로 경기도의 총인구는 2024년 기준 약 1,416만 2천 명이다.

- 한편,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기 이전인 2021년에는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 수가 2,466개였으나,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2,403개로 감소하여 총 63개의 단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정책적 환경 변화로 인한 제도 변화나 등록 기준의 조정, 혹은 활동 중단 단체의 정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 수(2,304개)로 한정하여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단체가 위치한 지역은 수원시로, 전체의 15.3%에 해당하는 352개의 단체가 활동 중이다. 그 뒤를 이어 고양시(208개, 9.0%), 성남시(172개, 7.5%), 안산시(138개, 6.0%), 부천시(116개, 5.0%)가 상위권에 속하며, 이들 지역은 인구가 많고 도시화가 높은 지역으로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중간 규모의 단체 수를 보이는 지역으로는 의정부시(99개, 4.3%), 남양주시(96개, 4.2%), 용인시(95개, 4.1%), 안양시와 화성시(각 92개, 4.0%)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수도권 확장 지역으로서 단체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평택시(80개, 3.5%), 파주시(71개, 3.1%), 시흥시(57개, 2.5%), 하남시(55개, 2.4%) 등도 일정 수준의 단체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단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는 구리시(33개, 1.4%), 안성시와 양평군(각 31개, 1.3%), 의왕시(26개, 1.1%), 과천시와 동두천시(각 21개, 0.9%), 가평군(20개, 0.9%), 연천군(19개, 0.8%) 등이 있으며, 이들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거나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단체 활동이 제한적인 편이다.
- 전체적으로 볼 때, 경기도 내 단체 분포는 도시 규모, 인구 수,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인프라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대도시일수록 단체 수가 많고 활동도 활발한 경향을 보인다.

<표 3-7> 경기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5.06.30.기준)

지역	단체수	비율	지역	단체수	비율	지역	단체수	비율
수원시	352	15.3%	파주시	71	3.1%	포천시	37	1.6%
고양시	208	9.0%	시흥시	57	2.5%	구리시	33	1.4%
성남시	172	7.5%	하남시	55	2.4%	안성시	31	1.3%
안산시	138	6.0%	군포시	54	2.3%	양평군	31	1.3%
부천시	116	5.0%	광주시	49	2.1%	의왕시	26	1.1%
의정부시	99	4.3%	김포시	44	1.9%	과천시	21	0.9%
남양주시	96	4.2%	양주시	41	1.8%	동두천시	21	0.9%
용인시	95	4.1%	오산시	41	1.8%	가평군	20	0.9%
안양시	92	4.0%	여주시	38	1.6%	연천군	19	0.8%
화성시	92	4.0%	이천시	38	1.6%	합계	2,304	100%
평택시	80	3.5%	광명시	37	1.6%			

출처: 경기도. 경기도비영리민간단체 현황(2025.06.30.기준). 경기도 등록단체에 한함. 전자정보 누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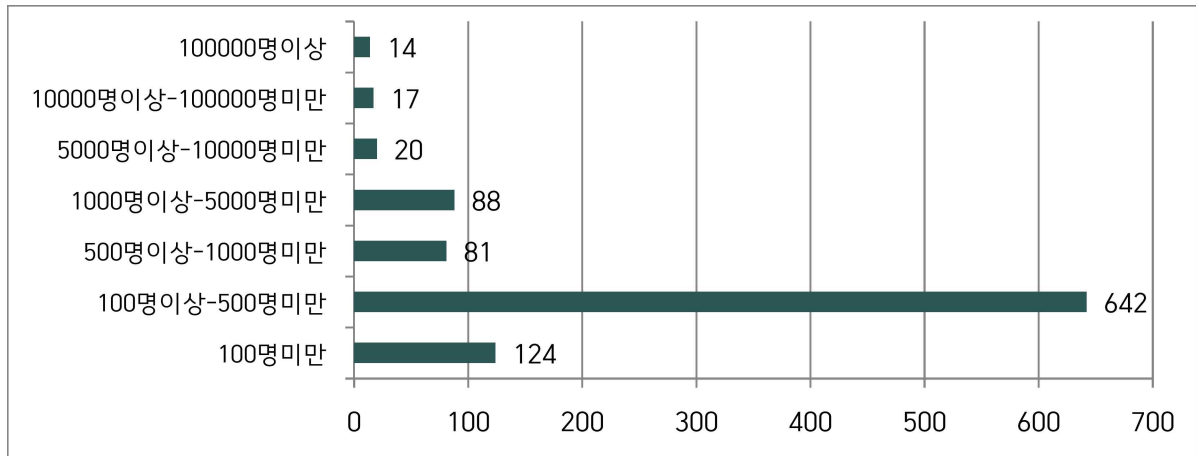


[그림 3-3] 경기도 시·군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25.06.30.)

(3)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실태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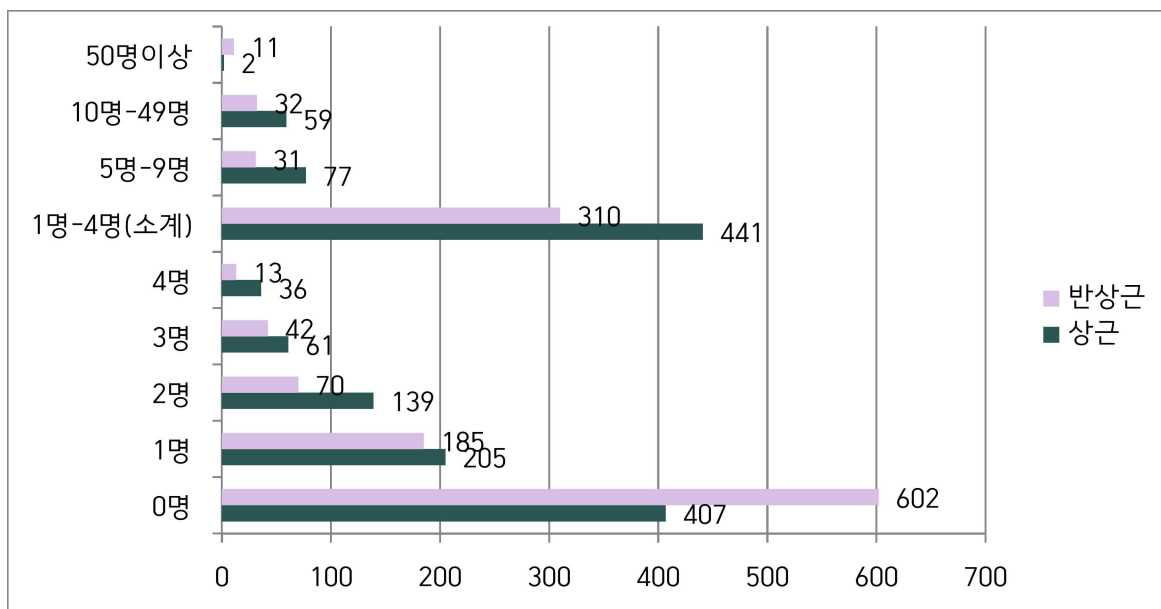
-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하여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이 조사는 경기도에 등록된 2,466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락 불가, 운영 중단, 타 시도로 이전 등으로 최종 986개 단체가 조사에 응하였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체별 회원 수는 196만 명에서 0명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였다. 특히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단체들은 대부분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전국 단위 조직의 중앙·지역본부이거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띠는 단체들로 확인되었다. 반면, 전체 단체 중 약 65.1%에 해당하는 642개 단체는 회원 수가 100명에서 500명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 중소 규모의 단체들이 경기도 시민사회에서 주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8) 경기도 비영리단체 실태는 2021년 경기도비영리단체. 사단법인시민이 수행한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내용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부분만 발췌·요약하였다.



[그림 3-4] 단체 회원수 분포 현황(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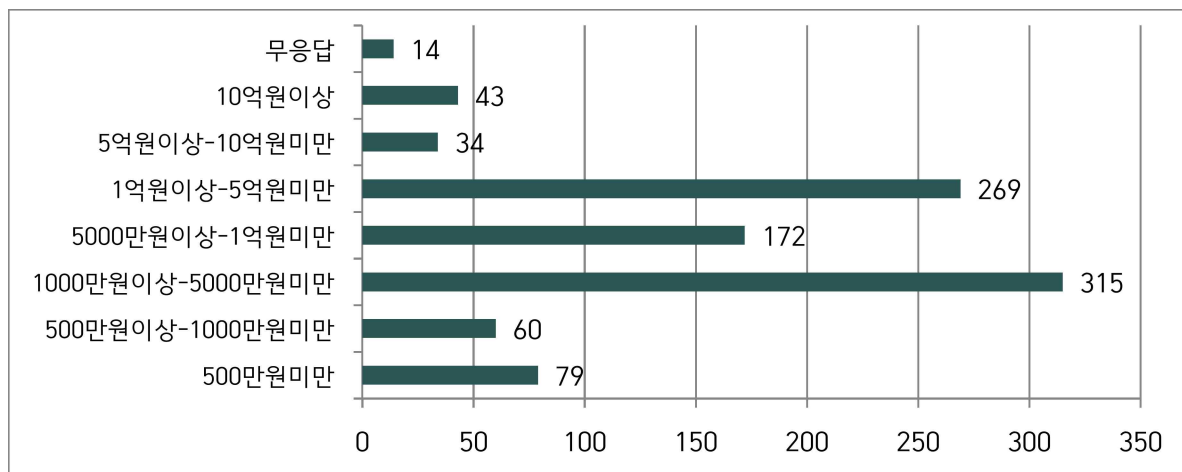
- 조사에 응답한 986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총 6,03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근자는 2,680명, 반상근자는 3,350명으로, 반상근자의 수가 상근자보다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단체는 상근자와 반상근자가 없거나 5명 미만인 경우가 많았다. 상근자가 없는 단체는 전체의 41.3%에 해당하는 407개였으며, 반상근자가 없는 단체는 61.1%에 해당하는 602개였다. 또한 상근자와 반상근자가 각각 5명 미만인 단체는 전체의 86.0%(848개), 92.5%(912개)를 차지해,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상당수가 매우 제한적인 인력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5] 단체 상근·반상근자 분포 현황(단위: 개)

-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며, 비영리 일자리 확대와 활동가 지원 정책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개연성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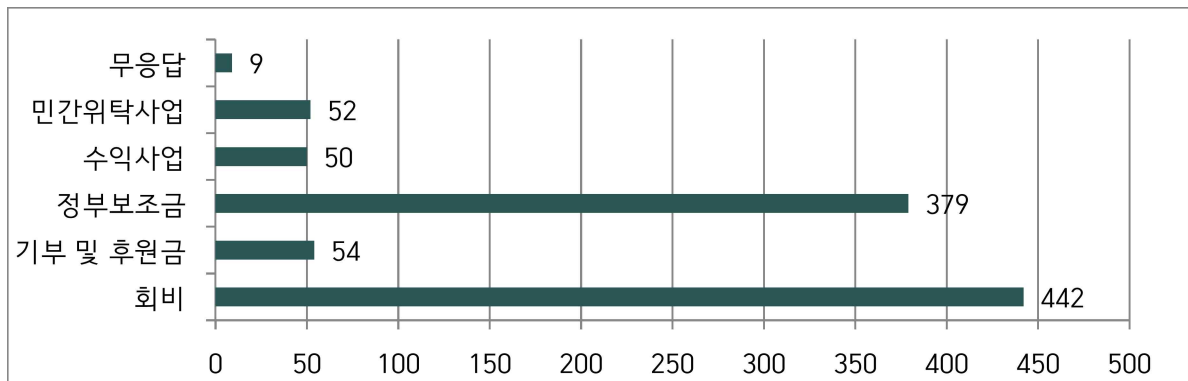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 분야는 자원봉사, 복지, 교육·연구, 청년·아동, 환경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들 분야가 경기지역 시민사회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따르면 자원봉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가 436개로 전체의 44.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복지(386개, 39.1%), 교육·연구(365개, 37.0%), 청년·아동(362개, 36.7%), 환경(349개, 35.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아동 분야에는 청소년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설립연도에 따른 활동 분야의 변화를 살펴보면, 1980년 이전부터 1990년대까지는 자원봉사 분야가 가장 활발했으나, 2000년대에는 복지 > 자원봉사 > 교육·연구 순으로, 2010년대에는 교육·연구 > 자원봉사 > 청년·아동 순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체의 주된 활동 분야는 지역의 인구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에서는 교육·연구 > 자원봉사 > 청년·아동 순으로 활동 단체가 많았으며, 반면 인구 30만 명 미만의 중소도시에서는 자원봉사 > 환경 > 복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비영리단체의 활동 영역이 유동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수립 시 지역별 특성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연간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단체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예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간에 속한 단체는 전체의 31.9%에 해당하는 315개였으며, 그다음으로는 1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예산을 가진 단체가 269개(27.3%),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의 단체가 172개(17.4%)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대체로 소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재정적 기반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림 3-6] 단체 연간예산 총액 현황(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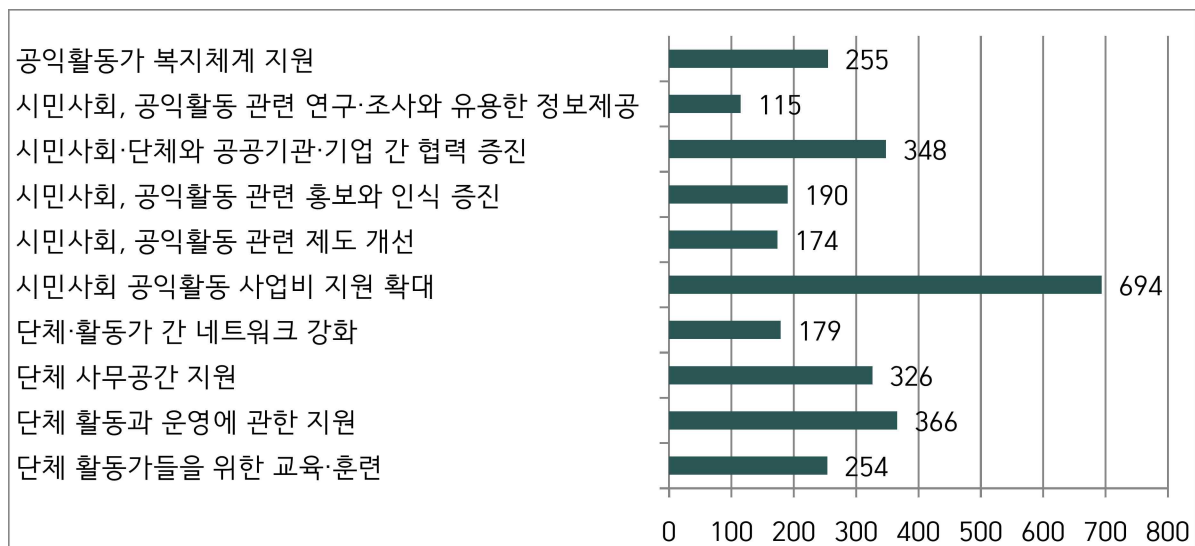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의 예산 수입원은 회비와 정부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체 중 422개(44.8%)가 회비를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으며, 379개 단체(38.4%)는 정부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수입 원천이 전혀 없는 단체가 7개 있었고, 운영이 중단된 단체도 1개 존재했다. 전반적으로 회비와 정부보조금은 전통적인 수입 구조로 자리잡고 있

지만, 단체의 활동 영역에 따라 수입원 구성에는 차이가 있었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단체들은 정부보조금뿐 아니라 후원회원들의 기부금도 활발하게 확보한 반면, 정치경제, 권력감시, 노동, 평화통일 등의 분야에서는 시민 후원이나 정부보조금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아 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특히 정부보조금의 비중이 높은 활동 영역으로는 장애인, 농업, 도시재생, 여성, 문화체육 분야가 꼽혔다. 이러한 수입 구조는 단체의 활동 성격과 사회적 인식,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정 분야의 단체들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그림 3-7] 단체 예산수입의 주된 원천(단위: 개)

-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운영과 활동에 있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지원 항목은 ‘시민사회 공익활동 사업비 지원 확대’로, 전체의 70.4%에 해당하는 694개 단체가 이를 선택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그 뒤를 이어 ‘단체 활동과 운영에 관한 지원’이 336개 단체(37.1%), ‘단체 사무공간 지원’이 326개 단체(33.1%)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기타 항목으로 재정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세부적으로, 활동가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지원책 마련, 상근자 인건비 지원, 문화예술활동비, 대학원 학자금 등 활동가 복지체계 구축 등에 대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기반과 운영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림 3-8] 단체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단위: 개)

- 정리하면,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기도 시민사회 조직의 운영 현황과 구조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2,466개 단체 중 실제 운영 중인 986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는 대부분 중소 규모로 구성되어 있었다. 회원 수는 단체별로 0명에서 196만 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했지만, 전체의 약 65%에 해당하는 단체들이 100명에서 500명 사이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경기도 시민사회는 중소 규모 단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인력 역시 총 6,030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상근자보다 반상근자의 수가 더 많았고, 상근자나 반상근자가 없는 단체도 각각 41.3%, 61.1%에 달했다. 특히 상근자와 반상근자가 모두 5명 미만인 단체가 전체의 86% 이상을 차지해, 대부분의 단체가 매우 제한적인 인력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활동 분야는 자원봉사, 복지, 교육·연구, 청년·아동, 환경 등으로 다양했으며, 시대적 흐름과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활동 영역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산 규모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수입원은 회비와 정부보조금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활동 분야에 따라 수입 구조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분야는 회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부보조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 이러한 실태는 경기도 시민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재정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단체 운영의 핵심인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생계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의 조직 역량 강화뿐 아니라 활동가 개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현황

1) 비영리 일자리 정책적 논의 배경

(1) 비영리 일자리 개념의 등장과 정책적 관심

- 공익활동가의 처우 문제는 시민사회의 오랜 관심사이지만 ‘비영리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비영리 일자리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부상하게 된 배경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비영리 영역의 고용 기여도가 확인되면서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둘째, ‘의미 있는 일자리’로서 비영리 영역이 지닌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으며, 셋째, 비영리민간단체들이 겪는 재정적·인적 어려움과 그로 인한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치적·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기여-특히 비영리 영역의

높은 고용 창출력과 경제위기 완충 효과-를 근거로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관심과 기대가 증가하고 있다. 일찍이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1995)에서 정보기술, 자동화, 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일자리의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에 따라 제3섹터(비영리,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중심의 경제)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기업,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자리와 동일한 수준에서 통계화하고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연구에서 비영리 영역이 영리 부문보다 더 높은 고용 기여도를 보인다는 결과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유럽 12개국의 전체 연간 고용률이 0.6%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비영리기관의 고용은 연평균 3.4% 증가하여 전체 평균의 6배에 달했다(Salamon & Sokolowski, 2018; 이호 외, 2022에서 재인용). 미국 역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비영리 영역의 고용 증가율이 영리 부문보다 약 3배 높았으며, 특히 금융위기 직후인 2007~2012년 동안 영리 부문 고용이 4.1% 감소한 반면, 비영리부문은 8.5% 증가했다(Salamon & Newhouse, 2020; 오현순·김소연, 2021).
- 국내연구에서도 비영리 및 제3섹터의 고용 기여도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혜원 외(2008)는 2001~2006년 사이에 증가한 150만 개의 일자리 중 20%가 제3섹터에서 창출되었다고 분석했으며, 노대명 외(2010)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 직후에 제3섹터 일자리가 영리 부문보다 더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통계는 병원, 학교, 종교법인 등 특수 비영리법인까지 포함한 수치로, 전체 산업에서 비영리 고용이 방대한 규모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는 조직은 주로 ‘비영리민간단체’이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고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오현순·김소연, 2021).
- 또 하나의 흐름은, 사회적·공공선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부문의 일자리가 내재적 보상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청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우국희·홍선미, 2009; 이명신·김운호, 2018; 박준 외, 2020). 이에 따라 정부가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미 있는 일자리’란 단순히 고임금이나 직무 안정성을 넘어, 개인의 개성을 발휘하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이명신·김운호, 2018). 선행 연구들은 사회개혁, 인권, 환경, 빈곤퇴치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존립 근거로 하는 비영리조직의 특성이 이러한 일자리의 성격과 부합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청년재단이 2019년부터 진행한 ‘NPO 연계형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오현순·김소연, 2021)에서도, 비영리 영역이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일자리로서 잠재력이 있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비영리부문의 재정적 취약성이 청년 세대의 유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임을 시사한다.
- 마지막으로, 공익활동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맞물려 공익활동가의 후속 세대 양성이 원활하지 않고, 활동가들의 연령층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공익활동과 단체의 지속가능성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과도 연결된다. 여러 활동가 대상 욕구 및 인식 조사에서도 ‘상근활동가의 신규 충원’은 많은 단체가 직면한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2018년 서울 지역 활동가 조사에서는 ‘상근할

동가 신규 총원'이 단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활동 예산 부족'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과거에는 20~30대가 전업 활동가의 중심이었지만, 현재는 이들이 생애주기를 따라 50대 이상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단체의 재정적 어려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영리단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단체가 5인 이하의 소규모 조직이며, 열악한 재정은 공익활동의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등 복잡한 사회문제가 심화하면서 정부나 시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공익활동 주체들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보완하려는 시민사회 역시 문제해결에 한계를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따라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근본 토대는 악화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기대와 역할은 증폭되는 이중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이호 외, 2022).

(2) 정부 정책의 구조적 배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등 전환기적 변화 속에서 조직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은 비영리단체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수많은 일자리 및 고용안정 정책에서 비영리단체는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조선일보 <더나은미래>(2018.9.18.)는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4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를 위한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비영리 영역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 영역은 명시적·관행적으로 배제됐다. 선행연구들은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미 존재하는 비영리조직의 ‘일자리’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일자리 정책에서의 비영리조직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지방재정법, 기부금품법, 민간위탁제도 등)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 2025년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가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으로 직접일자리사업(21개), 직업훈련(37개), 고용서비스(39개), 고용장려금(22개), 창업지원(26개),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12개), 지원고용 및 재활(11개) 사업 등이 있다(행정안전부, 2025, p.63-73).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도 전년 대비 1조 6,836억 원이 증가하여 35조 3,661억 원이다. 이외 기획재정부의 세제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및 국토교통부의 융자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규모의 일자리사업에서 많은 경우 비영리 영역은 배제되거나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오현순 김소연, 2021; 박준 외, 2020; 더나은미래, 2018).
- 구체적으로,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

특세 감면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재직한 청년(또는 일반) 대상으로 비영리단체에 취업/재직한 청년(또는 일반)은 대상자가 아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영리단체를 제도적으로 배제하지 않지만 사실 영리사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도 비영리는 제외된다. 많은 일자리 정책 중 비영리단체가 사실상 참여 가능한 것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다. 그러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 축소·폐지되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의 비영리단체 지원 여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8> 중앙부처의 일자리 정책별 비영리단체 지원 여부

주무관청	정책명	정책 내용	비영리단체 지원 여부
고용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원 5인 미만 또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제도적 배제는 않지만 사실상 영리사업체 우선 배분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가 폐업,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퇴직금처럼 적립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적 공제제도	원천적 배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 - 예외조항으로 5인 미만 사업장(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문화콘텐츠산업/지식서비스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례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신청 가능	사실상 배제 *많은 비영리단체 5인 미만으로 영세함 *예외조항에 사회적기업과 달리 비영리스타트업의 경우 해당 여부 불투명
보건 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	가능
중소벤처 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중소·중견기업 장기 재직 중인 청년에게 정부·기업·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지급. 5년 근속 시 약 3,000만 원의 목돈 지급	원천적 배제
	일반내일채움공제 ¹⁹⁾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장기근속 통해 자산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금 마련 3년형(근로자 월12만원, 기업 월 20만원 + 정부 648만원) 약 1,800만원 이상 수령 5년형(근로자 월12만원, 기업 월 28만원 + 정부 1,080만원) 약 3,000만원 이상 수령	원천적 배제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금리 연 2.0%~4.5% - 운전자금: 기업 최대 10억원 당 최대 5억원 - 시설자금 포함시	원칙적 배제

19) '25년부터 前청년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고 모든 연령대로 확대

행정 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 리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청년에게 지역 내 적합한 일자리 제공: 인건비 연간 2,400만원 수준/ 기본 1~2년 + 정착 시 최대 1년 지원/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지역포용형·지역정착지원형이 있으며 각 유형별 대상 기업이 다름. 중소·중견기업·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수이지만 지역포용형과 지역정착 지원형에서 비영리단체도 참여함	가능 *윤석열 정부 시 축소·폐지됨
산업통상 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 직청년 교통비 지원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근무 청년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원천적 배제
국토 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 월세보증금 융자 지원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청년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저금리(연 1.5%)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천적 배제
기획 재정부	청년고용 증대세제	-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세금 감면 - 공제금액: 중소기업 1인당 최대 1,1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공제기간: 중소·중견기업 3년, 대기업 2년	원천적 배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세 감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대 5년간 소득세 감면	불가

-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 영역의 구조적·관행적 배제에 대응하여 사회적협동조합 동행과 사단법인 시민(서울시NPO지원센터)은 공익활동가들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강한시민사회포럼’을 연속 기획하여 공익활동가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왔다. 2019년 열린 제4차 포럼에서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문제를, 제6차 포럼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3) 주요 연구 동향과 정책적 제언

- 관련된 연구들(이명신·김운호, 2018; 박준 외, 2020; 오현순·김소연, 2021; 이호 외, 2022)도 일부 진행되었다. 이명신·김운호(2018)는 청년들이 안정성보다 사회적 의미와 도전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비영리 영역이 청년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성과 사회변화 실현이라는 특성이 있어 청년들의 가치와 잘 맞으며, 경기침체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박준 외(2020)는 청년들이 보람과 성장 가능성 같은 내재적 보상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부문이 적합하다고 보지만, 한국의 비영리 고용 비중이 낮고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지적한다.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설명하며,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 오현순·김소연(2021)은 국내 비영리 일자리가 일자리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청년들의 현장 경험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다. 청년들이 비영리단체에서의 일을 직업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경력 인정과 보상 체계,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

다. 이호 외(2022)는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경제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국내 정책에서 비영리조직이 배제된 현실을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정책에서도 비영리단체가 제외된 사례를 들어, 비영리 일자리를 수익 중심이 아닌 사회 공동이익 창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9> 비영리 일자리 관련 연구 동향

연구명	주요 내용
비영리영역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탐색(이명신·김운호, 2018)	- 청년 실업 문제의 심화와 가치관 변화 속에서 비영리영역이 청년 일자리의 대안이 될 가능성 분석 - 청년들의 일자리 인식에 대한 특성: 생존이나 안정성보다 사회적 의미와 도전성 중시 경향. 사회적기여·자부심·공공성·자아실현과 사회적 영향력을 추구하는 일자리를 의미 있는 일자리로 봄 - 비영리영역 일자리 특성: 공공성 증진과 사회변화 실현 영역으로 청년층의 가치와 부합, 경기침체 속에서도 영리·공공부문보다 빠르게 성장.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박준 외, 2020)	- 청년들의 내재적 보상(보람, 의미, 성장가능성)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비영리부문이 청년 일자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 - 그러나 한국 비영리 고용 비중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현저히 낮고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지적. 공익활동가의 근로 조건이 열악하고 단체도 영세하여, 청년들이 비영리부문 대신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쏠리는 현상 발생.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인프라구축·생태계 조성 지원 정책의 필요성 강조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오현순·김소연, 2021)	- 국내외 비영리 일자리 개념과 규모 비교 분석 - 국내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명시적/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점 지적²⁰⁾ - 비영리 일자리의 '일'의 특성·차별점 강조 - 청년의 현장 경험(NPO연계형 일경험 사업 참여 청년)을 분석하여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개선사항 도출. 비영리단체에서의 일을 직업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경력인정·보상체계·조직문화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이호 외, 2022)	-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의,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관심 대두 경로 파악 -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효과와 기여, 특히 사회적·경제적 불안정 시기에 안전망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함을 제언하는 국내외 연구 동향 - 국내 일자리 정책이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서 비영리조직은 지원에서 배제된 점 지적²¹⁾ - 비영리 일자리를 수익의 관점이 아닌 사회 공동이익의 창출하는 일을 하는 자리로 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정책 접근 필요성 강조

20) 국내 일자리 정책, 즉 직/간접적인 일자리창출, 일자리유지, 취업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은 모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맞추어져 있어 비영리 영역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의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장려세제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은 모두 명시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제외하고 있다(오현순·김소연, 2021, p.276-278).

21) 코로나19 고용안정특별대책 사업에서도 지원기준을 영리기업에 맞춰 매출액, 생산량 감소를 증빙하게 되어 있어 기부금 감소, 사업취소 등으로 무급휴직이나 임금삭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했던 비영리조직은 지원할 수 없었다(김소연 외, 2020, p.58-62).

- 선행연구들은 국내 일자리 정책과 고용안정 특별정책에서 비영리조직이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단체를 배제하는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비영리 활동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년들이 비영리 영역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공공 채용망과 연계한 전용 채널을 구축하고, 인턴십이나 청년 일경험 사업 등을 통해 진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내일배움카드나 직업능력개발지원 등 취업·역량 교육 프로그램에 비영리 직종을 포함해 직무훈련을 제공하고, 기부문화 활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비영리와 사회적경제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비영리 영역이 단순한 자원봉사나 시민운동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공공선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일자리’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시민사회 활성화뿐 아니라 청년세대의 새로운 일자리 대안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중앙정부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0년 5월, 정부는 「시민사회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계획은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처음으로 명시한 정부 문서로 평가되며,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된 두 개의 전략과제와 다섯 개의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첫 번째 전략과제는 ‘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로,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조직 기반 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의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지원하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 융자 사업, 비영리단체 채용관 운영, 워크넷과의 채용정보 연계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전략과제는 ‘비영리 일자리 홍보 강화’로, 워크넷에 비영리 일자리 전용 채용관을 마련하여 정부 일자리 포털을 통한 정보유통, 비영리 일자리 관련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직업 체험관 신설,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지원,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에 대해 집중 알선 및 채용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표 3-10> 정부의 시민사회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비영리 일자리 관련 과제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담당부처)
공익활동가 직업분류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가 고용지원제도 적용 확대	①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조직기반 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 마련 (통계청) •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을 통해 현행 ‘시민단체활동가’의 용어 정의 및 분류 상향 검토 ② 각종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민간단체·법인의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 및 공익활동가에 대한 고용안전 지원방안 마련 포함(고용부) • 고용유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고용유지자금융자 사업, 비영리단체 채용관 운영, 비영리단체 채용정보 워크넷 연계 등
비영리 일자리 홍보강화	① 워크넷에 비영리 일자리 전용 채용관 마련 등 정부일자리포털 통한 원활한 비영리 일자리 정보유통(고용부) ② 비영리 일자리 관련 체험 콘텐츠 개발 및 직업 체험관 신설 추진,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홍보 및 인식제고 지원(고용부) ③ 비영리 영역 일자리, 집중 알선 및 채용대행 등 서비스 지원(고용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p.20-21 재구성

- 이러한 과제들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다섯 개의 세부과제 중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임의단체 등 조직기반 활동가에 대한 직업분류체계 마련’ 과제가 눈에 띄는 성과로 확인되고 있다. 2024년 7월 1일, 통계청은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에 세세분류(코드 2476)로 분류되어 있던 ‘시민사회 활동가’가 소분류(코드 252)인 ‘시민사회활동가’로 격상되었다. 이 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활동가가 하나의 독립적인 직업군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비영리 일자리를 정책의 핵심 과제로 처음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며, 직업분류체계의 개선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으로는 비영리 일자리를 단순한 고용정책의 일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3)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현황

(1) 기본 방향

-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9호와 제2기 기본계획(‘공익활동 주체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목표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①-③-1.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2022년의 기본계획 기초연구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다른 전략과제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공익활동 지원 방식의 개선,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활동가 지원 등의 과제가 모두 비영리 일자리의 확대와 고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연관성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는 영리와 비영리 간의 제도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영리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비영리 영역을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던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사례처럼 비영리 영역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기존 정책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영역을 실제 취업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도록, 비영리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영리조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청년들의 직업관 변화와 공익활동 생태계의 확장을 고려하여,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이호 외, 2021).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제시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 >

①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추진 때 영리와 비영리 간의 차별 해소

- 일반적인 일자리사업에서 비영리 영역을 제도적, 관행적, 암묵적으로 배제하지는 않는지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 마련한다. 사업에 따라 법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제도적 근거가 없는 정책 기조, 관행상, 정보의 부족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구별하고 경기도의 자치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에 ‘비영리 일자리 TF’를 구성하거나 분과를 구성하여 ‘비영리 일자리 제도’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더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일자리를 경험/인식할 수 있도록 비영리 일경험 기회 확대

- 경기도 일자리 정책과 사업에 비영리 영역이 포함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대상에 비영리단체 포함한다.
- 경기도 일자리재단 프로그램에 비영리 직종의 상담/교육/정보를 제공한다.
-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진로 교육에 비영리 영역을 직업군에 포함한다.

③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확대

- 청년들의 직업관 변화, 공익활동 생태계 변화 등을 봤을 때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청년 세대에게 친화력이 있어서 청년 일자리 정책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경기도 비영리 스타트업 생태계에 맞는 지원 사업 수립을 위해 경기도 소재 비영리 스타트업 현황 및 실태 진단, 선행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에 따라 세 가지 주요 사업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이며, 이는 기존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비영리 영역의 고용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비영리 일자리 인식 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체험 확대’로, 시민들이 비영리 영역을 실제 일자리의 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 번째는 ‘경기도 비영리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으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익적 창업을 장려하고 비영리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정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제2기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더욱 구체화하였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강화 지원사업’, 그리고 ‘비영리 일자리 협업 TF 구성’이 포함되었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 한편, 기초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는 별도로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이 비영리 일자리 확대와 연계된 전략과제로 추가되었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고용 확대 차원을 넘어, 시민사회의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층적 접근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과제는 2022년 선거를 계기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 환경이 급변하면서 등장하였으며, 기존의 공공부문 의존적 활동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중심의 자조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1> 기초연구와 기본계획에 담긴 비영리 일자리 추진 과제

기초연구	기본계획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과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 확대 및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① 비영리 일자리 제도 개선 및 관행 개선 TF 구성·운영 ② 비영리 일자리 교육 및 체험 확대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에 비영리조직 포함 및 지원규모 확대 ③ 경기도 비영리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현황파악, 지원규모 확대	①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비영리 일자리 발굴 및 연계강화 지원사업 •비영리 일자리 협업 TF 구성 ② 시민사회 경제적 기반 조성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인식 교육 •기업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단체 연계사업 •(가칭)사회혁신가 수당 지급

(2) 사업 이행 현황

-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과제들의 이행사항을 살펴보면,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하여 공익활동단체와 청년을 연결하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2021년에 처음 시도하였고, 2025년에 사업 구조와 지원 내용을 전면 재구성하여 재추진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총 40여 개 단체·모임을 지원하였다. 경기도

정 전반의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제도 및 관행 개선을 위한 TF 구성·운영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표 3-12> 비영리 일자리 정책 사업 추진 현황(2025.07.기준)

	사업명	추진 현황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예산제로 추진(‘21년, ’25년) • 경기도 공익활동단체(비영리법인·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와 청 년 연결
	비영리 일자리 발굴 및 연계 강화 지원사업	비영리스타트업 확대 지원(‘25년 현재 총 40여 개 단체·모임 지원) • 공익활동단체 지원을 비영리스타트업과 문제해결분야로 통합하여 (예비)단체 간 네트워킹 지원
	비영리 일자리 협업 TF구성	-

①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 경기도는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처음 시작하였다. 이 사업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공익활동단체와 청년들을 연결하여, 청년들이 비영리단체에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형태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공익활동 기반 일자리로의 진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및 워크숍, 네트워킹으로 기존의 일자리 및 일경험 정책과 유사하게 청년과 공익활동단체 간의 매칭과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해당 사업은 중단되었다가, 2025년에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어 총 3억 1천만 원 규모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 2025년 사업은 단순한 일경험 제공을 넘어 청년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 협력 촉진,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형성, 사회적 가치 확산과 변화 촉진 등 더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을 기존의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으로 변경하여, 울림이 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민간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문위원회, 심사위원회, 공익활동 멘토단 등을 구성한다.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내 시·군의 공익활동 중간지원조직 및 공익활동 촉진 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참여를 확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도 행정의 지원은 약화되어 새로운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표 3-13> '21년과 '25년 사업 구조 변화

	2021년	2025년
사업명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목적	청년들에게 공익활동 일경험 제공을 통해 공 익활동 일자리 기반 조성 및 시민의식 함양	• 청년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 • 다양한 청년공익활동가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 •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 협력 촉진 •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의 기반 형성 • 사회적 가치 확산과 변화 촉진
세부 사업	• 청년 인건비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 네트워킹 지원	① 청년공익활동 아카데미 • 청년공익활동가 발굴,양성(입문과정) • 청년공익활동가 일경험과정(인턴십) ② 청년공익활동가 소셜임팩트캠프 ③ 청년공익활동가 정책참여 지원사업 • 소소한 공익활동 공모전 • 통합성과공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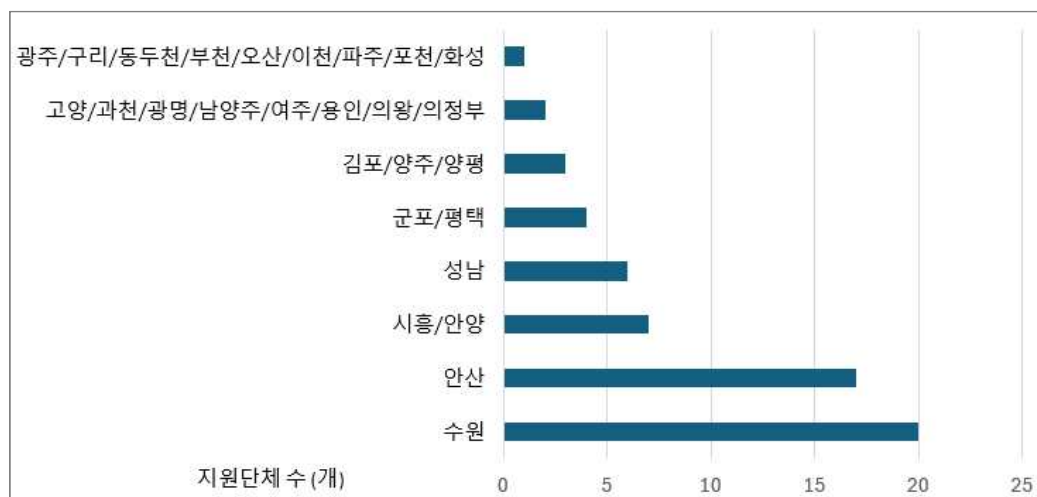
- 사업의 구조를 살펴보면, 2021년 ‘청년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사업이 2025년에는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사업 중 하나인 ‘청년공익활동 아카데미’의 일경험과정(인턴십)으로 통합되어 배치되었다. 사업의 예산, 참여 규모, 운영 기간 등이 2021년 대비 크게 축소되었지만, 청년의 역량 강화, 맞춤형 지원,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 가치 확산 등 보다 종합적인 목표의 지향 아래 자리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공익활동을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적 실천으로 확장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과 2025년 사업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14> '21년과 '25년 사업 지원 내용 비교

	2021년	2025년
참여규모	• 참여단체 52곳 • 청년 53명	• 참여단체 15곳 • 청년 15명
근무기간 (인건비)	• 일 8시간 주 5일 총 8개월 (월 2,202,860원)	• 일 5.5시간 주5일 총7개월 (월 1,742,510원)
주관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사)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사업비	• 10억원	• 2억원 * 전체사업비는 3억1천만원

-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의 참여단체는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상근활동가 1명 이상의 단체(대표는 상근활동가에서 제외)를 필수 조건으로 하며 청년 채용자의 계속 고용이 가능한 단체를 우대 조건화하였다.²²⁾ 2021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총 50개 단체를 모집하는데

101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20개 단체로 가장 많았고, 안산이 17개 단체로 뒤를 이었다. 그 외 시흥과 안양이 각각 7개 단체, 성남이 6개 단체, 군포와 평택이 각각 4개 단체, 김포·양주·양평이 각각 3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고양·과천·광명·남양주·여주·용인·의왕·의정부는 각각 2개 단체가 접수하였으며, 광주·구리·동두천·부천·오산·이천·파주·포천·화성은 각각 1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기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청년 공익활동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9] '21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별 지원단체 수

- 지원단체들의 조직 형태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60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30개, 사단법인이 10개로 뒤를 이었다. 지원단체들의 규모(직원 수)를 파악하기 위해 단체의 4대 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72개)가 5인 미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인 이상의 중대형 규모를 가진 단체(9개)는 소수였다. 이는 지원단체들이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총 101개 단체가 지원하였으나, 이 중 자격요건이 불충분한 19개 단체와 정보가 미기재된 1개 단체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1개 단체의 직원 수 현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81개 단체의 직원 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15> 지원단체들의 직원 수(4대보험가입자 수 기준임)

가입자 수 범위	5인 미만	5인~10인 미만	10인~20인 미만	20인~50인 미만	50인 이상	총계
단체 수 (개수)	49	16	7	5	4	81

22) 제외단체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기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인건비,사업비)을 받고 있는 기관,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단체 등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모집 공고 시 명시하였다.

- 참여단체와 청년의 고용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고용유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고용을 유지한 단체는 9곳으로 전체의 17.3%에 해당하였다. 이후 2022년 2월 25일에는 7개 단체가 고용을 유지하며 유지율은 13.5%로 낮아졌고, 같은 해 6월 7일 기준으로는 6개 단체만이 고용을 유지하여 유지율은 11.5%로 감소하였다. 2025년 2월 20일 기준으로는 고용을 유지한 단체가 4곳에 불과하며, 고용유지율은 7.7%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사업 종료 이후에도 청년의 지속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 고용을 유지한 단체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종료 직후인 2021년에는 9개 단체가 청년을 계속 고용하였으며, 2025년 2월 20일 기준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는 4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들 4개 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 2곳과 비영리민간단체 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수는 1명에서 20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2021년 사업 종료 직후 고용을 유지했던 나머지 5개 단체까지 포함해 살펴보면, 조직 형태는 사단법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직원 규모는 대부분 1~3명 수준의 소규모 단체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볼 때, 조직 형태나 직원 수가 청년 고용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고용유지와 조직의 외형적 조건 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고용유지의 배경에는 조직의 성격 외에도 내부 운영 전략이나 재정 안정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³⁾
-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진행된 공익활동가 집단 인터뷰(자세한 내용은 본 연구보고서 4장 참고)를 통해 일부 단체와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단체와 청년들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의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선, 이 사업은 청년들이 비영리 직군으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계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한 청년은 단체를 설립한 후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3년간 지원을 받았고, 사람과 함께하며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느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일자리 지원사업은 단순한 고용을 넘어 청년들이 비영리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고,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비영리 분야에서의 경험은 청년들에게 직업 선택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한 참여자는 “비영리 분야에서 일하거나 인턴십을 경험한 청년들이 몇 개월 후 떠난다 해도, 그 경험이 남아 훗날 좋은 기부자, 유권자,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경험이 시민으로서의 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 일자리가 생기면 조직에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활동가와 함께 일하는 경험은 조직에 훈련의 장이자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덧붙였다.
- 단체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대구 지역의 사례에서는 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를 고용한 단체가 이후에도 해당 활동가를 계속 고용하려고 후원 회원을 확보하고 기금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활동가 덕분에 조직을 활성화해야겠다는 내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처럼 청

23) 사업종료 직후 고용을 유지한 단체들의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김포시사회적경제연대(사회적협동조합, 직원 4명), 누림 청소년교육복지센터(비영리민간단체, 직원 2명),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직원 1명), 안양YMCA(비영리민간단체, 4대 보험 가입자 20명), 안산여성노동자회(사단법인, 직원 2명), 흥사단평택안성지부(비영리민간단체, 직원 3명), 시흥기독교청년회(비영리 민간단체, 직원 1명), 부천YWCA(비영리민간단체, 4대 보험 가입자 3명), 안산희망재단(사단법인, 직원 2명) 등이다.

년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와 조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업의 한계점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단기적인 사업 설계는 비영리 분야에서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하려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실질적인 경험 제공에 제약을 준다고 밝혔다. 또한 정권 교체에 따른 정부 예산의 불안정성은 활동의 연속성을 어렵게 만들고, 법인 설립 절차의 행정적 복잡성으로 인해 신규 단체들의 참여 진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청년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청년 활동가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가치 공유, 현장 학습, 지역사회 이해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지원, 청년들이 효능감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일자리 설계가 제안되었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환대와 연계 시스템 마련,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활동가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적 접근,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최소 300~500명 이상의 대규모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되었다.

②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 (*'23년부터 공익활동단체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추진)

-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참신한 어젠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공익활동 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설립 초기 단계의 단체들이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40여 개의 단체 또는 팀이 참여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설립하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사업 첫해인 2020년에는 6개 조직이 신규 지원을 받았고, 2021년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조직 중 3곳에 대한 연속 지원과 함께 7개 조직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2년에는 지원 분야가 더욱 세분화되어 신규 지원 5개 조직, 연속 지원 2개 조직 외에도 활동의 도약을 촉진하는 성장지원 4개 조직과 조직 운영의 혁신을 위한 조직변화지원 3개 조직이 추가로 참여하였다. 또한 사업 참여자들에게 선진 사례를 직접 견학할 수 있는 ‘비영리스타트업 사례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 2023년부터는 지원사업을 통합/재정비하고 담당부서도 일원화하였다. '25년 현재 예비단체와 기존단체 지원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비영리스타트업 분야와 지역사회문제해결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문제 해결분야는 지역 공익의제 관련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실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 지역별·주제별 상설 연대기구, 컨소시엄(3개 단체 이상)이 대상이다.

<표 3-16> 비영리스타트업(지역문제해결분야 포함) 참여 단체 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	10	7	7	7	3
	(신규7,연속3)	(신규5,연속2)	+	+	+
		+	16	14	18
		7	(기획사업)	(지역문제해결)	(지역문제해결)
		(성장4,조직변화3)			

- 비영리스타트업 단체들의 활동 분야는 발달장애, 생태환경, 청년노동, 동물복지, 평화통일, 위기청소년, 청년정책, IT 및 사이버, 심리치유 등으로 다양하며, 이는 기존 시민사회가 주로 다뤘던 자원봉사, 복지, 교육, 환경, 청년·아동 중심의 활동에서 더욱 세분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 이들 단체는 아동·청소년 돌봄 환경 구축,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 도시생태공원 숲 폐기물 업사이클링, 청년노동자 조직 구성, 공익활동가의 심리치유, IT 정보 접근성 향상, 청소년 사이버 범죄 예방, 반려동물 문화 개선, 시니어 일자리 창출, 지역 평화운동단체 설립, 생태 활동가 양성, 청년 정책협의체 구성,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물다양성 시민참여,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자원순환 공유, 성평등 체험 교육, 기후환경 전문강사 양성, 비영리 IT 교육 플랫폼 운영,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네트워킹, 발달장애인의 인권강사 양성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왔다.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영리스타트업들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과제를 추진해 왔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현실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청소년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며, 성평등 체험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없애는 교육을 제공하였다.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인권 강사 양성교육과 다양한 직업군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 연대활동을 통해 농작물 판매를 촉진하였으며, 도시생태공원에서 배출되는 숲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조성업사이클링 활동, 자원순환공유를 통한 에너지 절약과 생활자원 순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 참여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 관련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연대체를 조직하였다.
- 청년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당사자 조직을 구성하고, 청년정책 개발 및 결정 과정에서 청년이 소외되지 않도록 청년정책협의체를 마련하였다. IT 개발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비영리 교육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며, 시민들의 IT 정보 접근성을 높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였다.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며, 세대 간 균형 있는 사회참여를 도모하였다.
- 공익활동가들의 쉼과 재충전, 마음치유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였으며, 공익활동가와 노동자들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다. 지역 내 평화운동단체를 설립하고, 공동체와 마을 내 생태 활동가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었다.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인식을 개선하는 활동도 병행하였다. 국제개발협력 활동가들의 네트워킹과 연대를 강화하여 글로벌 시민사회와의 연결도 확대하였다.
-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영리스타트업들은 지역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2024년 비영리스타트업 문제해결 과제>

- 아동청소년의 현실적 돌봄 환경 구축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관계망 형성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농가들의 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연대활동 전개
- 도시생태공원에서 배출되는 숲폐기물 업사이클링
- 청년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사자 조직 구성
- 공익활동가들의 심과 재충전, 마음치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성
- 시민들의 IT정보 접근성 제고로 취업 기회 확대
- 청소년 사이버범죄 예방
- 반려동물에 대한 문화인식 개선
- 시니어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평화운동단체 설립
- 공동체/마을 내 생태 활동가 양성
- 청년정책개발 및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인 청년 소외 문제해결 위해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시민이 만드는 생물다양성
- 공익활동가, 노동자들의 심리적 회복 지원
-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과 업사이클링
- 자원순환공유를 통해 에너지 절약 및 생활자원 순환, 기후·환경 지킴
- 청소년들에게 차이와 차별을 없애는 성평등 체험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환경 관련 전문 강사 양성, 네트워크 연대체 조직
- IT 개발자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비영리 교육 플랫폼 개발/운영
- 국제개발협력 활동가 네트워킹 및 연대 강화
- 발달장애인의 원활한 사회참여를 위한 인권 강사 양성교육, 다양한 직업군 안내

- 비영리스타트업 사업 예산은 2020년 3천만 원에서 시작해 2024년에는 1억 3천6백만 원으로 확대되었는데, 2023년 이후의 증액은 실질적인 예산 증가라기보다는 사업 구조의 통합에 따른 변화로 판단된다. 지원 내용은 단체별 3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사업지원금과 함께, 단체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교육, 전문가 컨설팅, 업무공간 제공,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센터의 내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운영 방식 개선 외에도 업무공간과 인건비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가 있었다. 특히 단체들이 경기도 전역에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수원에 위치해 있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공유공간 사용 협약 등 현실적인 공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실무자가 없는 단체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해 사업지원금의 일부를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 한국 사회의 비영리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끄는 대표적 조직들인 다음세대재단, 아산나눔재단, 루트임팩트,

브라이언임팩트 등은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스타트업 조직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 임대료, 장비 구입 등 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조직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 기반의 유연한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공적 자원과 민간 재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공익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조직들이 처한 실질적인 한계와 지속적인 요구에 귀 기울이며, 인건비 사용에 대한 전환적 사고와 현실적인 제도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 3-17> 비영리스타트업(사회문제해결분야 포함) 단체/모임 활동분야

단체/모임명	활동분야	단체/모임명	활동분야
선우의 집	아동청소년장애	DMZ생물다양성연구소	생태환경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발달장애 자립	다시봄심리치유센터	심리치유
여주시 착한이웃	시민사회 연대	사)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중증장애인 인권, 자립
용인 에코컨서번시	생태·환경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 작소	노동인권교육
일하는2030	청년노동자 이해 대변	사회적협동조합 에코컨서번 시Y	기후위기 환경
치유활동가 희망다독	힐링, 마음치유	수원공유냉장고시민네트워크	환경생태기후에너지
J2KB	IT 정보 플랫폼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청소년성인권
경기청년연대	청년, 연대	경기우리도 사회적협동조합	정신건강
마을교육공동체 공공	마을공동체, 교육	남양주기후예산감시센터	기후위기 대응, 예산감시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	슈필라우미	여성, 마을공동체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	탄소제로숲고양네트워크	기후위기 대응, 도시숲
시흥동물사랑협회	동물복지	펍권의 날갯짓	고립은둔 청년 지원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사회변화	평화인권청년봄사회적협동조 합	평화인권 교육
엑시트	시니어	우리 공동의 미래	환경
오산평화시대	평화·통일	의정부기후길라잡이	기후환경 교육운영
의왕마을생태연구회	마을생태	크런치타임	IT교육 및 연구
의정부시청년활동가네트워크	청년정책	공유 공존 공공을 위한 연구소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협동조합 일하는 학교	위기고립 청(소)년 사회 진입	라운지플러스	국제협력
청년사단	청년정책	다올림장애인인권교육센터	발달장애, 인권
사회적협동조합 플랜비스포츠	스포츠복지	느린이웃	발달장애인 공동체운동

4. 경기도 일자리 정책 현황

1) 경기도 일반 현황

(1) 기본현황

- 경기도는 전국 국토의 약 10%에 해당하는 10,196km²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넓은 규모다. 행정구역은 31개 시·군(28개 시, 3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를 보유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3명의 부지사(행정1·2·경제)를 중심으로 5실, 2본부, 22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수는 총 16,244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 중 일반직 공무원은 4,749명, 소방직 공무원은 11,495명이다.
- (예산) 2025년 경기도 본예산은 총 38조 7,2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조 6,011억 원(7.2%)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34조 7,398억 원, 특별회계는 3조 9,82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초를 반영한 것이다. 주요 예산편성 방향은 민생경제 회복, 신산업 육성, 기후 대응,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원, 경기북부 지역 개발 등이다.²⁴⁾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 발행에 1,101억 원, 소상공인 힘내GO카드에 150억 원, 관광사업자 특별자금 지원에 20억 원, 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지원에 20억 원이 투입된다. 복지 분야에서는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 원, 간병 SOS 프로젝트 50억 원이 편성되었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103억 원, 반도체 인력 양성에 22억 원이 배정되었다.
-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350억 원, 전력자립 프로젝트에 107억 원이 포함되었으며, 도로·하천·철도 등 SOC 투자에는 3,560억 원 이상이 투입된다. 청년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965억 원, 갭이어 및 사다리 사업에 121억 원이 편성되었고, 경기북부 대개조 사업에는 북부 SOC 사업 2,040억 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 430억 원이 포함되었다.
- (인구변화)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총인구는 약 1,416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만 5천 명 증가하였으며²⁵⁾, 경제활동인구는 793만 8천 명으로 7만 8천 명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와 함께 경제활동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표 3-18> 경기도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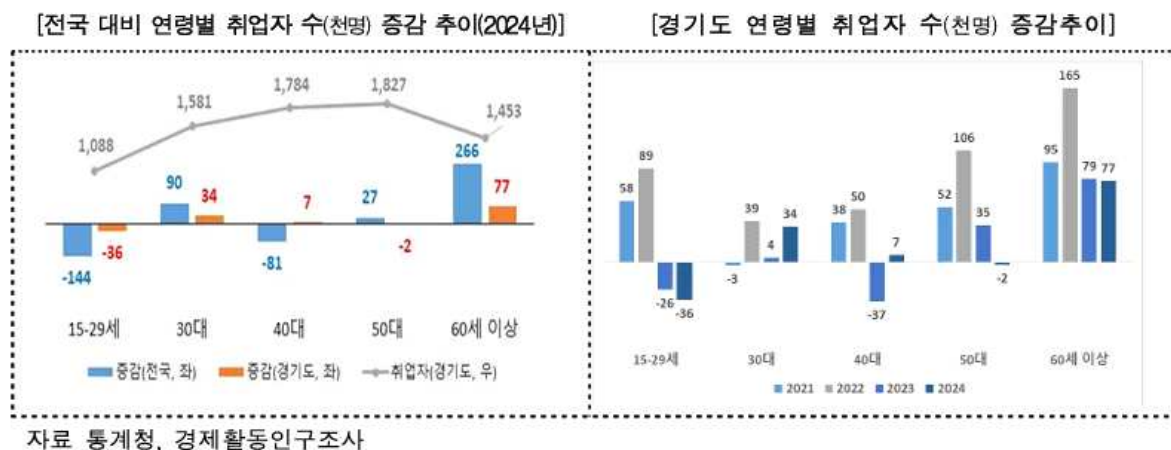
(단위: 천명)

구분	'23년	'24년	증감 (전년 대비 기준)
인구(전체)	14,056	14,162	105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7,859	7,938	79

24) “2025년 경기도 예산 전년 대비 7.2% 증가. ‘확장재정’이어간다”(경기도뉴스포털, 2024.12.30.)

25) 경기도, 2024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 **(고용 환경)** 고용환경 측면에서는 2024년 60세 이상과 30대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은 연중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3만 6천 명(-3.3%) 줄었다. 50대 역시 2천 명(-0.1%) 감소하였다. 연령별 고용률은 30대와 40대에서 개선된 반면, 50대와 청년층에서는 악화되었다. 경기도의 전체 고용률은 63.2%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감소하였으며, OECD 기준인 15세~64세 고용률은 70.5%로 0.2%포인트 줄어들었다.²⁶⁾



< 전국 및 경기도 연령별 고용률(단위: %) >

구분	전국					경기도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5-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23년(A)	46.5	78.9	78.6	77.7	45.5	49.9	79.1	77.6	78.5	43.9
2024년(B)	46.1	80.1	79.1	77.5	45.9	49.5	80.6	78.9	77.2	44.2
차(B-A)	-0.4	+1.2	+0.5	-0.2	+0.4	-0.4	+1.5	+1.3	-1.3	+0.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 산업구조

-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593.5조 원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한다.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조업 사업체 수는 약 156만 2천 개로 전국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전체 사업체 중 제조업 비중은 10.9%로, 전국 평균인 8.6%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 중 하나로, 2022년 기준 약 211만 개의 중소기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중소기업 수의 약 26%에 해당한다.
- 산업 분포는 제조업뿐 아니라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르게 이루어져

26)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년 12월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

있으며, 수원, 성남, 고양, 용인, 화성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밀집도가 높다. 특히 소상공인 수는 약 200만 개로 전국 소상공인 수(765만 개)의 26%를 차지하며,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²⁷⁾

- 경기도는 산업의 중심지답게 다양한 유형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왔다.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첨단산업과 지식서비스업, 제조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최근에는 RE100 대응형 산업단지, 스마트 산단, 노후산단 재생사업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기준 경기도에는 총 199개의 산업단지가 조성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이며, 이는 전국 13,330개 산업단지 중 가장 많은 수에 해당한다.²⁸⁾

<표 3-19> 경기도 주요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명	위치	유형	주요 산업 및 특징
판교제2테크노밸리	성남시	도시첨단산단	ICT·바이오, 스타트업 중심
광명시흥도시첨단산업단지	광명·시흥시	도시첨단산단	수도권 서남부 첨단산업 거점
안성제5일반산업단지	안성시	일반산단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 밀집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양주시	일반산단	섬유·패션산업 특화
연천BIX	연천군	일반산단	북부권역 산업거점, 물류·제조 복합
평택포승BIX	평택시	경제자유구역	수출지향형, 글로벌 기업 유치
성남일반산업단지	성남시	일반산단	전통제조+첨단업종 혼합
수원델타플렉스	수원시	일반산단	기계·전자 중심, 3개 블록 구성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흥시	국가산단	경기도 최대 규모, 구조 고도화 진행 중
화성발안일반산업단지	화성시	일반산단	첨단제조+지식서비스 중심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단	파주시	국가산단	출판·디자인·문화산업 특화
의왕테크노파크	의왕시	일반산단	지식기반 산업 중심
용인테크노밸리	용인시	일반산단	반도체·첨단소재 중심
포천양문·장자·용정산단	포천시	일반산단	기계·금속·화학 등 다양
김포양촌·학운산단	김포시	일반산단	수도권 서부 제조업 밀집

출처: 경기주택도시공사-산업단지 현황(2025.06.11. 접속) <https://www.data.go.kr/data/15004460/fileData.do>

-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총 13,628개 기업 중 약 97.1%가 중소기업이며, 중견기업은 2.3%, 대기업은 0.5%에 불과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 산업단지는 지역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²⁹⁾

27) 중소벤처기업부. (2022). *지역별 기업 통계*.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AreaSubStat.do>

28) 경기주택도시공사. *산업단지 현황*.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15004460/fileData.do>(2025.06.11.접속)

- 2023년 통계 기준 경기도 도내 산업단지는 경기도는 지리적 특성과 도시별 산업 수요에 따라 산업단지가 권역별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서북부, 동부, 서남부로 나뉘는 각 권역은 산업단지의 유형과 수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서북부 지역에는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포함되며, 이 지역에는 총 65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중 국가산업단지가 3개, 일반산업단지가 59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3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북부는 수도권 북부의 산업 거점으로, 제조업과 물류 중심의 산업단지가 주를 이룬다.
- 동부 지역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1개의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가 20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1개로, 첨단기술과 친환경 산업 중심의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이천과 여주 지역은 반도체 및 정밀기계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 서남부 지역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를 포함하며, 총 105개의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다. 이 중 국가산업단지가 2개, 일반산업단지가 95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7개, 농공단지가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서남부는 경기도 산업의 핵심 축으로, 첨단 제조업,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산업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주요 생산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다.³⁰⁾
- 이처럼 경기도는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일반산업단지의 비중이 가장 높다. 이는 경기도가 제조업과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9) 경기도뉴스포털. (2021.10.11.). “도내 산단 입주기업 97% 중소기업, 인력·교통 개선 시급해” 도, 전수 실태조사 발표.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50684

30)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 2023 전국·시도별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서북

김포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 국가: 3
- 일반: 59
- 도시첨단: 3



경기 동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하남시, 성남시 수정구,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 일반: 20
- 도시첨단: 1



경기 서남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안산시, 화성시, 오산, 평택시, 안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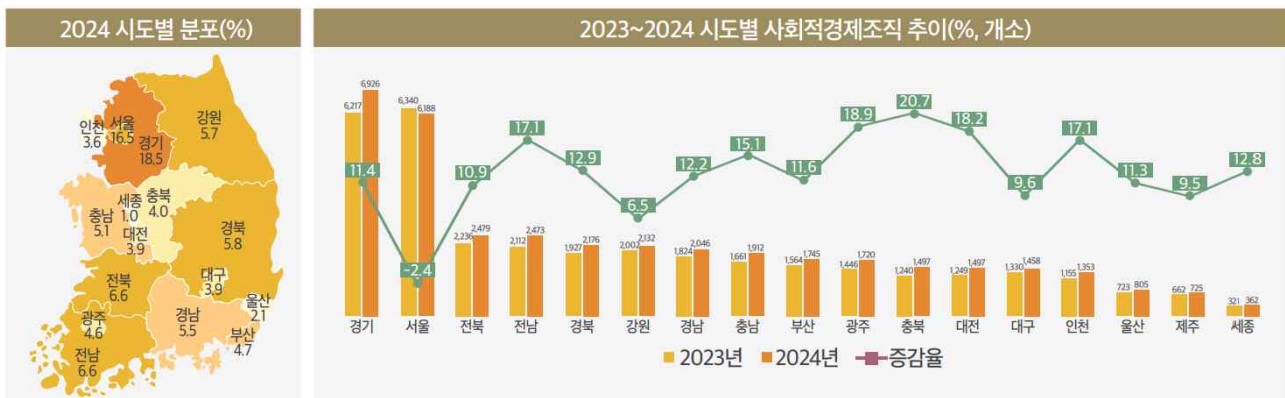
- 국가: 2
- 일반: 95
- 도시첨단: 7
- 농공: 1



[그림 3-10]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지도

(3)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 경기도는 2024년 12월 기준,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총 37,473개소 중 6,926개소가 위치해 있으며, 이는 전체의 18.5%에 해당한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분포한 지역으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사회적경제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 특히 경기북부는 인구 비중이 26.1%, GRDP 비중이 25.2%인 반면, 사회적경제조직 비중은 27.0%로 나타나 지역 불균형 해소에 사회적경제가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경기도사회적경제원, 2024).³¹⁾
- 경기도 31개 시·군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구가 많은 수원시(8.6%), 화성시(7.2%), 고양시(7.0%), 성남시(6.6%) 등에 사회적경제조직도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인구 규모와 지역 경제력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분포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 조직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5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이 17.9%, 사회적기업이 15.3%로 뒤를 잇는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16.5%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14.3%), 제조업(12.6%)이 그 뒤를 따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은 제조업 비중이 22.9%로 가장 높으며, 소셜벤처는 제조업이 41.6%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마을기업 역시 제조업이 23.2%로 가장 많다.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서비스업이 34.9%로 가장 많고, 일반협동조합은 도소매업이 1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경기도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사회적 수요에 따라 조직 유형과 업종이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1] '23~'24 시도별 사회적경제조직추이

31)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정책연구센터. (2024). 2024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이슈브리프> 임팩트click 이슈브리프 6호.



출처: 경기도(2021). 경기도지역내총생산

[그림 3-12] 경기도 시·군별 GRDP 및 사회적경제조직 분포

2) 2025 경기도 예산 편성 특성

- 2025년 경기도 예산은 총 38조 7,2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011억 원(7.2%) 증가하였다. 이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도정 업무계획에 따라 ‘기회’, ‘책임’, ‘통합’이라는 핵심 가치에 기반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다.³²⁾ 2025년 도정 업무계획을 토대로 2025년 예산 편성의 특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반도체·AI 등 첨단 신성장 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되었다.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103억 원,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78억 원, 반도체 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22억 원이 편성되며, 기술 기반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 둘째, 기후위성 발사와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기후 대응을 위한 ‘기후예산’이 5배 이상 증액되었다. 특히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2024년 36억 원에서 2025년 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지원 인원도 기존 45만 명에서 134만 명으로 늘어났다. 지원 활동도 15개에서 18개로 확대되었다.
- 셋째, 민선 8기의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은 대상과 규모 모두 크게 확대되었다. 기후행동(500억 원), 예술인(113억 원), 체육인(165억 원), 농어민(755억 원), 장애인(140억 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40억~60억 원씩 추가 편성되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존 농민기본소득을 통합 운영하며, 20만 명을 대상으로 755억 원이 배정되었다. 청년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52억 원)과 갭이어(69억 원) 등도 포함되어, 청년 관련 예산은 총 2,384억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어민 지원은 24개 시·군으로 확대되었고, 지급 대상도 청년·환경·귀농어민에서 일반 농어민까지 확대되어 총 210,118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연간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술인과 체육인 지원도 시·군 확대와 인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졌다.

32) “2025년 경기도 예산 전년 대비 7.2% 증가. ‘확장재정’ 이어간다”(경기도뉴스포털, 2024.12.30.)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4291

- 넷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전년 대비 2,500억 원 확대되어 총 2조 원 규모로 운용된다. 세부 항목으로는 민생안정자금 1조 800억 원(중소기업 6,300억 원, 소상공인 3,500억 원, 소상공인 대환자금 1,000억 원), 일자리창출 지원 1,000억 원, 특별경영자금 1,200억 원, 창업자금 7,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 2025년 경기도 예산은 미래산업 육성과 기후 대응, 기회소득 정책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포용,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기도 일자리 정책 관련 조례

- 경기도는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조직 등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은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를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일부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제정되었다.
- 일자리 정책의 상위 법령으로는 「고용정책 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청년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는 다양한 조례를 마련해 왔다. 주요 조례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6년 3월 22일 제정),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1년 11월 8일 제정),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2015년 8월 3일 제정),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조례」(2010년 3월 18일 제정),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2012년 3월 5일 제정),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2014년 1월 10일 제정), 「청년 창업 지원 조례」(2015년 11월 4일 제정), 그리고 최근 제정된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2024년 5월 16일 제정) 등이 있다. 이 중 비영리 일자리 정책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았다.

(1)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 경기도는 2015년 8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사회적일자리 창출과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경기도 사회적일자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민선 6기 도정에서 사회적일자리 18만 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2014년 10월 전국 최초로 ‘사회적일자리과’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 정책 흐름과 맞물려 있다. 당시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와 고용복지의 결합을 제도화한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³³⁾

33) 경기도의회. (2015, July 3). “경기도, 전국 최초 사회적일자리 조례제정관련” [보도자료].

<https://www.ggc.go.kr/site/main/xb/lwmkr/lawmakerpressrelease/224665?cp=2917&listType=list&bclid=lawm>

-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을 상위 법령으로 하며,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조례에는 사회적일자리 관련 용어 정의(제2조),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개발 및 확산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제6조), 사업 발굴(제7조), 재정지원(제9조), 연대강화(제10조)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³⁴⁾
- 특히 비영리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주목할 조항은 제2조(정의), 제7조(사업 발굴), 제10조(연대 강화)이다. 제2조에서는 “사회적일자리”를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정의하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 기반 고용정책 수단으로서, 비영리단체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한 정부 지원형 일자리 개념을 넘어, 비영리단체를 명시적으로 창출 주체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 제10조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의 연계를 통해 협력하고, 경기도와 유관기관이 함께 협업하여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역량을 모아 사회적일자리를 발굴·확대하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 한편, 사회적일자리의 개념과 창출 주체에 비영리단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점은 비영리 일자리 정책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이 조례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선행연구들(한상진, 2005; 박준, 2020; 이호 외, 2022)에 따르면, 사회적일자리 정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운동기구들이 제안한 것으로, 2003년 정부 정책으로 채택되었을 당시에는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에서 창출되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에 초점을 두었지만, 이후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처럼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질되면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비판과 한계도 존재한다. 현재 이 조례의 관할 부서는 복지사업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적일자리가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복지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접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 경기도는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고용 촉진을 위해 2011년 11월 8일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2007년 제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4년 제정)을 상위 법령으로 하며, 청년 대상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다양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제

공한다.

- 조례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규정하고 있다. 도지사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 실태조사, 직업지도 및 훈련, 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 또한, 청년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일자리 개발, 인센티브 제공, 교육과 관리, 재정지원 및 홍보, 시·군 및 기업과의 협력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육아, 교육, 운동, 휴식, 급식 등 후생복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청년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후생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도 가능하다.
- 특히 제9조에서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나 관련기관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단체도 청년 일자리 정책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조항의 제3항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업 우선 지원을 명시하고 있어, 실제 정책 운영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지원이 강화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조례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영리단체가 창출하는 청년 일자리에 대한 정책적 인식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비영리단체가 청년 고용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20> 본 연구 관련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제2조(정의)	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4. <u>청년 일자리 제공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u> 5.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
제4조(청년인력수급계획)	1.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9조(행정·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u>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시자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이나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후생복지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이나 공공단체를 위하여 공공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후생복지시설”이라 함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육아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휴식시설, 식당 등 급식시설, 편의시설 등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25.07.26. 접속)

4) 경기도 일자리사업 유형 및 사업 현황

- 경기도의 일자리사업은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특성과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보다 세분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일자리사업을 크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여기에 ‘기업지원’ 유형을 추가하여 총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 직접 일자리 유형은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로, 인턴형, 공공업무형, 사회봉사형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중앙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세부 항목 외에도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 직업훈련 유형은 구직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직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는 특히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훈련 프로그램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고용서비스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 알선, 고용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고용장려금은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채용 촉진, 고용유지,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창업지원은 실업자나 취업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금, 융자, 시설,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지원’ 유형은 중앙정부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도내 기업의 고용유지와 창출, 산업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유형은 고용환

경 개선, 기업 성장지원, 기업 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되며,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 이처럼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기준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지역의 고용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일자리사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으며, 특히 공익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경기도일자리재단(2021년 기준)이 정리한 경기도의 일자리유형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21> 경기도 일자리사업 유형

사업유형		지원내용
직접일자리	공공업무지원형	정부·공공기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요건에 특별한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예: 피서철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등)
	소득보조형	노인 등 특정 취약계층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득을 일부 보조하기 위한 사업 (예: 저소득층 어르신일자리, 경력단절여성 재택일자리 등)
	인턴형	청년·여성 등 특정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실무 연구 등을 통해 일경험 습득·경력 형성 및 관련 분야 취업 지원 (예:기업 수요에 맞춘 청년 일경험(인턴십) 운영 등)
	사회봉사/복지형	퇴직자·청년 등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 기회 제공. 활동비 실비 지원 (예:중장년 경력활용 봉사활동, 청년 자원봉사활동)
	공익형 *경기도추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로 사회안전망 구축 및 지역형 일자리사업 (돌봄, 안전, 상생 등) (예:각종 조사사업,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등)
직업훈련		실업자·중소기업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여 빈 일자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도록 훈련기관·기업·대학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취업취약계층의 채용·선발을 지원하여 노동시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구인·구직정보 및 취업알선 제공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사용자나 구직자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실업자 등 목표 집단의 신규 채용 촉진 (예: 중소기업 청년 취업 장려금)
	고용유지	구조조정 등 경제적 이유로 위험 상황에 처한 재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장려금
	고용안정	정규직 전환, 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재직근로자의 고용안정
	모성보호	출산·육아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력단절 방지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예: 출산·육아 휴직 대체인력 채용 보조금)
창업지원		실업자 등 특정 취업 취약계층이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도록 현금 지원, 용자·시설·컨설팅 제공
기업지원 *경기도 추가		지역 내 기업지원을 통한 간접적 고용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 (산업육성·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2021). *경기도일자리사업 현황: 경기도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

- 앞서 언급했듯,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일자리사업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경기도만의 고유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특히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익적 직접 일자리사업과 지역 내 기업을 지원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민선 8기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산업혁신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과 녹색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의 제조혁신 지원을 통해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공익형 직접일자리 13만 개 창출과 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도 포함되어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고용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경기도는 ‘경기도 일자리 종합대책 수립 연구(2024년 수시연구, 2025년 3월 작성)’를 통해 신성장 산업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5대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전략, 그리고 352개의 실천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직접창출형 일자리 183,174명과 고용기여형 일자리 140,278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총예산은 약 17조 2,211억 원에 달한다.
- 2025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수요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다. 경기도는 취업취약계층을 청년, 베이비부머, 경력단절여성, 노인, 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층과의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청년 인건비 및 복지 혜택 지원, 자산 형성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처럼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전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 미래 도약 경기도	
목표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대상 넓히고 (the bigger), 늘리고 (the more), 잘 높이고 (the better) <2025년 : 고용률 71.1%, 상용근로자 비중 60.5%>
5대 전략	세부 추진 전략[14개]
혁신성장·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 미래성장동력·첨단산업 역량 강화 등 인적자원 육성 지원 - 북부발전계획 등 지역특화 성장전략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용친화적 지역산업정책 추진을 통한 혁신형 일자리 창출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지원	- 니트·온둔 청년 등 고용시장 재진입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 - 베이비부머 취업 지원 등 중장년 취업역량·재취업 지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 일자리 창출 및 지원 - 여성 취업 및 경력유지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	- 구인·구직자의 쌍방향 수요를 반영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확대 - 구인·구직 정보비대칭 개선 및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 지원 - 원활한 고용시장 진입을 위한 다양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 장시간 근로개선, 일·생활 균형 일터 문화 확산 지원 -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한 노동환경·안전문화 정착 조성 지원
지역기반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중앙·지역 일자리 사업의 연계 체계 구축 - 중앙·지역 고용복지서비스 사업의 통합관리 등 연계 지원

[그림 3-13] 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전략체계도

(1) 대상별 일자리 지원 정책

- 경기도는 다양한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고용연계형 일자리사업’으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일경험형 일자리사업’으로, 구직자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셋째는 ‘근로자 지원사업’으로, 이미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별 구체적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주요 일자리사업으로는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진로 탐색과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 (☞고용연계형)

-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은 고용연계형 일자리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이 폐지된 이후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 참여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이며, 참여기업은 경기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생산직은 제외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2개월간 월 254만 원 기준으로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사업 예산은 5억 원, 일자리 제공 목표는 75명이다. 2025년 2차 참여자 모집 기준으로는 8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가 추진하며, 운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맡고 있다.
- 이 사업은 청년의 정규직 취업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참여기업은 고용 의사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과거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사업’의 고용유지율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실태를 고려하면, 비영리단체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 또한 이 사업의 법적 근거인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구조가 제도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규직 전환 요건을 갖춘 규모 있는 비영리조직의 참여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고용연계형 + 일경험형)

-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경기도가 2020년부터 시행해 온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단순한 고용연계형 사업이 아닌 ‘일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력형성형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20년 경기도

일자리대책의 핵심계획 중 하나인 ‘삶의 기본이 되는 복지 일자리 확대’와 2021년의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방향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 이 사업은 청년뿐만 아니라 만 18세 이상의 미취업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실질적인 직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단시간, 단기 일자리가 아닌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풀타임 일자리를 제공하며, 참여자는 ‘유기계약직’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참여자에게 취업 컨설팅을 제공하고, ‘징검다리 일자리 매니저’가 개별 사례 관리를 통해 직무 적응과 취업을 지원한다.
- 사업은 공공형과 민간형으로 나뉘며, 공공형은 경기도 및 시·군 출자·출연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민간형은 2025년 기준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만 참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2023년까지 참여가 가능했지만, 사업의 목적이 고용연계가 아닌 ‘일 배움’에 있다는 점에서 참여가 제한된 것으로 판단된다. 비영리단체는 2020년 첫 시행부터 현재까지 참여가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를 ‘일자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책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 2025년 기준 참여 규모는 총 100명으로, 공공형 70명, 민간형 30명으로 구성된다. 공공형은 6개월, 민간형은 최대 5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며, 단계별 역량 강화 교육과 직무 적응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 참여자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2,152원 기준)을 적용받으며, 민간형의 경우 3개월 근로계약 후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를 최대 2개월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 경기연구원의 2021년 평가에 따르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참여자의 질적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설계된 이 사업은 단순히 예산 대비 일자리 수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취업률 지표보다는 개인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특히 보여주기식 양적 확대에 치중한 기존 지역고용정책에 대한 비판 속에서,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을 통해 경기도 실업률 해소에 기여하는 ‘일 경험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함께 제시되었다.
- 요약하자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중심으로 설계된 경력형성형 일자리 사업이며, 비영리 일자리와 높은 정책적 친화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영리조직의 참여는 배제되어 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아닌 운영 지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의 목적과 정체성을 재설계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참여 구조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㉔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로자 지원형)

- 경기도의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근로자 지원형 정책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³⁵⁾ 특히 임금 보전, 복리후생, 자산형

35) 경기청년포털 내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소개에 적시되어 있음. “중소기업 등에 재직중인 청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자산형성, 임금지원, 복리후생을 지원하여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중소기업 등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https://youth.gg.go.kr>)

성의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으로 '청년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이 있다.

- **(청년 복지포인트)** 경기도에 거주하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 중인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반기별로 60만 원씩 제공되며, 경기청년 복지물을 통해 도서, 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주 36시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다.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2년간 총 4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반기별로 120만 원씩 지급되며, 신청 자격은 청년 복지포인트와 유사하지만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능하다. 중소기업 재직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들은 대상이 아니다.
- 이 사업은 한편으로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이직률이 높은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금전적 혜택과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청년 유입을 촉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기도 하다.
- 그러나 인력 부족 문제는 중소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 역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온 경기도정의 철학을 고려할 때, 이들 조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최근 4대 보험 미가입자나 프리랜서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④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자기주도형)

-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이 진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형 사업이다. 2023년에 처음 시행된 이래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매년 사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적 효과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형'과 '사회공헌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형은 디자인, 교육, IT/SW, 음악, 음식, 여행, 방송, 미용·패션, AI/로봇, 사회복지, 스포츠, 환경/생태, 동물, 게임, 공학, 법/수사, 의료/바이오, 금융, 영화/드라마 등 총 19개 진로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사회공헌형은 국내 여행과 함께 해당 지역에서 15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 지원금은 프로젝트형의 경우 개인 최대 500만 원, 팀 최대 3,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사회공헌형은 개인 최대 100만 원, 팀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역량 향상 교육과 분야별 멘토링 등 다양한 부가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사업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2025년에는 총 1,200명의 청년을 모집할 예정이며, 이 중 프로젝트형은 800명, 사회공헌형은 400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프로젝트형은 2,628명이 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2023년 600명 모집에 1,048명, 2024년 800명 모집에 2,390명이 신청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한편, 현재 프로젝트형에서 제시된 19개 진로 분야는 산업 및 직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 탐색의 다양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민사회 활동가'가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소분류(코드 252)로 상향 조정되어 공식 직업군으로 인정받게 되는 만큼, 청년들이 비영리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분야'를 진로 선택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의 진로 다양성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다.

- 다음으로,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주요 일자리사업으로는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베이비부머 인턴십, 경기 시니어 프로페셔널,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등이다.

㉠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고용연계형)

- 만 50세~64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은퇴 이후에도 일할 의지가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주 24~35시간의 가벼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참여 기회를,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해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경기도 중장년을 유연한 일자리에 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40만원 씩 신규 채용자에게 드는 4대보험료, 교육훈련비, 근로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 2025년 기준 지원 규모는 총 2,000명이며, 참여 기업 지원자격은 도내 기업, 기관,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장(소상공인, 학원, 병원 등) 등이다.

㉡ 베이비부머 인턴십 (☞일경험형)

- 만40~65세 중장년층에게 일 경험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 진입 지원,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장년 맞춤형 고용지원 사업이다. 3개월 동안 월 120만원, 총 360만원 지원한다. 교육비로 오프라인 교육 참여 시 1일 8만원 실비를 지급한다.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모집 규모는 900명이다. 참여 가능 기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단, 5인 미만 기업은 근로기준법 준수 협약서 제출 시 가능)인 사업장이다.

㉢ 경기 시니어 프로페셔널 (☞일경험형)

- 국제개발협력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40~59세 이하 중장년과 ODA 기관을 매칭하고 해당 기관에 월 인건비와 해외출장시 출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부머 계층에게는 일자리와 해외진출의 기회를 ODA기관에는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근무 기

간은 최대 6개월이다.

④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고용연계형)

- 경기도 거주 50대 베이비부머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 대상 근로자에게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로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2) 경기도 일자리 정책 관련 기업지원 현황

① 소상공인 지원 정책³⁶⁾

- 경기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성장, 폐업, 재도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재도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경기바로’라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창업 단계에서는 상권분석을 기반으로 한 창업 컨설팅과 교육, 경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창업 자금 지원과 보증 연계, 공유오피스나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공간도 지원한다. 성장 단계에서는 간판, 인테리어, CCTV 설치 등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함께 키오스크 도입, 온라인 마케팅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박람회 참가비와 온라인 입점 컨설팅을 통해 판로 개척을 돕는다. 또한 경영안정자금과 저리 융자, 복지몰 이용 혜택도 제공된다.
- 폐업 단계에서는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재기 장려금이 지원되며, 재도전 단계에서는 재창업 교육과 컨설팅, 자금 보증 및 사업화 지원, 심리·법률 상담이 포함된 ‘희망리턴패키지’가 운영된다. 이 외에도 경영·세무·노무·마케팅 실무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공, 소상공인 리더스 아카데미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을 위한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도 운영 중이며, 이는 공동장비, 물류센터, 작업장 등 인프라 지원을 통해 집적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둔다.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는 1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5년간 20~30% 지원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료의 50~80%를 보조한다.
- 특히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경기청년복지포인트’가 있으며,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다. 또한 ‘소상공인 복지몰(노란우산 복지플러스)’을 통해 금융, 건강관리, 여행·레저, 교육, 경영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36)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web/index.do>) 토대로 작성함(2025.07.31. 접속)

- 이처럼 경기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생애주기별로 세분화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재도전을 돕고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과 컨설팅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³⁷⁾
- 주요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3-22> 소상공인 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홍보물 제작, 키오스크, CCTV 설치 등 지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자부담 10% 이상)
경영안정자금 및 보증지원	• 최대 5,000만원까지 저금리 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보증/ 손익분석·신용관리·채무조정 등 컨설팅 제공. (운영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 스마트 기기 도입(무인결제 시스템, 키오스크 등)/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컨설팅/ 디지털 마케팅 비용 지원. 최대 1,000만원 지원
배달·택배비 지원	•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 소상공인. 최대 30만원 지원
소상공인재도전 지원사업	•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재창업패키지(창업교육,자금지원,컨설팅 제공)
소상공인 복지물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 혜택 통합 플랫폼. • 금융지원(대출, 공제사업자금, 무이자 의료대출, 무이자 재해대출 등), 경영지원, 건강관리(건강검진, 병원 제휴 할인, 헬스케어 서비스), 여행.레저(회원권 휴양시설), 교육지원(역량, 힐링, 온라인 강의), 경영지원(세무·노무·법률상담, 경영 컨설팅)
경기청년복지포인트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비영리법인 근무 청년 대상 연간 12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 제공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정책지원 사업 정보 제공, 온라인으로 지원사업 신청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재기 장려금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까지 포함하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목표 • 고용보험료의 20-30% 5년간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보험료 50~80% 보조. 최대 5년간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	•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업체당 3,000만원 한도 내 다중 선택권을 부여해 지원
청년상인육성	• 신규창업 최대 3,000만원/ 재도약 최대 2,000만원/ 가업승계 최대 1,0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	• 판로다각화(온/오프라인 판로, 전시회, 지식재산권)를 위해 업체별 최대 200만원 지원
골목상권 기본성장	• 기 조직화된 골목상권 공동체 대상으로 공동마케팅 및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 견학 비용 등 직접비 지원 500만원
골목상권 신규조직화 지원	• 환경개선, 공동마케팅, 선진지견학 비용 지원. 1개소당 2,000만원 지원

37) “경기신보, 하반기 보증지원 설명회...소상공인·중소기업 소통”(경인일보, 2025.07.29.)

②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³⁸⁾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분포한 지역으로,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7,473개소 중 약 18.5%에 해당하는 6,926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해 있다. 이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경기 북부에 27%, 남부에 73%가 분포해 북부 지역의 인구비율(26.1%)과 GRDP 비율(25.3%)을 상회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수원시, 화성시, 고양시, 성남시 등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조직의 밀집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조직 유형별로는 일반협동조합이 전체의 54.3%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이 17.9%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교육서비스업이 1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도소매업(14.3%)과 제조업(12.6%)이 뒤를 잇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소셜벤처·마을기업은 제조업에, 사회적협동조합은 보건복지서비스업에, 일반협동조합은 도소매업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다양한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본청의 사회혁신기획과, 사회적경제육성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주식회사, 신탁중앙회, 신한은행 등이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26개 시·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직영 또는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센터에는 총 115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현장 중심의 밀착형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사회적금융, 판로지원 확대, 창업 및 도약 지원, 인재양성 및 연구지원, ESG 연계와 확산, 그리고 사회혁신공간 조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금융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을, 판로지원은 공공구매 연계와 유통채널 확보를 통해 시장 진입을 돕는다. 창업 및 도약 지원은 초기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인재양성과 연구지원은 교육과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한다. ESG 연계 사업은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혁신공간은 협업과 창의적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을 지원한다.
- 이처럼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8)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업 안내서 참고 작성

<표 3-23>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사회적 금융	경기도 투자환경 조성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자금(30억원)의 1.5배 이상을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에 투자
	투자연계 지원	투자유치 희망기업 풀(Pool) 등록기업 대상 투자 연계 지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특례보증(업체당 최대 5억원(100% 이내)), 이차보전(연 2.5%p, 5년)
	협동자산화 지원	공동체 활성화, 공유·협업 기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매입자금 융자 지원 (개소당 10억원 이내)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이차보전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최대 5억원 한도, 변동금리, 4년간 최대 2.0%p 이차보전)
	사회성과관리사업	사회성과측정 전문가양성과정 운영, 사회가치포럼 운영
판로지원 확대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설명회 개최/ 정부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한 우선구매 평가관리/ 사회적경제박람회 연계한 공공구매 전시·상담/ 빅데이터를 통한 우선구매 분석 및 독려
	사회적경제 오프라인 판로지원	판로마케팅(제품 경쟁력 향상 지원. 개소당 10~20백만원)/ 유통채널연계 판촉지원, 유통 컨설팅 등/ 사회적경제 거점매장 운영 및 판로 지원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온라인몰 운영 및 입점 기업 관리/ 할인쿠폰, 배송비 등 부대비용 지원/ 자사몰, 외부 유통채널 연계 기획전
	사회적경제 시·군 판로지원	지역 특색을 살린 장터형태 및 대형 유통판매장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제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판매 행사 개최
	기타	경기 사회적경제 박람회, 모두의 사회적경제 콘퍼런스, 도·시·군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
창업도약 지원	임팩트 프랜차이즈 육성	가맹사업화 지원.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
	협동조합 성장지원	내실화(상담, 컨설팅, 교육), 고도화(20백만원), 협업화(30백만원) 단계로 나누어 지원
	시·군 예비 창업 패키지	교육분야, 창업지원분야(사업개발비 등)로 나누어 지원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초기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지원(기업당 12백만원~50백만원). 후기 청소년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창업 유도
	사회적경제 도약패키지	성장가속화 프로그램, 자금지원(1,850만원~2,250만원), 투자 네트워크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사회적경제조직의 맞벌이 부부 등의 초등생 자녀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픽업서비스 제공
	사회적경제 지역활성화 사업	지역현안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간 아이디어 사업 실현을 위한 재정 지원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	(예비)마을기업 지정 및 성장단계별 사업비 지원. 1천만원~1억원 이내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화지원금 지원(20백만원~50백만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사회환경 문제해결 지원사업	사회환경문제해결 지원(30백만원~50백만원). 개방형 혁신지원(15백만원)
인재양성 및 연구지원	기타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 사회적가치 측정 컨설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인증/예비사업적기업 대상으로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최대 지원비율 90% 한도, 기업당 30인 이하)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인증사회적기업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작은연구지원사업	연구 공모·선정을 통해 연구사업비 지원(팀당 최대 5백만원)
	기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정책연구사업, 민관정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

③ 중소기업 지원 정책: 일자리 관련

-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청년, 중장년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일자리 매칭, 근로자 지원, 기업 지원 등 여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원 내용으로는 금융 지원에서부터 인건비/인력 지원,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도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 공급제도’)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 먼저, ‘경기 중소기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은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개월간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월 254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며,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을 유도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월평균 임금이 121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장려금 제도다.
-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고용 장려금을 지원하며, 근로자에게는 삭감된 급여 보전과 업무분담 직원에 대한 보상도 함께 제공된다.
- ‘4.5일제 시범사업’과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동시에, 기업에는 추가 고용 장려금을, 근로자에게는 임금 삭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수나 업종에 따라 참여 자격이 제한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수의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과 ‘청년복지포인트’는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의 사업은 영리 목적의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 설계시 보다 포괄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비영리단체 역시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제공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표 3-24> 일자리 관련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명	지원내용
경기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지원 (일자리매칭)	도내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정규직 전환 기회 제공. 2개월간 인건비의 80%지원(월 254만원 기준, 도 생활임금 적용)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고용노동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시 정부가 월 최대 120만원 지원(실제 지급한 임금의 80%한도). *월평균 임금 121만원 미만 근로자는 지원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	청년 정규직 채용시 기업에 인건비 지원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일가정 양립, 경력단절 예산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기업 지원: 추가고용장려금 1인당 최대 월 120만원/ 노동자지원: 삭감된 급여 보전(1인당 최대 월 30만원), 업무분담 직원 보상(1인 최대 월 20만원)
4.5일제 시범사업	주4.5일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지원(인당 월26만원 지원). 3년 한시적 운영 (사업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베이비부머 인턴십(기업근무형) (일자리매칭)	베이비부머 구직자-구인 기업 매칭. 3개월 인턴 근무지원 (참여기업에 인턴 1인당 총 360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10명)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일자리매칭)	중장년층을 주 15시간~36시간 미만 일자리에 채용하면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최대 3개월까지 지원 (사업대상: 경기도 내 사업장) (*비영리단체도 가능)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일자리매칭)	참여자-참여사업장 연결 통해 최대 6개월간 일경험 제공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지원 (근로자 지원)	임금 보전성 자산 형성사업. 2년간 최대 480만원, 반기별 120만원 상당 지역화폐 지급
청년복지포인트 (근로자 지원)	1년간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 (*비영리단체도 가능)
과천시 시민우선 채용 인건비 지원 (과천시)	과천시 지역 인재 채용 시 기업에 월 104만원 인건비 + 교육비 126만원 지원. 최대 3년간 지속 지원 가능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총 2조원 규모. 운전자금/시설자금/창업자금 등 다양. 금리 기본 2.9%, 우대(여성기업, 청년기업, 벤처, 경기도 전략산업 등) 시 최대 0.5%. 최대 15년 상환 가능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	중소기업에서 장기간(5년 이상 근무 또는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25년 기준) 근무한 무주택 근로자에게 공공분양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제도. 청약 가점 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 기회를 제공

5)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 지원실태와 시사점

- 경기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자리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창업, 성장, 위기 대응, 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가정 양립, 디지털 전환과 판로 개척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대부분은 영리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제도적으로 참여가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 실제로 경기도의 주요 인건비 지원 사업인 ‘경기 중소기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등은 모두 영리 목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명시적으로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는 비영리 영역이 일자리 창출의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활동가들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물론 일부 사업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청년복지포인트’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은 예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조직이 청년과 중장년층의 고용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며, 전체 정책 구조 속에서 비영리부문은 여전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다.
- 이러한 배제는 단순한 행정적 기준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와도 상충된다. 비영리단체는 지역 내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며,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이들 조직을 제도적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저해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을 위한 금융지원, 판로지원, 창업도약, 인재양성 등 다층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금융 분야에서는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협동자산화 융자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판로지원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유통채널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지원하는 구조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 결국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영리기업 중심의 지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영리부문에 대해서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접근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포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며, 향후 정책 설계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기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비영리조직은 지역사회 기반의 일자리 제공 주체로서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 2021년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청년 활동가의 인건비를 일정 기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업은 공익활동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비영리단체의 인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사업 종료 후 고용 유지율은 7.7%에 불과했다. 이는 대부분의 단체가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자 청년 고용을 지속할 수 없었음을 의미하며, 비영리단체의 재정적 한계와 고용 중심 정책의 구조적 부조화가 그대로 드러난 결과였다. 특히 단체의 평균 예산이 수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상근 인력이 없는 단체도 전체의 40% 이상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한 정책 설계는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 이외에도 경기도가 운영 중인 주요 청년 일자리사업들—예컨대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면접수당’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참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거나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용 연계성과 기업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어,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활동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 이러한 실태는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단순한 고용 연계형 모델을 넘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조직 특성과 재정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활동가의 경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공익활동 참여에 대한 사회적 보상 체계 구축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경기도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비영리부문에 대한 제도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접근의 재구성이 필수적이다.

6) 민선 8기의 기회소득 정책

(1)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의 추진 현황

- 경기도 기회소득 정책 근거는 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서 개요 24쪽에 기반한다.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회적 기여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에 대해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경기도 기회소득은 단순한 복지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아마르티아 센의 ‘역량’ 개념과 마사 누스바움의 ‘기회다원주의’ 등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이 설계되었고, 예술인, 장애인, 기후행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기회소득 전반을 다루는 통합적 조례는 입법되지 않고 분야별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고 각각의 사업지침과 예산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2023.7.18.),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2024.7.18.),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2023.7.18.)가 이에 해당한다.
-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은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대표적인 사회혁신 정책으로,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도민의 실생활 속 기회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현재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종사자,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총 6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수혜자는 약 30만 명에 이르며, 이 정책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도민의 자존감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23년 시범적으로 시작하여 이후 정책 효과와 수요를 반영해 2024년에는 장애인, 예술인, 체육인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가장 먼저 시행된 분야는 농어민 기회소득으로, 2023년 9개 시·군에서 약 9,400명의 농어민에게 총 42억 원이 지급되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민에게 월 5만~15만 원,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역화폐를 지급하였다. 2025년에는 24개 시·군, 약 21만 명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급되며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

-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회소득의 유형은 소득지원형과 참여형이 있다. 소득지원형으로 예술인, 농어민, 체육인 기회소득이 있고, 참여형으로 기후행동, 아동돌봄, 장애인 기회소득이 있다.

③ 예술인 기회소득

- 예술활동증명서 보유, 개인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경기도 거주 예술인 대상으로 연간 150만 원 지원한다.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 보전, 경기도민에게는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 7,252명, 2024년 9,172명 수혜 받았고, 2025년은 약 1만 5,000명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³⁹⁾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과정>

- 예술활동으로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 예술활동 증명 위해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제출
- 관련 업무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 2022년 정책방향 공론화를 위한 관계자 토론회 개최(2022년 12월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도입을 위한 소통간담회 2회 개최)
- 2023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결과로, 예술인 기회소득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
- 2023년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 2024년 본격적 제도 도입

출처: 경기연구원(2023). *기회소득사업 평가연구*. p.36-37

39)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임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7.29.)

40)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s://www.kawf.kr/social/sub01_2.do

<예술인 기회소득 예술활동증명서(예술인증명서) 발급 방법>40)

-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
- 예술인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15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기획 활동을 하는 예술인(문학, 미술, 디자인, 공예, 사진 건축, 음악, 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공연, 만화 등)
- 증명방법 선택: 1)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예: 공연, 전시, 출판, 방송 등). 15개 분야별로 다름. 문화의 경우 ⇒ 최소기준. 시인,수필가 5편, 소설자 1편(장편) 3편(단편), 희곡작가 1편, 비평가 3편, 공통 1권(문학작품집). 2) 예술활동 수입(예: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등). 최근1년 최소기준 120만원 이상, 최근5년 600만원 이상. 3) 기준 외 활동(예:경력단절, 원로예술인, 특수작업방식 등)
- 온라인플랫폼(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서 신청. 행정심의 및 전문가 심의(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유효기간 3년
- 예술활동증명 혜택: 창작준비금, 산재보험, 국민연금 지원, 전세자금대출 등 복지사업 참여 가능. 자녀 어린 이집 우선입소 시 재직증명서 대체 가능

㉞ 장애인 기회소득

- 건강증진과 사회참여를 동시에 보장하는 행동 기반 보상 정책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건강 활동 인증(주2회) 시 월 10만원 지급한다. 2023년 5836명, 2024년 1만 904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 6월까지 누적 참여자 2만 7031명이다. 24년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86.7%였다.⁴¹⁾

㉟ 기후행동 기회소득

-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보상제도로, 걷기, 다회용기 사용, 고효율 가전 구매 등 15가지 활동 실천시 최대 6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시행 1년만에 128만이 가입하였고, 2025년 7월 기준(시행 1년만에), 144만명이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에 가입하였다.⁴²⁾
- (참여방식)⁴³⁾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한 도민에서 실천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기회소득(리워드) 1인 60,000원('25년 기준) 한도로 지급한다. 실천 항목은 16가지로 제시한다. 기후도민 인증, 기후퀴즈, 환경교육참여, 줍깅/플로깅 참여, 생물 다양성 탐사, 소통, 가정용 태양과 발전설비 설치, 고효율 가전제품 구입, PC절전 프로그램 사용,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배달음식 다회용기 이용, 고품질 재활용품, 텀블러 할인 카페 찾기, 대중교통 이용, 걷기, 자전거 이용이다.

41)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가입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7.29.)

42)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가입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7.29.)

43) 기후행동기회소득 홈페이지. (<https://www.ggaction.or.kr/>)

인증방식 예시(줍깅/플로깅)

- 인증기준 : 행사 참여 실적
- 지급금액 : 1회 2000원/ 최대한도 연 20,000원
- 탄소 저감효과 : 0.12kgCO₂eq
- 도민 실천방법 :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줍깅/플로깅 행사 참여
- 앱 ‘줍깅/플로깅 참여’ → ‘실천하기’ 버튼 터치 → 카메라 접근 권한 ‘허용’ → 행사장 QR코드 촬영하여 인증

㉔ 아동돌봄 기회소득

- 돌봄공동체 참여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보육의 공공성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월 30시간 이상, 부모를 대신하여 아동 돌봄에 참여한 도민에게 연 최대 240만원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4년 5월 기준, 133개 돌봄공동체와 384명이 참여하였다.

㉕ 농어민 기회소득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보상하는 제도다. 청년 농어민(50세 미만), 귀농귀어인(최근 5년 이내 귀농), 친환경 농업인(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물 등 인증자 대상)에게 월 15만 원,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2024년 9,478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 상반기 17만 2,000여 명으로 확대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다. 지역 농촌에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환경친화적 농업 확산 계기를 목적으로 한다.⁴⁴⁾

㉖ 체육인 기회소득

- 개인 소득 중위 120% 이하 선수, 지도자, 심판 등에 연 150만 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수혜자들은 지역 스포츠 교실 등에 참여하는 등 체육의 사회적 가치 순환 기반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⁵⁾

(2) 기회소득 정책의 함의

- 경기도 민선 8기에서 제안한 ‘기회소득’ 정책은 기존의 기본소득 개념과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보편적 소득이 아니라, 일정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한 시민에게 선별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즉, 자원봉사, 지역사회 기여, 공공성 강화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일정 기간 이상 참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활동의 지속성과 기여도를 평가해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생계 보장을 넘어 시민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고,

44)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입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7.29.)

45)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입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7.29.)

공익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려는 정책적 의도를 담고 있다.

- 기회소득은 복지와 노동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성격을 띠며, 시민의 자발성과 공동체 회복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공지원 모델로 평가된다. 특히 기존의 고용 중심 일자리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제도적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공익적 기여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통해 공동체 내 참여와 연대의 기반을 확장하려는 정책적 실험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기회소득 정책은 비영리 일자리 확대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기존의 고용 연계형 일자리 정책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던 비영리 영역에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열어준다. 대부분의 비영리단체는 열악한 재정 구조로 인해 정규직 고용이 어렵고, 활동가들은 무급 또는 저임금 상태에서 공익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회소득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고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적 경로가 될 수 있다.
- 둘째, 사회적 가치 기반의 소득 보장은 비영리 활동의 경제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공공서비스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정책적 지원에서는 주변화되어 왔다. 기회소득은 이러한 활동을 ‘노동’의 범주로 재정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비영리 영역의 지속가능성과 활동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기회소득은 고용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로 작용한다. 현재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정규직 전환이나 고용 유지율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영리단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적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기회소득은 고용 외의 방식으로든 시민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수단으로, 비영리단체와 활동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와의 협력 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활동의 다양성과 시민 참여의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활동의 질적 기여를 정량화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 참여 동기의 다양성, 지역 간 격차 등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 결과적으로, 기회소득은 비영리 영역을 제도적 배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공익 활동을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 지형을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실험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책이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시민사회와의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비영리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2기 시민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여건 개선 및 확대를 전략 과제화하여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과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합지원체계로 재편하여, 단순한 인턴십을 넘어 역량강화, 네트워크 구축, 정책참여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지역문제 해결형으로 확장되며, 다양한 사회적 의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체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 일자리 정책사업이 도정의 일자리 정책과 결합하지 못하고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의 단위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고,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안정성 문제, 그로 인한 정책적 효과성에 있어 취약함을 노정하고 있다.
- 중앙정부 및 경기도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비영리 영역은 여전히 제도적·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대부분의 일자리 정책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참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거나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렵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영리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도 모두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제도적 배제 대상이다.
- 또한, 경기도의 ‘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사업’은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한 고용연계형 사업이지만,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 구조로 인해 청년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기 어려워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2021년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도 사업 종료 후 고용유지율은 7.7%였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인건비 지원 종료와 함께 청년 고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고용유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단기 지원사업이라는 한계를 고려하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연계형 중심의 정책 설계는 비영리단체의 현실과 맞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비영리단체는 영리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대부분 회비, 기부금, 정부 보조금 등 불안정한 재원에 주로 의존한다. 단체의 연간예산이 1,000만 원~5,000만 원 수준인 경우가 전체의 31.9%로 가장 많으며, 상근활동가가 전혀 없는 단체도 전체도 41.3%에 달한다. 이러한 재정적·인적 기반에서는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한 일자리 정책에 참여하기 어렵고, 오히려 정책의 대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 결과적으로, 비영리 영역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 주체’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영리단체가 수행하는 공익적 활동은 사회적 가치와 공동체 회복력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 정책적 시사점

- **(비영리 일자리 정체성 재정립)** 현재의 고용연계형 일자리 정책은 비영리단체의 열악한 재정 구조와 인력 운영 현실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실제로 2021년 청년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은 7.7%에 불과했으며, 단체의 규모나 조직형태와 고용유지 간의 상관관계도 뚜렷하지 않았다.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일체형’ 또는 ‘사회적 가치 기반 보상형’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과 같은 공익형 직접일자리 유형이 비영리 영역과 높은 정책적 친화성을 갖는다.
- **(참여 대상의 다양화와 확대 필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으나, 실제로 중장년층의 고용유지율과 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베이비부머 인턴십, 라이트잡 등 중장년 대상 일자리사업의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시민사회 활동은 생애주기와 무관하게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며,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계 구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인건비 지원을 넘어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체제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기회소득’ 정책과 결합하여 새로운 정책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예술인 기회소득, 장애인 기회소득,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도화한 사례로, 공익활동가에 대한 ‘존재 보상’ 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의 도입 필요)**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을 특정 활동가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시민참여형 기회소득’ 모델도 필요하다. 이는 공익활동의 저변 확대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144만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민 만족도는 86.7%에 달한다. 이러한 모델을 공익활동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
- **(제도적 진입장벽 해소와 법령 개정 필요)** 비영리단체는 많은 일자리 정책에서 명시적 또는 관행적으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장려금, 소득세 감면, 고용보험료 지원 등은 대부분 중소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영리단체는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일부 조항에만 명시되어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인센티브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비영리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비영리스타트업은 공익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잠재력이 크지만, 대부분 인건비와 공간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이 부족하다. 민간 임팩트 투자 사례(예, 루트임팩트, 브라이언임팩트 등)는 단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공적 재원도 이러한 유연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소결)**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시민사회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의 정체성 재정립(고용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 대상의 확대(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경력단절여성 등 포괄), 제도적

장벽 해소(조례 및 법령 개정을 통한 진입장벽 해소), 실질적 재정지원(인건비 중심의 유연한 지원 구조 도입), 시민참여형 모델 도입(공익활동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인식 제고), 공익활동가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존재 보상’ 개념의 제도화)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영리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력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이며, 이를 위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전환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정책 실험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IV.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1. 대화 설계

1) 대화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고도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대화의 목적은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현장과 유리되지 않도록 현황과 과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 수요 및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2) 대화 내용

- 비영리 일자리의 공공적 역할과 사회적 맥락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개선 방향
- 비영리 일자리 노동조건, 경력개발, 지속가능성
- 비영리 일자리 통계 구축 고도화 방안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진단 및 정책 방향
- 현장 실무자 욕구, 실태, 개선방안

3) 대화 방법

- 자문회의 :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자문과 수시자문을 수행

<표 4-1> 자문위원회 구성

N	성명	소속	직위	자문 분야
1	강세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일자리 통계 구축
2	류홍번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임이사	시민사회 활성화, 비영리 일자리 정책
3	박완기	(사)경기시민연구소 올림	공동소장	경기도 시민사회 현황 및 일자리 정책
4	유명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	
5	허정호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표 4-2> 자문회의 운영

구분	일시/장소	참석자	주제
정기	2025.06.30.(월) 10:30~12:0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박완기, 유명화, 허정호/경기센터/연구진	• 연구 계획 공유 및 연구 방향성 합의
	2025.07.10.(목) 16:00~17:30 온라인 줌	강세진, 류홍번/연구진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 등 • 비영리 규모 추계 관련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모집단 설정 등
	2025.08.20.(수) 15:00~16:30 경기도청옛청사	강세진, 류홍번, 박완기, 유명화, 허정호/경기센터/연구진	• 연구 진행 결과 공유 및 피드백 • 비영리 일자리 정책(안) 논의
	2025.10.14.(화) 15:00~16:30 경기도청옛청사	강세진, 류홍번, 박완기, 유명화, 허정호/경기센터/경기도 소통협치관/연구진	• 연구 진행 결과 공유 및 피드백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실현가능성 및 확산 방안 논의
수시	수시	강세진	• 일자리 통계 관련(규모추정 및 경제적 기여효과 분석 자문)

- 인터뷰 : 대화 주제에 따라 개별 심층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로 구분하여 진행

구성	각 그룹은 5명 이내로 구성
소요 시간	각 90분~120분 내외
진행 방식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question)를 이용하여 공통 질문과 그룹별 질문에 대해 참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호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
진행 및 기록	이명신(책임연구원), 김승영(보조연구원)
참여자	총 5그룹, 18명 참여

<표 4-3> 인터뷰 진행 개요

구분	일시	장소	참여자	방법
비영리 일자리 정책	2025.07.29.(화) 14:00~15:30	코스팟 공유오피스	조철민 공정옥 김홍길 정선미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센터장 경기도청 사회적경제/ 전 과장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총괄실장	FGI
	2025.07.28.(월) 14:00~16:00	다음세대 재단	방대옥	다음세대재단/대표 개별

비영리 일자리 실태 및 육구	2025.07.23.(수) 10:00~11:3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이경엽	다산인권센터/활동가	FGI
			임윤희	평등평화세상온다/사무국장	
			차민재	안산YMCA/팀장	
	2025.07.23.(수) 13:30~15:0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김성길	경기중북부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FGI
			이종준	김포경실련/사무국장	
			이영준	수원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팀장	
			김철기	고양시민회/사무총장	
	2025.07.23.(수) 15:30~17:00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정진아	의정부YWCA/사무총장	FGI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정책위원장 (서면제출)	
			이정희	구리YMCA/사무총장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대표	
			김재규	자립하는소농학교/교장	

<표 4-4> 인터뷰 주제

공통 주제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중요성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및 개선방안 • 관찮은 일자리로서 비영리 일자리 조건 • 비영리 일자리 정책 및 제도 변화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
그룹 특화 주제	일자리 정책(1) :문제점 및 과제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정책 현황 및 시급한 과제 •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장치 (거버넌스) •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제안 및 정책 설계 시 고려할 점 •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를 위한 중장기 전략
	일자리 정책(2) :비영리 스타트업	• 국내 비영리 스타트업의 성과와 한계 • 초기 단계에서 도약단계로 나아간 단체들의 성공요인 •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정책 한계 및 개선과제 • 비영리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및 공공(정부/지원조직)의 역할
	비영리 일자리 실태 및 육구(1) :청년 활동가	• 비영리 영역에서 일한다는 것의 의미와 경험 -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소감 • 커리어를 이어가는 경우 걱정되는 부분 • 청년 활동가 유입을 위한 전략 및 제도

	비영리 일자리 실태 및 욕구(2) :10~20년 경력의 활동가	•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와 경험 • 비영리 일자리 시급한 개선과제 • 중간관리자 경력개발 계획 및 사회적 지원
	비영리 일자리 실태 및 욕구(3) :20년 이상 경력의 활동가	• 비영리 영역에서 일하는 것의 의미와 경험 • 비영리 일자리 변화 및 인력 관리의 어려움 • 리더 그룹의 경력개발 및 사회적 지원

4) 분석 방법

● 분석 방법 : 주제 분석 (Thematic Analysis)

- 수집된 대화 데이터를 주제별로 구조화하고 해석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인식, 경험, 감정, 행동 등을 이해하기 위한 작업

● 절차

- ① 전체 텍스트 정독
- ② 주요 의미 단위 코딩(문장 또는 단락)
- ③ 주제별 범주화(ex. 실태, 인식, 조건, 변화)
- ④ 주제별로 그룹 간 비교 (ex. 청년 활동가/중견 활동가/리더 활동가)
- ⑤ 통합적 해석

<표 4-5> 주제별 범주화

범주	실태	인식	조건	변화
주제어	①비영리 일자리 현황 ②비영리단체 조 직 운영 및 조직 문화 ③활동가의 삶과 동기	④비영리 일자리 의 사회적 중요성 ⑤비영리 일자리 인식 ⑥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⑦괜찮은 일자리 의 의미 ⑧비영리 일자리 안정성과 조건	⑨정책 및 제도 변화 ⑩공공(정부/중간 지원조직)의 역할 ⑪세대별 접근 ⑫시민사회 변화 전략

2. 범주별 내용(실태, 인식, 조건, 변화)

1) 실태

(1) 비영리 일자리 현황

● 제도 및 정책 환경

- (인식 및 논의 체계 부족)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제도적 기반 부족으로 비영리 유입을 방해하며, 일자리에 대한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화도 부족하다.

“정책 지원체계도 전혀 없고, 일자리 생태계 안에서 비영리에 대한 논의조차도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 (통제 중심의 법률 구조) 행정 편의주의로 비영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촉진이 아니라 감독과 규제를 위한 제도 기반이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 연대체 여성단체들에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비영리 분야는 배제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관한 법률(2007년 제정)을 보면 간접 지원 내용이 다양해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재정지원'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정지원은 보조금, 간접 지원은 세제 혜택과 우편요금 감면 정도로 미비합니다.”

- (비영리에 대한 차별)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지역 연대체 여성단체(양성평등기본법)는 인건비 지원이 가능하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상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불가능하며,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나 지방정부는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일관된 적용이 아니라 재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 (규정 경직성) 보조금 사업의 경우 강사비를 활동가, 회원, 이사 등에 지급할 수 없어 실제 사업의 전문가는 내부에 있는데 외부에서 강사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인건비 지급도 불가능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상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 (민간 주도 사업의 제도화) 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주민들과 함께 성과를 낸 사업을 행정이 흡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이 제도화해서 수행하면 예산 규모만 커지고 지역사회를 와해시키며, 시민단체가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 비영리 스타트업

- (자본 독점화) 비영리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생태계 내 자원이 풍부해야 하는데, 비영리 생태계 내에서도 대형 단체들이 자본을 독점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따라 회계 및 운영 전반의 방식이 표준화되어 비영리 전반이 획일화된다.

“비영리 생태계에 과도한 독점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상위 5개 단체가 기부금의 80%, 상위 10개가 90%를 가져가고 나머지 수만 개 단체는 10%를 나눠 갖습니다. 자원이 독점되면 새로운 다양성이 만들어지지 않고, 독점 자본의 규칙에 따라 운영 방식까지 모두 획일화됩니다. 회계 처리, 교육비, 심지어 식비 처리 방식까지 다 똑같아지는 거죠.”

- **(자원 불균형)** 비영리 스타트업 관련 기금과 자원(공간, 인력 등)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지역에서는 비영리 스타트업이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 **(활성화 한계)** 스타트업의 특성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꺼려해 자금 확보가 어렵고,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 신규 단체 생성이 쉽지 않다.

●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 **(비영리 경험)** 일자리 및 일경험 지원 사업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경험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로의 진입을 가능케 하는 주요한 통로이다. 경험했던 청년들이 모두 비영리에 남지 못하더라도 비영리에서의 경험과 기억은 어느 분야에서 일하던 좋은 시민, 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된다.

“시민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다 단체를 세우면서 ‘행안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3년 동안 지원받았어요. 사람과 함께하고 사회변화를 위해 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느끼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민단체를 알게 되어 7~8년 회원 활동을 하다가 사무총장님의 권유로 실무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초반 ‘씨티은행-경희대학교 NGO인턴십’을 경험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세월호 활동을 했고,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8개월 근무 후 시민단체 공개 채용으로 현재 4년 차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 **(단체 성장의 계기)** 비영리 일자리가 만들어져 청년들, 새로운 사람들이 조직에 유입되면 단체 내부에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의 기회가 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은 인건비를 계속 지원할 수는 없어요. 대구 사례를 보면 단체가 활동가를 계속 고용하려고 후원 회원 확보와 기금 조성 노력을 하게 됐고, 지원 후에도 저 활동가 때문에 조직을 활성화해야겠다는 위단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 **(지원 사업의 한계)**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로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할 수 없고, 단체에서도 청년들에게 단체의 고유한 목적 사업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크다. 더욱이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올해 사업이 중단되어 청년 활동가 정착에 큰 장애 요소가 되었다.
- **(더 많은 기회 생성)** 유입된 사람들의 생존율도 중요하지만,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해져야 한다. 비영리 인턴십이나 일경험 사업, 중소기업에 준하는 비영리 청년 일자리 지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

(2)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 환경 변화 대응

- **(변화 대응 역량 부족)** 시대가 바뀌었고 단체의 운동 방식도 바뀌었으나 단체가 방법론적으로 사회에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른 영역(기업, 공공, 소셜벤처 등)에 비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새로운 활동 모델이 절실하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에 머물고 있다.

● 단체 조직 기반 취약

- **(재정적 어려움)** 여전히 회원 확보나 기부금 마련이 어려워 재정적으로 열악하며,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
- **(인력 확보의 어려움)** 1인 사무국 체제의 지역 단체들은 사무국장이 버티는 구조로 지속되고 있으며, 퇴사를 하려고 해도 대체가능한 인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는 1인 사무국 체제인 단체들이 많죠. 점점 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단체가 많아요. 사무국장이 힘들다고 하면 대표나 이사장이 찾아가서 술 사주면서 '1년 더 해달라'고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 **(활동가의 고령화)** 활동가 처우가 열악해 새로운 활동가 유입이 어려우며, 기존의 활동가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 남아있는 활동가는 고령화되고 조직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영리조직이 늙고 있어요. 새로운 인력 유입이 적고 소셜벤처나 사회적경제 분야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비영리 리더십 그룹은 잘 안 바뀌는데 직원들은 빠르게 이탈해요. 새로운 리더십이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구조 및 문화

- **(권한위임과 효능감)** 항상 긴박하게 돌아가는 비영리단체 상황이 청년들에게 효능감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권한위임을 통해 스스로 성취하는 기쁨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실패가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 비영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되지만, 실제 단체 내에서는 마음껏 실패해 볼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 않다. 활동가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단체는 혁신과 거리가 멀어진다.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은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비영리 내부는 혁신은 장려하지만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있어요. 국고 보조나 기부자가 많아질수록 새로운 시도가 부담스러워져 예전 관행이 반복됩니다.”

(3) 활동가의 삶과 동기

● 활동가의 동력

- **(사명감이 지속성의 동인)** 단체 내부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보상도 취약하지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크고 작은 사회변화가 활동을 지속하는 힘이 되었다. 해야 할 일이 계속 있고, 이 일이 재미가 있고, 일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만족스럽다.

“힘에 부치는 순간들이 있죠. 업무가 많고 야근도 자주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끔 환기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제가 하는 활동의 참여자들이 ‘올해 너무 재미있었다, 내년에도 하고 싶다’고 말할 때 큰 힘이 됩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지역 활동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만두는 게 맞겠다고 생각할 때쯤, 유가족분들이 고맙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사소한 행동이라 생각했는데, 그 감사 인사가 마음을 흔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그마한 것이라도 변화시킬 때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내가 세상에 살 만한 자격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 **(괜찮은 삶)** 사회문제에 대한 고민과 시대적 사명을 풀어나가는 일은 보람이 있고, 이런 삶도 참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습모임을 만들고 공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보내는 연대와 지지는 큰 힘이 된다.

● 활동가의 난관

- **(재정 불안정성)** 활동가라는 일에 대한 만족감은 크지만, 생계를 충당하기에는 급여가 충분치 않다. 단체가 인건비 지급을 충분히 해줄 수 없어 주 3~4일제를 해도 실제 일하는 시간은 주 7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없어 생계를 위해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재정 문제예요.”

● 경력개발 및 미래 설계

- **(경력 사다리 한계)** 소규모 단체의 경우 단체 설립부터 사무국장이고 20년을 일해도 여전히 사무국장인 경우가 많아 더 이상의 승진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후배들도 선배들의 모습을 보며 희망이 보이지 않아 큰 규모의 단체나 중간지원조직으로 이동하게 된다.
- **(경력개발 여력 부족)** 이후 경력이동을 고려해 경력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실무만으로도 벅차 별도의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
- **(경력 인정)** 비영리단체에서 일했던 경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 전환이나 경험 활용이 어렵다. 선택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궁핍하게 된다.

“시민사회에서의 15년 경력이 재단에 들어갈 때 1호봉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 경력이 직업군처럼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은퇴 이후 삶 준비) 활동가로 일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급여가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도 매우 적다. 오히려 단체 활동의 경험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2) 인식

(1)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중요성

● 공동체적 가치 실현

- (공동체 회복에 기여) 코로나19, 비상계엄 등 사회적 위기 속에서 시민사회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시민들도 비영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다.
- (사회문제 해결) 한국 사회 첨예한 갈등과 차별, 혐오 등의 사회문제에 있어 비영리가 문제를 인식하고 가시화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발전할 수 있다.
-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YMCA가 기본 요금제 반대 운동을 통해 모든 국민들은 기본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받았듯이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시민들의 삶을 실제로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사회 균형발전) 1섹터, 2섹터 외 제3섹터도 발전해야 사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비영리가 산업, 직업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견제와 균형,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미래 일자리 창출

- (일자리 대안) AI 시대 현재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호혜성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현재 돌봄 영역에서 비영리단체의 기여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 (사회문제 해결)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 전문가로서 공익활동가의 역량이 더욱 필요하다.

● 경제적 가치

- (경제적 기여)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기여만 생각하지만, 해외의 경우 GDP 5% 이상의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나타난다. 특히, 경제위기 시에는 비영리부문의 일자리가 더 증가해 전체적인 경제충격을 흡수하고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 **(기회 제공)** 비영리는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시니어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게도 새로운 일자리 기회 및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GDP, 고용 창출 규모 같은 경제적 지표만 계산되더라도 비영리 일자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비영리는 경기를 안 타는 특성이 있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안정적이고, 경력 단절 여성들이 비영리 분야로 진입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2) 비영리 일자리 인식

● 일과 직업으로서의 활동

- **(일자리에 대한 엇갈린 시선)** 공익활동가의 일을 자원봉사나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 정도로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이 크며,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일과 직업이 아닌 사명감 중심의 활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일자리로서 비영리 일자리 논의를 터부시하게 한다. 최근 당사자 운동이 증가하면서 보상이나 여건보다 소명감, 관심사 등에 집중하는 활동가도 나타나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맨날 '봉사'나 '열정 페이'만 강요한다면 어떤 젊은 세대가 시민사회에 오겠습니까?”

“비영리는 전통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언어를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어서, 일자리라는 개념과 밸런스가 안 맞기도 하지요. 내부자들이 이런 용어를 안 쓰고 요구하지 않지요. 내부에서도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직업으로 여기는 것을 터부시하는 시선이 있었지요.”

“‘비영리’와 ‘일자리’라는 말이 함께 붙는 것이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와 다르게 이렇게 활동가의 노동자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인식)** 활동가 인건비가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활동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안팎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단체 활동가도 4대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하나의 직업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다.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시민들은 공익활동을 ‘좋은 일’ 쯤으로 여기거나, 공무원들은 정부 예산을 낭비하는 일로 여기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 비영리를 정상적인 ‘일’로 여기지 않는다.

“시민단체 활동한다고 하면 봉사하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라는 질문도 자주 받거든요. 그리고 ‘네가 그거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냐’는 말도 많이 듣고요. 일할 때 주변의 평가나 인식도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비영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되게 좋은 사람들이야’라고 생각하면서도, 늘 이 사람 뒤에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라는 의심의 눈초리, 이 양면성을 가지고 비영리 영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일자리)** 활동가의 직업성 위상이 활동가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을 지속하려면 생계뿐 아니라 사회적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 표준직업분류에 ‘시민사회 활동가’가 올해 소분류로 상향되어 공식적인 직업으로 인정된 것처럼, 사회 곳곳에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을 알리고 인식시켜야 한다.

(3)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 불명확한 비영리 일자리 개념

- **(법적 정의, 분류 체계 미비)** 비영리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과 범위 규정도 쉽지 않다. 부처마다 비영리에 대한 기준이 달라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통일된 기준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
- **(안정성 보장)** 일자리는 최소한 지속가능한 생계가 가능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수익을 재분배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활동을 위해 투입된 인력의 비용은 제대로 환산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최소한 지속 가능한 생계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활동을 계속 심도 있게 확장해 가면서 안정화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돈을 수반하지 않는 조직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면 그 잉여를 개인이 가지지 않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재투자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활동을 위해 투입된 인력의 '비용'은 제대로 환산돼야 합니다. 그래야 비영리 일자리가 '일자리'라는 개념으로 제대로 접근될 것입니다.”

- **(기본권 수준의 일자리 기준)** 낮은 수입에도 알바를 병행하며 신념으로 버티는 N잡러들도 많지만, 모든 일자리에 적용되는 최저생계비, 기본권 수준의 처우가 비영리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사회 의제들이 정책화되고 예산이 수반되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미 인건비가 지급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활동가들도 스스로를 상근자, 근로자로 인식하고 있다.

3) 조건

(1) 관찮은 일자리 의미

● 관찮은 일자리의 상대성

- **(관찮은 일자리 기준)** 관찮은 일자리는 객관적으로는 임금, 복지, 근무환경 등 객관적 요소도 있지만 직무만족, 워라밸 등 주관적 요소도 강하다. 활동가의 경우 처우에 대한 만족은 낮지만, 활동 자체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 **(기준의 주관성)** 관찮은 일자리의 기준은 개인 상황, 가치관, 세대별로 다르게 인식할 수 있다. 활동이 좋았지만, 결혼하고 육아를 하니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보람과 보상 사이의 절충점이 마련되는 지점이 관찮은 일자리라고 생각된다.

“활동가들은 보람을 얻지만, 노동이 투입되는 만큼 보상도 필요하죠. 이 보상과 보람 사이의 절충점은 표준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분야마다 다르고, 기존 활동가와 신규 진입자의 입장 차이도 커서 정책적으로 표준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 **괜찮은 일자리** 특징

- **(자율성과 존엄성 보장)** 활동가는 높은 급여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라고 인식한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의 열악한 조건의 일자리를 후배들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공익활동가 대상 조사(사회적 협동조합 동행) 결과를 봐도 활동가의 소득은 경력에 비해 매우 낮고 건강 상태도 좋지 못하다. 기본적인 일자리 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활동가에게 처우 개선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일의 의미’가 더 우선이라는 뜻이다.
- **(조직문화와 성장)** 비영리에서 좋은 직장은 영리나 공공과 달리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조직문화, 더 많은 성장 기회, 일을 통한 성취감·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된다.

(2) 비영리 일자리 안정성과 조건

● 비영리 일자리 안정성

- **(경제적 안정)** 최저 생계비 이상의 적정 임금과 고용 안정성 확보를 통해 불안정성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단체도 시민사회도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새로 유입되는 청년 활동가에게는 이러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 **(법적·제도적 지원)** 보조금 사업에 있어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비영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많아져서 지속적 활동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괜찮은 일자리가 되려면 최소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만들고, 생활하고 활동하는 데 필요한 생계를 보장해 줘야 해요.”

“불안정성은 여전히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 문제가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어요.”

● 비영리 일자리 조건

- **(비영리 일자리 의미)** 비영리단체의 급여나 근로조건이 단시간에 현격히 좋아질 가능성은 없다. 활동가 스스로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의미를 찾으며 활동의 동력을 찾아야 한다.

“비영리단체의 급여나 근로조건이 단시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건 ‘우리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적 조건이 좋지 않은 비영리 환경에서는 금방 동력을 잃는데,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코어’가 바로 미션과 비전에서 나오거든요.”

- **(단체 내부의 조건 개선 노력)** 단체 내부적으로는 의미를 찾아온 활동가들에게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비전을 주어야 하며, 활동가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장기회를 제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을 통한 성장은 활동가의 역량으로 축적되어 경력이동이나 전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단체 내부의 위계적인 문화, 끈대 문화 등 활동가의 동기를 저하하는 요인들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어요. 이전 직장에서는 위축됐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스스로 찾게 되면서 주체성이 생겼거든요. 사회구조적 문제를 빨리 인지하고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이런 점들이 많이 알려져서 '괜찮다'고 느끼는 사람이 늘었으면 해요.”

“비영리 일자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효능감을 느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리 분야에서의 성장과는 다를 수 있지만, 일을 통해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 **(사회적 조건 개선 노력)**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익활동가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사회적 문화와 제도적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

4) 변화

(1) 정책 및 제도 변화

● 법과 제도 개선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이름만 지원법이고 실제로는 간섭법, 규제법에 가깝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하다. 법인격을 갖춘 다양한 공익활동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포괄적 개정, 주무관청 중심의 통제 구조,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지원시스템 구축, 지원방식의 획일성과 행정 편의주의, 지원 결정과정의 정치적 개입 금지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사업과 재정규모 확대 및 간접 지원 제도도 내실화되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에만 해당하고, 이름만 지원법이지 실제로는 간섭법, 규제법에 가까워요. 일반 사람들도 비영리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비영리'가 붙으면 다 포괄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민해야 해요.”

- **(비영리 일자리 지원 근거 마련)**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법적 근거나 조례와 같은 명확한 지원 근거가 있어야 예산 책정이 가능하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예측가능한 제도 마련)** 비영리단체 설립 신청을 해도 지자체의 주무관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한다. 비영리에 관한 법 해석과 재량권이 너무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가 있는 이유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비영리에 대한 규제도 지원도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재량적이다. 정책 부처, 법령 체계, 예산 구조에 따라 시민사회에 가해지는 규제와 한계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비영리단체 설립은 '허가주의'인데, 각 지자체의 주무관 재량에 따라 허가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합니다. 법 해석과 재량권이 너무 많습니다. 명확한 정책 지침이 필요합니다. 어떤 곳은 사단법인에 재산 기준을 두기도 하고, 어떤 곳은 안 두기도 하는 등 예측 가능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저는 단순히 예측 가능성이 높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까다롭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까다로운 서류 100개를 요구해도, 그 서류를 다 내고 기준에 맞으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 **(진입장벽 완화)**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 마련도 좋지만, 현행법 중에 활성화를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10개 이상의 보조금 관련 규제 법령과 지침이 적용되며, 사업 운영 시 행정 부담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위축 효과가 발생한다.
- **(차별적 정책 철폐)**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받는 제도적 혜택에서 비영리는 소외되어 있다. 노란우산공제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이 비영리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되는 경우에도 5인 이상 기준으로 소규모가 대부분인 비영리단체는 적용이 어렵다.

“활성화 정책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활성화를 위해 뭘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현행법 중에 활성화를 막는 것을 고쳐라'는 것입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민간위탁법, 보조금 가이드라인, 법인 설립, 기부금품 등 10여 개가 넘는 법들이 시민사회를 옥죄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풀어줘야 풀리는데, 풀지 않아도 지역에서 풀어내는 곳들이 있고, 정책 영역별로도 다릅니다.”

- **(직접지원 외 간접지원 다변화)** 사회적경제영역은 인건비와 같은 직접지원 방식 외에도 컨설팅, 교육 등 간접지원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직접지원은 보조금 사업비, 간접지원은 세제혜택과 우편요금 감면 정도 밖에 없다. 어젠다에 따라 정부와 각을 세워야 하는 비영리단체는 직접지원보다 간접지원 방식의 접근이 더 적합하다. 직접지원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 이어져 활동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공모사업이든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이든, 공공기관이 예산 규모는 정하되 사용 방식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해요. 자율성이 보장되면 NGO에 남으려는 활동가들이 훨씬 늘어날 거예요. 활동가는 창의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며 성취감을 느끼며 성장하거든요.”

● 패러다임의 변화

- **(사람에 대한 투자)** 사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가장 좋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사업비를 지원하면 사업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지만, 사람을 지원하면 그 사람이 알아서 사

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가 생긴다. 인건비를 안 주고 사업비만 주면, 인력은 없는데 계속 사업만 늘어나,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편법으로 빼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잘못된 제도가 불법과 편법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다.

- **(다양한 방식 시도)** 비영리단체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공적 자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기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는 방식, 기회소득·참여소득, 주민세 1%나 법인세 1%를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기회소득과 같이 활동을 노동의 대가가 아닌 존재 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활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모델이 필요하다.

“공익활동가 인건비는 노동 대가가 아닌, 사회 기여에 대한 '존재 보상'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는 자생력을 저해하는 직접지원과 달리, 활동을 응원하는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경기도의 '기회 소득'처럼, '당신 때문에 세상이 정말 좋아졌는데 사회가 충분히 지원 못 해 드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신의 존재를 응원한다'는 의미로 주는 거지요.”

- **(경력 인정)** 4대 보험 증명 요구 등 비영리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행정의 요구가 개선되면 좋겠다. 공공영역 채용이나 인건비 지급(강사비 등) 시에 활동가의 경력이 인정되면 좋겠다. 지자체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채용 시 공무원 5급 이상 경력자를 내세우나 단체 실무자가 그들보다 지역을 더 잘 알고 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
- **(진로체험 교육과의 연계)** 진로체험, 진학지도, 취업 등 구체적인 직업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초·중고 시절 NGO·NPO에 대한 이해, 공익활동가라는 직업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 잡월드, 키자니아, 중고 진로체험 교육, 대학 취업 박람회 등 성장경로에 비영리를 접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정부/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

-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 시민사회 지원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영국의 '제3섹터청'과 같은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민관협치 기구인 시민사회위원회 복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이 수립되어 통합적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주무부처에 따라 분절되어 관리되는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 **(기금 확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금이 몰려 있는데, 사회복지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비영리단체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 또한, 영국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복권 기금에 비영리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시민사회를 지원할 수 있다.
- **(시민사회 용어 정책화)** 대통령 발언, 국정과제 등 '시민사회'라는 단어가 정책화되어 언급되어야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된다. 비영리 스타트업의 경우도 정부에서 정책 언어화하여 명시하면 정부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인지해서 민간 펀드 유치에도 영향을 끼친다.

● 지방정부의 혁신

- **(새로운 시도)** 단체 운영비 지원에 있어 상위법에 얽매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어 규제의 틈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경우도 지역 맞춤형으로 바꾸어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으로 바뀌면 좋겠다. 환경부의 경우 10~20% 정도의 예산을 영수증 증빙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관광공사에서 축제 사업 시 단체에 기획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지금은 보조금법 제한을 받지만, 보조금이 아닌 다른 방식의 매칭 사업으로 단체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성하거나 관련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든 유권 해석이든 규제의 틈을 뚫고 가는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중 가장 중요한 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 **(경기도 연대기금 조성)** 경기도의 경우 160여 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도, 시민사회, 기업이 함께 뜻을 모으면 수천억 규모의 펀드 조성도 가능하다. 이를 활용해서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공익활동가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금액이 많지 않아 실효성이 높지 않겠지만 주민세 1%를 공익단체에 지원하거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의 일부를 공익활동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

“세금의 일부를 공익 활동에 투자하도록 하는 근거 체계를 만들고, 지역 단위에서 논의 체계를 만들어 배분하는 방안을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세하고 열악한 비영리단체를 위해 영리 기업의 법인세 이익 중 1%라도 비영리에 투자하도록 하는 계정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주민세 1% NPO 지원은 우리나라는 당분간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갈등은 매우 심화하여 방사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제도가 만들어지려면 갈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매우 심한 상태라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세 자체가 적어서 동네마다 모아도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규모화가 어렵습니다.”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공익활동지원센터 역할 확대)**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유일한 창구로서 센터의 예산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 구조를 확보하여 지역 내 단체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별 단체가 할 수 없는 제도와 정책에 관련된 일을 통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 백본 조직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 **(공익활동지원센터 자율성)**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행정의 체계에 구속되지 않고 단체들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더 자율적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예산 규모도 늘리고 예산 사용의 자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
- **(비영리 일자리 인식 확산)**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사회가 메시지를 소통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단체의 활동 성과를 중심으로 적극 알려야 한다.

“미디어나 드라마에서 시민단체 활동가가 직업으로 제대로 표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취업 박람회 같은 자리에서도 비영리 활동을 알릴 기회가 적어요. 활동가라는 직업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시민단체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더 보여주고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나 장이 필요해요.”
 “경기도가 비영리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싶다면 다양한 도정 채널을 활용해 ‘비영리 일자리는 이런 것이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정보를 알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히, 새롭게 진입하려는 사람들은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일할 사람이 필요한 단체가 서로 매칭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하다.
- **(비영리 스타트업)** ‘다-아-루-브(다음세대재단-아산나눔재단-루트임팩트-브라이언임팩트)’ 파이프라인을 따라 단계별로 성장하고 있는 조직들도 나오고 있다. 비영리 스타트업 성장주기를 고려할 때 극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많은 스타트업이 발굴·생성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그중에 살아남는 단체들이 생겨난다. 스타트업을 잘 지원하려면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같은 인큐베이터들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한다.

(3) 세대별 접근

● 청년 활동가

-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활동가의 정착 및 성장을 위해 최소 2년 이상의 장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 해주어야 한다. 알바처럼 하루 몇 시간이 아니라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할 수 있어야 제대로 사업을 수행해 볼 수 있다.
- **(비전 공유 및 교육)** 청년 활동가가 단체에 유입되었을 때 단순히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단체의 비전, 지역사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육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 등 기본적인 교육, 집합 교육 외에도 활동가들이 직접 일을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내용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새로운 청년을 유입할 때 단순히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남부터 가치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 과정을 통해 실제로 활동가로 자리 잡는 경우도 많아요.”

“지원 사업에서는 형식적인 교육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오히려 단순한 집합식 교육보다는, 청년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학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 **(좋은 경험 제공)** 비영리가 단순한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일의 경험, 성장과 맞물려야 온전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내에서의 성장 경험을 위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청년 활동가의 성장 트랙을 개인, 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 중견 활동가

- **(번아웃 예방 및 지원)** 활동가의 번 아웃을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 비용지원, 이탈이 심한 5년 차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연식년 유급 휴가 제도 등이 도입되면 좋겠다.

“보통 비영리 활동가들이 가장 소진되어서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는 때가 약 5년 차쯤이라고 생각해요. 5년 차에는 소진 예방 프로그램을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가들의 번 아웃 문제도 심각한데, 상담이 필요한 활동가들을 지원해 줬으면 해요. 여행 가는 쉽 프로그램보다 상담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개별적으로 내 얘기를 풀어놓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 **(사회적 지원)** 소규모 단체는 사무국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심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 공공에서는 어렵더라도 민간기금을 활용해 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면 좋겠다.
- **(정부 지원)**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판단하지만, 단체의 특성상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반상근이 많은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온전한 일자리를 판단하지만, 반쪽짜리 일자리라도 시민운동과 생계 일부분이 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월 10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다면, 나머지 최저임금 기준 100만 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가입액을 정부에서 보조해 줘서 노후보장을 도와주는 것도 좋습니다.”

● 리더 활동가

- **(공공부조)** 대부분의 활동가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공공부조 방식의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은퇴 후 창업 시 공제회를 통해 융자 조건을 우대해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활동가들은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서 유리한 환경만 조성해 주면 나이 들어서도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창업 시 초기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공제회를 통해 융자 조건을 좋게 해주는 등 제도적으로 활동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있어요.”

- **(활동가 경험 사회적 공유)** 비영리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에 대한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도록 경험과 지혜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는 전문기관도 필요한 것 같다.
- **(새로운 시니어 유입)** 기본적인 생계의 안정성을 갖춘 은퇴자 및 시니어들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다. 시민사회 활동가 출신의 은퇴자가 새롭게 유입되는 시니어들과 매칭되어 이들의 연착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4) 시민사회 변화 전략

● 시민사회 위상 정립

- **(비영리 일자리 중요성 알리기)** 비영리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정부와 기업,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증명하고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유와 이해가 가능해야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
- **(목소리 내기)**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사회 곳곳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단위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 내부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누군가는 정책 결정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 **(시민사회 자구 노력)**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도 4대 보험을 내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부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될 필요가 없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 연대와 협력

- **(연대활동 참여)** 비영리의 지속가능성은 단체끼리의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단체 고유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네트워크 활동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활동가들이 대외적인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우호적이지 않은 단체들도 있다.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싶어도 잘 보내주지 않는 단체들도 많아서 안타까워요. 활동하면서 서로 나누고 발전할 기회가 많은데,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이 네트워크를 할 때 어떤 분은 연차 쓰고 왔어요. 안 보내주니까.”

● 단체 경쟁력 확보

- **(사람 중심)** 정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없어지기도 한다. 비영리단체들 스스로가 정책 지원이 없어도 사람을 남길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온 사람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일자리 조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은 정책적인 접근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남기려면 일단 사람이 와야 하니, 사람을 오게 하는 방향으로 지역에서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 **(비전 공유)** 의미를 찾아온 사람들이 의미를 찾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구성원들이 함께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 **(기술활용)** AI와 같은 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부족한 비영리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AI에 간단한 실무를 맡기는 등 기술을 잘 활용하면 소규모 혹은 1인 단체라 하더라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

5) 세대별 인식 차이 비교

- 경력에 따라 구분된 세 그룹, 청년 활동가(경력 초기), 중견 활동가(경력 10~20년), 리더 활동가(경력 20년 이상) 간에 비영리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인식과 욕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고 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표 4-6> 세대 간 인식 차이 비교

구분	청년 활동가	중견 활동가	리더 활동가
일자리 안정성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 매우 큼	지속가능성 고민, 후임 채용 어려움	제도적 안정 필요성 인식, 자산화 필요
임금 및 노동조건	저임금·과중노동 문제 심각하게 인식	급여 현실화 필요, 병행 직업 고민	공공 보상 체계 필요, 연금 등 대안 논의
조직문화	수평적 문화 긍정적이나 변화 요구 큼	수직적 구조 완화 및 민주적 운영 필요	조직 지속성과 세대 간 합의 강조
비영리 일자리 인식	직업으로 인식 부족, 자원봉사와 혼동	직업성과 공공성 모두 고려 필요 인식	비영리 직종 공식 인정 필요
정책적 지원 필요성	인건비 지원 중심에서 체계적 지원 요구	조직 내부의 고용 구조 개선과 외부 정책적 기반 마련	제도 개편과 단체 자율성 확보 강조
세대 간 연계	멘토링 및 안정적 진입 구조 요구	청년 흡수 어려움, 경력 전환 고민	세대별 경로 설계 및 시니어 일자리 고민

- 청년층은 진입장벽 해소와 직업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며, 장기적 고용 안정성과 커리어 경로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중견 활동가는 단체 실무 책임자로서 후임 양성에 대한 고민 및 경력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 소규모 단체의 경우 홀로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역할 고립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리더 활동가는 비영리 생태계 전체 차원에서 조망하며 조직 지속성과 세대 전환, 시민사회의 자정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였다.
-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단순한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정책 방향, 조직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세대 간 인식과 욕구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 설계 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방안 도출,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에도 세대 맞춤형 멘토링 및 리더십 프로그램 설계가 요구된다.

3. 요약 및 시사점

1) 범주별 시사점

- **(실태)** 비영리 일자리의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조직이 외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일자리 지원 사업의 한시적 고용 및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구조는 활동가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재정 중단 시 조직 해산이나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조직 운영은 수직적 문화와 리더 중심 구조가 여전하여 중간관리자 양성과 내부 권한 분산이 부족하다. 활동가 개인의 경우,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지만, 낮은 보수와 경력 개발 기회의 제약, 생활 안정성 부족 등으로 인해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태는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전문성 확보에 장애가 되며, 안정적이고 자립가능한 재정 구조와 조직 운영 시스템, 그리고 활동가의 생애주기별 경력 설계 지원 체계 구축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 **(인식)**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공공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자원봉사나 임시직의 연장선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특히 청년 세대는 진입 단계부터 생계 불안을 우려하여 직업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대중도 비영리 일을 ‘직업’으로 보기보다는 ‘봉사’나 ‘활동’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 부재와 직업적 위상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공공적 가치와 사회 기여도를 가시화할 수 있는 평가·보상 체계 마련과 함께, 청소년기부터 비영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진로 교육과 커리어 모델링이 병행되어야 한다.
- **(조건)** 비영리 일자리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끼는 활동가들이 많지만, 안정성이나 성장성 측면에서는 ‘괜찮은 일자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계약직 위주로 고용되어 있으며, 인건비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동일 직무라도 처우가 들쭉날쭉한 실정이다. 이는 장기적인 경력 설계와 직업적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만들며, 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도 ‘괜찮은 일자리’의 조건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고용 구조를 위한 재정지원과 고용 흡수 시스템 설계, 그리고 공공 차원의 고용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 **(변화)** 비영리 일자리를 둘러싼 정책 및 제도는 여전히 영리 중심의 법체계에 기반하고 있어, 고용 지속성과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영역에 특화된 고용 제도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활동가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머물게 된다. 중간지원조직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핵심 중간 매개체로서의 중요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실행 권한과 자율성이 부족해 민관협력이 원활하지 않다. 또한, 세대별로 활동가들의 입직·이직·은퇴 경로가 달라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과 조직 혁신 등 민간 주도의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비영리 일자리를 둘러싼 변화는 법·제도의 개선, 정책 집행력 강화, 세대 맞춤형 경력 지원, 시민사회 내 혁신 실험과 자정 노력이라는 다층적 대응을 통해 가능하다.

2) 종합적 시사점

- 비영리 일자리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기반이나, 제도적·구조적 조건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비영리 영역은 복지, 교육, 환경, 인권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직업적 지위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영리 일자리는 ‘의미 있는 일자리’이지만, ‘좋은 일자리’의 조건(안정성, 보상, 성장성 등)을 충족하지 못하며, 제도적 보장과 사회적 인정이 결여되어 있다.
- 활동가의 경력 지속성과 전문성 축적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청년은 비영리 분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렵고, 중견 활동가는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이며, 리더는 다음 세대 양성의 부담을 안고 있다. 세대 간 역할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지 않아 활동가 경력 경로가 단절되거나 소모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중간관리자 계층의 고립과 소진이 조직 지속성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진입-성장-이동-전환을 고려한 경력 경로 기반의 지원 시스템 설계가 시급하다.
- 비영리조직 내부의 문화와 구조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많은 조직이 리더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며, 내부 권한 분산과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부족하다. 중간관리자는 리더의 뜻을 실현하는 ‘전달자’로만 존재하거나, 실무자와 리더 사이에서 역할 고립화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인력 유출과 리더십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민주성 강화, 후임 양성 체계 구축, 역할 재설계 등이 필요하다.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제도적 분류·보장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비영리 일자리는 여전히 ‘자원봉사’나 ‘임시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청년층은 생계 불안으로 진입을 주저한다. 2025년 1월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서 ‘시민사회 활동가’가 소분류 단위로 격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국가 공식 통계에서 비영리 일자리는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어 정책 수립·통계 분석·재정지원 등에서 사각지대로 남는다. 법제화, 분류체계 수립, 명확한 정의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 중간지원조직과 정부는 비영리 고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질적 중간 매개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재 정책은 보조금 지원, 단기 사업 중심으로 일시적 고용을 만들어내는 데 그치며, 고용 유지와 생태계 조성으로 연결되지 못한다. 중간지원조직이 현장의 문제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 간 연결을 조율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집행 자율성 확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험과 혁신이 요구된다. 시민사회의 기대와 요구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 전환, 세대 간 갈등, 투명성 요구는 조직 운영 방식 전반을 재설계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전통적 운영 방식에 머무를 경우 신뢰 상실과 활동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 혁신적 운영 모델 실험, 세대 융합 전략이 필요하다.
- ‘비영리 일자리는 사회적 대안’이라는 관점을 기반으로 정책과 인식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실천 현장이라는 점에서 공공 일자리와는 다른 가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 일자리의 고용 전략을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회혁신 정책에

통합하는 관점의 전환이 요구된다.

<표 4-7>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요약

범주	주제어	핵심 내용	시사점
실태	비영리 일자리 현황	자립적 구조 부족, 지원정책 부재, 일자리 생성 기회 부족	장기 지원 구조 및 지속성 기반 정책 설계
	비영리단체 조직 운영 및 조직문화	수직적 권위 문화, 리더 의존형, 중간 관리자 육성 부재	조직문화 개선, 중간관리자 교육 체계 강화
	활동가의 삶과 동기	사명감 높으나 소진·생계 곤란, 이탈률 높음	생애주기별 설계와 생활 안정 시스템 구축
인식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중요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	공공재 인식과 제도적 보상체계 마련
	비영리 일자리 인식	자원봉사와 혼동, 임시직 인식	진로 교육·사회적 홍보 강화
	비영리 일자리 개념 정립	법적 정의·분류 체계 미비	법적 지위 확립, 제도 기반 강화
조건	괜찮은 일자리의 의미	의미·안정성·성장성 부족	평가 체계 마련, 조직문화 개선
	비영리 일자리 안정성과 조건	계약직/단기 일자리 중심, 재정 구조 불안	지속가능한 구조적 고용 흡수 시스템 설계
변화	정책 및 제도 변화	수익금 규제, 보조금 중심, 지속성 부족	법제도 정비, 규제 완화
	공공(정부/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권한 제한, 협력체계 미흡	정책 집행력 강화, 거버넌스 제도화
	세대별 접근	진입 장벽, 경력 전환 제약	경력 주기별 정책 도입, 보장 논의
	시민사회 변화 전략	디지털 전환, 신뢰 회복 필요	자정 노력 및 조직모델 실험

V.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및 사회경제적 기여 효과 분석

1.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선행연구 검토

- 해외 연구들은 비영리부문이 고용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유급 비영리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는데, 네덜란드는 비영리부문의 유급근로자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10.3%로 유럽 최고 수준이다. 유럽 29개국은 비영리부문이 전체의 7.8%이며, 세계 31개국 평균은 4.5%이다(박준 외, 2020).
- 국내에서 비영리 일자리 규모를 추계한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는데, 연구자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 규모의 차이가 크다. 이는 비영리부문의 범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자마다 적용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인데, 주요한 첫 번째 차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포함 여부 및 범위, 둘째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포함 여부 및 범위 등의 처리에 따른 결괏값이다. 또한 연구마다 활용한 원자료가 상이하며, 하나의 연구방법이 지속되지 않아 규모 추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법상의 신뢰도 이슈가 있는 연구도 있다. 기존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1> 국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계 선행연구

출처	비영리부문 범위 설정 및 조건	주요결과
박태규 (2006)	- 비영리부문에 국제비교연구 틀을 적용하여 <u>협동조합 제외함</u> 2003년 국민계정자료, 통계청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자료로 보완함	임금지급 고용자수 기준 총 58만 5천명 서비스분야 총 고용의 9.5% 비농업분야 총 고용의 2.9% (교육연구 38.4%, 의료보건 30.8%, 사회복지 8.3%, 오락문화 4.8%, 전문가단체 3.8%, 시민사회단체 2.0% 순)
김혜원 외 (2008)	- 제3섹터 개념을 적용하여 <u>학교법인, 특수법인, 정부출연기관, 의료법인/협동조합, 공공부문 포함</u>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고용보험DB, 한국노동패널, 서비스업총조사, 서비스업 통계조사 등 활용	총 82~108만명 비농업분야 취업자 대비 3.8~5.1%

노대명 외(2010)	- 교육단체, 종교단체, 의료기관, 협동조합 제외 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2006년 서비스업 기초통계조사 원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8년 제3섹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 활용	한국의 제3섹터 고용규모 : 448,083명 (기타부문 208,816명, 보건복지부문 239,267명) *보건복지부문 : 장애인, 노인, 아동보육, 지역복지 자원봉사, 자활일자리사업, 보건의료, 여성복지, 노숙지원, 기타복지 2007년 총지출은 약 26조원으로 추정(국내총생산의 12%)
더나은미래 (2017)	제3섹터 개념 적용하여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마을기업, 자활기업 포함함	총 71만 5,328명(상근 근로자의 5% 비중) 전체 GDP의 13% 비중 (공익법인 약 62만 1천명, 사회적기업 약 3만 8천명, 협동조합 약 2만 4천명, 마을기업 약 1만 2천명, 자활기업 약 1만 5천명, 비영리민간단체 약 6천명)
장윤주 외 (2018)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정보 취합하여 중복단체 현황 정리(중복비율 약 2.5%)	총 33,679개 (비영리법인 21,652개, 비영리민간단체 12,887개, 중복 860개)
박준 외 (2020)	- 비영리부문으로 NGO, 비영리법인(민법, 공익법인법 등 일반법 규율 대상), 마을공동체, 자원봉사단체 포함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은 제외 - 국제기준 적용하고 더나은미래 자료 수정하여 추정	총 고용의 2.7% 비중 (미국, 유럽 등 31개국과 비교 시 23위로 추정)
행정안전부 (2021)	- 기부금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포함 - 법인세법의 요건과 범위를 중심으로 분류 - 국세청 명부(9,542개, 기부금 모집 및 지출사업체)와 기획재정부 명부(4,737개, 지정기부금단체)를 대상으로 중복확인 후 통합 명부(12,618개) 구축	총 기관 12,618개, 종사자 826,627명 경기도 기관 1,582개(12.5%) 경기도 종사자 99,479명(12%)
통계청 (2024)	- 민법과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 기타법인, 공공기관 및 협동조합을 포함 - 대기업, 중소기업, 비영리기업으로 구분하여 분류(2023년 기준)	비영리기업 570.2만 개 (21.3%) 전년도 대비 9.3만개 증가

출처: 오현순·김소연(2021). p.274 재구성

- 비영리 일자리 규모를 파악하는 실증연구 외에, 김소연 외(2023)는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 영역 전체의 일자리를 측정할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산업분류별 사업자구분코드 및 법인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제시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5-2>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추출 방법

제10차 산업분류상 대분류 (하위 중분류코드)		시민사회 영역		
		비영리 비정부	영리로 분류되는 사회적경제 ¹⁾	미분류·미등록
A I N	농업, 임업 및 어업(01~03); 광업(05~08); 제조업(10~3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36~39); 건설업(41~42); 도매 및 소매업(45~47); 운수 및 창고업(49~52); 숙박 및 음식점업(55~56) 정보통신업(58~63); 금융 및 보험업(64~66); 부동산업(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사업자구분코드(80,82,89) ²⁾ + 법인분류번호(51) ³⁾	○비정부·비영리·공공·공 익·사회적경제 활동 등을 영위하는 다음의 경우 • 사업자구분코드 01~79, 90~99 (개인사업자) • 사업자구분코드 81, 85~88 (영리법인) • 미등록단체·개인 ○자원봉사·기부 활동 주체·대상의 산업분류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P I R	교육 서비스업(8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 사업자구분코드(80,82,89) + 교육서비스업(85) - 일반 교습학원(855) - 기타 교육기관(856) +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공연시설 운영업(9011) + 공연단체(9012) + 자영 예술가(9013) - 사업자구분코드(83) ⁴⁾ + 법인분류번호(51)	
		• 협회 및 단체(94)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 사업자구분코드(80,82,89) + 법인분류번호(51)	
T U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97~98); 국제 및 외국기관(99)			

1) 사회적경제 부문 중 영리로 분류되는 사업체 등 :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중 사회적기업 등

2) 사업자구분코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80), 비영리법인(82), 종교단체(89)

3) 법인분류번호(51)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4) 사업자구분코드(83)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출처: 김소연 외(2023)

- 김소연 외(2023)의 연구방법은 정부 및 지자체, 영리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전체를 포괄할 수 있으므로, 정책 필요나 연구 목적에 따라 특정 범위로 비영리부문 및 일자리 규모를 추출하기 용이하다. 또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업관련 데이터 활용을 제안하고 있어, 원자료의 안정적인 확보로 향후 규모 추계 연구로의 확장이 가능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분류별 사업자구분코드 및 법인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영역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를 추계한다.

2.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추계 기준 수립

1) 연구설계

1) 대상 및 범위 설정

- 모집단: 기업통계등록부 등록 사업체 종사자

- 기업통계등록부는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구축한 기업 및 사업체 단위의 모집단 자료이다.
- 행정자료는 행정 및 공공기관이 관련 법령에 의해 수집한 자료로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자료 및 과세자료, 4대 보험자료 등이 있다.
- 기업통계등록부는 연간, 분기, 월간으로 자료가 구축되는데, 이중 연간 기업통계등록부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등 포괄적인 행정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더욱 유용하다.
- 선행연구(김소연 외, 2023)에서 전국사업체조사와 일자리행정통계를 활용하여 일자리 규모를 추계한 결과가 있다. 그러나 일자리행정통계의 경우 사업체가 아니라 기업체 단위로 지역별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 경기도 내 사업체만을 추출해야 하는 본 연구를 비롯하여 지역 연구에서는 활용되기 어렵다. 전국사업체조사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자료 추출이 될 수 없어 설정된 비영리부문을 추출할 수 없다.
- 기업통계등록부는 전 산업에 걸쳐 공공 및 민간, 영리 및 비영리기관과 관계없이 행정자료와 통계조사를 통해 수집된 모든 기업을 포괄하며, 사업체 단위, 지역 단위 추출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4,5번째 자리)와 법인등록번호(5,6번째 자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분석을 위해서는 명부추출 또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한 이용만 가능하며, 사업체 명부는 건당 30원의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예산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통계데이터센터를 활용하였다.

- 시간적 범위: 2022년, 2023년

- 연간 기업통계등록부의 경우, 연구가 진행되는 현재 가장 최근 자료인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를 활용한다.
- 단,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 측정을 위해 활용하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최근 자료가 2022년 이므로, 4절 비영리의 경제적 기여 효과에서는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활용한다.

- 공간적 범위: 경기도

2) 자료 처리 방법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중 경기도 내 사업체 추출

- 2023년 내 1일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한 사업체 모두 포괄

●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코드에 따른 추출

구분	코드	내용
개인사업자	80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아파트관리사 무소, 다단계판매원 등)
	89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법인사업자	8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 법인분류번호 기준으로 추출

법인종류	법률근거	법인분류	분류번호
민법법인	민법	사단법인	21
		재단법인	22
특수법인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31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32
	의료법	의료법인	33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51
		사회적협동조합	61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기타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 ⁴⁶⁾	71

- 김소연 외(2023)는 분류번호 51, 61, 71의 하위유형은 명칭을 통해 확인,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사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으며, 기업통계등록부 명부를 별도로 구입할 경우에만 확인 가능하다. 이는 본 연구의 처리가능 범위를 넘어서므로 51, 61의 하위유형의 구분 없이 포함해 진행하며, 71은 추출되는 데이터 건수를 확인하여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 (법인분류번호 없는 경우) 업종코드 기준으로 추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협회 및 단체	941.산업 및 전문가 단체	9411.산업 단체	94110.산업 단체
			9412.전문가 단체	94120.전문가 단체
		942.노동조합	9420.노동조합	94200.노동조합
			9492.정치 단체	94920.정치 단체
				94931.환경운동 단체
		949.기타 협회 및 단체	9493.시민운동 단체	94939.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46) 기타 개별법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기타특수법인 등 포함

3) 자료 분석 방법

- 조직구분, 조직형태, 대표자 성별, 대표자 출생연도, 폐업여부, 시·군·구, 사업체 활동상태, 사업체 매출금액, 산업분류1, 사업체수, 개업연도 등 항목을 활용하여 빈도분석한다.
- 비영리부문의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수를 상용 및 임시·일용근로자로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를 추정한다.
 - 상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이며,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 분류 처리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익 배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조직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고 수행하는 유급노동으로 정의한다. 이는 자원봉사나 임시 활동과 구별되며, 사회문제 해결, 공동체 지원, 시민 권익 보장 등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직업 활동’이다.
- 이와 같은 실체적 정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익 활동을 하지만, 수익 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조직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회적가치를 추구, 수익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하여, 영리부문에 걸쳐져 있지만, 수익추구가 주목적이 아닌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포함해야 한다.
- 그러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나 법인등록 분류번호를 통해 특정할 수 없다(사단법인시민, 2023, P.128). 다시 말해,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을 분류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으므로 일괄 포함시키거나, 제외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업자구분번호의 80, 89, 82 또는,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괄 포함한 업종코드(85, 87, 9011, 9012, 9013, 94)에 속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이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제외하고, 생협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법인등록 분류번호 ‘51’과 ‘61’에 섞여 있어 특정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협동조합 내 특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포함한다.
-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의 행정자료(사업자등록번호와 사회적기업인증번호 등이 함께 포함된 데이터)가 기업통계등록부 등과 연계되면, 비영리부문을 세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2) 연구 과정

1) 데이터 정리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데이터 건수(전국) : 12,003,492건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데이터 건수(경기도) : 3,262,054건
 - 행정구역분류시도코드 경기도(31)로 추출, 결측값 560건은 제외하였다.
-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구분표에 따른 데이터 건수 : 167,085건

- 사업자구분코드 80,82,89 또는 법인분류번호 51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 P,Q,R,S 중 앞의 <표 5-2>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 단, 교육서비스업(85) 중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외에 교육지원 서비스업(857 / 8,433건)도 영리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분류 P~S에 속하는 코드별 세부 항목은 <표 5-4>와 같다.
- 기준별 건수를 확인하면 다음의 <표 5-3>과 같으며, 중복 건수 및 시스템 결측값 제외하면, 167,085건이다.

<표 5-3>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추출 건수

구분	건수(건)	비고
사업자구분코드 80	50,184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기타단체 중 종교단체 이외 단체
사업자구분코드 82	96,092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자구분코드 89	6,227	법인 아닌 종교단체
법인분류번호 51	4,757	협동조합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 P	전체 101,551 중 9,086	교육서비스업(85) -일반 교습학원(855), 기타 교육기관(856), 교육지원 서비스업(857)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 Q	전체 56,895 중 40,945	사회복지서비스업(87)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 R	전체 56,362 중 11,468	공연시설 운영업(9011) 자영 예술가(9013) -사업자구분코드(83)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 S	전체 206,158 중 89,865	협회 및 단체(94)

● 민간 비영리부문이 아닌 데이터 제외한 **연구범위 데이터 건수: 163,482건**

- 167,085건 중 사업자구분코드(83) 및 조직형태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건수가 3,603건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자구분코드가 83인 경우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지자체조합으로 등록된 사업자임을 나타내며, 기업통계등록부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을 의미한다.
- 3,603건 중 98%(3,532건)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이며,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가 1.3%(46건)를 차지하였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603건 중 96.6%(3,479건)가 교육서비스업이며, 유아·초등·중등·교육기관과 일반 고등학교 및 대학, 특수학교, 그리고 대안학교에 속한다.
- 본 연구의 대상이 ‘민간’ 비영리부문이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3,603건은 제외하고 총 163,482건을 분석하였다.

<표 5-4> 연구에 포함된 산업분류 코드 및 항목

코드	항목	코드	항목
P	교육 서비스업(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5	교육 서비스업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51	초등 교육기관	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11	유아 교육기관	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110	유아 교육기관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8512	초등학교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85120	초등학교	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	중등 교육기관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87122	정신 질환, 정신 지체 및 약물 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11	중학교	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12	일반 고등학교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2	특성화 고등학교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특성화 고등학교	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85222	공업 특성화 고등학교	8721	보육시설 운영업
85229	기타 특성화 고등학교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853	고등 교육기관	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530	고등 교육기관	87291	직업 재활원 운영업
85301	전문대학	87292	종합복지관 운영업
85302	대학교	87293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
85303	대학원	87294	사회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업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8541	특수학교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85410	특수학교	94	협회 및 단체
8542	외국인학교	941	산업 및 전문가 단체
85420	외국인학교	9411	산업 단체
8543	대안학교	94110	산업 단체
85430	대안학교	9412	전문가 단체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94120	전문가 단체
9011	공연시설 운영업	942	노동조합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420	노동조합
9012	공연단체	94200	노동조합
90121	연극단체	949	기타 협회 및 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491	종교 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4911	불교 단체
9013	자영 예술가	94912	기독교 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4913	천주교 단체
90132	비공연 예술가	94914	민족 종교 단체
		94919	기타 종교 단체
		9492	정치 단체
		94920	정치 단체
		9493	시민운동 단체
		94931	환경운동 단체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9499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94990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2) 데이터 처리

- 데이터 처리 및 분석 등의 전 과정은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진행하였다.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기업통계등록부의 1차 추출처리는 R(version 4.4.1)을 활용하였으며, 변수 및 코드의 한글 활용으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의 분석 및 검증 등은 SPSS(version 25)로 이루어졌다.

3.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정

1)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특성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에 조사된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를 차지한다.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직 구분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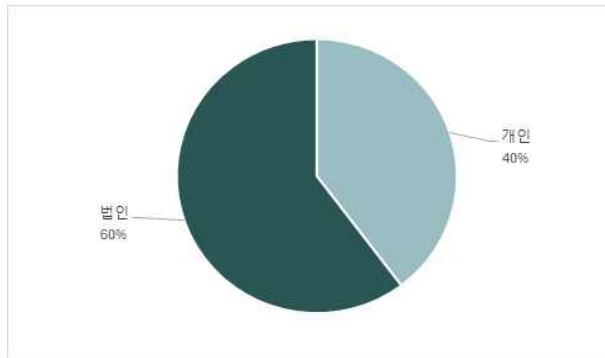
- 전체 163,482곳 중 법인은 60.3%, 개인은 39.7%였으며, 조직형태로는 회사이외법인(59.8%) > 비법인단체(34.2%) > 개인사업체(5.5%) > 회사법인(0.5%) 순으로 나타났다.
 - 회사이외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
 - 비법인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법인이 아닌 교회 및 암자
 - 개인사업체: 개인이 소유·경영하는 사업체를 말하며,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포함
 - 회사법인: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직구성원의 신분이 공무원인 기관(기업통계등록부 항목에 포함되나 본 연구에서는 제외)

<표 5-5> 조직구분별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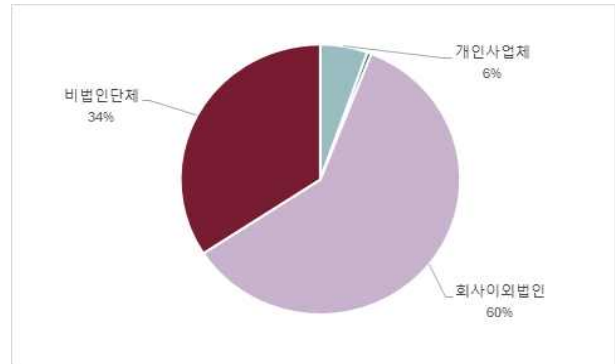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개인	64,902	39.7
법인	98,580	60.3
전체	163,482	100.0

<표 5-6> 조직형태별 사업체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개인사업체	8,946	5.5
회사법인	760	0.5
회사이외법인	97,820	59.8
비법인단체	55,956	34.2
전체	163,482	100.0



[그림 5-1] 조직구분별 사업체



[그림 5-2] 조직형태별 사업체

- 전체 사업체 중 공공기관에 속하는 사업체는 2,098곳, 전체의 1.3%인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정부기관 및 지방정부비영리단체가 760곳(36.2%)으로 가장 많았다.
 - 중앙정부기관 : 부·처·청 등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지방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지배를 받는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
 - 사회보장기금 : 정부기관이 통제 가능한 사회보험 제도(국민건강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표 5-7> 공공기관유형별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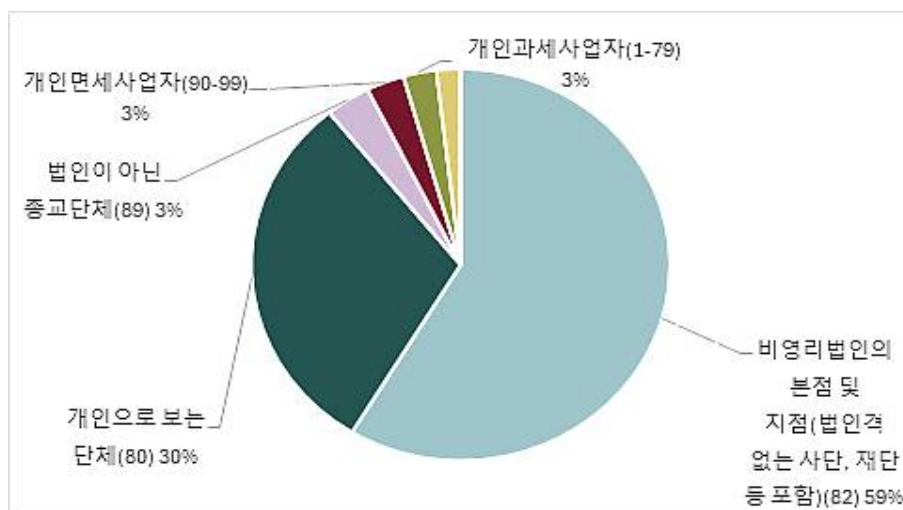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중앙정부비영리단체	266	12.7
지방정부기관 및 지방정부비영리단체	760	36.2
사회보장기금	109	5.2
공기업비금융공기업중앙	559	26.6
공기업비금융공기업지방	381	18.2
공기업금융공기업중앙	23	1.1
전체	2,098	100.0

(2) 사업자구분코드

- 사업자구분코드로 확인되는 사업체는 162,776곳으로, 비영리법인(58.7%) > 개인으로 보는 단체(30.5%) >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3.5%) 순으로 확인된다.

<표 5-8> 사업자구분코드별 사업체⁴⁷⁾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 포함)(82)	95,539	58.7
개인으로 보는 단체(80)	49,624	30.5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89)	5,674	3.5
개인면세사업자(90-99)	4,761	2.9
개인과세사업자(1-79)	4,160	2.6
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81,85-88)	2,996	1.8
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84)	22	0.0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83)	0	0.0
전체	162,776	100.0



[그림 5-3] 사업자구분코드별 사업체

(3) 법인분류번호

- 법인분류번호로 확인되는 사업체는 전체 163,482곳 중 22,399곳(약 13.7%)으로, 사단법인(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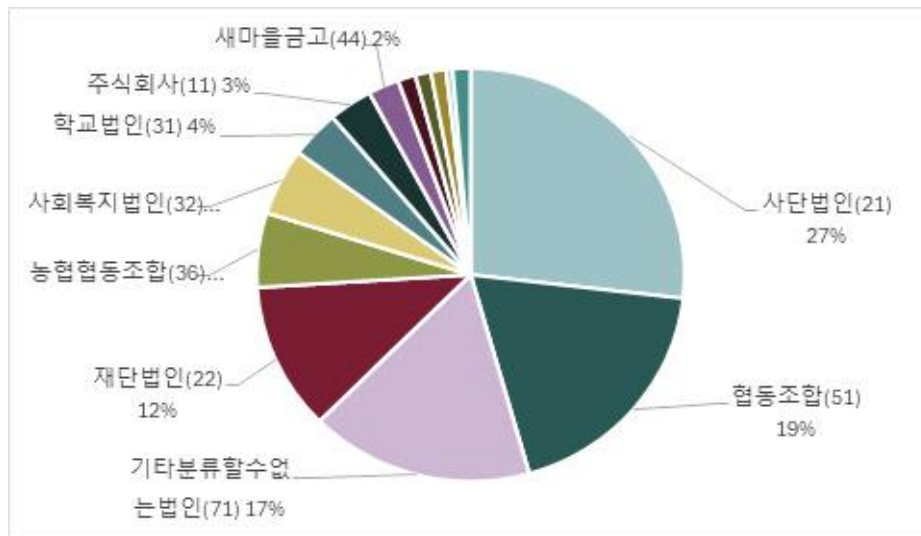
47)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는 총 163,482곳이나, 변수에 따라 결측치가 있어 전체 값에 차이가 발생하며, 비율도 결측치를 제외한 유효 퍼센트로 제시한다. 이하 제시되는 표도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 협동조합(18.8%) >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16.9%) > 재단법인(11.5%)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71)에 속하는 3,784건은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이 중 99.3%(9,756건)은 사업자구분코드 82(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에 해당한다.
- 기타로 분류한 사업체 302곳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산업협동조합(38) 66곳
 - 지역산림협동조합(39) 47곳
 - 공업협동조합(50) 30곳
 - 노동조합(43) 23곳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 화물자동차운수사업협회·연합회·공제조합(49) 23곳
 - 상공회의소(47) 21곳
 - 특별법에 의한 은행(35) 20곳
 - 외국법인 기타(85) 20곳
 - 합자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13,14,15) 13곳
 -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61) 10곳
 - 영농조합법인(54) 10곳
 - 법무법인, 회계법인(46,34) 8곳
 - 법인종류별 분류번호로 확인되지 않는 번호(23,42) 11곳

<표 5-9> 법인분류번호별 사업체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사단법인(21)	6,008	26.8
협동조합(51)	4,204	18.8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71)	3,784	16.9
재단법인(22)	2,583	11.5
농협협동조합(36)	1,306	5.8
사회복지법인(32)	1,172	5.2
학교법인(31)	837	3.7
주식회사(11)	744	3.3
새마을금고(44)	526	2.3
의료법인(33)	300	1.3
축산업협동조합(37)	266	1.2
신용협동조합(41)	254	1.1
중소기업협동조합(40)	113	0.5
기타	302	1.3
전체	22,399	100.0



[그림 5-4] 법인분류번호별 사업체

(4) 행정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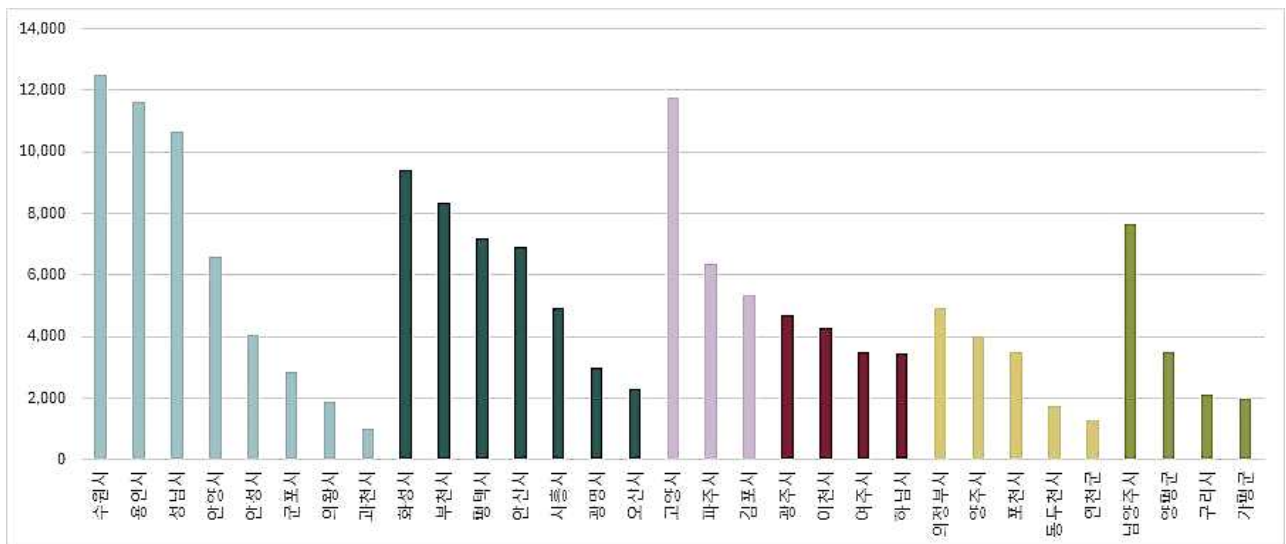
-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비영리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7.7%) > 고양시(7.2%) > 용인시(7.1%) > 성남시(6.5%) > 화성시(5.8%) 순이다.
- 권역으로 묶어보면, 경부권(31.3%) > 서해안권(25.8%) > 경의권(14.4%) > 동남권(9.7%) > 경원권(9.5%) > 동북권(9.3%)이다⁴⁸⁾.

<표 5-10> 행정구역 시·군·구별 사업체

권역	권역별 사업체 수(비율,%)	시·군·구	시·군·구별 사업체 수(곳)	시·군·구별 비율(%)
경부권	51,231 (31.3)	수원시	12,523	7.7
		용인시	11,642	7.1
		성남시	10,659	6.5
		안양시	6,601	4.0
		안성시	4,061	2.5
		군포시	2,838	1.7
		의왕시	1,887	1.2
		과천시	1,020	0.6
서해안권	42,155 (25.8)	화성시	9,432	5.8
		부천시	8,360	5.1
		평택시	7,190	4.4
		안산시	6,903	4.2
		시흥시	4,949	3.0

48) 권역 분류기준은 '경기도 종합계획(2021~2040)'을 따른다. 경기도 6개 권역 분류는 공간구조를 기존 5개 권역에서 동부를 동남과 동북으로 나누어 총 6개 권역으로 재편한 것이다. 각 권역 내 소속 시·군의 지리적 인접성, 산업 및 생활권의 유사성, 균형 발전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설정되었으며, 경기도 주요 계획에서 공식화된 기준이므로 이를 적용하였다.

경의권	23,496 (14.4)	광명시	3,014	1.8
		오산시	2,307	1.4
		고양시	11,779	7.2
		파주시	6,357	3.9
		김포시	5,360	3.3
동남권	15,911 (9.7)	광주시	4,686	2.9
		이천시	4,286	2.6
		여주시	3,480	2.1
		하남시	3,459	2.1
경원권	15,476 (9.5)	의정부시	4,943	3.0
		양주시	4,016	2.5
		포천시	3,500	2.1
		동두천시	1,754	1.1
		연천군	1,263	0.8
동북권	15,213 (9.3)	남양주시	7,639	4.7
		양평군	3,505	2.1
		구리시	2,098	1.3
		가평군	1,971	1.2
전체			163,4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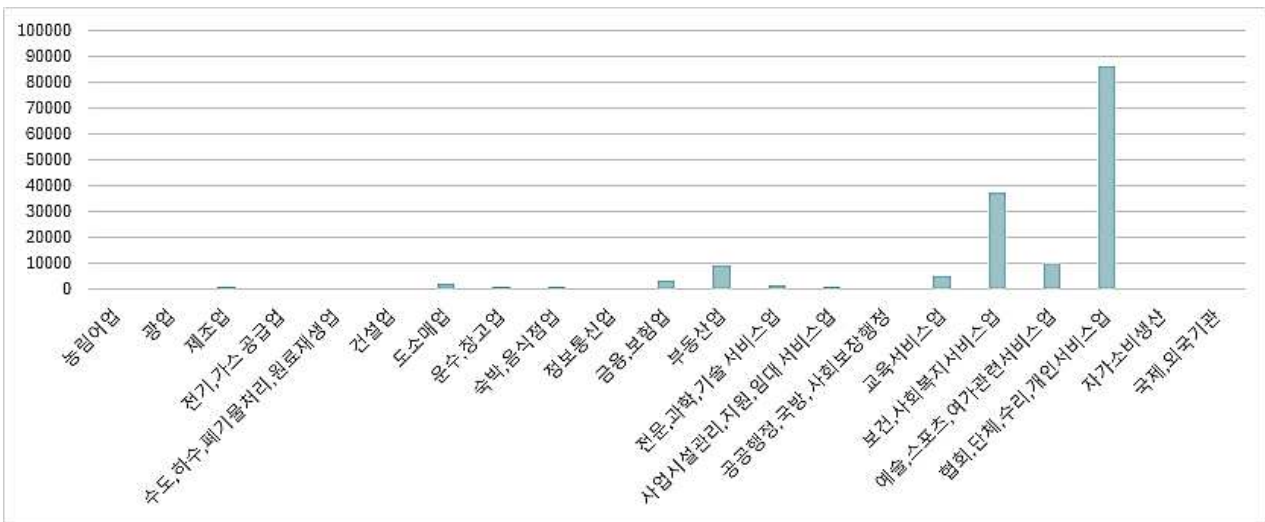
[그림 5-5] 행정구역 시·군·구별 사업체

(5)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별로 살펴보면, 확인된 160,381곳 중 86,395곳(53.9%)이 ‘S협회,단체, 수리,개인서비스업’에 속하며, 37,450곳(23.4%)은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표 5-11>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사업체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A 농림어업	266	0.2
B 광업	0	0.0
C 제조업	796	0.5
D 전기,가스 공급업	316	0.2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16	0.1
F 건설업	171	0.1
G 도소매업	2,406	1.5
H 운수,창고업	1,002	0.6
I 숙박,음식점업	822	0.5
J 정보통신업	278	0.2
K 금융,보험업	3,427	2.1
L 부동산업	9,118	5.7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544	1.0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998	0.6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291	0.2
P 교육서비스업	5,089	3.2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7,450	23.4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9,888	6.2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86,395	53.9
T 자가소비생산	0	0.0
U 국제,외국기관	8	0.0
전체	160,381	100.0



[그림 5-6]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사업체

- ‘S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의 86,395곳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S업종에 속한 사업체 중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사업체는 5,813곳으로 86,395곳의 6.7%에 해당한다. 비영리부문 전체 사업체의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사업체 비중(약 13.7%)과 비교하면 절반에 가까

운 수준이다. 일정 절차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단·재단법인(법인분류번호 21, 22)보다, 비영리법인(사업자구분코드 82)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S업종에 속하며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사업체 5,813곳 중 사단법인이 3,508곳(55.2%), 재단법인이 1,270곳(21.8%)이다.

- 아래 표와 같이 S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와 전체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사업자구분코드를 비교하면, 전체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비영리법인 비율 58.7%보다, S업종에 속하는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비영리법인 비율이 69.4%로 높았다.

<표 5-12> 산업분류 S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와 전체 사업체의 사업자구분코드 비교

사업자구분코드	비영리부문 사업체		S업종에 속하는 비영리부문 사업체	
	빈도(곳)	비율(%)	빈도(곳)	비율(%)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82)	95,539	58.7	59,469	69.4
개인으로 보는 단체(80)	49,624	30.5	20,047	23.4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89)	5,674	3.5	5,285	6.2
그 외	11,939	7.3	922	1.0
전체	162,776	100.0	85,723	100.0
NA	706	-	672	-
결측값 포함한 전체	163,482	-	86,395	-

-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37,450곳인데, ‘S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을 사업자구분코드로 살펴보았을 때와 다른 특성이 확인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37,441곳 중 22,489곳(60.1%)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80)’, 11,932곳(31.9%)은 ‘비영리법인(82)’으로 등록되었다. 참고로 Q업종에 속하며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사업체는 3,818곳인데 이는 전체의 10.1% 수준이며, 사단법인 1,013곳(26.5%) > 사회복지법인 841곳(22.0%) > 협동조합 654곳(17.1%) > 주식회사 476곳(12.5%) 순이다.
- 요약하면, ‘S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은 비영리법인(82)으로,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80)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비중이 높다.

(6) 대표자 특성

- 비영리부문 사업체 대표자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66.8%, 여성이 32.8%다.
- 대표자 출생연도⁴⁹⁾를 10년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950~1969년 출생이 90,871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한다. 2000년 이후 태어난 젊은 대표자(1990년 출생자는 2025년 현재 만 25세)가 이끄는 사업체는 787곳(0.5%)이며, 1990년 이후(1990년 출생자는 2025년 현재 만 35세)로 확대

49) 대표자 출생연도를 나이로 환산하여 정리할 경우, 보고서를 읽는 시기에 따라 가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출생연도를 10년 단위, 30년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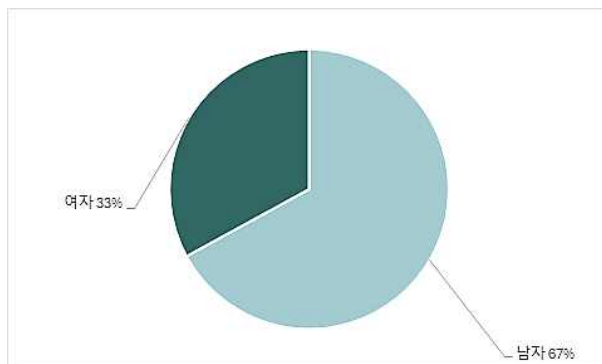
하면 4,429곳(2.8%)이다.

<표 5-13> 사업체 대표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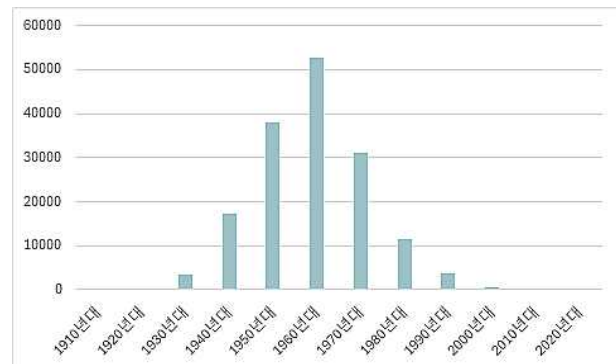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남자	109,150	67.0
여자	53,661	33.0
전체	163,482	100.0

<표 5-14>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대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1910년대	14	0.0
1920년대	161	0.1
1930년대	3,429	2.2
1940년대	17,360	10.9
1950년대	38,141	24.0
1960년대	52,730	33.2
1970년대	31,217	19.6
1980년대	11,519	7.2
1990년대	3,642	2.3
2000년대	428	0.3
2010년대	335	0.2
2020년대	24	0.0
전체	159,000	100.0



[그림 5-7] 사업체 대표자 성별



[그림 5-8]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대

- 대표자 출생연도를 30년 단위로 묶어 사업자구분코드 비중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10~1939년 출생, 1940~1969년 출생, 1970~1999년 출생에서는 비영리법인(82)이 각 55.1%, 62.5%, 48.9%로 높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출생 그룹에서는 개인과세사업자(1-7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5-15> 대표자 출생연대별 사업자구분코드 교차표⁵⁰⁾

구분	1910 ~1939년		1940 ~1969년		1970 ~1999년		2000년 이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비영리법인 (82)	1,985	55.1	67,661	62.5	22,676	48.9	154	19.6	92,476	58.2
개인으로보는단체 (80)	1,418	39.3	31,549	29.1	15,912	34.3	242	30.7	49,121	30.9
법인이아닌종교단체(89)	*	*	4,619	4.3	875	1.9	*	*	5,645	3.6
개인면세사업자 (90-99)	14	0.4	1,637	1.5	3,028	6.5	59	7.5	4,738	3.0
개인과세사업자 (1-79)	34	0.9	1,074	1.0	2,641	5.7	321	40.8	4,070	2.6
영리/외국법인 (81,84-88)	*	*	1,691	1.6	1,246	2.7	*	*	2,950	1.9
전체	3,604	100.0	108,231	100.0	46,378	100.0	787	100.0	159,000	100.0

- 대표자 출생연도 및 법인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 19,739곳 중 74%(14,660곳)는 1940~1969년 출생이었으며, 대표자 출생연도별로 법인분류번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고연령은 사단법인, 저연령은 협동조합 설립이 많았다.

- 1910~1939년 출생 : 사단법인(38.2%) > 재단법인(28.3%) > 학교법인(16.7%)
- 1940~1969년 출생 : 사단법인(31.7%) > 협동조합(16.7%) >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13.6%)
- 1970~1999년 출생 : 협동조합(34.7%) > 사단법인(23.5%) >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14.8%)
- 2000년 이후 출생: 협동조합(91.7%) ※빈도가 낮으므로 해석에 유의

<표 5-16> 대표자 출생연대별 법인분류번호 교차표

구분	1910 ~1939년		1940 ~1969년		1970 ~1999년		2000년 이후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사단법인(21)	96	38.2	4,644	31.7	1,134	23.5	0	0.0	5,874	29.8
협동조합(51)	5	2.0	2,444	16.7	1,671	34.7	11	91.7	4,131	20.9
기타분류할수없는 법인(71)	17	6.8	1,998	13.6	714	14.8	0	0.0	2,729	13.8
재단법인(22)	71	28.3	1,548	10.6	349	7.2	0	0.0	1,968	10.0

50)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반출기준에 따라, 빈도가 3 이하인 경우, 표의 숫자가 누락되고 별표(*)로 표기된다(이하 동일).

사회복지법인(32)	13	5.2	811	5.5	323	6.7	0	0.0	1,147	5.8
농협협동조합(36)	4	1.6	1,034	7.1	75	1.6	0	0.0	1,113	5.6
주식회사(11)	*	*	360	2.5	369	7.7	*	*	732	3.7
학교법인(31)	42	16.7	595	4.1	57	1.2	0	0.0	694	3.5
새마을금고(44)	0	0.0	301	2.1	11	0.2	0	0.0	312	1.6
의료법인(33)	0	0.0	232	1.6	45	0.9	0	0.0	277	1.4
축산업협동조합(37)	0	0.0	240	1.6	6	0.1	0	0.0	246	1.2
신용협동조합(41)	*	*	133	0.9	7	0.1	*	*	141	0.7
중소기업협동조합 (40)	0	0.0	101	0.7	8	0.2	0	0.0	109	0.6
기타	0	0.0	219	1.5	47	1.0	0	0.0	266	1.3
전체	251	100.0	14,660	100.0	4,816	100.0	12	100.0	19,739	100.0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를 통해 추출한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는 163,482곳(전체의 약 5.01%)이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전체의 약 13.14%)⁵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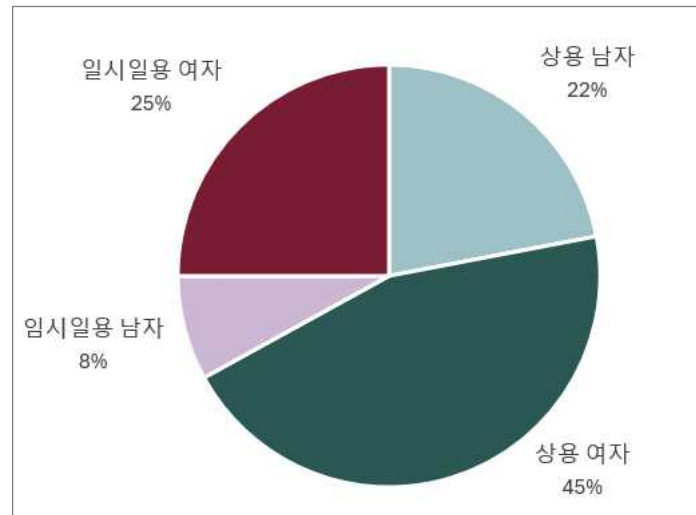
(1) 고용 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 670,938명을 고용 형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용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로 전체의 67.1%
 - 임시일용 근로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자로 전체의 32.9%
 - 성별로는 남성이 전체의 30.1%, 여성이 전체의 69.9%

51) 경기도 사업체 총 종사자 수 약 510.4만명(2023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

<표 5-17> 고용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상용 근로자(명)		임시일용 근로자(명)	
남	여	남	여
150,694(22.5%)	299,379(44.6%)	51,041(7.6%)	169,824(25.3%)
450,073(67.1%)		220,856(32.9%)	
670,938(100.0%)			



[그림 5-9] 고용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그러나 기업통계등록부 비영리부문 사업체 163,482곳 중 사업체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체는 73,741곳으로 전체의 45.1%에 불과하다. 이는 사업체 매출액 또는 종사자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 활동 비중이 전체의 46.9%(76,616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조사 누락 및 미응답 등으로 발생한 결측치는 1.7%(2,875곳)이고, 그 외 결측치는 비활동 및 폐업이므로 결측치 보간(interpolation)은 필요하지 않다⁵²⁾.
 - 기업통계등록부에서 2023년 내 폐업신고한 사업체를 모두 포함하며, 사업체 비활동은 사업체의 매출액과 종사자가 모두 '0'이거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표 5-18> 사업체 활동상태

구분	사업체 수(곳)	비율(%)
활동	76,616	46.9
비활동	81,204	49.7
폐업	5,662	3.5
전체	163,482	100.0

52) 결측치 보간은 결측치 값이 클 경우, 데이터 값을 이용해 적절한 값으로 추정하여 채우는 방법이다.

(2) 조직구분 및 형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비영리 일자리 규모를 조직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법인이 448,499명(66.8%), 개인이 222,439명(33.2%)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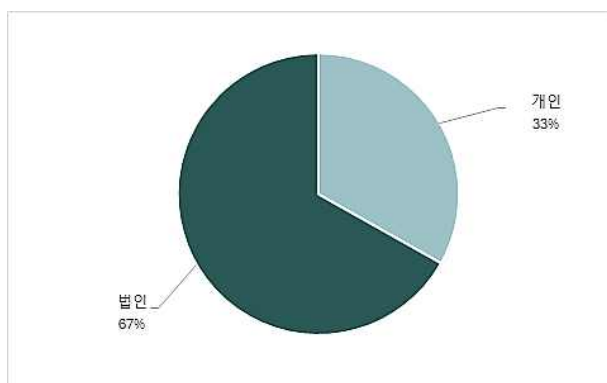
<표 5-19> 조직구분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수(명)	비율(%)
개인	222,439	33.2
법인	448,499	66.8
전체	670,9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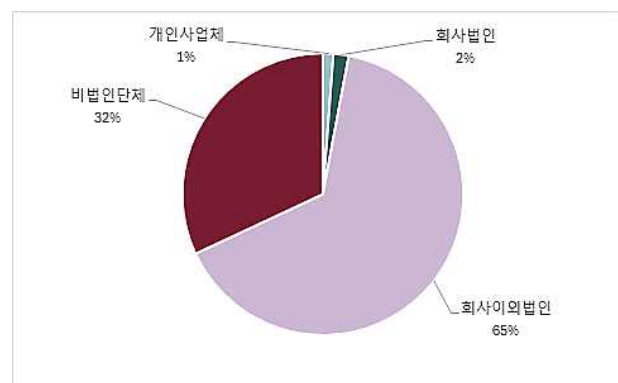
- 조직형태별로 보면, 회사이외법인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436,718명(65.1%)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법인단체 종사자가 214,399명(32.0%)다.

<표 5-20> 조직형태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수(명)	비율(%)
개인사업체	8,040	1.2
회사법인	11,781	1.8
회사이외법인	436,718	65.1
비법인단체	214,399	32.0
전체	670,938	100.0



[그림 5-10] 조직구분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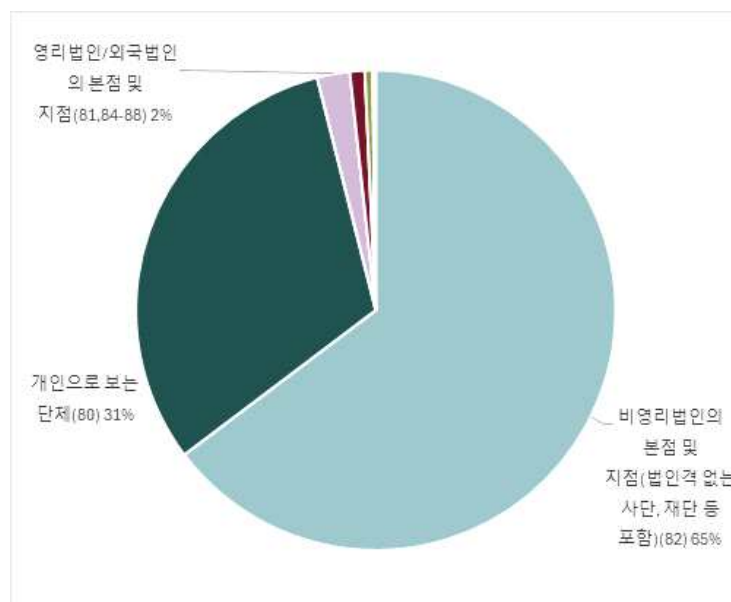
[그림 5-11] 조직형태별 종사자

(3) 사업자구분코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사업자구분코드로 나누어 보면, 비영리법인 종사자가 433,677명으로 전체의 64.7%를 차지하고, 개인으로 보는 단체 종사자가 210,053명으로 31.3%다.

<표 5-21> 사업자구분코드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수(명)	비율(%)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 포함)(82)	433,677	64.7%
개인으로 보는 단체(80)	210,053	31.3%
영리법인/외국법인의 본점 및 지점(81,84-88)	14,799	2.2%
개인면세사업자(90-99)	6,700	1.0%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89)	3,555	0.5%
개인과세사업자(1-79)	1,339	0.2%
전체	670,123	100.0



[그림 5-12] 사업자구분코드별 종사자

(4) 법인분류코드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163,482곳 중 법인 사업체는 22,399곳(약 13.7%)이며, 법인 종사자는 349,352명으로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 670,938명의 약 52.1%다. 사업체 비중에 비해 종사자 비중이 높은 이유는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가 15.6명으로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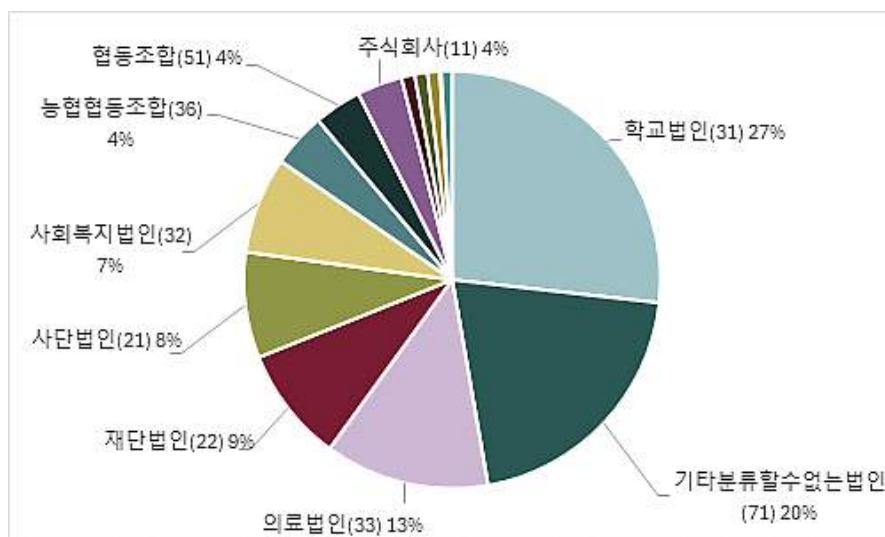
<표 5-22> 법인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 비교

구분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중 법인 사업체
사업체 수(곳)	163,482	22,399
종사자 수(명)	670,938	349,352
사업체 1곳당 평균 종사자 수(명)	4.1	15.6

- 법인분류번호로 살펴보면, 학교법인 26.8% >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 20.5% > 의료법인 12.8% 순으로 종사자 수가 많다.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 평균을 구해보면, 의료법인이 148.7명, 학교법인이 111.7명으로 월등히 높다.

<표 5-23> 법인분류번호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명)
	수(명)	비율(%)	
학교법인(31)	93,476	26.8	111.7
기타분류할수없는법인(71)	71,573	20.5	18.9
의료법인(33)	44,621	12.8	148.7
재단법인(22)	31,209	8.9	12.1
사단법인(21)	28,597	8.2	4.8
사회복지법인(32)	26,144	7.5	22.3
농협협동조합(36)	14,835	4.2	11.4
협동조합(51)	12,899	3.7	3.1
주식회사(11)	12,296	3.5	16.5
신용협동조합(41)	3,617	1.0	14.2
새마을금고(44)	3,461	1.0	6.6
축산업협동조합(37)	3,295	0.9	12.4
중소기업협동조합(40)	416	0.1	3.7
기타	2,913	0.8	9.6
전체	349,352	100.0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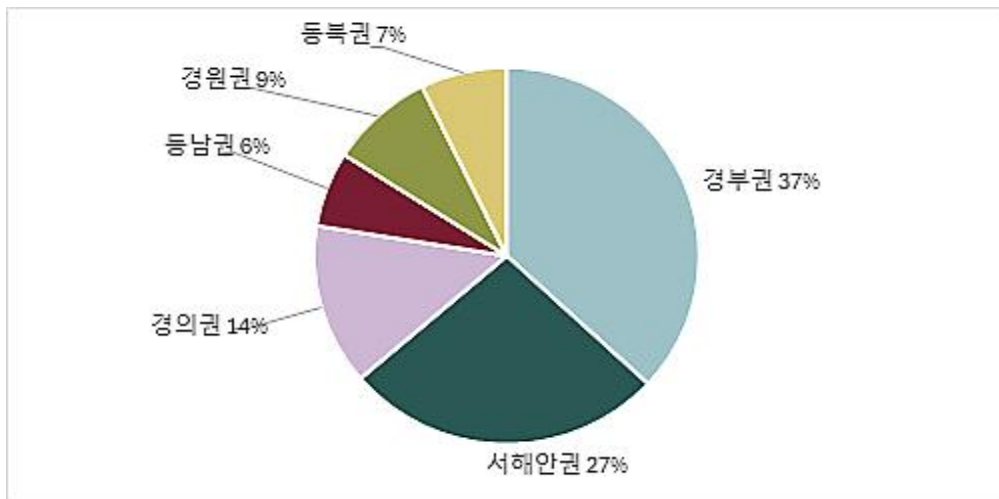
[그림 5-13] 법인분류번호별 종사자

(5) 행정구역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시·군·구의 권역별 비영리 일자리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경부권 36.9% > 서해안권 26.8% > 경의권 13.8% > 경원권 8.7% > 동북권 7.2% > 동남권 6.5% 순이다. 이중 동남권의 경우, 사업체 수에서는 경원권과 동북권보다 높았으나, 종사자는 43,412명,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가 2.7명으로 가장 낮았다.

<표 5-24> 행정구역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명)
	수(명)	비율(%)	
경부권	247,505	36.9	4.8
서해안권	180,072	26.8	4.3
경의권	92,749	13.8	3.9
동남권	43,412	6.5	2.7
경원권	58,593	8.7	3.8
동북권	48,607	7.2	3.2
전체	670,938	100.0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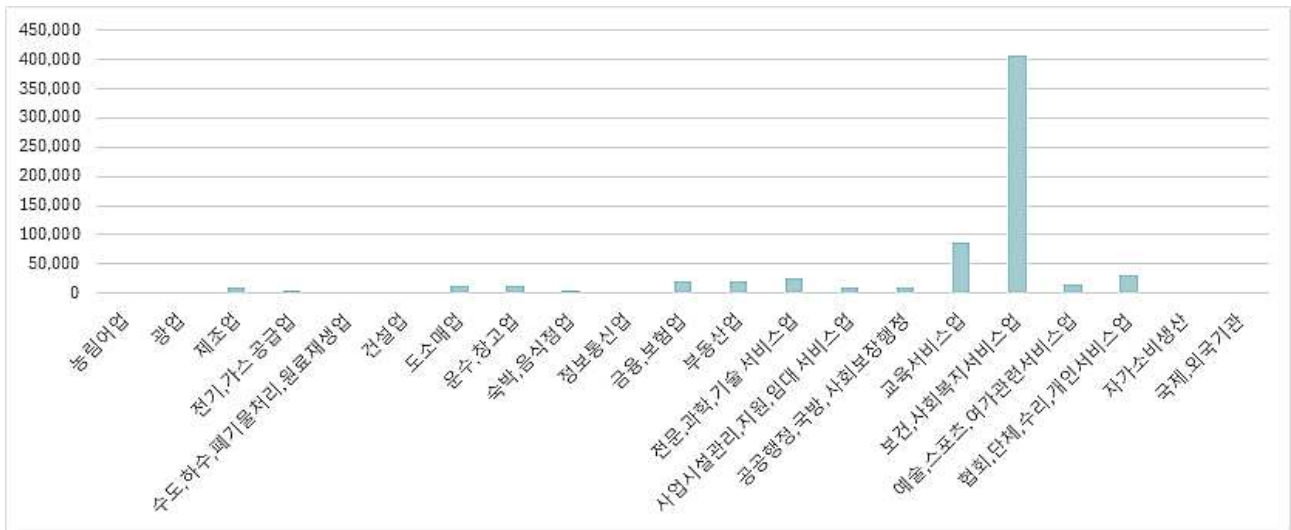
[그림 5-14] 행정구역별 종사자

(6) 산업분류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비영리부문 종사자를 검토하면, 전체의 60.5%가 'Q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전체 사업체 160,381곳 중 86,395곳(53.9%)에 해당하는 'S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의 종사자는 31,776명(4.7%)이며 사업체 1곳당 종사자수는 0.4명에 불과하다.

<표 5-25>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명)
	수(명)	비율(%)	
A 농림어업	1,009	0.2	3.8
B 광업	0	0.0	-
C 제조업	9,364	1.4	11.8
D 전기,가스 공급업	5,242	0.8	16.6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903	0.3	16.4
F 건설업	980	0.1	5.7
G 도소매업	12,869	1.9	5.3
H 운수,창고업	11,294	1.7	11.3
I 숙박,음식점업	5,026	0.7	6.1
J 정보통신업	1,961	0.3	7.1
K 금융,보험업	19,246	2.9	5.6
L 부동산업	19,207	2.9	2.1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24,958	3.7	16.2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9,191	1.4	9.2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9,657	1.4	33.2
P 교육서비스업	86,574	12.9	17.0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05,836	60.5	10.8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14,439	2.2	1.5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31,776	4.7	0.4
T 자가소비생산	0	0.0	-
U 국제,외국기관	0	0.0	-
전체	670,938	100.0	4.1



[그림 5-15]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별 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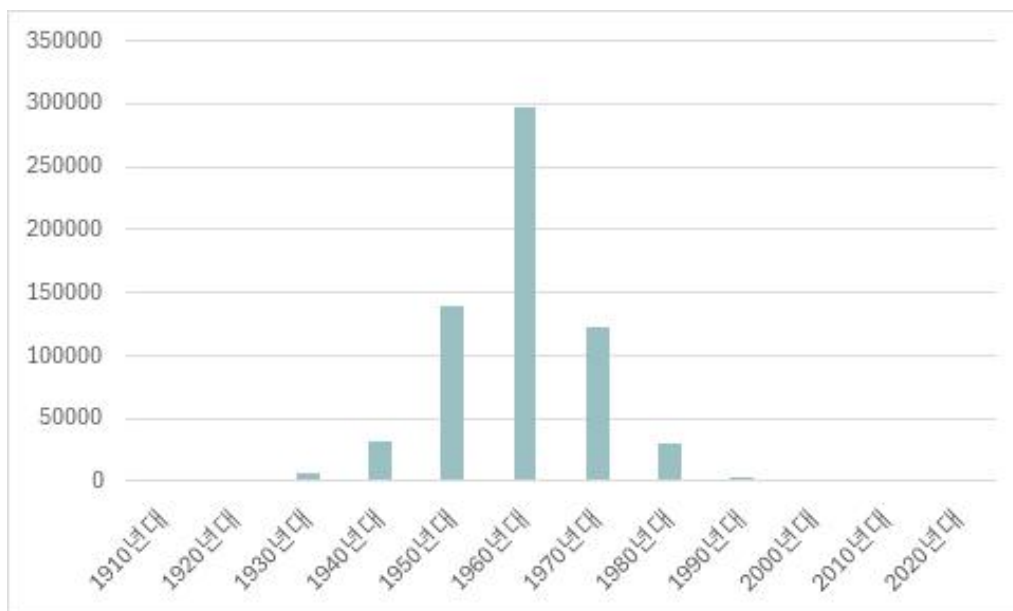
(7) 대표자 출생연대별 비영리 일자리 규모

- 대표자 출생연대별로 사업체 종사자 수를 비교한 결과, 1960년대 출생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중

사자 298,063명(47.1%)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체 1곳당 평균 종사자 수도 5.7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1950년대 출생(138,670명, 21.9%), 1970년대 출생(122,104명, 19.3%) 대표자의 사업체가 있었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 대표자의 종사자는 4,142명(0.7%)에 불과해 청년활동가의 단체 설립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5-26> 대표자 출생연대별 종사자

구분	종사자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명)
	수(명)	비율(%)	
1910년대	0	0.0	0.0
1920년대	184	0.0	1.1
1930년대	7,339	1.2	2.1
1940년대	31,125	4.9	1.8
1950년대	138,670	21.9	3.6
1960년대	298,063	47.1	5.7
1970년대	122,104	19.3	3.9
1980년대	30,833	4.9	2.7
1990년대	4,086	0.6	1.1
2000년대	54	0.0	0.1
2010년대	2	0.0	0.0
2020년대	0	0.0	0.0
전체	632,460	100.0	4.0



[그림 5-16] 대표자 출생연대별 종사자

4.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효과

1) 선행연구

- 비영리부문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비영리부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으며, 대표적으로 ①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 ②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이익 증진, ③민주주의와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비영리의 가치와 활동 효과를 연결시키는 가치 정합적 논증과 이에 대한 실증적 입증 시도가 이어져 왔다.
 - 비영리부문이 일자리 창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박준 외(2019)는 일의 사회적 의미와 보람, 개인의 성장가능성 등 내재적 보상(Intrinsic Compensation)을 추구하는 청년에게 비영리부문은 일자리 공급처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았으며, 오현순·김소연(2021)도 비영리 영역이 청년 세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가능성을 전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이명신·김운호의 연구(2018)에서는 비영리부문이 청년세대 실업을 완화를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비영리 활동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 활동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적 특성,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미래 가치의 측면,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자리를 추구하는 청년의 욕구가 있으므로 비영리 일자리가 청년층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비영리부문의 일자리가 단순한 고용창출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연구도 있다. 노대명 외(2010)는 비영리부문이 경기침체의 충격을 흡수하는 경기조정자(Counter-Cyclical Force)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주목한다. 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신용대란 직후 제3섹터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하였으므로, 경제침체기나 위기 시에 비영리부문이 안정적인 고용을 제공했다고 본다.
 - 미국 존스 홉킨스 시민사회연구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의 보고서(Salamon&Newhouse, 2019)에 따르면, 2008~2016년까지 미국 비영리부문의 일자리는 16.7% 증가했는데, 이는 영리 부문(4.6%)의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2007~2012년 경기침체 기간, 영리부문의 고용은 4.1% 감소하여 4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같은 기간 비영리부문 고용은 8.5% 증가했다. 많은 비영리단체가 영리단체와의 경쟁 속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제위기에도 고용이 안정적일 수 있었던 이유를 의료분야 종사자가 34%에 달하며 이는 연방정부의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분야에 추가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비영리부문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회복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의 2024년 비영리 고용 데이터 프로젝트(GMU-NED) 보고서(Newhouse&Abramson, 2024)에 따르면,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한 첫해인 2019~2020년에 영리 부문은 6.9%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으나, 비영리부문은 전체 인력의

4.5%인 580,426개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러나 2020~2021년 고용 변화율은 영리 부문이 4.5%, 비영리부문이 0.6%에 불과했다. 미국의 비영리부문 일자리는 COVID-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1,295만 명, 2020년에는 약 1,237만 명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약 1,277만 명으로 회복하였다. 즉 비영리부문은 경제위기의 타격을 영리 부문보다 적게 받으나, 고용 회복 속도는 영리 부문보다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연구에서는 김혜원 외(2008)에서 1995~2003년 기간 중 고용유발효과를 산업별로 비교한 결과가 있다. 고용 피고용자 기준으로 정부와 민간영리부분의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연평균 7.9%, 8.3% 하락한 것에 비해, 비영리부분의 고용유발효과는 연평균 4.8% 하락하였다. 비영리부분의 고용유발효과 하락 속도가 정부나 영리 부문보다 느린 것으로 확인된 결과로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 전후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위기에 비영리부분이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비영리부분은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며, 교육,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며 공공성에 이바지한다. 김희연 외(2007)는 비영리활동이 지역사회 문제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익을 증진하며, 사회적 기업화와 같은 형태로 발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공동체를 복원하는 등 지역사회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데,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을 통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통합에 기여한다(유두호·엄영호, 2020).
- 비영리부분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정성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던 이유는 비영리부분의 개념과 범위의 모호성,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이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박태규, 2006). 비영리부분의 규모와 시장가치의 중요성을 정량적으로 환산하고자 한 국내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표 5-27> 국내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효과 선행연구

출처	연구방법	주요결과
박태규 (2006)	비영리조직의 국제분류⁵³⁾에 따라 한국의 비영리 조직을 분류, 국민계정상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조직의 소비지출 자료 등을 이용, 비영리부분의 지출규모, 고용관련 규모, 자원봉사의 규모 등을 추정 (2003년 기준)	경상비 지출 규모 28조 3,759억 원 (GDP 대비 약 3.9%)

53) 비영리조직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ICNPO): 미국 Johns Hopkins 대학의 '비영리부분에 대한 비교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영리조직의 분류체계

김혜원 외(2008)	• 산업연관표를 정부/민간영리/민간비영리부문으로 재구성하여, 각 부문의 항목별 계산 (2003년 기준)	민간소비지출 15조 1,213억 원 총수요/총공급 17조 8,094억 원
		생산유발계수 1.775 (최종수요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전산업에 걸쳐 유발되는 생산 규모가 약 1조 7,750억 원)
		부가가치유발계수 0.876 (최종수요가 1조 원 증가하였을 때 유발되는 부가가치액이 총 8,760억 원)
		고용유발계수 30.7 (최종수요가 10억 원 증가할 때 전산업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증가하는 취업자 수는 약 30.7명, 피고용자 수는 26.6명)
노대명 외 (2010)	• 서비스업총조사(2005년) 중 보건복지부문을 중심으로 영리/비영리 사업체의 지출규모 비교	(보건부문) 비영리단체 1.69%, 영리단체 87.46% (복지부문) 비영리단체 8.28%, 영리단체 2.57%
더나은미래 (2017)	• 한국공익법인연감(201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개별 자료 합산	225조 3836억원 / 국내 GDP의 약 13% (공익법인 222조 7481억원, 사회적기업 매출 2조원, 마을기업 매출 1266억원, 협동조합 4,830억원, 비영리민간단체 259억원)

- 박태규(2006)와 김혜원 외(2008)의 연구에서는 지출 규모를 통해 비영리부문의 경제 규모 및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는 GDP 대비 비율을 산출함으로써, 전체 경제 대비 비영리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고 상대적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하다. 다만, 두 연구는 기초자료와 연구방법, 그리고 비영리부문의 범위가 달라 13조 원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 김혜원 외(2008) 연구에서는 경제 규모 산출 외에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로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고자 했다⁵⁴⁾.
 - 산업연관분석에서 투입 및 산출구조가 단순한 산업의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정부 부문(1.464) < 비영리부문(1.775) < 민간 영리 부문(1.818)’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각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살펴보면, 비영리부문이 다른 산업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작고, 다른 산업에 미치는 효과도 정부 부문과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 비영리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76으로 정부 부문 0.919보다는 다소 작고 영리 부문 0.771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영리부문이 민간 영리부문과 비교해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효과,

54) 생산유발계수(Production Inducement Coefficients)는 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의 변동에 따른 각 부문의 직·간접 생산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산업연관분석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유발계수(Value Added Inducement Coefficients)는 최종수요의 변동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해당 산업이 다른 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고용유발계수(Employment Inducement Coefficient)는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모든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늘어나는 고용자 수를 나타낸다(한국은행, 2014).

즉 GDP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는 의미이다.

- 비영리부문의 고용유발계수가 취업자 30.7명, 피용자 26.6명인데 비해, 정부 부문은 취업자 20.1명, 피용자 17.6명, 민간영리부문은 취업자 17.7명, 피용자 11.6명으로 추정되어, 비영리부문의 고용창출이 정부나 민간영리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취업자는 피고용자,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고, 피용자는 피고용자(임금근로자)만을 의미한다. 또한 비영리부문의 부가가치의 대부분이 피용자 보수로 배분된다는 점은 비영리부문이 정부나 영리부문에 비해 고용창출면에서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임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 그 밖의 연구로, 노대명 외(2010)는 영리 및 비영리부문의 지출 점유율을 비교하였는데, 보건복지부문에 한정하였다. 더나은미래(2017)는 개별 자료를 합산하여 추계하였는데, 활용된 조사생성 시점의 통일성 및 중복건수 처리 여부가 불분명하다.
-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기여 효과의 연구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고, 연구방법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김혜원 외(2018)에서 기술한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경제적 기여를 분석하고, 자료 수집은 김소연 외(2023)에서 제시한 산업분류별 사업자구분코드 및 법인분류코드를 활용하여 시민사회 영역을 추출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효과

1) 연구과정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비영리 일자리의 경제적 기여를 측정하고자 한다. 가장 최근 자료가 2024년 11월 발표된, '2021-2022년 산업연관표'이므로 본 절(비영리 경제적 기여 효과)은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에 앞장에서 분석한 사업체 및 종사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 2022년 비영리부문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정리 및 분석과정은 앞 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데이터 건수(전국) : 11,597,201건
 -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데이터 건수(경기도) : 3,119,208건(행정구역분류시도코드 경기도(31)로 추출, 결측값 529건은 제외)
 - 산업분류별 시민사회 영역 구분표에 따른 데이터 건수 : 159,960건
 - 국가지방자체단체 해당 데이터 삭제 : 3,627건
-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에 조사된 경기도 내 사업체 3,119,208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56,333곳(경기도 전체의 약 5.01%)이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624,161명(경기도 전체 고용의

12.45%)⁵⁵⁾이다.⁵⁶⁾

- 2022년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은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이다.
 - 사업체 종사자 수가 기재된 데이터는 70,043건으로 전체의 44.8%이며, 사업체 매출액이 기재된 데이터는 73,070건으로 전체의 46.8%이다. 그러나 비활동 사업체 78,431곳, 폐업 5,568곳을 합하면 83,999곳으로 전체의 53.7%이므로 별도의 결측치 보간은 하지 않는다.
- 2022년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과 종사자를 한국표준산업분류1레벨코드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28> 비영리부문 사업체 매출 및 종사자 수(2022년)

구분	사업체 수(곳)	종사자 수(명)	매출액(백만원)
A 농림어업	283	1,069	541,319
B 광업	-	-	-
C 제조업	793	10,007	2,597,700
D 전기,가스 공급업	293	5,652	23,355,842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108	2,126	616,946
F 건설업	170	762	2,363,564
G 도소매업	2,356	12,291	5,695,302
H 운수,창고업	955	11,484	2,920,489
I 숙박,음식점업	805	4,106	224,898
J 정보통신업	262	1,844	437,472
K 금융,보험업	3,249	18,372	13,187,488
L 부동산업	9,247	19,920	9,931,623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1,504	21,982	6,640,997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985	7,732	692,162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268	9,247	12,564,552
P 교육서비스업	5,028	80,667	4,478,351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37,101	372,679	21,734,127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9,075	13,960	5,834,489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81,496	30,070	3,874,210
TU 자가소비생산 / 국제,외국기관	10	13	281
NA	2,345	178	27,532
전체	156,333	624,161	117,719,344

(2) 생산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최종 수요(소비, 투자, 수출 등)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가 직·간접적으로 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55) 경기도 사업체 총 종사자 수 약 501.3만명(2022년 기업통계등록부 기준)

56) 참고로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에 조사된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전체의 약 5.01%)이며,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전체의 약 13.14%), 사업체 매출은 128조 2,2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7,550만 원)이다(N=76,532.). 자세한 내용은 앞 절 참고.

- 본 연구에서는 사업체 매출액을 총산출액으로 보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생산유발효과를 계산하였다.
- 경기도 비영리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약 192조 2,425억 원이고, 이를 역산해서 생산유발계수를 구하면, 약 1.633이다.
- 생산유발계수 1.633은 최종수요 1단위(예: 10억 원치)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생산의 양이 그 1.633배가 됨을 의미한다. 즉,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과 중간재 생산을 위한 연관 산업 생산까지 포함하여 총 16.33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뜻이다.

<표 5-29> 생산유발효과

구분	매출액(백만원)	생산유발계수 ⁵⁷⁾	생산유발효과(백만원)
A 농림어업	541,319	1.924	1,041,498
B 광업	-	-	-
C 제조업	2,597,700	1.945	5,052,527
D 전기,가스 공급업	23,355,842	1.553	36,271,623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616,946	1.974	1,217,851
F 건설업	2,363,564	2.006	4,741,309
G 도소매업	5,695,302	1.760	10,023,732
H 운수,창고업	2,920,489	1.712	4,999,877
I 숙박,음식점업	224,898	2.214	497,924
J 정보통신업	437,472	1.710	748,077
K 금융,보험업	13,187,488	1.575	20,770,294
L 부동산업	9,931,623	1.509	14,986,819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640,997	1.757	11,668,232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692,162	1.657	1,146,912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12,564,552	1.458	18,319,117
P 교육서비스업	4,478,351	1.544	6,914,574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734,127	1.625	35,317,956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834,489	1.815	10,589,598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3,874,210	2.035	7,884,017
TU 자가소비생산 / 국제,외국기관	281	1.818	511
NA	27,532	1.818	50,053
전체	117,719,344		192,242,501

(3) 고용유발효과

- 특정 경제활동이나 산업에서 일정 금액의 생산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총 일자리 수를 예측 고용유발인원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까지를 포함한 취업유발계수보다 범위를 좁혀 10억 원 생산이 늘어날 때 얼마나 많은 취업자가 유발되는지를 확인한다.

57) 2022년도 산업연관통계표의 항목별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한다. 다만, 통계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TU(자가소비 생산활동/국제 및 외국기관), 결측치에 대해서는 전체 평균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이하 동일.

- 산업연관표의 고용유발계수와 업종별 매출액을 곱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경기도 비영리부문 **고용유발효과**는 **778,589명**이다. 즉 경제 전반에서 경기도 비영리부문의 생산활동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고용 인원수의 합계가 778,589명이다.
- 역산해서 구한 고용유발계수는 6.614로 특정 재화나 서비스 10억 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다른 산업들에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임금근로자)의 총 수가 6.614명이라는 의미한다. 즉, 10억 원어치의 상품이 생산될 때, 6.614명 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생산량에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임을 나타낸다.

<표 5-30> 고용유발효과

구분	매출액(백만원)	고용유발계수	고용유발효과(명)
A 농림어업	541,319	3.658	1,980
B 광업	-	-	-
C 제조업	2,597,700	3.689	9,583
D 전기,가스 공급업	23,355,842	1.545	36,085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616,946	6.556	4,045
F 건설업	2,363,564	7.232	17,093
G 도소매업	5,695,302	7.258	41,337
H 운수,창고업	2,920,489	6.159	17,987
I 숙박,음식점업	224,898	7.707	1,733
J 정보통신업	437,472	6.140	2,686
K 금융,보험업	13,187,488	4.907	64,711
L 부동산업	9,931,623	3.239	32,169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640,997	7.222	47,961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692,162	11.251	7,788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12,564,552	9.265	116,411
P 교육서비스업	4,478,351	10.037	44,949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734,127	11.320	246,030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834,489	7.326	42,743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3,874,210	11.133	43,132
TU 자가소비생산 / 국제,외국기관	281	δ	-
NA	27,532	6.057	167
전체	117,719,344		778,589

(4) 부가가치유발효과

- 부가가치유발액은 최종 수요가 발생했을 때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부가가치의 금액을 의미한다.
- 산업연관표의 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와 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업종별 매출액으로 계산한 결과,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84조 2,914억 원**이다. 비영리부문의 수요가 증가했을 때,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및 부가가치 증가를 모두 포함하여 국민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한다.

- 역산해서 부가가치유발계수를 구하면, 0.716으로, 최종수요 1단위(10억 원) 발생 시, 해당 산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부가가치가 0.716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수요가 10억만큼 증가했을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에서 총 7억 1,6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뜻이다.
- 2022년 경기도 지역내총생산(GRDP)⁵⁸⁾은 587조 3,286억 원이며, 같은 해 경기도 비영리부문 규모는 84조 2,914억 원으로, 이는 **경기도 GRDP의 14.35%**에 해당한다.
 - 통상 국제비교, 산업별 비중, 부문별 기여율을 산출할 때는 명목 GDP 기준을 사용한다. 이는 비영리 부문, 농업, 서비스업 등 부문 간 경제 규모의 상대적 비중을 비교할 때는 실제 화폐가치 기준(명목)으로 하는 것이 직관적이기 때문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국제비교 연구도 명목 GDP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이며, 본 연구에서도 명목 GDP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5-31> 부가가치유발효과

구분	매출액(백만원)	부가가치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액(백만원)
A 농림어업	541,319	0.785	424,935
B 광업	-	-	-
C 제조업	2,597,700	0.560	1,454,712
D 전기,가스 공급업	23,355,842	0.161	3,760,291
E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616,946	0.821	506,513
F 건설업	2,363,564	0.772	1,824,671
G 도소매업	5,695,302	0.857	4,880,874
H 운수,창고업	2,920,489	0.666	1,945,046
I 숙박,음식점업	224,898	0.774	174,071
J 정보통신업	437,472	0.828	362,227
K 금융,보험업	13,187,488	0.925	12,198,426
L 부동산업	9,931,623	0.946	9,395,315
M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6,640,997	0.842	5,591,719
N 사업시설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	692,162	0.882	610,487
O 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	12,564,552	0.893	11,220,145
P 교육서비스업	4,478,351	0.895	4,008,124
Q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1,734,127	0.820	17,821,984
R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834,489	0.857	5,000,157
S 협회,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3,874,210	0.798	3,091,620
TU 자가소비생산 / 국제,외국기관	281	δ	-
NA	27,532	0.729	20,071
전체	117,719,344		84,291,388

58) 지역내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의 약자로 생산측면의 부가가치를 파악한 것이다.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본 연구에서는 경기통계(<https://stat.gg.go.kr>)에서 제시된 자료를 활용한다.

5.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1) 비영리 일자리 규모 추정 (2023년 기준)

- 2023년 기업통계등록부에 조사된 경기도 내 사업체 3,262,054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63,482곳으로 전체의 약 5.01%를 차지한다.
-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조직형태로는 법인이 약 60%,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법인이 아닌 법인의 비중이 약 60%
 - 사업자구분코드 82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 포함)’이 약 59%
 -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사업체 중에서는 사단법인이 약 27%
 - 비영리 사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순. 권역별로는 경부권(수원, 용인, 성남, 안양, 안성, 군포, 의왕, 과천)이 전체의 약 31%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 중에서는 ‘S.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약 54%, ‘Q.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약 23%
 - 비영리부문 사업체 대표자는 남성이 약 67%, 1960년대 출생이 약 33%로 가장 높음
- 비영리부문 사업체 종사자 수는 670,938명이며, 전체의 약 13.14%이다.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상용근로자 67%, 임시일용근로자 33%
 - 남성 30%, 여성 70%
 - 법인 67%, 개인 33%
 - 조직형태는 회사이외법인 65%, 비법인단체 32%
 - 사업자구분코드 82(비영리법인)가 65%
 - 법인분류번호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종사자가 27%로 가장 많으며, 사업체 1곳당 종사자 수가 약 112명(경기도 비영리부문 사업체 1곳당 평균 종사자 수는 약 4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체의 평균 종사자는 약 16명)
 - 권역별로는 경부권 종사자가 전체의 37%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로는 ‘Q.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가 전체의 약 54%, ‘S.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 속하는 사업체가 약 5%

- 1960년대 대표자 사업체의 종사자 수가 전체의 47%

(2) 비영리 일자리 경제적 기여 (2022년 기준)

- 2022년 기업통계등록부에 조사된 경기도 내 사업체 3,119,208곳 중 비영리부문에 속하는 **사업체는 156,333곳(경기도 전체의 약 5.01%)**, 사업체 종사자 수는 **624,161명(경기도 전체 고용의 12.45%)**이며, 사업체 매출은 117조 7,193억 4,400만 원(평균 16억 1,105만 원)이다.
- **생산유발효과는 약 192조 2,425억 원, 생산유발계수 1.633** :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과 중간재 생산을 위한 연관 산업 생산까지 포함하여 총 16.33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
- **고용유발효과는 778,589명, 고용유발계수 6.614** : 경기도 비영리부문의 생산활동 영향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고용 인원 수의 합계가 778,589명, 10억 원어치의 상품이 생산될 때, 6.614명 분의 일자리가 발생한다.
-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84조 2,914억 원,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수요가 10억만큼 증가했을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에서 총 7억 1,6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된다.
-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원 중 비영리부문은 84조 2,914억원로, **경기도 GRDP의 14.35%**에 해당된다.

2) 시사점

- **(지원의 우선순위 고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코드로 비영리부문 사업체와 사업체 종사자를 분석하였을 때의 차이를 비교하면, ‘S. 협회,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가장 많지만(전체의 약 54%), 종사자 수는 0.4명(평균 종사자 수는 4.1명)에 불과할 정도로 영세하다. 비영리부문의 정책 및 제도 설계 시, 성장 방해 요인을 파악하고 지원하는 등 우선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지역 편차 고려)** 비영리부문 사업체의 분포가 경기도 내에서 시·군·구 및 권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경부권(수원,용인,성남,안양,안성,군포,의왕,과천)이 전체 사업체의 약 31%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고, 동북권(남양주,양평,구리,가평)이 약 9%로 가장 적었다. 또한 동남권(광주,이천,여주,하남)의 경우 사업체 수는 경원권이나 동북권보다 많으면서도 사업체 1곳당 평균 종사자 수가 2.7명으로 경부권 4.8명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도내 지역 편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비영리부문의 고른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향후 연구과제)** 지역의 비영리부문 일자리 및 경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실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부문의

실체적 정의에 기반하여 범위를 설정하였다. 향후 비영리부문의 정의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비영리부문 내 영향 비교 연구, 추이연구 등으로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정책과제: 데이터 보완)** 향후 비영리부문을 세분하여 필요에 따라 선택 연계하는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원자료의 데이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통계등록부는 통계청의 조사자료와 행정자료, 그리고 외부자료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외부 조사자료를 기업통계등록부에 결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등록정보가 기재될 경우, 비영리부문에서 사회적기업을 분류해 내고, 사회적경제 부문을 제외한 비영리부문 연계가 가능하며 비영리부문 내의 영향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업통계등록부와 연결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영역 전수를 연구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정책과제: 연구 지속성 확보)** 비영리부문의 규모 및 경제적 기여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기 위한 연구 프로세스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도내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경기통계(stat.gg.go.kr)에 비영리부문 섹션을 구성하거나 통계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통계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해야 하며 연구 지속성 확보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고려할 수 있겠다.

VI. 해외 비영리 일자리 관련 정책 사례

1. 재정지원 정책

1)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조세 혜택⁵⁹⁾

-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직접적인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제 혜택, 계약체결, 보조금 지급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 우선, 미국 정부는 비영리단체에 대해 직접 계약(Contracts)과 보조금(Grants)을 통해 재원을 제공한다. 연방정부는 의료 연구, 식품 안전, 국제 관계 등과 관련된 분야의 비영리단체를 주로 지원하며, 지방 정부는 교육, 고용 개발, 인적 서비스 등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실제로 2023년 Urban Institute의 보고서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의 평균 수입 중 약 25%가 정부 보조금 및 계약으로부터 나온다.
-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중 계약과 보조금은 비영리단체와의 관계에서 핵심적인 수단이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비영리단체가 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받는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은 연방정부조달규정(FAR)에 따라 체결되며, 고정가격계약, 비용보존계약, 인센티브계약, 무기한 조달계약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반면, 보조금은 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 연방정부가 예산을 승인하여 외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포괄적 보조금, 프로젝트 보조금, 공식적 보조금, 범주적 보조금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범주적 보조금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다.
- 비영리단체가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 인건비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인건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데, 직접비는 프로젝트 수행자나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회계 담당자, 사무직원, 대표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다. 과거에는 간접비를 예산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오바마 행정부 이후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 간접비 반영이 확대되었고, 비영리단체들은 여전히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59)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은 박준 외(2020, p.33-38)를 참조하여 작성

<표 6-1> 계약과 보조금 비교

구분	계약(Contract)	보조금(Grant)
법적 성격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 관계	특정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 상대적으로 유연
근거 규정	연방정부조달규정(FAR)	연방정부 예산 승인 및 보조금 제도
관계 형태	비영리단체가 정부에 물품·서비스 제공 → 대가 지급	정부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외부 기관에 자금 제공
유형	- 고정가격계약 - 비용보존계약 - 인센티브계약 - 무기한 조달계약	- 포괄적 보조금 - 프로젝트 보조금 - 공식적 보조금 - 범주적 보조금
목적연계성	계약서상 명시된 특정 업무·성과 달성 필수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범위 내 사용 가능, 범주적 보조금은 엄격한 조건
재정관리	상세한 비용보고 및 회계 관리 필요, 비용 초과·부족 발생 시 책임	자금 사용에 대한 보고와 감사 필요, 상대적으로 유연하나 조건 위반 시 환수 가능
위험 부담	수행 실패나 비용 초과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	목적 달성 실패 시 일부 환수 가능, 법적 책임은 계약보다 낮음
보고·감독	정기적 진척보고, 감사, 계약 조건 준수 여부 확인	사업보고서 제출, 감사, 공적 목적 준수 여부 확인

출처: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미국 연방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적용하는 연방 조달 규정. FAR Part 16/FAR Subpart 16.3, 16.4, 16.5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

-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비영리단체를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미국 연방세법 IRC 501(c)(3)에 따라 등록된 자선단체는 법인소득세 면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단체는 종교, 자선, 과학, 교육, 문학, 공공안전 등 자선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으로, 국세청에 면세 신청을 하고 회계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체의 고유 목적 외의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목적외사업소득세(UBIT, Unrelated Business Income Tax)가 부과된다.
 - IRS(Internal Revenue Code)는 비영리조직이 면세 지위를 악용하여 영리기업과 불공정 경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유 목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비영리조직이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영리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UBIT로 과세하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 활동, 기부된 물품 판매, 회원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은 과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비영리법인세법(법인세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에서 수익사업 범위를 규정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품 판매, 용역 제공, 부동산 임대, 금융업 등 영리성을 가진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부금에 대한 세금공제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는 핵심적인 재정 장치다. 개인과 기업은 비영리단체에 현

금이나 현물을 기부할 경우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미국의 경우 공익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소득의 최대 50%, 민간재단에 대한 기부는 최대 3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넘어, 사회 전반에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비영리조직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또한 현금 외에도 주식, 부동산, 잔여재산 지분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기부가 인정되며, 이에 부여되는 조세 혜택은 기부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장기적인 자산 기부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국 역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제율과 적용 범위 측면에서는 미국과 차이가 있어 제도 개선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 마지막으로, 유산세와 증여세 면제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세제 혜택이다. 미국 연방세법 IRC 2055조는 자선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가 사용하는 유산에 대해 유산세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후 재산 이전을 통해 사회 전체가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장치다. 다만, 정치 캠페인 참여나 사적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 된다. 이러한 규정은 세제 혜택이 공익적 목적에 한정되도록 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이처럼 기부금 세액공제, 유산·증여세 면제 등은 비영리부문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이 기부를 통해 민주주의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 미국의 비영리단체 지원제도는 재정지원과 조세혜택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비영리부문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계약·보조금 형태로 비영리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비영리법인에 대한 면세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민간의 참여와 후원을 촉진한다. 이는 공공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부·시민·민간이 함께 비영리 생태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즉, 한국은 미국의 제도적 경험을 참고하여, 재정지원·세제 혜택·시민 참여 촉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비영리 지원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 지원을 넘어, 비영리단체가 공익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정책적 기반이 될 것이다.

2) 일본 지방정부의 주민세 1% 지원제도

- 일본은 헝가리의 사례를 참고하여 주민세의 1%를 NPO에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자신이 선택한 NPO에 간접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2004년 지바현 이치카와시를 시작으로 여러 지자체로 확산되었다. 시민은 시에서 공표한 단체 중 최대 3곳을 선택해 투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민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단체에 지원된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민참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부문화가 미약한 일본에서 행정이 개입하는 방식의 NPO 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지바현 이치카와시로, 2004년 12월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어 2005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치카와시는 도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아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낮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지역 NPO를 선택해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했다. 시민은 시에서 공표한 단체 중 최대 3곳을 선택해 우편, 창구,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주민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단체에 지원되었다. 이후에는 ‘e모니터’나 ‘에코카드’와 같은 지역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비납세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가능한 단체 수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민 참여율 저조로 인해 2015년 제도는 종료되었고, 2016년부터는 ‘이치카와 시민활동 서포트 제도’로 변경되었다. 아이치현 이치노미야시는 2008년부터 ‘시민이 선택하는 시민활동 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1% 제도를 시행했지만, 2020년을 마지막으로 종료하고 2021년부터는 ‘이치노미야 시민활동 서포트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였다.
- 이 제도는 시민사회단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로, 단체의 성장단계에 따라 ‘스타트 지원’, ‘청년 지원’, ‘스텝업’, ‘조성금 챌린지’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단체는 기획 제안을 제출하고, 심사·평가·채택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교부받는다. 반면, 지바현 야치요시는 2009년부터 ‘시민활동단체 지원금 교부제도’라는 이름으로 1%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 제도에서는 18세 이상의 시민이 사전에 등록된 자원봉사 단체나 NPO 중에서 지원하고 싶은 단체를 선택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정부가 해당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야치요시는 이 제도의 목적을 시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풍요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처럼 일본의 주민세 1% 지원제도는 시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점에서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제도의 지속성과 시민 참여율 확보, 행정의 역할 재정립 등 개선 과제도 존재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공모형 보조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부문화가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한 일본 사회에서, 이러한 제도는 행정이 기부를 유도하고 NPO를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이광희 외, 2022).
- 일본의 주민세 1% 지원제도는 한국에도 여러 함의를 가진다. 우선, 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의 직접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실험으로 기능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의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 추상적인 국가·지방정부 재원이 아닌 시민이 직접 책임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참여와 주인의식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정부 보조금 의존도가 높고 기부 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비영리 생태계에서 이러한 제도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재원을 마련해 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행정은 단순한 보조금 집행자가 아니라 시민과 단체를 연결하는 중개자·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세와 기부를 결합한 제도는 소액이지만 생활 속 참여를 가능하게 하여 기부·참여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운영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치카와시의 주민세 1% 지원제도⁶⁰⁾

- 지바현 이치카와시는 도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도시로,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 낮은 편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치카와시는 시민의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안으로 '주민세 1%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시민이 납부한 주민세의 1%를 자신이 선택한 시민활동단체(NPO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정의 사용에 시민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시도였다.
- 2004년 12월, 이치카와시 의회는 해당 제도를 공식적으로 가결하였고, 2005년 4월부터 조례에 따라 시행되었다. 이후 2007년에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e모니터'나 '에코카드'와 같은 지역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자원봉사 활동이나 시정 모니터 참여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시민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비납세자에게도 투표 기회가 주어졌으며,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단체 수도 기존 1개에서 최대 3개로 확대되었다.
-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와 희망금액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다. 시는 이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 단체를 선정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 내용과 지원 금액을 홍보물과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에게 공표한다. 이후 18세 이상의 시민은 공표된 단체 중 최대 3곳을 선택하여 우편, 창구, 인터넷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결과에 따라 주민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단체에 지원되며, 단체는 사업 종료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시민활동단체 지원기금에 적립된다.
- 이 제도는 세제와 행정 재정제도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책으로 평가받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도 점차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오사카부 이케다시나 사야마시는 납세자의 직접 선택 대신 지역 커뮤니티 추진협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한 가운데, 행정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의하고, 지역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NPO와의 협력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 사회는 아직 기부문화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이 개입하는 방식의 NPO 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치카와시의 1% 지원제도는 시민참여형 공공재정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3) 폴란드의 백분율 제도⁶¹⁾

- 폴란드 백분율 제도는 중·동유럽(CEE) 국가들이 공유하는 독특한 시민사회 재정지원 방식으로, 시민이 납부한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선호하는 공익단체에 직접 지정하여 후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폴란드의 경우, 이 제도는 2003년 제정된 「공익 및 자원봉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입되었으며, 시민은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자신의 세금 중 1%를 특정 공익단체에 지정할 수 있다. 단, 이 혜택은 해당 법률에 따라 공익단체(Organizacja Pożytku Publicznego, OPP)로 공식 등록된 단체에 한해 적용된다.

60) 지바 미쓰유키(2007)를 참고하여 작성

61) 폴란드의 백분율 제도는 이광희 외(2022, p.247-248.)를 참조하여 작성

- 폴란드 정부는 이 제도를 단순한 기부나 자선 행위로 보지 않고, 시민이 자신의 세금 사용처를 직접 결정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직접민주주의적 기제로 설명한다. 이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개개인의 선택이 공익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 제도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은 납세 시점에 자신이 관심을 갖는 공익활동 분야를 탐색하고, 공익단체목록을 참고하여 후원할 단체를 선택한다. 이 과정에서 단체의 공익단체 등록 여부, 활동 내용, 1% 자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와 시민사회는 납세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적 캠페인과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이후 개인소득세 납부 서류(PIT)에 선택한 단체의 일련번호(KRS)를 기입하면, 정부는 해당 시민의 전년도 세금 정산을 바탕으로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된 단체에 양도한다. 이 자금은 재무부 산하 정산센터(Centrum Kompetencyjne Rozliczeń)를 통해 매년 7월에 일괄 지급된다.
- 공익단체는 수령한 자금을 공익활동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내역은 공익위원회가 정한 규정과 양식에 따라 공개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백분율 제도로 받은 자금 외에도, 단체는 별도의 일반 기부금을 병행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단체의 재정적 자립성과 운영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 한편, 시민이 지정하지 않은 1% 세금은 공익단체지원기금(Fundusz Wspierania Organizacji Pożytku Publicznego)에 편입되며, 이 기금은 공익위원회 산하 기관이 관리하여 공익단체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사업 등에 활용된다. 즉, 지정되지 않은 자금 역시 공익 목적에 따라 재분배되며, 제도의 효율성과 포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백분율 제도의 주요 취지 중 하나는 자율적 기부에 맡겨둘 경우 규모가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반적인 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포착되었으나, 소규모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의 경우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Piechota, 2015).
- 2019년 기준, 약 14,794,000명의 시민이 백분율 제도에 참여하였으며, 총 906,995,835 즈워티(Zł)가 공익단체에 할당되었다. 이러한 수치는 백분율 제도가 단순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공익단체의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 폴란드의 백분율 제도는 한국에도 참고할 만하다. 이 제도는 시민이 납부한 세금의 일정 비율을 자신이 선호하는 공익단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금 사용에 대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한다. 동시에 비영리단체에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을 제공하여 재정 기반을 다변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금을 매개로 한 기부 참여를 통해 기부문화를 일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부가 대규모·유명 단체에 편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폴란드처럼 지정되지 않은 자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환원해 소규모·지역 기반 단체를 지원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도 이 제도를 참고해 시민참여 확대, 기부문화 확산, 비영리단체 재정 안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인정 제도

1) 타임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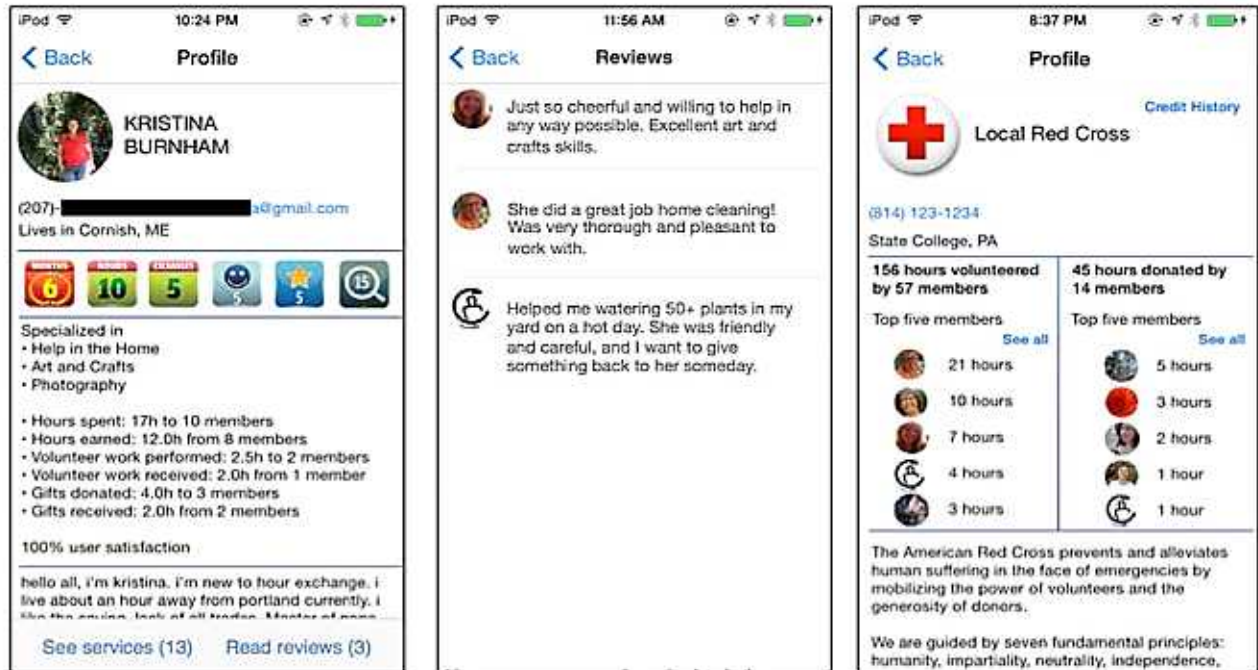
- 타임뱅크는 개인이 공동체 내에서 수행한 활동이나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기록하고, 이를 크레딧 형태로 보상받아 다른 사람의 서비스로 교환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 시스템이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하여 영국으로 건너가 급속히 확산되었고, 현재 일본, 중국, 대만, 뉴질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40개 주에 300개, 영국에 300개의 타임뱅크가 설립되었다. 우리나라도 2002년 구미사랑고리공동체를 시작으로 현재 서울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관, 마을공동체, 학교, 동호회, 협동조합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전국 11개 이상의 타임뱅크 현장이 있다(이은주 외, 2024).
- 이 시스템은 금전적 거래 대신 ‘시간’을 가치의 기준으로 삼아,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웃의 아이를 두 시간 동안 돌봐주면 두 시간의 타임크레딧을 적립하고, 그 크레딧으로 다른 회원에게 요리, 청소, 교통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운영 측면에서 타임뱅크는 참여자 간의 신뢰와 지속적인 교류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위해 회원 프로필, 활동 내역, 리뷰 시스템 등을 갖춘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다. 기관이나 커뮤니티 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을 통해 시민 참여를 촉진하고 공동체의 복지와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구조는 특히 돌봄, 교육, 재난 대응,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림 6-1] 타임뱅크 순환시스템

출처: 사)타임뱅크코리아 홈페이지(www.timebanks.or.kr)

- 타임뱅크를 활용해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대표적 사례로 미국 로드아일랜드의 ‘학부모 지원 네트워크’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공동 보호시설을 만들고, 서로에게 보육, 코칭, 교통, 개인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임뱅크 크레딧을 적립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부모들은 시설을 떠날 때 이 크레딧을 지급받아 자녀의 시설 수용 대신 대안적인 돌봄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정부가 시설 운영에 투입해야 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또한 재난 구호 영역에서도 타임뱅크는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1992년 8월, 허리케인이 남부 마이애미를 강타했을 때, 주 방위군과 적십자가 도착하기 전 타임뱅크 회원들이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펼쳤다. 이 활동을 통해 1993년에는 15만 개 이상의 타임뱅크 크레딧이 지급되었고, 1994년에는 3,000명 이상의 회원이 매월 12,500개 이상의 크레딧을 획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외에도 타임뱅크는 노인 돌봄, 공동체 강화, 환경보호,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비가시적 인정과 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경환 외, 2023).
- 국내에서는 타임뱅크를 활용한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공익활동 수행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방안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아직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환성 외(2021)의 연구에서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타임뱅크와 공익활동 마일리지 결합한 모델을 제시하였고, 고경환 외(2023)는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디자인 모델을 제시한 캐롤 외(Carroll et al., 2017) 연구를 언급하였다.
- 캐롤 외(2017)는 시민협력과 공동체 구축을 위한 두 가지 주요 패러다임인 타임뱅크와 자원봉사를 분석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정보 인프라 구조를 설계하였다.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과 화면 모형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공동체 협동을 위한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타임뱅크와 비영리단체의 관계 디자인을 제시하였는데 그들이 제시한 두 가지 전략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멤버십을 개인뿐 아니라 기관 구성원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보상으로 시간을 받거나 기관에 다시 기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타임뱅크 멤버십에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참여하고, 공익활동가들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시간을 교환이나 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으며,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시스템이 정교화될 수 있다. 둘째, 타임뱅크 시스템을 활용한 상호 역량, 평판, 이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활동과 소비를 촉진시킨다. 타임뱅크를 통해 공익활동가들이 스스로 활동 커리어를 등록하고, 이에 대한 이용자와 수혜자들의 평가시스템까지 도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익활동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져 타임뱅크는 공익활동의 평판을 발전시켜 나가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타임뱅크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인정 지표와 인정 정도가 형성되고, 서비스 매칭을 통해 공익활동에 관계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회적 인정을 형성해 나가는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고경환 외, 2023).



출처: Carroll et al.(2017, p.58)

[그림 6-2] 타임뱅크를 활용한 공익활동 사회적 인정 시스템 모델

- 타임뱅크 제도는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전 대신 시간을 교환 가치로 삼는 구조는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돌봄, 교육, 재난 대응, 환경보호 등 공익 영역에서 시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는데, 타임뱅크는 활동가와 기관 모두에게 시간 크레딧이라는 가시적 보상을 제공하고, 이를 교환·기부하거나 이력과 평판 관리로 연결할 수 있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가 타임뱅크에 참여해 회원과 함께 자원을 순환시키면, 시민사회 전반의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다. 따라서 타임뱅크는 한국에서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민 참여를 촉진하며, 공동체 기반 복지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혁신적 플랫폼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2)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 공동체 활동에 쓰인 주민 시간, 재능, 현물, 현금에 비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1989년 시애틀에서 시작하여, 현재 미네소타, 밴쿠버 등 북미 주요 도시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의 운영 결과 매년 보조금보다 주민 자원이 더 많아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되어 1999년 케네디스쿨 혁신상을 수상하였다.
- 네이버후드 매칭펀드(Neighborhood Matching Fund, 이하 NMF) 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 네이버후드 매칭펀드⁶²⁾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재정지원 수단을 넘어,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로 공식화하고, 행정이 이를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구조를 갖는다.

- NMF는 지역 주민, 커뮤니티 그룹, 비영리단체 등이 제안한 공익 프로젝트에 대해, 시 정부가 주민의 기여에 상응하는 자원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민의 기여는 현금뿐 아니라 자원봉사 시간, 기술, 물품 등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며, 이를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시 정부가 동일한 규모의 자원을 대응 출자한다. 이러한 매칭 구조는 주민의 참여를 단순한 자발적 행위로 머물게 하지 않고, 공공의 가치로 환산하여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프로젝트 선정 과정에서 공익성, 지역사회 기여도, 주민 참여도 등이 평가 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사회적 타당성이 행정적으로 검증된다.
- NMF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한다. 첫째, 주민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가시화한다. 자원봉사나 현물 제공 등 비금전적 기여도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이는 공익활동의 다양성과 포괄성을 확대한다. 둘째, 주민활동에 대한 대응 출자와 활동의 공익성 인증이다. 시 정부가 주민의 제안에 매칭 자금을 제공한다는 것은 해당 활동이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일종의 공공 인증 절차로 작동한다. 셋째, 성과 보고 및 평가 체계이다. 프로젝트 완료 후에는 성과 보고서 제출과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는 공익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넷째, 도시계획과의 연계이다. NMF는 도시계획의 실행 수단으로도 활용되며, 주민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지역계획과 연계되어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에 기여한다.
- 시애틀시는 NMF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행정적 지원과 결합하여 지속가능한 구조로 전환되고, 주민과 행정 간의 협력관계 형성과 공익단체의 신뢰도가 향상되어 지역사회 사회의 신뢰가 구축되었다. 또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기획자/실행자로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이 증대하여 시민 역량이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 공공재도 형성하는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였다.
- 이와 같이 시애틀의 NMF 제도는 공익활동을 단순한 자발적 행위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행위로 전환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유의미한 모델이며, 특히 시민 참여와 행정의 협력, 공익성 인증과 자원 배분의 연계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핵심 원리를 제공한다.
- 시애틀의 네이버후드 매칭펀드(NMF) 제도는 타임뱅크와 더불어 활동가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에 힘을 제공한다. 주민이 제공하는 시간, 재능, 현물, 현금 등 다양한 형태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시 정부가 이를 금전적 가치로 매칭하여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을 단순한 자발적 행위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행위로 전환한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주민 참여를 공식화하고 공익성을 인증함으로써 행정과 시민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높여 지역 공공재 형성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도 기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NMF 모델을 참고하면, 시민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활동의 공익성과 참여도를 평가하여 보상하는 체계적 사회적 인정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민역량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3) 인정NPO법인 지원제도 (일본)

- 일본의 ‘인정NPO 법인 제도(認定NPO法人制度)’는 시민사회 조직의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장치이다. 이 제도는 1998년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의 제정과 함께 NPO 법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익성이 강하고 조직 운영이 적정하다고 인정받은 인정NPO법인에 대해 개인이나 법인 기부금뿐만 아니라 인정 NPO법인 그 자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권연이, 2021; 민병로, 2013).

<표 6-2> NPO법인과 인정NPO법인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NPO법인)	인정 특정 비영리 활동 법인(인정NPO법인)
● NPO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정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관할청(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의 인증을 받는 것이 필요. 신청서류의 일부는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간 게시하여 시민의 눈으로도 점검하고, 설립 인증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	● NPO법인 중, 폭넓게 시민으로부터 지원받는 등 일정한 요건에 대해 관할청(도도부현 또는 정령지정도시)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인정NPO법인으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음

출처: 이광희 외(2022, p.237)

- ‘인정 NPO 법인’은 일반 NPO 법인 중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단체에 대해 국세청 장관이 공익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여되는 지위이다. 이 지위를 획득한 단체는 기부자에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기부금 유치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구체적으로 ‘인정NPO법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법인이 ‘인정NPO법인’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우대 조치라는 특례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개인이 기부한 경우, 당해 기부에 관련된 지출금은 특정 기부금으로 간주하여 기부금 공제의 적용을 인정한다. ②법인이 기부한 경우, 일반 기부금의 손금한도액의 계산은 특정 공익 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에 맞추어서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③상속재산을 ‘인정NPO법인’에 기부한 경우 그 자 혹은 그 자의 친족 등의 상속세 등이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기부에 관련한 재산의 가격을 그 자의 상속세의 과세가격의 계산의 기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제상의 우대를 받는 ‘인정NPO법인’이 되기 위한 인정기준으로서 정보공개, 활동대상, 사업내용의 적절성, 운영조직 및 경리의 적절성, 사업보고서의 제출, 부정행위 기준, 설립 후의 경과 기간, PST(Public Support Test)의 요건에 대해 기준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인정 획득 법인 수는 1%에도 미치지 못하여 일본 시민단체는 그 비율이 1% 정도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계속 관련 운동을 지속하여 이후 수차례의 소규모 개정이 이루어졌다. 2011년 개정으로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NPO에 관한 기부금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2012년 4월 개정을 통해 특정 비영리 활동 분야를 17개에서 20개로 확대하

여 세제 혜택을 받는 인정NPO법인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관련 시민단체들은 2012년 이후의 시기를 이러한 제도를 토대로 NPO가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시기라고 간주하고 있다(권연이, 2021; 이광희 외, 2022).

- 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세제 혜택 제공을 넘어, 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인정 NPO 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는 사회적 신뢰도를 획득하며, 이는 기부자뿐 아니라 기업,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다양한 사회 주체들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부금 유치가 활성화됨으로써 단체의 재정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 제도는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로도 해석된다. 국가가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시민사회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통해 공익성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일본 시민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의 인정 NPO 법인 제도는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국가가 공익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단체에 사회적 신뢰와 공익성을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다양한 사회 주체와의 협력과 기부금 유치를 촉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러한 구조는 시민사회 조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기준을 통해 공익성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공공-민간 협력 모델로, 단체의 재정적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인정 NPO 법인 제도는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인정 구조를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유의미한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3.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 한국에는 미국의 Idealist.org나 유럽의 NGOJobs.eu와 같은 전문적인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이 아직 공식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나 NPO지원센터의 게시판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가 산발적으로 공유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사)루트임팩트에서 운영하는 임팩트 커리어(Impact Career)¹⁾가 비영리 영역을 포함해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제3섹터 전반을 포괄하는 비교적 체계적인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대안적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 세계적으로 비영리·자선·사회적기업 분야에서는 전문화된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인재와 기관을 연결하는 사례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과 글로벌 시장에서는 Idealist와 Chronicle of Philanthropy Jobs, The Council on Foundations가 있으며, 영국에서는 CharityJob, 호주에서는 Pro Bono Australia Jobs, 캐나다의 CharityVillage, 그리고 유럽 중심의 EuroBrussels 등이 있다. 이들 플랫폼은 단순한 채용공고 게시를 넘어, 자원봉사·인턴십 정보 제공, 재단 및 NGO 네트워킹 지원, 교육과 역량 개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플랫

품의 특징과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 및 플랫폼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다양한 사례 중에서, 운영 구조와 목표가 비영리 재단·단체 중심으로 설계되어 국내 비영리·공익 일자리 활성화에 참고할 만한 곳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정책적·운영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선행 연구와 공개 웹사이트 자료를 통해 운영 방식과 채용 구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미국의 Idealist와 The Council on Foundations, 영국의 CharityJob 사례를 살펴보았다. Idealist는 미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 비영리, 사회적기업, 공공기관의 채용, 자원봉사, 인턴십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 글로벌 플랫폼이며, CharityJob은 영국의 자선단체, NGO, 재단 등의 채용공고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비영리 섹터 인력 확보의 핵심 채널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The Council on Foundations는 미국 재단·자선단체 회원 기반 협회로서 Career Center를 통해 재단 및 비영리 분야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인재 매칭을 지원하며, 정책·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섹터 전반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표 6-3> 해외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플랫폼명	주요 특징	국가/지역	웹사이트
Idealist.org	글로벌 최대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미국/글로벌 (한국 포함)	https://www.idealist.org
Chronicle of Philanthropy Jobs	미국 비영리단체, 대학, 재단, 문화 예술기관 채용 정보	미국	https://jobs.philanthropy.com
The Council on Foundations	Career Center를 통해 재단/비영리 분야 채용공고 게시 및 인재 매칭 지원	미국	https://jobs.cof.org
WorkforNonprofits.org	미국 중심 비영리조직 채용 게시판	미국	https://workfornonprofits.org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 Job Board	미국 비영리 협의회 공식 채용 채널	미국	https://www.councilofnonprofits.org/nonprofit-jobs
Social Impact Jobs	사회적 영향 중심 채용 정보	미국/글로벌	https://socialimpactjobs.org
Nonprofit Staffing	비영리 전문 인재 채용 서비스	미국	https://nonprofitstaffing.org/hire
ImpactProfessionals	사회적 가치/CSR/DEI 관련 직무	미국/글로벌	https://impactprofessionals.org/job-board
NonProfitJobs.org	비영리 경영/관리직 채용공고 다수	미국	https://nonprofitjobs.org
Work for Good	비영리/공익 조직 중심 채용	미국	https://www.workforgood.org
CharityVillage	캐나다 비영리·사회적경제 일자리 및 교육·리소스 제공	캐나다	https://charityvillage.com/jobs
CharityJob	영국 자선단체, NGO, 재단 등의 채용공고 전문 플랫폼	영국	https://www.charityjob.co.uk
Third Sector Jobs	영국 비영리/자선단체 전문 채용	영국(UK)	https://jobs.thirdsector.co.uk

Global Charity Jobs	전 세계 비영리 직업, 특히 국제 NGO	유럽/글로벌	https://globalcharityjobs.com
NGOjobs.eu	유럽 NGO 전문 채용 포털 (독일 어권 강세)	유럽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중심)	https://www.ngojobs.eu/en
Impactpool	UN, 국제기구, 인도주의/개발 NGO 채용	유럽/글로벌	https://www.impactpool.org
Globaljobs.org	국제 NGO/싱크탱크/비영리 채용 포털	유럽/글로벌	https://www.globaljobs.org
DevNet.Jobs.org	개발·인도주의 분야 국제 비영리 채용	글로벌 (유럽 포함)	https://www.devnetjobs.org
The Impact Job	사회적 가치/지속가능성 관련 채용	유럽/글로벌	https://www.theimpactjob.com
EuroBrussels	EU 기관, 유럽 NGO, 협회 등의 채용공고 게시	유럽	https://www.eurobrussels.com
Pro Bono Australia Jobs	호주 비영리·사회적기업 구인구직, 섹터 뉴스와 리소스 제공	호주	https://probonoaustralia.com.au/jobs

1) Idealist.org

- (기관 개요) Idealist는 뉴욕에 본부를 둔 501(c)(3) 비영리단체로, 1995년 Action Without Borders에서 설립한 글로벌 채용·구직 플랫폼이자 네트워크이다.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을 목표로, 사람·조직·아이디어·자원을 연결하여 실천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의도와 행동 간의 틈을 좁히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매달 약 130만 명이 사이트를 방문하며, 매년 1,500만 명 이상을 180개국 20만 개 이상의 조직과 연결하여 채용, 인턴십,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초에는 세계 최대 온라인 자원봉사 플랫폼인 VolunteerMatch와 합병하여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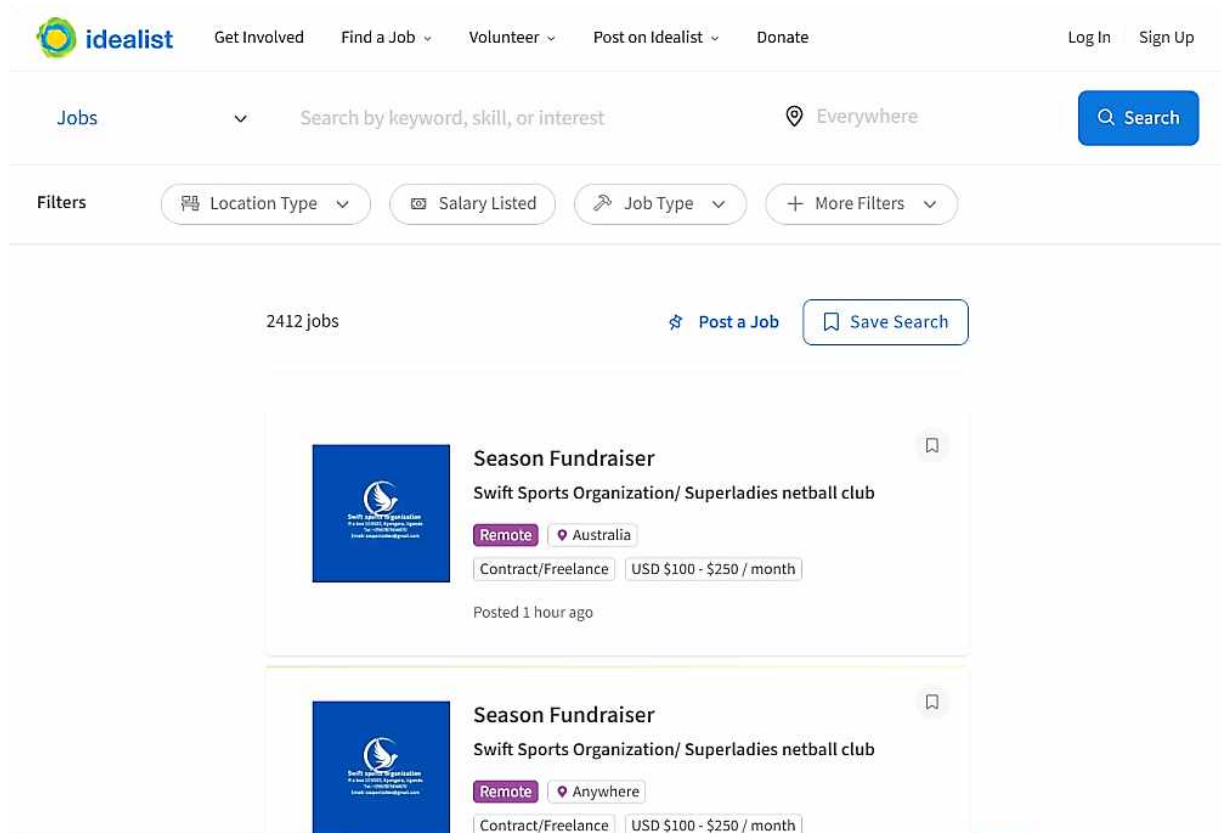
<Idealist.org 창립 스토리>

Idealist의 시작은 인터넷 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립자는 뉴욕 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비영리단체 명단을 전봇대에 붙이며 자원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결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발상은 자원은 풍부하지만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자원과 수요를 연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인터넷 사용이 확산하던 초기, 설립자는 검색 기능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람들과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최초의 비영리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다. 로고는 숲, 강, 태양 등 자연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Imagine (노랑, 전구), Connect(연결, 물), Act(행동, 청신호)를 의미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약 2년 전 창립자가 로고를 공공재로 공개하면서 단체의 소유를 넘어 Idealist의 이상과 상징으로 진화하였다. 이 로고를 공원에 그릴 때 ‘나는 아이디얼리스트(Idealist)’라는 의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한다(서울시NPO지원센터, 2019).

- 주요 사업으로는 2004년부터 수천 명의 대학원 지망생들과 미국 및 전 세계 공익 분야 대학원 프로그램 입학 담당자를 연결하는 'Idealist Grad School Fairs/ 대학원 박람회', 비영리 영역에서의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고 NPO 관련 뉴스와 사람 등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Idealist Careers', 비영리 및 소셜임팩트 부문에서 구직 및 직업개발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을 제공하는 'Job Searching Resources', 기관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리크루팅(구인구직) 플랫폼'⁶³⁾ 웹사이트 운영이 있다.
- **(채용 정보 규모)** 2025년 9월 20일 기준 2,412건의 채용공고, 인턴십 147건, 자원봉사 모집 102,074건, 행사 249건이 게시되어 있고 229,847개의 조직이 등록되어 있다. 2025년 현재까지 120만 개 이상의 채용공고와 20만 개의 인턴십이 게시되었다. 각 공고에는 채용하는 기관 및 팀의 특성, 지원 요건, 근로 조건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사항을 요약하여 공고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가입 조건 및 절차)** 비영리 및 사회적 미션이 있는 단체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IDO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비영리단체, 정부기관, 비영리단체에 대한 컨설턴트/공급업체, 채용업체, 사회적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 즉 비영리단체나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곳들만 가능하다. 가입 승인 전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작동되고 있는 기관/조직의 웹사이트가 있는지 확인하며, 활동성 여부도 체크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우 501c3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웹사이트에 가입하려는 조직 같은 경우 미션이 정말 사회공헌 목적이라는 것을 추가로 확인한다.
- **(수익구조)** 주요 수익은 채용공고를 원하는 기관이나 조직들은 공고 시 지불하는 비용이다. 공고 비용은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영리기업 간 차이가 있으며('25년 기준 비영리단체 및 정부기관의 경우 연간 멤버십 비용은 149달러임), 미국 외 조직들은 무료이다. 또 다른 수입원은 'Idealist Grad School Fairs/ 대학원 박람회'의 참가비용이다. 참여자들은 무료이지만 학교들은 부스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2019년 기준 700달러임). 이러한 수수료가 지출을 대부분 커버한다.
- **(운영방식)** 플랫폼에서는 구직자와 구인기관과의 매칭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지만, 등록된 조직들이 찾고 있는 인재를 직접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 콘텐츠 마케팅, 행사, 이메일 홍보 등을 통해 구직자들을 플랫폼으로 유인하지만, 헤드헌팅을 하지는 않는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성공요소 및 경쟁력)** 적극적인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1:1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런 플랫폼을 최초로 설계한 단체이기도 하고, 30여 년간 플랫폼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비영리 고용 시장에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가장 믿을만하다고 간주되고 있는 단체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검색할 수 있는 정보량도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또한 IDO에서는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는 높은 수준의 인재들이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찾는 인재가 좀 더 많이 연결되는데 이는 유사기관들 간의 비교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63) Idealist. <https://www.idealist.org/en/remote-jobs>(2025.09.20. 접속)

- Idealist.org는 30년 이상 운영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공공기관의 채용, 인턴십, 자원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엄격한 가입 기준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풍부한 활동 정보 제공을 통해 플랫폼 신뢰성과 접근성을 확보한다. 설립 초기부터 자원과 수요를 연결하는 혁신적 접근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운영 철학은 한국 플랫폼 설계 시 참고할 만한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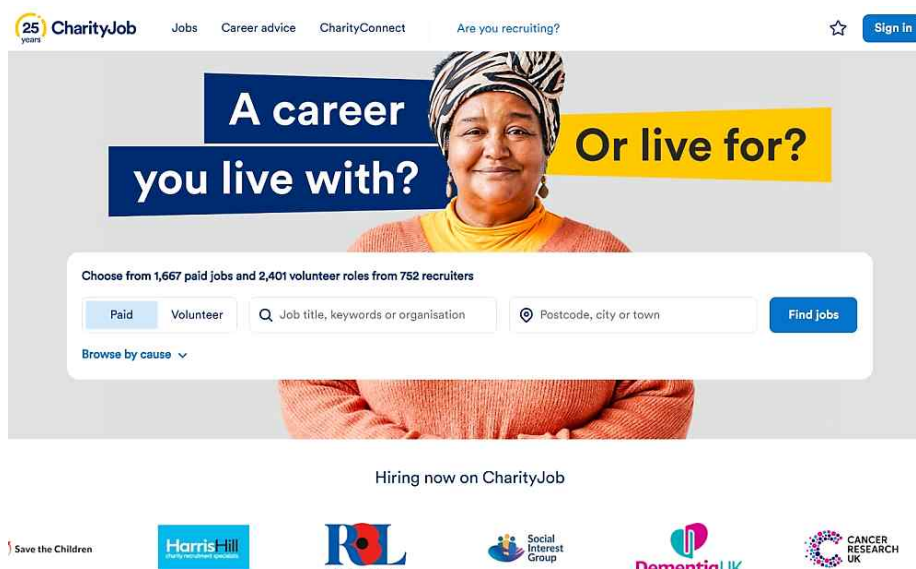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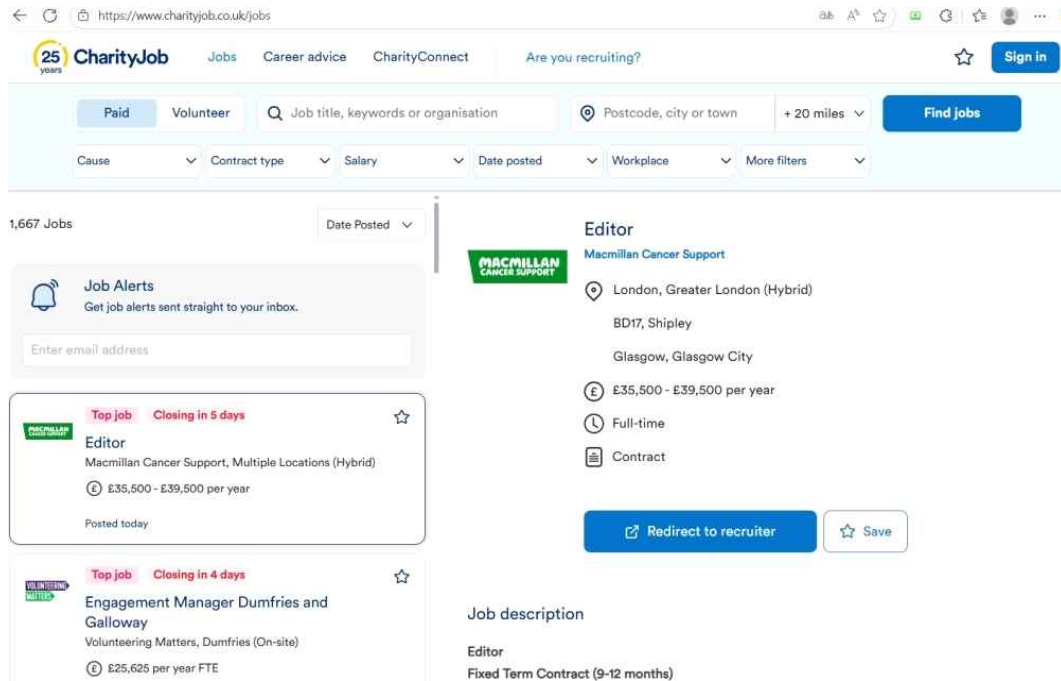
2) CharityJob

- (기관 개요) CharityJob은 2000년에 설립된 영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전문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자선 단체, NGO, 재단, 사회적기업 등 영국 내 비영리조직을 주요 대상으로 운영된다. 플랫폼은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웹 기반 서비스로, 등록된 기관은 직접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구직자는 이를 검색하여 지원할 수 있다. 2025년 9월 28일 기준 752개의 채용 기관에서 1,667개의 일자리와 2,401개의 자원봉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식 회원 제도는 없지만, 구직자와 기관 간 프로필 관리와 상호등록 기능을 제공하여 인재와 기관 간 매칭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 (운영방식) CharityJob은 기관이 게시한 공고를 플랫폼이 중앙에서 관리하고, 구직자는 직종 (fundraising manager, mental health, finance, director/CEO), 지역, 분야, 근무형태, 급여 수준 등의 필터를 통해 맞춤형 검색을 수행할 수 있다. 구직자가 관심 분야에 따라 채용공고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동물 보호, 예술·문화·유산, 자선단체 지원, 지역사회 개발, 장애, 다양성 및 포용, 교육, 노인, 환경, 종교 기반, 보건·건강, 주거 및 노숙자 지원, 인권, 국제 개발, 사법·법률, 회원 기반 단체, 정신 건강, 연구, 사회복지, 스포츠, 청소년 및 아동 등 20개 이상의 세분화된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자신의 관심과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기관은 특정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메일 알림 기능을 제공하여 새로운 공고가 게시되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고 구직자를 위한 이력서 작성·관리 도구와 리소스 제공, 경력 개발 뉴스, 교육 자료 등 부가 서비스를 통해 비영리 섹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채용공고 비용)** 2025.09.28.일자 홈페이지 검색 기준으로 채용공고 유료 패키지는 Basic(£285), Branded(£345), Enhanced(£499), Premium(£735)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패키지는 노출 범위, 추천 기능, 검색 상단 표시, 이력서 매칭, 이메일 알림 등 옵션을 차별화하여 구인 기관이 원하는 수준으로 채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Branded 패키지는 Basic 대비 약 73% 더 많은 지원자를 유치하며, Enhanced 패키지는 약 230% 더 많은 지원자를 유치한다. Premium 패키지는 이력서 매칭과 이메일 알림 기능을 추가하여 타깃 인재 접근을 한층 강화한다. CharityJob은 매달 약 375,000명의 고유 방문자를 기록하며, 공고당 평균 658회의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첫 Branded 공고 게시 시 £100 할인 혜택도 제공하여 신규 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 **(강점 및 경쟁력)** CharityJob은 비영리 채용 전문화 모델과 분야별 세분화, 다양한 유료 옵션, 인재 매칭 기능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국내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설계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특히 다양한 직급과 직무 유형을 아우르는 공고 제공, 구직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프로필 관리, 노출 강화 옵션 등은 국내 비영리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활용 가능한 실질적 운영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 CharityJob은 분야별 세분화, 직급·근무형태별 필터링, 유료 공고 패키지, 프로필 관리와 이력서 매칭 기능을 제공하여 구인·구직 매칭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옵션을 통해 구인 기관이 원하는 인재 접근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국내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에서 공고 노출 전략과 인재 매칭 설계 시 적용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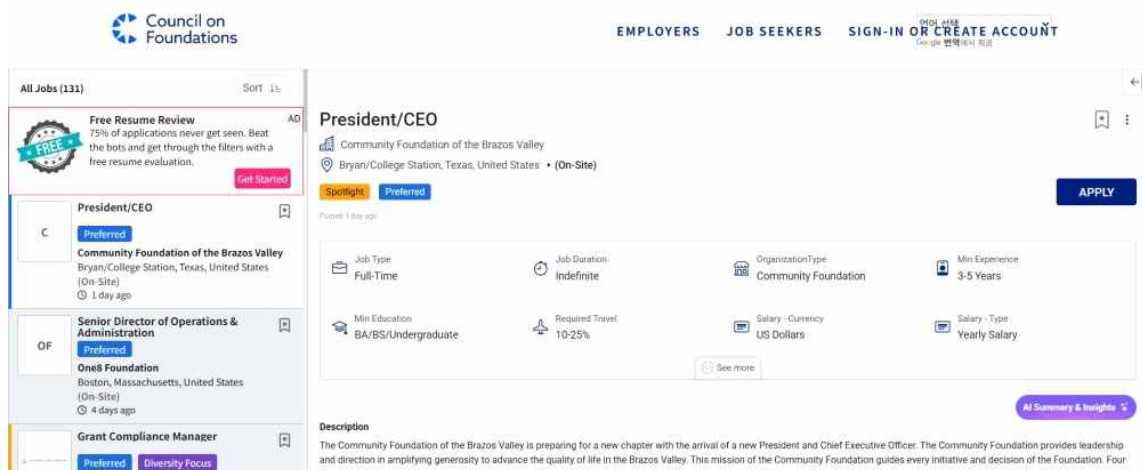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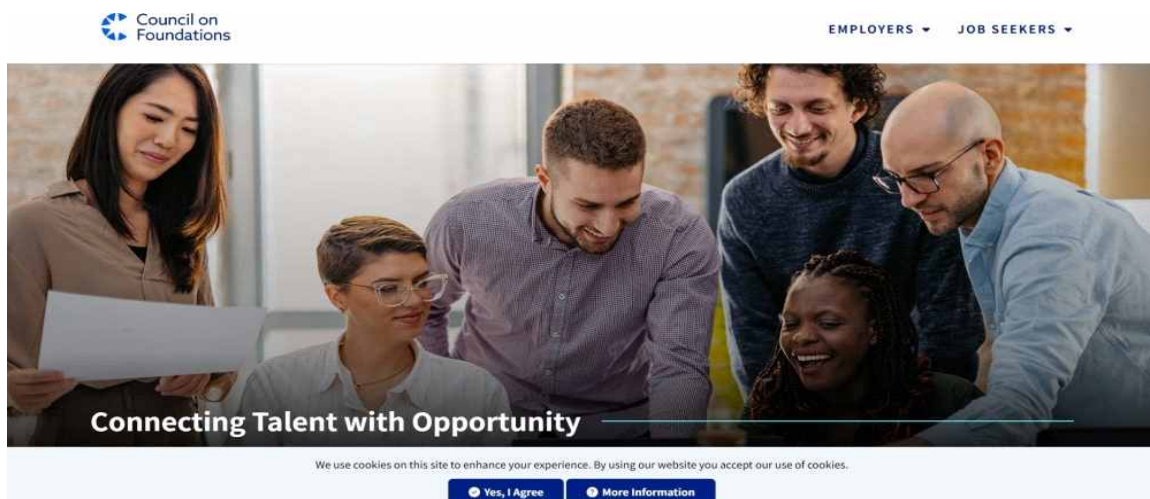




3) The Council on Foundations

- **(기관 개요)** 1949년 설립된 단체로 초창기에는 지역사회 재단네트워크로 활동하다가, 지역사회재단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역사회재단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재는 지역사회재단의 권익보호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재단들을 대변하고 있다. 자선단체 활동능력 확장, 향상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회, 리더십 및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조직의 미션으로 삼고 있으며, 정책/법률을 제정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온 미국 시민사회 우산 조직이다. 작은 규모의 지역재단부터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거대 규모의 기업재단, 민간/사립재단, 가족재단 등 700개가 넘는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5개의 재단이 유럽에 있다. 매년 전국대회를 열어 재단의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 ‘미국 사회의 변화나 도전과제, 재단의 역할 변화’ 등을 공유한다.
- **(주요 사업)** 자선영역 지도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육성하는 교육 및 전문개발 프로그램 제공, 자금 조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의 규제 환경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제공, 기부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지원, 자금 조달자 간 관계 형성 및 강화, 의회 및 행정부에서 일하는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기관의 다양한 멤버들을 대변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인구직 플랫폼인 COF Career Center(캐리어센터)와 이력서 작성, 소셜 미디어 구성, 인터뷰 및 비영리부문에서 경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Job Search Resource Center(구직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COF Career Center 캐리어센터) COF 회원, 비회원 및 조직으로 분류되는 비영리 종사자들을 고용 주와 연결하는 곳으로 전국에서 비영리 직업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은 데이터베이스이다. 직위, 업무분야, 지역 세 가지로 비영리 직업 검색이 가능하다. 2025년 9월 20일 기준 131개의 일이 게시되어 있다.
- COF는 비영리 재단을 위한 전국 단위 데이터베이스와 전문개발 프로그램, 정책·법률 상담을 제공하며, 비영리 종사자 경력 향상을 지원하는 구직지원센터(Job Search Resource Center)를 운영한다. 이는 한국에서도 재단 및 비영리단체 인력 개발과 구인·구직 연계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델로 참고될 수 있다.



4) 비영리 일자리 트렌드

-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 파악한 최근 비영리 일자리 채용의 가장 큰 변화는 근무 방식의 유연화와 조직 문화적 가치의 강화다. 팬데믹 이후 원격·하이브리드 근무가 보편화되었고,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인재를 유치할 기회가 확대되었다. 동시에 지원자들은 조직이 실제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를 실천

하는지, 직원 복지와 워라밸,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에도 반영되어, 단순한 채용 게시판에서 벗어나 원격 근무 여부, 조직문화, 복지 정책, DEI 실행 수준까지 보여주는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 또 하나의 중요한 흐름은 역량 중심 채용과 내부 성장지원이다. 학력이나 자격보다 실제 스킬을 강조하는 경향이 늘면서, 데이터 분석·디지털 협업·커뮤니케이션 같은 Hard & Soft Skills가 핵심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동시에 조직들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내부 이동성, 교육·훈련(upskilling), 커리어 경로 제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같은 디지털 도구 활용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특히 ATS(지원자 추적 시스템)와 자동화된 매칭 기능은 플랫폼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마지막으로, 재정 압박과 경쟁 환경 속에서 조직은 신규 채용 확대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 펀드레이징·비즈니스 개발 역량 강화, 투명한 경영·채용 절차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사명감 있는 일자리”뿐 아니라 투명성, 성장가능성, 복지·문화를 함께 기대하게 되었고, 플랫폼과 고용주 모두 이러한 기대에 대응해야 지속적인 인재 확보가 가능하다.
- 글로벌 비영리 일자리 트렌드를 한국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비영리부문은 전문 플랫폼의 부재, 정보의 분산, 청년 세대의 기대 변화, 재정 압박에 따른 인력 전략의 한계 등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여전히 지역별 공익활동지원센터 게시판이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고 등 산발적 경로에 의존하고 있어, 구직자에게 필요한 유연 근무·DEI·복지·성장 경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동시에 밀레니얼·Z세대는 사명감만이 아니라 워라밸, 투명성, 성장가능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비영리조직은 직무 설계와 인재 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도 업스킬링·디지털 훈련과 연계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표 6-4> 플랫폼을 통해서 본 해외 비영리 일자리 트렌드

트렌드	설명	왜 중요한가
유연 근무 / 하이브리드·원격 근무	팬데믹 이후 고정된 사무실 중심 근무에서 벗어나, 원격(fully remote) 혹은 사무실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형태가 보편화되고 있음	재능 있는 인재들이 유연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는 조직이 유리함. 특히 국제 NGO나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은 지리적 제약이 줄어들면서 인재 풀을 넓힐 수 있음
DEI (Diversity, Equity, Inclusion)의 실행 강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 정책 이상의 실질적인 조직문화 요소로 중요해지고 있음. 리더십 구성, 채용 프로세스, 직원 경험 등에 DEI가 반영됨	지원자들이 조직의 가치관, 문화, 윤리성 등을 평가할 때 DEI 요소가 큰 요소가 됨. DEI 잘하는 조직이 브랜드 이미지나 직원 유지율 측면에서도 유리함

스킬 중심(hard + soft skills) 채용	• 학력/자격보다는 실제 업무 능력, 기술(skill) 중심으로 보는 경향 증가. 기술화된 직무, 분석 능력, 커뮤니케이션, 관계형성 등의 역량이 중요시됨 • 일부 직무에서 degree가 필수가 아님, 다양한 배경의 인재도 접근 가능해짐. 또한 직원 유지 및 교육(training, upskilling)이 조직 전략의 일부로 포함됨
내부 이동성(internal mobility) & 직원 성장(upskilling, career paths)	• 조직 안에서 경력 개발 경로 제공,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 직원이 다른 역할로 이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흐름 • 직원 이탈(turnover) 줄이기 위해 중요. 직원 만족도 높이고 조직의 노하우 축적에도 도움
기술 활용 증대(Digitalization / AI / 데이터 분석 등)	• 지원자 추적 시스템(ATS), 인공지능(AI) 도구, 가상 협업·프로젝트 관리·커뮤니케이션 툴 등이 일반화.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어느 채널에서 지원자가 오는지, 어떤 스킬이 트렌드인지 등) • 운영 효율 개선, 채용 과정 간소화, 비용 절감, 조직 규모가 작더라도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경쟁력 요인
직무 유형 변화: 펀드레이징·비즈니스 개발 역할 증가	• 지원금(grants)이나 기부 외에 자원(Resource)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비즈니스 개발, 수익 다변화, 펀드레이징 전문 인력 수요 늘어남 • 재정 안정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환경. funder(기부자, 정부, 후원기관)의 기대 변화도 있음
문화 / 직원 복지 / 일과 삶의 균형 중요성 증가	• 정신 건강, 번아웃(burnout) 예방, 직원 웰빙(Well-being) 정책, 유연 근무, PTO, 직원 피드백, 포용적 문화 등이 채용 경쟁력 요소가 되고 있음 • 인재 유치뿐만 아니라 유지(retention)에 매우 중요. 조직 지속가능성에도 연결됨
경영진 및 리더십 변화	• 밀레니얼/Gen Z 세대가 리더십 또는 이사회(board) 역할에 진입, 조직 운영 방식·소통 방식 변화, 더 투명하고 참여적인 리더십 스타일 요구됨 • 조직이 내부적으로 권한 위임(empowerment), 피드백 문화, 의사결정의 민주성 등에 투자하게 됨. 또한 리더십 변화가 조직 구조 및 정책 변화로 이어짐
채용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증가	• 급여 공개(pay transparency), 채용 기준 공개, AI 사용 시의 편향(bias) 이슈 감시, 윤리적 채용 절차 등 • 후보자가 조직을 평가할 때 이런 요소가 중요한 기준이 됨. 후자가 없으면 지원 기피 요인이 될 수 있음
경쟁 환경 및 예산 압박	• 기부 감소, 정부/재정지원의 변화, 인플레이션 등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인건비 및 운영비 절약 및 효율화 요구가 커짐. 채용을 늘리기보다는 조정(restructuring), 역할 통합, 대체 인력 활용 등을 고려함 • 많은 조직이 규모 축소 또는 신규 채용보다 기존 인력 재배치, 협업 강화, 비용 절약 전략을 우선

4. 요약 및 시사점

- 비영리 일자리 지원을 위한 해외 사례들을 세 가지 접근 방식—재정지원 정책, 사회적 인정 제도,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방식은 비영리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며, 국가별 사례를 통해 다양한 전략과 효과를 보여준다. 이를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해외 사례에서 나타난 재정지원 방식은 미국의 정부 보조금과 세제 혜택, 일본과 폴란드의 주민세 1% 및 백분율 제도처럼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한 간접지원 구조가 특징적이다. 이는 비영리단체가 단순히 기부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일부 보조금 지원과 조세 혜택이 존재하지만, 제도적 범위가 협소하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 속에 안정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도 재정지원 체계를 단순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부세제 연계제도나 안정적인 간접비 보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공익활동가의 생계 안정과 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조건이 될 수 있다.
- 사회적 인정 측면에서, 해외 사례는 비영리단체의 공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미국의 IRC 501(c)(3) 등록제도는 단체의 세제 혜택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며, 일본과 폴란드의 주민세 지정 제도는 시민이 세금의 사용처를 직접 결정함으로써 단체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또한, 상호호혜적 시스템인 타임뱅크, 공동체 활동에 대한 기여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네이버후드 매칭펀드, 일정 요건을 갖춘 인정NPO법인 제도(일본) 등은 공익활동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반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양적 성장은 두드러졌으나, 제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지위를 ‘국가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하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하다. 특히 시민권리 옹호 분야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사회적경제 중심의 정책 편중으로 인해 전통적 NGO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비영리단체를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혁신의 핵심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측면에서는 전문화와 맞춤형 매칭, 부가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난다. 미국 Idealist, The Council on Foundations, 영국 CharityJob 등은 구직자와 기관 간 맞춤형 매칭을 제공하여, 구직자는 자신의 관심과 전문성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하고, 기관은 적합한 인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시에 이력서 관리, 교육·역량 개발 자료 제공, 이메일 알림 기능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참여율과 플랫폼 지속성을 강화한다. 이러한 플랫폼 운영은 정책적 재정지원이나 세제 혜택과 결합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본질적으로 플랫폼 자체의 설계와 운영 전략이 성공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적용할 경우, 단순한 재정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맞춤형 매칭, 데이터 기반 인재 관리, 커뮤니티 구축 등 실질적 운영 전략과 병행해야 지속 가능한 고용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비영리 일자리 지원이 단순한 고용 창출을 넘어, 시민 참여 확대, 공공성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복합적 목표를 지닌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역할은 재정적 지원뿐 아

나라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민간과의 협력 구조 속에서 비영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한국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 역시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의 다변화,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화, 그리고 비영리 일자리 정보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는 플랫폼 구축 등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Ⅶ.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제안

1.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

1) 정책 기본방향

- 일자리는 곧 인간의 생존이고 자존감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굳건하게 자리 잡게 하는 매개체이다. 일 자리의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적 가치를 모든 사람이 인식하고, 사회가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자리를 키워야 한다. 나아가, 그 일자리가 삶을 윤희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즉 고용을 넘어 ‘일(Work)’과 ‘일하는 삶(Work Life)’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투자란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든 일자리에 대한 존중,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비물질적 투자를 포함한다(이상헌, 2025).
-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 생산적·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마이클 샌델(Michael Sandel)은 그의 저서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모든 사람의 ‘일할 권리’⁶⁴⁾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하고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기여적 정의’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선에 기여하는 역할에 따라 존엄과 존경을 인정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소득이나 부의 분배를 넘어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중시한다. 또한 불평등 연구의 대가 앤서니 앳킨슨(Anthony Atkinson)은 일자리 정책이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 민선 8기 경기도 일자리 정책은 ‘기회소득’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공공정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동시에 청년·여성·장애인·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시장이 보상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러한 정책 기조는 비영리 일자리의 특성과도 맞닿아 있다. 비영리단체는 지역사회 내 돌봄, 문화예술, 환경, 인권, 지역공동체 강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특화된 고용 주체로서, 공공성과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비영리 일자리는 사람들이 가족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라 할 수 있다. 특히 기회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보상’과 대상별

64) 국가나 사회는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시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흔히 일자리 보장이라고 부른다.

맞춤형 지원은 비영리 영역에서 이미 활발히 구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영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 따라서 민선 8기의 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경기도는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부문을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가 지향하는 포용적·균형적 일자리 정책을 완성하는 핵심 축이 될 수 있다.
- 이를 위해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언급된 비영리 일자리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023~2025)」에서 제시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호 외, 2021)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①일자리 정책에서 영리와 비영리 간의 차별 해소, ②더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일자리를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비영리 일경험 기회 확대, ③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확대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첫째,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촉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확립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경제 일자리 정책과 청년·여성·신종년 등 대상별 일자리 정책과 연계함으로써 비영리부문이 도정의 종합적 일자리 전략안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영리 일자리 통계체계 구축과 정례적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의 실증적 근거를 확보한다.
- 둘째,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일자리 창출, 교육·훈련, 고용유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활동가들의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더불어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여 비영리부문 일자리가 단순한 ‘보조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적 직업 영역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한다.
- 셋째, 지역 기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시·군 단위에서 지역 특화 비영리 일자리 모델을 발굴·확산한다. 아울러 공공 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민간·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한다.
- 결국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보이지 않는 일자리에서 좋은 일자리로”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한 고용 창출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활동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진 방향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공익적 일자리 정책을 제도와화하고, 지역사회 신뢰와 사회적 연대 자본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1) 추진전략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 의미 : 비영리 일자리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과제
 -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의 정책 위상 제고 및 제도권 내 편입
 - 비영리 일자리가 기존 일자리 정책에 연계·통합되어 시너지 창출
 - 비영리 일자리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2) 추진전략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 의미 :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 일자리 질을 향상하여 공익활동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활동 여건을 조성
- 추진과제
 -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 확보
 - 세대별 맞춤형 공익 일자리 확대
 - 공익활동가 직업의 안정성 및 전문성 제고

(3) 추진전략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의미 : 다양한 주체(지자체, 비영리단체, 민간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비

영리 일자리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 기반 일자리 모델 확산

- 추진과제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 기대효과

-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현장성 강화
- 공공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이고 다원적 자원 조달 체계 마련
-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 구축

<표 7-1>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 체계도

근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비전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기반 조성으로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경기도		
슬로건	기여적 정의를 위한 투자,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목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질적 개선을 통해 공익활동가의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및 시민사회 활성화 실현		
3대 추진전략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9개 추진과제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16개 세부사업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기존사업 확대)청년/스타트업 지원, 역량강화 • 신규사업 개발)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심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마련

2. 추진과제별 세부 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성	-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산업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며,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음. 비영리 일자리아말로 옹호 활동, 돌봄, 환경, 문화, 인권 등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임 -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표방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에 비영리 일자리를 고용 창출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비영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음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중심으로 도내 26개 시·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지원, 판로지원, 창업 및 도약지원 등 창업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다양한 일자리 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은 대부분 빠져있음. 「경기도 사회적일자리조례(2015.08.제정)」의 경우 비영리단체를 고용 창출의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와 복지, 서비스 분야에 치중되어 비영리부문은 사실상 배제되어 있으며 정책 실효성도 낮음 - 이에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독립적인 조례를 통해 보조금과 같은 ‘사업’ 단위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중장기적 비전과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사업개요	• (목적) 경기도 차원에서 비영리 일자리 창출과 촉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양질의 공익적 일자리를 확대 • 주요 내용 ① 비영리 일자리의 정의와 범위 규정 ② 도지사의 책무 및 지원 근거 마련 ③ 비영리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④ 전담기구 및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설치 근거 ⑤ 예산 지원, 교육·훈련, 연구조사, 성과평가 등 포함
추진계획	• 1단계('26) : 조례 제정(안) 마련 및 현장 의견 수렴 • 2단계('27) : 조례 발의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공포 → 조례 제정 및 시행/「비영리 일자리 창출·촉진 종합계획」수립
성과평가	• 단계별 이행 여부, 달성률
기대효과	•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육성 및 경기도 공익활동 기반 강화

②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필요성	• 현행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비영리 일자리 부문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상 '보조적 사항'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활동가의 고용 안정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제도적으로 담보하지 못함 * 현행 조례의 한계 <table border="1"> <tr> <td>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td><td>➤ 일자리 성격·범위 구체성 부족</td></tr> <tr> <td>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td><td>➤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체계 미흡</td></tr> </table> -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함	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일자리 성격·범위 구체성 부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체계 미흡
제2조(정의) 6항 : “비영리 일자리”란 시민, 법인, 단체 등 공익활동을 하는 주체가 공익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말한다.	➤ 일자리 성격·범위 구체성 부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9항 : 비영리 일자리 지원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종합적 정책방향·지원체계·평가체계 미흡				
사업개요	• 개정 방향 ① 기존 조례의 성격 유지 :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포괄 목적이므로, 비영리 일자리는 공익활동의 기반 요소로 보완				

	② 독립 조례와의 차별화 : 독립 조례(비영리 일자리 조례)는 비영리 일자리 자체를 주제로 한 종합지원·촉진 법제, 개정 조례(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정책안에서 비영리 일자리를 ‘연계·통합 지원’하는 역할 • 보완 내용 ① 정의 조항 보강 - 현행 : “공익활동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 개정 : “공익활동 수행 과정에서 창출되며, 지속가능한 고용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자리”로 확장 → 지속가능성·전문성·사회적 가치 강조 ② 기본계획 조항(제6조) 확대 - 현행 : “지원 및 정보 제공” - 개정 : 비영리 일자리 창출·육성 전략 포함,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 방안 명시, 경력개발 지원 추가 등 ③ 지원 조항 신설 -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제도(인증·포상) 근거 포함 ④ 협력·연계 조항 신설 - 경기도 일자리 정책, 사회적경제 정책과의 정책 연계 의무 규정 - 시·군, 민간단체, 기업과의 협력 체계 명시
추진계획	• 1단계('26) : 개정안 마련 → 발의 →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 본회의 의결 → 공포 → 조례 제정 및 시행
성과평가	• 단계별 이행여부, 달성률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공익활동가의 고용안정, 노동환경 개선, 사회적 인정 제고

(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①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필요성	경기도 내 기존 일자리 정책은 주로 영리 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비영리단체의 참여가 제한적이거나 배제됨. 이로 인해 동일한 고용 창출 효과를 내더라도 비영리단체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며, 활동가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임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정하고, 비영리단체가 고용 창출의 주체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사업개요	(목적) 기존 고용지원, 고용유지, 고용장려 정책에 비영리단체를 고용 주체로 명시하여 비영리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 주요 내용 ① 경기도 일자리 종합계획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포함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에 준하는 비영리 일자리 지원 확대 ③ 경기도 주요 인건비 지원 사업인 '경기 중소기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사업' 등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명시
추진계획	1단계 ('26) :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 경기도 일자리 종합계획에 비영리부문 포함, 기존 지원사업에 비영리 고용 주체 참여 항목 신설 2단계 ('27) : 기업형 사업과 구분된 비영리 맞춤형 성과 지표 개발 - 공익성, 사회서비스 제공 효과 등 비영리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구축 -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분석 -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확대 적용
성과평가	-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포용 여부 건수 - 경기도 일자리 정책 내 비영리부문 예산 증감액 - 비영리부문의 GRDP 기여도, 공동체 삶의 질 향상 기여도
기대효과	- 비영리단체가 안정적 고용 창출 주체임을 제도적으로 인정 -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의 포용성을 제고하여 정책의 형평성 제고 - 기업·비영리 상생 구조를 형성하여 도내 일자리 생태계 다변화

②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필요성	- 경기도 일자리 활성화 5대 전략 중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청년, 여성, 중장년,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 대상의 특성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일자리 정책이 주로 민간기업(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등)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취업자의 다양한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 - 취업 취약계층이 진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돌봄·문화예술 등에서 비영리단체는 주요 고용처 역할을 하고 있어 관련 정책에 비영리단체를 제도적으로 포함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함
사업개요	(목적) 수요·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비영리 일자리를 포함하여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 주요 내용 ① 대상별 일자리 사업의 고용처를 기업 + 비영리단체로 확대 ② 청년 인턴십, 여성 재취업, 중장년 경력전환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에 비영리단체 참여 허용 및 지원 강화 - (청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취업지원 사업 : 중소기업 한정 → 비영리 확대 - (청년)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 민간형 사회적경제조직 한정 → 비영리 확대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은 단기적 일자리 창출보다는 인적 자본에 대한 사회적 투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서 비영리와의 친화성이 높은 정책임 - (청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 청년복지포인트(비영리 포함) → 비영리 가능 홍보 /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 → 비영리 확대 - (청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 배제 → 프로젝트형에 시민사회 포함 - (중장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 비영리법인 포함 → 비영리 가능 홍보 - (중장년)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 중소중견기업 한정 → 비영리 확대
추진계획	1단계 ('26) : 제도 기반 마련 및 참여 확대 - 대상별 일자리 사업 지침 개편 → ‘비영리단체 참여 가능’ 항목 반영 - 비영리단체를 고용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하여 정책 참여 확대 2단계 ('27) : 맞춤형 직무 설계 및 연계 강화 - 비영리 맞춤형 직무 설계 : 청년-디지털, 홍보, 조직운영/여성-돌봄, 문화기획/장년-자문, 멘토링 등 - 연계 프로그램 운영: 도내 대학,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등과 협력한 매칭 지원 - 시범사업 운영 및 확산 적용 3단계 ('28) : 도 전역으로 단계적 확산 시행

성과평가	• 대상별 비영리단체 취업자 수 및 고용 유지율 • 참여자의 직무 역량 향상, 경력 전환 효과 • 사회서비스·지역문제 해결 사회적 성과(정성적·정량적)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공익적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 •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포용성 강화 및 비영리단체의 고용 주체로서 위상 제고

③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필요성	• 행정(지자체)을 포함한 정책 담당자의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이 낮아 제도 설계 및 지원 과정에서 비영리 영역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 일반 시민 또한 비영리 일자리를 ‘정상적인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원봉사나 단기 활동과 혼동하는 경향이 큼 • 비영리 일자리의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도를 제대로 알리고, 초중고·청년·여성·장년 등 다양한 계층이 비영리를 실제 경력과 직업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 (목적)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체험·홍보 활동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경험 기회를 확대 • 주요 내용 ① 대국민 홍보 캠페인 및 미디어 콘텐츠 제작 ② 청년·여성·장년층 대상 비영리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예) 초중고 진로체험 교육에 비영리 연계, 대학생 취업 박람회 개최, 50+/시니어 일자리 프로그램에 비영리 연계 ③ 지자체 및 공공기관 공무원 대상 비영리 이해 교육 추진
추진계획	• 1단계('26) - 비영리 일자리 홍보 캠페인 기획 및 시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인식 제고 교육을 경기도 공무원 정기 교육과정에 포함 • 2단계('27) : 도내 대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장년취업센터 등과 협력해 체험·매칭 프로그램 확대 • 3단계('28) : 홍보 콘텐츠 정례 제작 및 프로그램 확산
성과평가	• 홍보 캠페인 횟수,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가자 수, 콘텐츠 조회수·노출도 •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인식 변화(사전·사후 조사), 정책 수요 증가, 공무원 및 시민의 이해도 개선
기대효과	• 행정 및 시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가 ‘정상적인 일자리’로 인정되는 사회적 기반 마련 • 초중고, 청년, 여성, 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참여 확대를 통한 비영리 인력 풀(pool) 확보 • 경기도 일자리 정책의 포용성과 다양성 강화, 공공적 가치 중심의 고용 모델 확산

(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추진전략	추진과정	세부사업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직접조사)

①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필요성	- 국가통계 및 기존 행정자료에서는 비영리 일자리 규모가 별도로 파악되지 않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부족함 - 경기도 차원에서 행정자료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비영리 일자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음
사업개요	(목적) 비영리 일자리 통계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주요 내용 ㉠ 기업통계등록부(행정자료와 조사자료 연계된 기업 및 사업체 단위 자료) 활용 경기도 내 비영리 규모 추계 ㉡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GRDP 기여도 측정,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 도출 ㉢ 경기통계와 연계한 비영리 통계 구축 : 산업·직종별, 연령·성별, 지역별 비영리 일자리 현황 분석 ㉣ 매년(또는 2년 주기) 통계집 정기 발간
추진계획	1단계('26) : 정례 조사를 위한 통계 체계 구축 2단계('27) :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계집 발간 3단계('28) : 자료 업데이트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성과평가	발간 횟수, 통계 세분화 정도, 데이터 활용 기관·정책 반영 사례
기대효과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 - 정책 설계와 연구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② 1-3-2.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 실시(직접조사)

필요성	- 통계자료만으로는 일자리 질, 종사자 처우, 역량개발 수요 등 세부 현황 파악이 어려움 - 현장 맞춤형 정책을 위해서는 직접조사를 통한 심층적 자료 확보가 필요함
사업개요	(목적) 비영리 일자리 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 및 대응 - 주요 내용 - 경기도 내 비영리단체 및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심층면접 실시 - 고용형태, 임금 수준, 경력개발, 직무 만족도, 근로환경 등 파악 - 정책 수요 및 개선 필요 사항 조사 - 매년(또는 2년 주기) 실태조사 결과 정기 발간
추진계획	1단계('26) : 정례 조사를 위한 조사 체계 구축 2단계('27) : 정례 실태조사 진행, 조사결과 보고서 발간 3단계('28) : 자료 업데이트 및 분석 보고서 발간
성과평가	조사 응답 단체·종사자 수, 조사결과에 정책 반영 여부, 학술·연구 활용 건수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의 질적 수준과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파악 - 근거 기반 정책 설계 가능 - 활동가 처우 개선 및 비영리 고용 안정화 지원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 지원체계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 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기존사업 확대) 청년/스타트업 지원, 역량강화 (신규사업 개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사업,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①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 기구 설치(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필요성	• 현재 비영리 일자리는 경기도 일자리 정책 내에 제도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사)경기시민연구소 올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등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책의 큰 공백과 비영리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사업의 영향력이 크지 않고 장기적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할 전담 조직이 부재하여,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연구·통계·상담·교육·플랫폼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기구 설립이 필요함
사업개요	• (전담 기구 설립 목적) 경기도 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고, 단체와 활동가 및 새롭게 진입하는 시민들을 지원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체계를 마련함 • 주요 내용 ① 비영리 일자리 정책 연구 및 통계집 발간 ②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운영 - 공익활동가 직무개발 및 경력개발 체계 구축 - 직무개발 :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직무 순환 등을 통해 역량을 개발 - 경력개발 : 활동가 개인의 장기적인 목표와 자아실현을 위해 직무 경험, 학습,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 ③ 일자리 정책과 지원사업 연계 및 통합 조정 ④ 일자리 관련 기관 네트워킹 및 협업
추진계획	• 1단계('26) : 조례 제정 및 행정 근거 마련, 운영계획 수립 • 2단계('27) : 센터 개소, 인력 구성, 시범 운영 프로그램 개시 • 3단계('28) : 기능 확장(정책 연구, 교육, 플랫폼 강화), 거점센터 확대 운영
성과평가	• 센터 이용 건수, 정책 반영 실적, 교육·상담 참여자 수, 네트워크 활성화 지표
기대효과	•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전문성·체계성 확보, 정책 신뢰도 제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 구축

②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필요성	• 현재 비영리 일자리 지원은 공공정책에서는 거의 배제되어 있고, 민간영역에서는 청년·스타트업·역량강화 등 사업 단위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규모도 작아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만족도 및 체감도는 낮을 수밖에 없음. 특히, 지원사업의 기간 및 예산의 한계로 참여자의 장기적 경력 개발이나 안정적 일자리 유지에는 한계가 큼. 따라서 일자리 관련한 사업들을 비영리일자리센터(가칭)와 같은 거점기관을 기반으로, 원스톱으로 통합·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상별 수요와 욕구를 반영하여 진로탐색-역량개발-경력전환-사회공헌 활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기회와 정보 제공, 그리고 수요-공급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현재 국내에는 비영리 일자리를 전문적으로 제공매칭하는 공식 플랫폼이 부재하며, 일부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연대조직(협회·협의회 등)의 게시판을 통한 채용공고 게시가 전부인 실정임.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비영리 일자리 포털의 구축이 시급함
사업개요	• (목적) 단기·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장기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 주요 내용 <u><기존사업 확대 및 연계></u> ①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 주민참여예산 → 본예산 변경, 예산 증액, 청년 → 모든 대상으로 확대 ②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23년부터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으로 통합 추진 중) : 신규 발굴 및 성장지원 확대, 신뢰 기반 지원 방식 유연화(인건비와 공간제공), 인큐베이팅 역량 강화, 비영리 스타트업 성과측정 및 사례집 발간 <u><신규사업 개발></u> 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생애 전 단계에서 지속가능한 비영리 경력 경로(career path)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진로탐색→역량개발→경력전환→사회공헌) - 청년 : 진로 탐색, 인턴십·훈련 기회, 취업 연계 프로그램, 장기적 일자리 지원 - 중견 : 번아웃 예방 및 지원, 경력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 안정적 근로 조건 마련, 리더십 교육 제공 - 시니어 : 조직 경영 역량, 정책·재원 확보 능력 강화 교육, 은퇴 후 사회적 기여 일자리 제공(멘토링, 컨설팅), 공적 보상(기회소득 지급, 고용보험 지원) - 경력 단절자, 재취업 희망자 : 재교육, 멘토링 제공 ②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 채용정보, 인재풀 확보, 교육·연수, 네트워킹 등

	- 경기도일자리포털(잡아바), 경기청년포털, 경기도일자리재단*워크넷 등과 연계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체계 마련
추진계획	• 1단계('26) : 기존사업 분석, 통합 운영 방안 설계, 신규사업 기획 • 2단계('27) : 통합 운영 본격화, 온라인 플랫폼 시범 운영 • 3단계('28) : 플랫폼 고도화, 성과관리 체계 구축, 지원 대상 확대
성과평가	• 참여자 수, 일자리 매칭률, 고용 유지율, 플랫폼 활성화도
기대효과	• 맞춤형 지원 강화, 장기적 고용안정 및 생태계 지속성 확보

***㉞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설계**

기본구조	핵심목표	• 비영리 일자리의 가시성 제고(일반 구직자도 쉽게 접속) • 구직자-비영리단체-중간지원조직-지자체 간 연결 허브 역할 • 데이터 기반 정책지원(비영리 고용 통계 및 수요·공급 분석)
	사용자 그룹	• 구직자 : 청년, 중·장년 전환 희망자, 사회공헌형 은퇴자, 외국인 구직자 등 • 구인기관 :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재단, 국제기구 등 • 중간지원조직/정부 : 일자리 정책, 지원사업 연계, 통계 수집 • 일반 시민 : 자원봉사, 인턴십, 프로젝트 참여 희망자
플랫폼 서비스 모듈	채용·구직 매칭	• 구인·구직 공고 게시 : 직무·분야·지역·고용형태 필터 제공 • 추천 알고리즘 : 관심 분야/역량 기반 매칭 • 비영리 직무 표준화(예: 모금·홍보·교육·조직운영·연구 등)
	경력 개발 지원	• 온라인 강좌/세미나 : 비영리 경영, 펀드레이징, 회계, 정책 등 • 멘토링 프로그램 : 경력 활동가 ↔ 신규 활동가 연결 • 포트폴리오 관리 및 역량 인증 배지 시스템
	커뮤니티·네트워킹	• 비영리 영역별, 직무별 커뮤니티 게시판 • 행사·세미나 캘린더 공유 • 프로젝트 협업 공간(짧은 기간 참여형 공익 프로젝트 매칭)
	데이터·정책 지원	• 일자리 현황 통계 대시보드 : 구인공고, 급여, 고용형태, 분야별 수요·공급 • 정기적인 비영리 일자리 리포트 발간 • 공공데이터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예: 고용정보원, 행안부 비영리단체 등록 데이터)

운영 구조	거버넌스	• 운영 주체 : 비영리 컨소시엄 + 공공기관 협력 • 자문위원회 : 학계, 활동가, 정책 담당자, IT 전문가 • 지속가능성 : 초기 공공지원 → 유료 서비스(교육, 컨설팅, 프리미엄 매칭) → 기업 CSR 협찬
	수익 모델	• 구인기관 프리미엄 공고 게재 • 교육·컨설팅 유료화 • 국제기구/재단 협력 프로젝트 •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사업 위탁
기술적 구조		• 웹·모바일 앱 동시 제공 • 직무·역량 태그 기반 검색 시스템 • AI 추천 매칭 (구직자 프로필 ↔ 구인공고) • 오픈 API (다른 취업 포털/지자체 플랫폼과 연계) • 통계 자동 수집 및 시각화 대시보드
차별화 포인트		• 한국 특화 : 공익활동지원센터, NPO 지원재단, 사회적경제 지원조직과 연계 • 정책 연계 : 지자체 청년·중장년 일자리 사업, 공익활동 지원조례 등과 직접 연결 • 커리어 패스 제공 : 단순히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비영리 경력 로드맵 제시

(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①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필요성	공익활동가는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 낮은 보상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번아웃과 이직률이 높아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워 시민사회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큰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검진, 심리상담, 휴식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사업개요	(목적) 공익활동가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함 - 주요 내용 ㉠ 정기 건강검진 지원 및 의료비 일부 보조 ㉡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쉼 캠프, 안식월 등 재충전 프로그램 운영 ㉣ 협력기관(의료·심리·휴양시설) 연계
추진계획	1단계('26) : 건강 및 쉼 수요조사, 협력기관 발굴, 시범사업 운영 2단계('27) : 건강검진 지원 확대, 쉼 프로그램 정례화, 상담 인프라 강화 3단계('28) : 제도화 및 지원 대상 확대, 효과 분석 및 개선 반영
성과평가	건강검진 참여율, 심리상담 이용 건수, 번아웃·이직률 개선 지표
기대효과	건강한 일터 문화 확산, 공익활동 지속가능성 강화

②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	비영리단체 상당수가 열악한 사무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활동가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특히 임대료 부담과 안전관리 미흡은 단체의 운영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안정적 공간과 안전한 작업환경 지원은 비영리 활동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임
-----	---

사업개요	• (목적) 비영리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조직 역량과 활동 성과를 제고함 • 주요 내용 ① 공공 유헴공간 발굴 및 제공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경우 제16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국유·공유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필요한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② 공유오피스 및 협업공간 조성 ③ 시설 보수 및 안전장비 지원 ④ 공간 운영 지원 및 관리 체계 구축
추진계획	• 1단계('26) : 유헴공간 조사·발굴, 시범 매칭 • 2단계('27) : 공유오피스 조성, 시설 개선 지원 본격화 • 3단계('28) : 지원 단체 확대, 안전관리 제도화, 성과 모니터링
성과평가	• 지원 단체 수, 공간 활용률, 안전사고 감소율
기대효과	• 안정적 근무환경 확보, 협업 활성화, 활동 효율성 증대

(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①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필요성	•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하는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며,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활동가들은 활동의 지속성과 활동가의 자존감 고취, 활동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공익활동의 사회적 인정 방안 도입이 필요하며, 공익활동 참여 시간과 노력에 대한 공식적 인정, 공익활동가 직업 및 경력 인정, 공익활동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홍보와 인식개선
-----	--

	등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을 요구해 옴(박영선, 2024) 그러나 공익활동가의 경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타 직종 전환 시 불리하게 작용하고, 활동 지속성을 저해함. 또한 활동 성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기록·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활동을 정식 경력으로 인정하고, 활동 시간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하며, 활동가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함
사업개요	(목적) 공익활동가의 경력과 성과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활동 지속성을 높이며 타 분야의 경력 연계를 촉진함 주요 내용 ㉠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포함) ㉡ 공익활동 이력제 도입(활동이력 기록 및 발급)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동 이력 관리 시스템, 경기마풀(MAPOOL, 경기도마을활동가Pool) - 활동 경력 기반 정부 및 공공부문 진입 기회 부여 - 마일리지·타임뱅크 운영(활동 시간을 사회적 보상으로 환산) *미국 타임뱅크 시스템은 공익활동 단체, 활동가, 수혜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연계되어 있으며 공익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타임뱅크로 환산하여 지역사회 선순환 체계 구축 *미국 네이버후드 매칭펀드는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비영리단체의 자부담을 타임뱅크로 연동하여 다양한 참여 구도를 마련, 보조금 지원 규모와 산출 가치를 다양화 ㉢ 공익활동가의 날 지정 및 포상 제도 도입 *미국 국가 및 지역사회 봉사단(Corporation for National & Community Service, CNCS) : 미국 연방 및 주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자원봉사 및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금전적 보상 및 지원책, 자원봉사상 수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있음 ㉣ 공익활동의 기여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
추진계획	1단계('26) : 제도 설계, 법·행정 근거 마련, 온라인 시스템 구축 2단계('27) : 공익활동 이력제, 마일리지·타임뱅크 시범 운영 3단계('28) : 제도 정착 및 활용도 제고, 타 부문 취업 연계 강화
성과평가	경력 인증 발급 건수, 활용 사례, 제도 이용률
기대효과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 확대, 경력 개발·고용 연계 강화

② 2-3-2. 기회소득 지급

필요성	- 기회소득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보상되지 않지만, 공익적·사회적 가치가 큰 활동에 대해 공공정책 차원에서 보상하는 소득을 말함. 기회소득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소득 보장이라는 성격이 강함 - 경기도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고용 확대나 산업 혁신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민선 8기 대표 정책으로 ‘기회 소득’을 추진하고 있음. 단순한 복지나 기본소득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술인, 장애인, 체육인, 농어민, 아동돌봄 종사자, 기후행동 실천 도민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활동가는 정작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 기회소득은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며, 고용 이외의 방식으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이 될 수 있음. 공익활동가들은 안정적 소득 기반이 부족하여 장기적 활동에 어려움을 가지며, 특히 청년 및 경력 활동가들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비영리 분야 유입 및 지속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임. 따라서 공익활동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할 때 공익활동가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활동 기반 강화 및 시민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사업개요	(목적) 공익활동가에게 기초적인 생활 안정 기반을 제공하여 공익활동의 가치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익활동 참여를 촉진함 - 주요 내용 ㉠ 활동 지속성·기여도 기준 충족 시 기회소득 지급 ㉡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금 수준 설정 ㉢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분석 후 제도화 추진 ㉣ 사회적 기여도와 연계한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구축
추진계획	1단계('26) - 제도 기반 구축 - 대상·기준 마련, 자원 확보, 시범사업 설계 - 시범사업 시행, 모니터링 및 제도 보완 2단계('27) : 지원 대상 확대, 지급체계 고도화(월 단위 활동소득 보전) 3단계('28) : 기존 일자리 정책과의 중복성 줄이고 통합적 지원체계 확립, 정책효과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모델 확산
성과평가	기회소득 수혜자 수, 활동 지속률, 생활 안정성 변화
기대효과	활동가 생활 안정 보장, 장기적 공익활동 기반 강화,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성	-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립된 정책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며, 일부 관련 정책 또한 소수의 사업으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 조정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이러한 조건에서는 비영리 영역이 가진 사회적 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제대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행정과 현장 간의 정책적 괴리가 심화할 수밖에 없음 - 비영리부문은 공공·민간·시민사회가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공식적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며,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전담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시급함. 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가 아니라 정책 기획·심의·평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와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 기구로 기능해야 함
사업개요	(목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논의와 실행력 확보를 위한 협의·조정기구 마련 - 주요 내용 ㉠ 경기도 차원의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설치·운영 ㉡ 위원 구성 :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등 ㉢ 기능 : 정책 자문·심의, 과제 발굴, 사업 점검 및 제안
추진계획	1단계(’26) :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위원 위촉 및 운영 규정 수립 2단계(’27) : 정례회의 개최(분기별), 정책 제안 및 시범사업 검토 3단계(’28) : 제도화 및 상설기구화 논의, 중앙정부 연계 협력
성과평가	- 위원회 운영 횟수 및 참여자 수 - 정책 제안 건수 및 채택률 - 위원회 제안 기반 신규사업 도입 건수
기대효과	비영리 일자리 정책의 공식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정책 실행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정책 수립 가능

(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①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필요성	- 경기도 내 14개 시·군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에서 '비영리 일자리'에 관한 정의와 지원 근거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음. 현재 용인시만 비영리 일자리 언급, 광명시와 평택시는 사회적 지지와 인정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임. 이로 인해 각 시·군이 비영리 일자리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어려우며, 예산 확보나 정책 연속성도 제한받고 있음. 특히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비영리 영역에서 일할 기회를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 따라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군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는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는 핵심적인 토대가 될 것임
사업개요	(목적) 시·군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항목을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 내용 ㉠ 시·군 조례 개정 지원 및 표준 조례안 제시 ㉡ 비영리 일자리 관련 조항(정의, 지원 범위, 예산 지원 근거 등) 포함 ㉢ 시·군 단위 사업 모델(일자리 매칭, 인턴십, 청년활동 지원 등) 확산
추진계획	1단계('26) - 표준 조례안 마련, 시·군 대상 컨설팅 및 협의 착수 - 시범 시·군 조례 개정 완료, 관련 시·군 사업 시범 운영 2단계('27) : 전 시·군 확산 추진, 조례 적용 기반 사업 확대
성과평가	- 조례 개정 시·군 수 및 비율 - 조례 기반 신규사업 수 - 참여 단체·활동가 수
기대효과	- 시·군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비영리 일자리 정책 기반 확보 -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 다양화 → 지역 청년·전문인력 유입 촉진 -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기여

*비영리 일자리 정책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

- 중앙정부는 제도화·재원·전국 단위 기준 마련을, 지방정부는 현장 맞춤형 실행·지원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양자 간 정례 협력 및 확산 메커니즘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동과제 추진
- 공동과제
 - ① 정례적 중앙-지방 공동 포럼 : 정책 성과 공유 및 문제해결 협의
 - ② 데이터 공유 플랫폼 : 통계·연구 성과를 중앙-지방-학계-시민사회가 공동 활용
 - ③ 실험과 확산의 분업 : 중앙은 제도·재원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은 시범사업을 실행하여 성과를 다시 중앙정책에 반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중앙정부	지방정부
① 비영리 일자리 공식 통계 구축 • 전국 단위에서 비영리부문 고용 현황, 임금, 직무 특성 등을 포함한 국가공식통계 작성 • 산업분류 체계에 비영리 고용 항목을 반영하고, 정기적 조사 실시 ②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비영리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국가 보조금·기금 조성 (예: “비영리 일자리 안정화 기금”) • 근로기준법·사회보험 체계 내에서 비영리 활동가 권리 보장 제도 확립 ③ 전국 차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비영리 활동가 교육, 직무전환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전국 단위로 운영 • 지방정부와 연계 가능한 인재풀 및 경력인증 체계 마련 ④ 중앙-지방 간 협력 거버넌스 제도화 • 행안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가 비영리 일자리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도 단위와 정례적 정책 협의회 운영	① 지역 맞춤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설계 • 지역 수요조사 기반으로 돌봄, 문화예술, 환경, 마을 공동체 등 분야별 특화 일자리 창출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플랫폼” 구축, 채용·교육·경력관리 통합 지원 ② 재정 및 공간 인프라 지원 •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비영리단체에 무상 또는 저비용 제공 • 공익활동가 전용 펀드·기회소득을 통한 안정적 활동 지원 ③ 지속가능한 고용 연계 모델 마련 • 공익활동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공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혼합형 일자리” 설계 • 경기도형 사회적 기여 포인트 제도와 연계해 활동가 소득 보전 ④ 도민 참여 기반 거버넌스 운영 •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위원회” 설치, 활동가·전문가·공무원·도민이 참여하는 다층 거버넌스 모델 구축 •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실험적 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 제시

(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①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계획안 마련

필요성	- 비영리 일자리 지원 정책은 공공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한계와 사업별 단년도 예산 편성으로 인해 안정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비영리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과 더불어 민간 자원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 마련 전략이 필요함. 특히 기업·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 지역 재단과 금융기관의 사회공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은 점차 무르익고 있음 - 따라서 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함.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사회 스스로 비영리 일자리 생태계를 지탱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사업개요	(목적) 지역재단 형태의 민간 중심의 자발적 기금 조성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자원 다변화 주요 내용 ㉠ 경기사회연대기금 TF 구성(기업, 금융권, 비영리단체, 학계, 지자체 등 참여) ㉡ 기금 조성 방안 연구(공공 매칭펀드, 기부금 세제 혜택, ESG 연계 등) ㉢ 운영계획안 마련: 기금 운영 주체, 배분 기준, 모니터링 체계 *부산형사회연대기금 파랑저금통 ‘공익활동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20년~’22년) - 부산·경남·울산 지역에 설립·등록되어 있으며,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NPO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지원(인건비), 3년간 총 25개 단체 참여 *뉴욕시 Nonprofit Resiliency Fund 비영리 고용지원 - 뉴욕시가 민간재단과 함께 조성한 비영리단체 지원기금. 비영리단체 재정 안정, 고용 유지, 전문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추진계획	• 1단계('26) : TF 구성, 기금 조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시범 모금 추진 • 2단계('27) : 기금 법인 또는 재단 설립 검토, 초기 기금 조성 시작 • 3단계('28) : 기금 본격 운영(인건비·운영비 직접 지원, 사회적 가치 사업 배분)
성과평가	• TF 운영 횟수 및 참여기관 수 • 조성 기금액 및 참여 기부자 수 • 기금 기반 지원사업 수 및 수혜 단체·인원 수
기대효과	• 공공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자원 확보 •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및 사회적 연대 강화 • ESG·기부문화 활성화와 함께 지역 기반 비영리 생태계 강화

*지역재단

- 경기도는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를 통해 민간 중심의 자조적 기반 마련 방안으로 지역재단 활성화를 모색한 바 있음
- 지역재단이란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다양한 기부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를 목표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지역의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설립된 지역 단위의 비영리조직
- 국내 지역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설립한 광역 단위 재단 10개, 기초 단위 재단 33개가 있으며, 민간기금을 활용하여 설립한 민간 주도 지역 재단은 광역 단위 10개, 기초 단위 9개 등이 있음. 이 중 민간 주도로 설립된 국내 최초 지역재단인 천안풀뿌리희망재단, 경기도 내 최초로 설립된 부천희망재단을 비롯하여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성남이로운재단, 안산희망재단 등은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에 있어 참고할 만한 좋은 모델임
- 특히,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2005년 국제상을 수상한 한 복지활동가의 기부금 출연과 600여명의 천안 시민의 기부금 모금으로 출연한 국내 최초의 지역재단임. 143명의 발기인이 모여 5개월의 설립 준비기간을 거쳐 공익활동가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의 공익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되었음. 지역 내 비영리단체들에게 공익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 및 교육 등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을 구축하고 있음

<표 7-2> 국내 지역재단 설립현황

구분	지역	지역재단명
지자체 주도 (43개)	광역 (10개)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천 여성가족재단, 경기복지재단, 경북행복재단, 광주복지재단, 전남사회서비스원, 부산복지개발원, 충남여성가족청소년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본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기초 (33개)	대관령 한우복지재단, 태백시 복지재단, 진주시 좋은세상복지재단, 양산시 복지재단, 김해시 복지재단,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청주 복지재단, 목포 복지재단,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담양군 복지재단, 신안군복지재단, 장흥군나눔복지재단,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동작 복지재단,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당진시 복지재단, 서산시 복지재단, 천안시 복지재단, 회덕농협장학복지문화회, 중평 복지재단, 노원 교육복지재단, 구로 희망복지재단,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양천 사랑복지재단, 화성시사회복지재단, 강남복지재단, 강서 희망 나눔복지재단, 용산 복지재단, 시흥시 일프로복지재단, 평택 복지재단, 가평군 복지재단, 김포 복지재단, 달성 복지재단
민간주도 (19개)	광역 (10개)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전북희망나눔재단, 대전풀뿌리사람들, 강원살림, 충북시민재단, 대구시민재단, 인천시민재단, 광주희망재단, 경북시민재단
	기초 (9개)	천안풀뿌리희망재단, 부천희망재단, 안산희망재단, 인천남동이행복한재단, 김해생명나눔재단, 성남이로운재단, 대산읍복지재단,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관악뿌리재단

<표 7-3> 국내 주요 지역재단 설립현황(2023년도 9월 기준)

구분	설립주체	소재지역	설립 시기	설립 기간	설립절차	법인형태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지역사회	충청남도 천안시	2006. 08.	5개월	천안 복지활동가의 기부 및 천안시민의 기부금으로 출연	재단법인
부천희망재단	지역사회	경기도 부천시	2011. 03.	2년	90여명의 부천시민의 자원제공을 통해 설립	사단법인
성남이로운재단	지역사회	경기도 성남시	2012. 04.	1년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	재단법인
안산희망재단	지역사회	경기도 안산시	2013. 05.	1년	시민단체, 기업인, 민관협력과 민 8명이 모여 간담회를 가진 후 준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거쳐 설립	사단법인
인천남동이행복재단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3. 10.	1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설립	사단법인

<표 7-4> 국내 주요 지역재단 재정현황(2022년도 기준)

(단위: 만원)

구분	설립자본금	총자산	총수입	총지출
천안풀뿌리희망재단	34,000	41,445	45,821	45,821
부천희망재단	50,000	101,346	110,281	95,076
성남이로운재단	15,000	34,234	120,907	100,273
안산희망재단	-	27,701	45,588	39,080
인천남동이행복재단	-	9,061	6,697	8,090

자료: 각 재단별 홈페이지(2023.09.23 접속)

주: 자산(부채+순자산)

- 연구 결과,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재단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정치적 환경 변화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민간 중심의 지역재단이 운영되기를 바랐음. 다만, 실제 실행과정에서 기대한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함

- (기능) 지역재단을 설립한다면, 공익활동 지원, 공익활동가 양성, 공익활동 기반 강화와 같은 기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직접 공익활동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공익활동을 실천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고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기금조성) 시민사회, 공익활동 전문가들은 지역재단을 설립할 때는 다양한 자원방식이 제안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자원은 시민출자 및 기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했음
- (운영형태) 지역재단의 적정 운영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형태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음
- (일자리 연계) 추가로 공익활동의 사회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추가 정책 제안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공익활동 영역의 일자리 연계, 자원의 연계 등이 주요한 사회경제기반 조성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음. 공익활동을 주요한 일자리 중 하나로 보고 청년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면 공익활동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음

3. 추진계획

1) 추진 로드맵

- 연구 결과, 기업통계등록부 2022년 기준 경기도 비영리 규모는 사업체 수가 156,333명(경기도 사업체의 5.01%)이고, 비영리 종사자 수가 624,161명(경기도 고용의 12.45%)이다. 경기도 비영리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비영리 매출액은 약 117조 7,193억 4,400만원이며, 비영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84조 2,914조로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원('22년 기준)의 1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향후 3개년 간 단계별로 100억 원씩 총 300억 원을 비영리 일자리에 투자하였을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489.9억원, 고용유발효과 약 198.4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14.8억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로 인한 GRDP 기여율은 0.00366%로 예측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지역 거시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미미한 수치로 보이지만, 비영리는 타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예산 투입의 규모가 클수록 고용 유발에 있어 매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경기도 비영리 생산유발계수 1.633은 최종수요 1단위(10억 원)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전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생산의 양이 그 1.633배가 됨을 의미한다. 즉, 10억

원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직접 생산하는 과정과 중간재 생산을 위한 연관 산업 생산까지 포함하여 총 16.33억 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뜻이다. 경기도 비영리 생산유발계수 1.633은 한국은행 (2024) 「2021-2022년 산업연관표(연장표)」⁶⁵⁾에 따른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 1.818('22년 기준)보다는 낮다. 비영리부문은 제조업처럼 원자재·부품·중간재 소비가 많은 산업에 비해 생산 연쇄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고, 인적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관 산업 간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 경기도 비영리 고용유발계수 6.614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 10억 원의 최종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해당 산업과 관련된 다른 산업들에서 직접적 및 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임금근로자)의 총 수를 6.614명으로 의미한다. 즉, 10억 원어치의 상품이 생산될 때, 6.614명 분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뜻이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동일한 생산량에 더 많은 고용을 유발하는 산업임을 나타낸다. **경기도 비영리 고용유발계수는 약 6.6명으로 국내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 6.1명('22년 기준) 보다 높다.** 비영리부문은 노동집약적 구조를 가지며, 기계·설비보다는 인력 투입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돌봄,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 등은 자동화나 대체재 활용이 어렵고, 사람의 노동을 직접 필요로 하므로 동일한 생산 규모 대비 고용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경기도 비영리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은 최종수요 1단위(10억 원) 발생 시, 해당 산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총 부가가치가 0.716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수요가 10억 원만큼 증가했을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에서 총 7억 1,600만 원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뜻이다. **경기도 비영리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은 국내 전산업 평균 부가가치유발계수 0.729('22년 기준)와 비슷한 수준이다.** 비영리부문은 노동·서비스 중심으로 임금과 인건비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높지만, 일부 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시장가격 반영이 낮거나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서비스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다.
- 경기도의 2025년 예산은 첨단 산업 육성과 기후 대응, 기회소득 확대, 중소기업 지원 등 미래 성장동력과 사회적 포용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비영리 일자리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등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를 인정하는 제도적 흐름이며, 이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부문 일자리 역시 공공적 가치와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한다. 특히 다른 일자리 정책은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비영리 일자리는 GRDP 기여,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에서 더 높은 효율성을 입증할 수 있어 경기도의 예산 정책 기조와 부합한다.

65) 한국은행. (2024, November 26). 2021-2022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보도자료].

*2025년 경기도 예산 주요 특성

구분	주요 내용	특징
첨단 신성장 산업 및 스타트업	•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103억) •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78억) •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22억)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액, 기술 기반 산업 집중 투자
기후 대응 (기후예산)	• 기후위성 발사 • 기후행동 기회소득(지원인원 : 45만→134만, 활동 15개→18개) • 36억 → 500억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액, 기후 정책 강화
기회소득 확대	• 농어민 : 755억 (기본소득 통합, 20만 명, 24개 시·군 확대) • 장애인 : 140억(월 5만→10만, 연간 60만→120만) • 예술인 : 113억 • 체육인 : 165억 • 청년 : 2,384억(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52억, 갭이어 69억 포함)	대상·규모 모두 확대, 청년·예술인·체육인·장애인까지 확대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 총 2조 원 • 민생안정자금 1조 800억 (중소기업 6,300억, 소상공인 3,500억, 대환자금 1,000억) • 일자리창출 지원 1,000억 • 특별경영자금 1,200억 • 창업자금 7,000억	전년 대비 2,500억 확대, 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

- 이에 따른 단계별 목표와 투입 예산 시나리오, 과제 추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구분	단계별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합계
		2026	2027	2028	3개년
	최종수요 투입 예산 ('22년 기준 적용)	100억	100억	100억	300억
경기도 비영리 규모 및 경제적 효과	비영리 사업체 수 156,333 곳(경기도 사업체의 5%)				
	비영리 종사자 수 624,161 명(경기도 고용의 12.45%)				
	비영리 매출액 117조 7,193억 4,400만 원				
	생산유발효과 약 192조 2,425억 원 (생산유발계수 약 1.633) 10억 원 최종수요가 발생할 때, 16.33억 원 생산 유발	163.3 억 원	163.3 억 원	163.3 억 원	489.9 억 원
	고용유발효과 778,589명(고용유발계수 6.614) 10억 원 상품 생산 시, 고용이 약 6.6명씩 증가	66.14 명	66.14 명	66.14 명	198.42 명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4조 2,914억 원 (부가가치유발계수 0.716) 10억 원 최종수요가 증가할 때, 7.16억 원 부가가치 창출	71.6 억 원	71.6 억 원	71.6 억 원	214.8 억 원
	경기도 GRDP 기여도 14.35% 비영리부문 부가가치 84조 2,914조/ 경기도 GRDP 587조 3,286억 원	0.00122 %	0.00122 %	0.00122 %	0.00366 %

연번	3대 추진전략(9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유형
		2026	2027	2028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		신규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			계속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	●		신규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	●	●	신규/계속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	●	●	신규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	●	●	신규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	●	●	계속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	●	●	신규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	●	●	계속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	●	●	계속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	●	●	계속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	●	●	신규/계속
	2-3-2. 기회소득 지급	●	●	●	신규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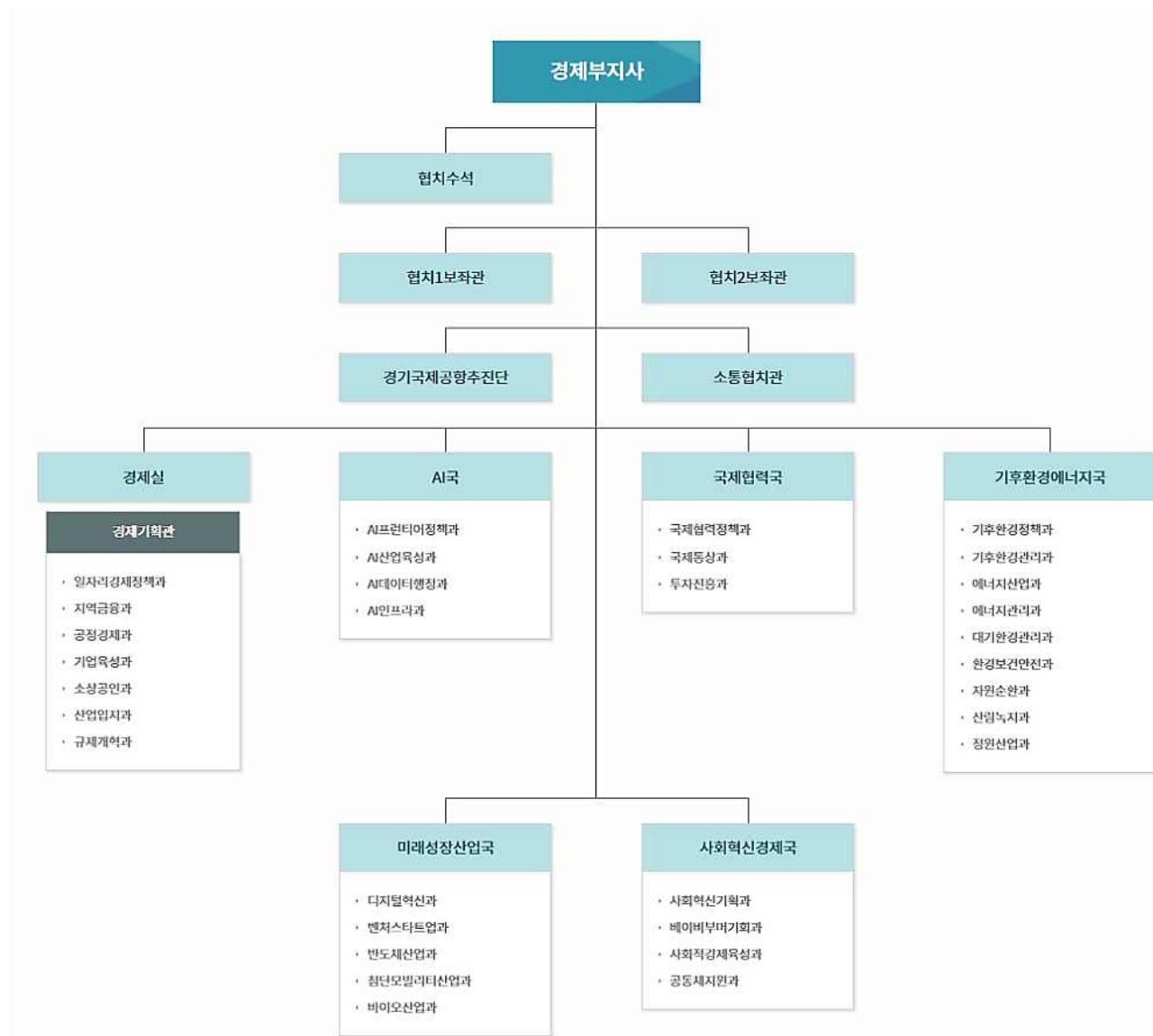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신규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	●		신규/계속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마련	●	●	●	신규

2) 추진과제별 소관부서

연번	3대 추진전략(6개 추진과제, 16개 세부사업)		소관부서
1. 비영리 일자리 기반 조성			
1-1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1-1-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1-1-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1-2	경기도 일자리 정책 비영리 포용 확대		
	1-2-1. 기존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 참여 조건 마련 1-2-2. 대상별(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개선 1-2-3. 비영리 일자리 홍보 및 인식 제고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1-3	일자리 통계 구축 및 실태조사 정례화		
	1-3-1.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통계집 발간(공공데이터 및 행정자료 활용) 1-3-2. 비영리 일자리 실태조사(직접조사)	경기통계, 경기도일자리재단, 센터	
2. 비영리 일자리 창출 및 지원 강화			
2-1	비영리 일자리 통합지원체계 구축		
	2-1-1. 비영리 일자리 전담기구 설립(경기도 비영리일자리센터) 2-1-2. 비영리 일자리 관련 지원사업 통합·운영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2-2	건강한 일터 문화 조성		
	2-2-1. 공익활동가 건강증진 및 쉼 지원 2-2-2. 비영리단체 작업환경 개선 지원	센터, 시·군센터	
2-3	공익활동가 사회적 인정 방안 마련		
	2-3-1. 사회적 인정 체계 구축 2-3-2. 기회소득 지급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시·군센터	
3. 지역 기반 비영리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3-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1-1. 비영리 일자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소통협치관, 경제기획관, 사회혁신경제국), 센터	
3-2	시·군 단위 비영리 일자리 모델 확산		
	3-2-1. 시·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비영리 일자리’ 조항 명시	시·군, 시·군센터	
3-3	민간·지역 주도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		
	3-3-1. 경기사회연대기금 조성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계획안 마련	센터, (사)경기시민연 구소 올림	

*경기도 일자리 정책 추진부서

- 광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은 경제부지사 산하의 경제실-경제기획관-일자리경제정책과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의 대규모 특성상, 산업, 복지, 건설,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유관 부서와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되는 산업, 정주여건, 근로환경, 사회적 경제, 삶의 질 관련 부서들의 소속이 다른 부지사 산하 국, 실 등에 분산되어 있음
- 비영리 일자리 정책 추진 시,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소통협치관과 일자리를 담당하는 일자리경제정책과 그리고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정책 연계성과 실행력을 강화해야 함



[그림 7-1] 경기도 조직도(경제부지사 산하)

Ⅶ. 결론

1. 연구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비영리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정책 모델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공익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비영리 일자리의 구조적 특성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여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개선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 및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공익활동가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더불어 비영리 일자리의 개념 확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공적 인식 제고, 나아가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근거와 확산가능한 연구 모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특별히 국내 비영리 규모 추계 및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 연구는 그동안 상당 부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비영리부문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로는 박태규·정구현(2002), 박태규(2006), 김혜원 외(2008), 노대명 외(2010), 장윤주 외(2018), 박준 외(2020), 김소연 외(2023) 등이 이루어져 왔다. 해당 분야의 연구가 20여 년간 불과 10편에도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분야가 충분히 탐구되지 못 해온 척박한 현실을 드러낸다. 더욱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비영리부문의 규모를 추계하고, 다른 산업 부문 간의 상호 연관관계 등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 비영리부문의 규모 추계(사업체 수, 종사자 수), 지역내총생산(GRDP) 기여도 측정, 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생산유발·고용유발·부가가치창출 효과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비영리부문을 단순한 사회서비스 제공 영역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재조명함으로써, 비영리부문이 갖는 경제적·사회적 파급력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는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적 관심을 제고하고, 경기도가 비영리 일자리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비영리 범위 설정의 불확실성이다. 연구에서는 수익 활동을 병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까지 포함하여 비영리 범위를 확장하였으나, 이러한 정의는 현장과의 공감대 형성에 있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연구 결과 해석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통계 자료의 제약이다. 우리나라에는 공신력 있는 비영리 국가통계가 부재하여,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번호의 사업자구분코드와 법인분류번호,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추출해 비영리조직을 식별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조직이 누락되거나 분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정책 실효성의 불확실성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비영리 일자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경기도) 차

원의 정책 제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제한적이며,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정책 적용의 범용성 제한이다. 본 연구의 정책 모델은 경기도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타 지역이나 국가 차원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2. 향후 과제 및 종합 제언

- **(비영리 통계 기반 강화)** 비영리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부문의 규모 및 비영리부문의 경제·사회적 영향, 그리고 비영리부문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영리부문 규모의 변화 방향 및 원인, 비영리부문의 경제·사회적 영향력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관련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고용보험DB, 산업연관표 등 국가공식통계에서 비영리부문을 독립적으로 추출·분류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통계청이 관리하는 기업통계등록부에 외부 기관이 보유한 등록정보를 연계·결합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부문과 비영리부문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 등록정보가 결합된다면 사회적경제 영역을 제외한 비영리부문의 규모와 영향 연구가 가능해진다.
 -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경기통계(stat.gg.go.kr)에 비영리부문 전용 섹션을 신설하고, 정기적인 비영리 통계보고서를 발간하여 정책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비영리 분류기준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도내 비영리법인 현황, 종사자 수, 예산 규모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병행해야 한다.
 - 아울러 국제비교 측면에서는 UN 비영리 위성계정(UN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을 재도입⁶⁶⁾하여 산업분류, 법인형태, 활동영역별 식별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하고, OECD·EU 통계와도 비교 가능하도록 국제 표준화 코드 매핑 작업도 필요하다. 이러한 다층적 노력을 통해 경기도의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국가 정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글로벌 수준의 정책 연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효과 검증 지속 및 확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산업연관분석을 포함해, 비영리부문의 생산·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를 정기적으로 측정·발표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돌봄, 교육, 문화예술, 환경 등 세부 영역별 효과 분석을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사회·경제적 파급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공부문과 민간영리부문과의 비교를 통해 비영리 부문의 산업

66) 2012년 「비영리단체 위성계정 작성방법 연구」라는 연구보고서가 통계개발원에서 발표된 바 있고, 2006년에 박태규 등이 “한국 비영리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를 통해 비영리부문의 산출 측정과 위성계정 모형을 다룬 바 있다. UN 비영리 위성계정은 국가 통계에 위성계정 형식으로 비영리 활동을 별도로 보완·확장하여 기록하는 체계를 제시한 것으로, 비영리부문 GDP, 고용비중을 비롯해 ①기관 수, ②고용자 수, ③자원봉사자 수, ④재정규모(수입·지출), ⑤부문별 부가가치(GVA)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자원봉사 등 무보수 활동도 화폐가치로 산정하여 GDP 보완지표로 활용 가능하고, 동일한 분류체계(ICNPO: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에 따라 각국의 비영리 규모 비교가 가능하다.

간 연관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일자리”로 간주되던 비영리부문이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에 기여하는 가시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자료와 연구 여건의 한계로 이 연구가 가지는 실증적 공백의 한계는 향후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한다.

-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비영리 일자리 문제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없다.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어야 비영리 일자리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비영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려면 비영리를 둘러싼 다양한 제도 개선이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전담 행정기구 설치, 복잡한 비영리법인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제 완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비영리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국고보조금사업에 있어 활동가의 인건비를 사업비로 인정해야 한다.
 - 공익사업의 핵심 동력은 바로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활동가이다. 그러나 현재 국고보조금 사업에서는 전문성과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숙련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기존 직원이 무급이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 수행 경험이 부족한 임시직·신규 계약직 인력에게 사업을 맡기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사업 성과를 약화시키는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다.
 - 더 나아가 국고보조금 사업은 단순히 사업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근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운영비를 보조금 집행에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공익단체가 다른 후원금에 의존해 필수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는 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조금 사업에 참여할수록 오히려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수행을 직접 담당하는 상근자의 인건비와 기본 운영비용을 정당한 사업 경비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안정성과 공익활동가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⁶⁷⁾
 -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보조금법 22조), 지방보조금법(6조)과 시행령(3조)에서는 인건비·사무관리비·임차료 등 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사업비로 인정하고 있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또한 보조금사업 경비 범위를 사업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은 상근직원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 법령의 취지와 배치된다. 행안부는 인건비 인정 여부를 지자체 판단 사항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침을 이유로 인건비 편성을 불허하며, 결국 공익단체 상근자들조차 보조금 사업에서는 인건비 책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사회적 대화)** 경기도형 비영리 일자리 창출 정책은 단순 고용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주민참여 거버넌스, 사회혁신 사업 등과 결합해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정책 협력, 지방정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민간·학계와의 공동연구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비영리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영리 내부

67) 염형국. (2025).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정책칼럼. (사)시민. 참조

에서는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비영리 일자리의 의미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비영리 일자리의 공익적 성격과 정책적 필요성을 공감하고 확산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 **(청년 공익활동가 일자리 정책 강화)** 본 연구에서 비영리 일자리 정책 범주가 넓어 청년 공익활동가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비영리 영역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참여와 활력이 절실하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잘 유입되지 않고 유입된 인력조차 낮은 보수, 불안정한 고용, 제한된 경력 발전 기회 등 열악한 조직 여건으로 인해 이탈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비영리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청년활동가 육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하다. 특히 일자리 지원 정책에서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비영리 영역을 공식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재원 지원과 경력경로 설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등 청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결국 청년활동가 육성은 단순한 청년 고용지원을 넘어, 시민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속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다뤄져야 한다. 청년활동가는 시민사회의 미래다.
- **(AI와 비영리 일자리)** 이번 연구에서는 AI와 비영리 일자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미래 일자리 논의에서 AI를 배제한 정책 설계는 불가능할 것이다. 데이터 분석과 사회 변화를 연결하는 송길영 작가는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에서 대규모 인력과 복잡한 절차에 의존하던 시대가 저물고, 소수 인력·단순 구조·빠른 의사결정으로 움직이는 ‘경량문명’이 도래했으며 그 전환의 중심에 AI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상 업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은 챗GPT 유료 사용자 수가 세계 2위에 이를 정도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도만큼 ‘생산=인력증가’라는 기업 경영의 전제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AI는 연구개발 역량과 자원, 데이터, 인재를 끌어모으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난치병 치료와 같은 영역에서 혁신적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중견 인력의 감소는 특정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집단 전체가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 AI가 비영리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인력과 재정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에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비영리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비영리부문의 핵심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 배려와 섬세함이 요구되는 공익활동에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AI시대의 사회변화가 비영리 일자리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거스를 수 없는 AI시대에 비영리 일자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탐색하는 연구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돌봄, 교육, 문화, 환경 등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모델이다. AI가 고도화되면 결국 기본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 기본사회 실현의 관건은 자원조달 전략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활성화, 사회적 연대 강화 전략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참여가 미진하고, 역할이 제한적이라면 ‘기본사회’는 그저 국가가 주도하는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불과할 것이다. ‘시민사회’ 없는 ‘기본사회’는 없다(박영선, 2025). 비영리 일자리는 이러한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이나 공공 부문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

는 영역(예: 지역 돌봄, 환경보호, 공동체 활동)을 담당할 수 있다. 경기도 자체 조례나 도의 행정조직을 통해 “경기도형 기본사회”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기도의회 의원 등이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비전 및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자체(화성시, 광명시, 파주시 등)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먼저 구체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그간 기본사회 실현의 정책 수단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을 진행해왔다. 기본소득은 생계 기반을 제공하지만, 사회적 참여와 노동의 의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기본소득과 결합하여, 주민이 경제적 안정(기본소득)과 사회적 기여(비영리 활동 참여)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정책은 기본소득이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 기본사회가 지향하는 생활 보장, 포용 일자리 정책의 사회적 평등을 매개하는 연결 고리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비영리 일자리를 단순한 “보조적 일자리”가 아니라,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정책 도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

- **(일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마지막으로, 비영리를 포함하여 일자리 정책 전반에 걸쳐 일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사회는 고용과 노동의 형태와 내용이 이미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어 앞으로 미래 일자리 정책 설계는 기존의 보수를 받는 ‘임금노동’을 대상으로만 설계될 수 없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뿐만 아니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거나 과소평가되는 사회적 활동도 일자리 정책의 중심으로 가져와야 한다. 더불어 일자리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지급되는 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나아가 사회에 다층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독일 사회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는 『인간의 조건』에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를 구분하며, “인간의 삶은 단순히 먹고사는 노동을 넘어 공동체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자리를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실천의 장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이제 일자리는 노동과 고용이라는 좁은 개념을 벗어나 ‘일’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우리가 살려야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일 그리고 사람과 삶’의 문제다. 지금 비영리 일자리 정책을 고민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미래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참고문헌

- Arendt, H. (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arroll, J. M., Shin, P. C., Han, K., & Kropczynski, J. (2017). Coordinating community cooperation: Integrating timebanks and nonprofit volunteering by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11(1), 51–63.
- Enjolras, B., Salamon, L. M., Sivesind, K. H., & Zimmer, A. (2018). The third sector as a renewable resource for Europe: Concepts, impa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Palgrave Macmillan.
- Folbre, N. (2001). The invisible heart: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 York, NY: New Press.
- Grint, K. (2005). The sociology of work (3rd ed.). Cambridge, UK: Polity Press.
- Hansmann, H. B. (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Yale Law Journal*, 89(5), 835–901.
- Independent Sector. (2023). Impact of America's nonprofit sector. <https://independentsector.org/wp-content/uploads/2024/04/is-sector-impact-2024.pdf>
- Newhouse, C. L., & Abramson, A. J. (2024). Nonprofit employment report: New data reveal nonprofits' strengths and challenges in the COVID-19 era. George Mason University, Nonprofit Employment Data Project Briefing #2.
- Pestoff, V. A. (1992). Third sector and co-operative services: An alternative to privatiz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15(1), 21–45.
- Piechota, G. (2015). Legislation on financing public benefit activities from tax designation in Po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Not-for-Profit Law*, 17(1), 86–91.
- Salamon, L. M. (2000).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Salamon, L. M., & Anheier, H. K. (1992). In search of the non-profit sector I: The question of definitions. *Voluntas*, 3(2), 125–151.
- Salamon, L. M., & Anheier, H. K. (2017). Defining the non-profit sector: A cross-national analysi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Salamon, L. M., & Newhouse, C. L. (2019). 2019 nonprofit employment report.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Nonprofit Economic Data Bulletin No. 47).
- Salamon, L. M., & Newhouse, C. L. (2020). 2020 nonprofit employment report. Johns Hopkins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Nonprofit Economic Data Bulletin No. 48).
- Salamon, L. M., & Sokolowski, W. (2018). Beyond nonprofits: In search of the third sector. In B. Enjolras et al. (Eds.), *The third sector as a renewable resource for Europe* (pp. xx–xx). Palgrave Macmillan.
- Statistics Canada. (2025, March 28). Non-profit institutions and volunteering: Economic contribution, first quarter to fourth quarter 2024.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50328/dq250328c-eng.htm>
- Varian, H. R. (2014). Intermediate microeconomics: A modern approach (9th ed.).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 고경환·박영선·이연희·김태완·남기철·손명구·김원득·박선미·오영수·정복교·홍성태·김성진·천미경·조용찬. (2023). *사회공익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공석기·유지연. (2017).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아름다운재단.
- 권연이. (2021). 일본의NPO 세제우대제도의 제정·개정 과정. *일본학보*, 126, 217–244.
- 권오성·서용성·허준영. (2012). *역대 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문길·오선정·김형주·류승한·서복경 외.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전략과제 연구: 청년일자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김범식. (2014). *서울시의 관청은 일자리에 관한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 김소연. (2025). 새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 현장의 요구.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2025 공익활동가주*

간기념심포지엄 발표문. (2025.06.30.)

- 김소연. (2025).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제는 말이 아니라 제도다. 정책칼럼. (사)시민. (2025.08.26.)
- 김소연·강세진·류흥번·신권화정·김승순. (2020).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민관협력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김소연·김선업·고정근·김승순·강세진. (2023). 시민사회 유관 통계의 활용 및 개선방안. 사단법인 시민.
- 김소연·신권화정·류흥번·김승순. (2020). 한국 시민사회 관련 법제도 현황, 쟁점과 과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 김소연·조철민·김유리·김승순. (202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제도정책 현황조사: 2024 국회시민정치포럼 정책연구. 사단법인 시민.
- 김소연·조철민·이강준·오현순·옥미애·김문주. (2018). 서울시 시민사회(활성화) 정책개발 연구: 시민사회단체 현장의 평가와 수요를 중심으로.서울시NPO 지원센터·서울연구원.
- 김혜원·박찬임·황덕순·김영용·박종현·전승훈. (2008). 제3섹터 부문의 고용창출 실증연구.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연·송선숙·이기주·이충호. (2007). 지역사회 비영리복지활동 지원방안 연구: 시흥시를 중심으로.경기개발연구원.
- 노대명·김신양·장원봉·김문길. (2010). 한국 제3섹터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동행. (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 지원센터·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류흥번. (2021). 시민사회3 법 제·개정 추진의 의미와 과제. 시민사회3법 입법 추구를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자료집.
- 류흥번. (2025). 시민사회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2025 공익활동가주간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 박상필. (2015).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역할. NGO연구,10(2), 35-68.
- 박영선. (20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NGO연구,10(1), 139-169.
- 박영선. (2023).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 평가. 시민사회와NGO,21(1), 43-96.
- 박영선. (2024). 공익활동의 가치와 사회적 인정 방안: 광명시 공익활동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공익활동컨퍼런스 발표문.
- 박영선. (2025). 새 정부의 시민사회 법제 과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2025 공익활동가주간기념 심포지엄 발표문.
- 박영선. (2025).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 ‘시민사회’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책칼럼. (사)시민.
- 박영선·정병순. (2019). 시민사회 생태계 진단과 활성화 정책 방향: 새로운 공익활동 주체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 박준·공석기·조철민·채종현·조훈·이영라. (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박태규. (2006). 한국 비영리 단체의 산출물 측정과 경제적 의미에 관한 연구. 국민계정,2006-4, 44-77.
- 박태규·정구현. (2002). 한국 비영리부문의 규모추계와 구조. 한국비영리연구,1(2), 3-31.
- 박희석·정현철. (2017).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서울연구원.
- 서울시NPO 지원센터. (2019). 미국사례 연구를 통한 비영리영역의 일자리 창출 및 채용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시NPO 지원센터·사단법인 시민. (2019). 강한시민사회4 차 포럼 자료집.
- 서울시NPO 지원센터·사단법인 시민. (2019). 강한시민사회6 차 포럼 자료집.
- 송길영. (2025). 시대에보: 경량문명의 탄생. 교보문고.
-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2025). 제21대 대선 정책제안 과제: 시민주권과 생활민주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제안(4대 과제12개 세부과제). (사)시민.
- 염형국. (2025). 보조금 사업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필수투자가 되려면. 정책칼럼.(사)시민.
- 오현순·김소연. (2021). 비영리 영역의 일자리 실태와 정책과제: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NGO연구,16(2), 265-299.
- 우국희·홍선미. (2009). 비영리단체에서의 종고령 퇴직자 활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영리연구,7(호), 105-141.
- 유두호·엄영호. (2020).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 영향요인 분석: 조직 내부요인과 지방정부 역량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연구,10(3), 59-92.
- 이광희·황덕원·김소연·한재광·조철민·김성주·신권화정·김승순·신재은·김재민·장훈교·류지은·정복교. (2022). 시민사회 정책과 연구 관련 국제동향 종합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이명신. (2019). 미국의 비영리 사례를 통해 본 국내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전략. *제6차 강한시민사회 포럼 자료집*.
- 이명신·김운호. (2018). 비영리영역에서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 탐색. *취업진로연구*, 8(2), 1-22.
- 이성희·노용진. (2017). *청년층 직접일자리사업 정책 심층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이선민·박영선·정용선·손명구. (2023). *비영리단체 인력양성체계 구축방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이은주·손서락·양혜란. (2024).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의 기반이 되는 '조건 없는 베품'에 대한 연구: 선물교환 관점에서 타임뱅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NGO연구*, 19(3), 89-136.
- 이호·김소연·조철민·손정혁·지기환. (2022).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구. 지속가능경영재단.
- 이환성·박영선·이은주·신희진·임다희·조철민·김소연·오현순·박수정·김유한·백재환. (2021).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 실천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임현진·공석기. (2016). *한국 시민사회를 그리다: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조사*.
- 제레미 리프킨. (1996). *노동의 종말*. 민음사.
- 정진경·이종화. (2023). *한국의 비영리 공익활동 분류체계 개선 연구*. 아름다운재단.
- 조철민·신권화정·김미영. (2023). *한국 청년층의 시민사회 공익활동 현황 조사 연구*. 사단법인 시민.
- 지바 미쓰유키. (2007). *1% 너머로 보는 지역활성화*. 아르케.
- 한국시민사회지원조직네트워크·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사단법인시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24).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 한상진. (2005). 실업 빈곤정책으로서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의미와 전개과정. *도시와 빈곤*, 77, 75-90.

<정부 및 경기도 자료>

- 고용노동부. (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관계부처합동. (2021). *2022-2024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 국무조정실. (2021). 문재인정부4년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510>
- 국토연구원. (200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여성가족부. (2015). *비영리법인·지정기부금단체 업무편람*.
- 전자정보 누리집. (2025, 6월30일 기준).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https://www.gg.go.kr/opendata/openDataContent.do?gg_content_idx=10758&decodeIdx=4975
-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2025).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2022). *지역별 기업 통계*.
-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AreaSu>
- 한국산업단지공단. (2023). *2023 전국·시도별 전국산업단지 현황지도*.
- 한국은행. (2004). *산업연관분석 해설*.
- 한국은행. (2024). *2021-2022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보도자료, 2024.11.26.).
- 행정안전부. (2021). *비영리분야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용역 결과보고서*.
- 행정안전부. (2024). *2024년 행안부 지역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 행정안전부. (2025).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경기도. (2023).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 경기도. (2024). 2024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 경기도. (2025). 2025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업안내서.
- 경기도. (2025). 2025년 도정 업무계획.
- 경기도. (2025). 2025년 소통협치관 주요 업무계획.
- 경기도. (n.d.).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 경기도 소통협치국. (2019). 2019 경기도 공익활동 지원 기본계획.
- 경기도 소통협치관. (2023).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23~'25).
- 경기도의회. (2015, 7월3일). 전국 최초 사회적일자리 조례 제정 관련.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1). 경기도일자리사업 현황: 경기도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1).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4). 2024년12월 경기도 고용동향 분석.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7월1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등17개 공공기관, '5.5&0.75잡' 운영성과·개선방안 논의. 보도자료.
-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 4월). 경기도 월간 고용 동향.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2020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0). 2020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2021 공익활동 스타트업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2021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2021년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1). 2021년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자료.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2).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2). 2022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2023 경기마을주간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익활동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추진결과 보고.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3). 2023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 2024 비영리 스타트업 쇼케이스 결과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계획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 2024년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추진실적보고서.
-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2024). 한눈에 보는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2024 사업안내서.
- 경기도사회경제원 정책연구센터. (2024). 2024 경기도 사회적경제 현황.
- GSIC이슈브리프(2024-6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2025). 2025년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계획(안).
- 경기연구원. (2021). 새로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개선 방안 연구.
- 경기연구원. (2023). 기회소득사업 평가연구.
- 경기주택도시공사. (2025). 산업단지 현황.
- <https://www.data.go.kr/data/15004460/fileData>
- 오수실·윤창원·김현. (2021).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 및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한국정책학회.

- 유영성·금민·신현기·이관형·이상준·이지은·김재신. (2023). *기회소득의 개념 정립 및 정책구현 연구*. 경기연구원.
- 일자리연구센터. (2020). *팬데믹 시대의 일자리 정책 아젠다(안)*. GJF 고용이슈리포트(2020-01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1). *경기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제언: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GJF 고용이슈리포트(2021-06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1). *경기도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연구(1): 경기도 일자리사업 현황*.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2). *경기도 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및 시사점*. GJF 고용이슈리포트(2022-02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2).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경기도 일자리 정책 방향: 일자리 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GJF 고용이슈리포트(2022-01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4). *경기도2040 청년들의 경제활동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 GJF 이슈포커스(2024-11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4).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와 특징*. GJF 이슈포커스(2024-04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4). *중장년 일자리,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GJF 고용이슈리포트(2024-08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5). *중장년 재취업 우수사례의 시사점*. GJF 고용이슈리포트(2025-04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일자리연구센터. (2025). *경기도 중장년 유연한 일자리 확산방안*. GJF 이슈포커스(2025-01호). 경기도일자리재단.
- 조경훈·김종수·장원웅·최유진·이수정·홍상우·장현경. (2023). *2023년 경기도 공익활동 사회경제기반 조성방안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강세진·신권화정·김승순·이소소. (2021).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사단법인 시민·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김유리·정란아·박운정·권지현·김승순. (2024). *경기도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비전전략체계 수립 연구*.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 조철민·김소연·김승순. (2024). *평택시 공익활동 활성화 기본계획(2025~2028) 수립 연구용역*. 사단법인 시민·평택시.

<기사> (일자순)

-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명 달해”(더나은미래, 2017.08.29.)
-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더나은미래, 2018.09.18.)
- “도내 산단 입주기업 97% 중소기업, 인력·교통 개선 시급해” 도, 전수 실태조사 발표(경기도뉴스포털, 2021.10.11.)
- “‘기부금품법’ 비영리단체에 과잉 족쇄인가, 필요 규제인가”(더나은미래, 2024.12.16.)
- “2025년 경기도 예산 전년대비 7.2%증가. ‘확장재정’이어간다”(경기도뉴스포털, 2024.12.30.)
-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가입자, 1년만에 144만CUD 돌파.”(노컷뉴스, 2025.07.29.)
- “경기신보, 하반기 보증지원 설명회...소상공인·중소기업 소통”(경인일보, 2025.07.29.)
- 尹 정부가 없었던 총리 산하 '시민사회위원회' 다시 만든다(한국일보, 2025.08.03.)
- 빛의 혁명 시민본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 체결(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025.05.16.)

<홈페이지>

- 경기바로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https://ggbaro.kr/web/index.do>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 경기통계: <https://stat.g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기후행동기회소득 홈페이지: <https://www.ggaction.or.kr/>

- 통계청: <https://kostat.go.kr>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s://www.kawf.kr/social/sub01_2.do
- CharityJob: <https://www.charityjob.co.uk>
- Idealist.org: <https://www.idealist.org>
- The Council on Foundations: <https://jobs.cof.org>

<해외기관자료>

- 미국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비영리부문 조사자료
<https://www.bls.gov/bdm/nonprofits/nonprofits.htm>
- 영국시민사회협약.(2025)
UK Government. (2025). Civil Society Covenant – UK Government official publication. GOV.UK.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ivil-society-covenant>
- 존스홉킨스대학연구소 보고서.(2013.3.11)
Johns Hopkins University. (2013, March 11). The state of global civil society and volunteering: Latest findings from implementation of the UN nonprofit handbook. Center for Civil Society Studies. <http://ccss.jhu.edu>
- 존스홉킨스대학 비영리경제데이터프로젝트
<http://ccss.jhu.edu/research-projects/nonprofit-economic-data>
- 조지메이슨대학 비영리 고용 데이터 프로젝트(GMU-NED) 보고서
George Mason University. (2024, December). Nonprofit Employment Data Project (GMU-NED) Briefing #2. <https://www.gmu.edu>